

자녀장려세제


#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I) 자녀장려세제

##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I) 자녀장려세제

2019. 9

2019. 9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代), www.mosf.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代), www.kipf.re.kr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I )

## 자녀장려세제

2019. 9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자녀장려세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기은선 강원대학교 교수

2019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유 찬



## 요 약

- 본 연구는 자녀장려세제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및 아동빈곤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였음
  
- 연구 분석을 위하여 자녀장려금 수급자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공공기관에서 생성하고 있는 패널조사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분석하였음
  -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구특성에 따른 자녀양육비 부담 및 자녀장려금이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하였음
  - 사회복지 및 조세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도의 정책 효과 및 세부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 복지 관련 패널조사 자료인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 도입 이후 아동빈곤율, 소득불평도 등의 개선이 있었는지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장려세제 수혜요건 및 지급모형 등이 현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후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개선방안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음
  
- 자녀장려세제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가구 총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출산 및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자녀장려세제는 부양자녀가 있으나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하여 조세제도를 통하여 현금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제도와 차별성이 있음

- 제도 도입 이후 자녀 수 감소로 지급규모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8년 세법개정<sup>1)</sup>으로 지급 대상 및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2019년에는 지급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6,578억원(2015년)에서 8,570억원(2019년)으로 30.3% 증가할 것으로 예상

**분석결과 - 효과성 분석**

- 자녀장려세제는 아동빈곤율 감소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비 경감 및 근로장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동빈곤율 감소: 아동빈곤율을 1.75%p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중 아동빈곤율 감소에 가장 큰 효과를 가짐
  - 생계급여와 자녀장려금의 중복수급 허용으로 아동빈곤율이 높은 가구유형에서 자녀장려금 수혜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1〉 자녀장려세제를 통한 아동빈곤율 변화

(단위: %)

연도	시장 소득	CTC	한부모 가족지원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급식비 지원
2015	9.548	9.533 (-0.16)	9.513 (-0.37)	9.356 (-2.01)	9.286 (-2.75)	9.187 (-3.78)	9.381 (-1.76)
2016	8.478	8.281 (-2.33)	8.425 (-0.62)	8.328 (-1.77)	7.980 (-5.87)	8.311 (-1.96)	8.333 (-1.71)
2017	7.546	7.414 (-1.75)	7.546 (0.00)	7.517 (-0.39)	7.463 (-1.10)	7.463 (-1.11)	7.512 (-0.46)

주: 1) 괄호 안은 증감률  
 2) 중위소득(시장소득) 50% 기준 상대적 빈곤율  
 자료: 한국복지패널(11차~13차)

1)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CTC신청 허용, 1인당 최대지급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자녀양육비 경감: 아동빈곤가구의 보육료지출액의 22.8%, 보육료 및 교육비 지출액의 3.8%, 자녀생활비 지출액의 1.2%에 해당하는 자녀양육비 경감효과가 있음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양육비 경감효과가 증가함
  - 근로·자녀장려금 수령가구의 88.7%, 자녀장려금만 수령한 가구의 76.5%가 장려금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소득분배 개선: 전체가구의 지니계수 0.08%p, 아동부양가구의 지니계수 0.27%p 낮추는 효과가 있음
  - 다만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타 제도와 비교하여 CTC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표 2> 아동빈곤가구의 자녀양육비 경감효과

(단위: 만원, %)

구분	자녀 장려금 (A)	보육료		보육료 + 교육비		자녀생활비		
		금액 (B)	경감 효과 (=A/B)	금액 (C)	경감 효과 (=A/C)	금액 (D)	경감 효과 (=A/D)	
전체 가구	17.6	77.2	22.8	465.5	3.8	1,435.7	1.2	
경제 활동	홀벌이	25.4	101.2	25.1	412.6	6.2	1,512.4	1.7
	맞벌이	25.5	45.8	55.7	685.3	3.7	1,572.8	1.6
가구 형태	한부모	7.9	32.0	24.6	394.7	2.0	1,287.7	0.6
	양부모	26.6	119.0	22.3	531.2	5.0	1,573.0	1.7
18세 미만 자녀	1명	8.3	32.1	26.0	357.0	2.3	1,004.9	0.8
	2명	34.5	118.7	29.0	577.1	6.0	1,774.6	1.9
	3명	29.1	162.0	18.0	699.7	4.2	3,332.7	0.9
7세 미만 자녀	1명	19.0	32.1	59.1	357.0	5.3	1,004.9	1.9
	2명	48.3	427.7	11.3	465.2	10.4	1,515.4	3.2
	3명	97.3	291.1	33.4	291.1	33.4	2,290.7	4.2

자료: 한국복지패널(13차)

- 출산장려효과: 수급 연도 이후, 저소득층가구에서 장려금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에 비하여 출산으로 자녀가 증가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의 가구주 연령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비교이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표 3〉 저소득층가구의 CTC 수급과 출산으로 인한 자녀수 증가

(단위: %)

구분	2015년 수급가구		2016년 수급가구		2017년 수급가구	
	수급 후 자녀수		수급 후 자녀수		수급 후 자녀수	
	증가	비증가	증가	비증가	증가	비증가
수급가구	0.05	2.37	0.25	2.90	0.14	3.69
비수급가구	0.40	97.18	0.02	96.84	0.05	96.13

자료: 한국복지패널(11차~13차)

- 근로장려효과: CTC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에 비하여 부부의 총근로개월 수가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분석됨

〈표 4〉 자녀장려세제가 부부가구의 근로개월 수에 미친 영향

변수명	모형 1 (전체가구 중 매칭)		모형 2 (아동가구 중 매칭)	
	계수	t-통계	계수	t-통계
CTC 수급가구 더미	1.409	(2.972)***	2.758	(6.720)***
LN(비근로·사업소득)	-0.451	(-4.557)***	-0.330	(-3.182)***
LN(가구총자산)	0.725	(6.845)***	0.476	(4.493)***
18세 미만 자녀수	1.137	(5.128)***	0.610	(2.295)**
여성 가구주 더미	-4.971	(-10.732)***	-5.104	(-9.221)***
대졸이상 학력 가구주 더미	-0.321	(-0.734)	-0.201	(-0.478)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더미	0.944	(2.044)**	0.510	(1.093)
상수항	11.204	(11.291)***	12.352	(11.545)***
연도더미	포함		포함	
표본수	1,314		1,200	
Adj. R <sup>2</sup>	0.221		0.153	
F값	42.409***		25.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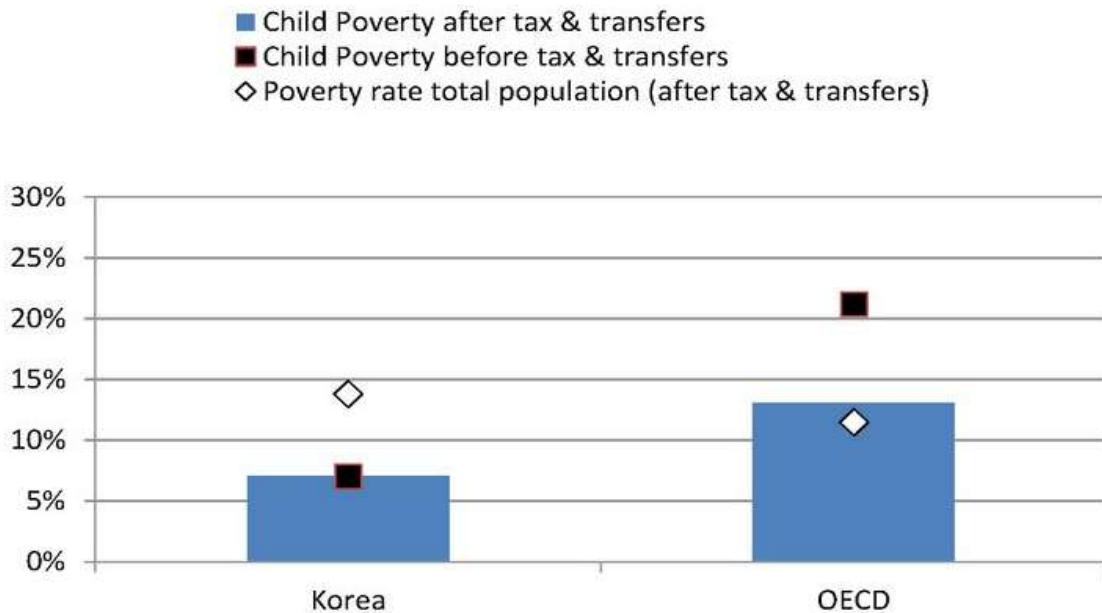
주: 가구자산 3억원 이하 가구 중 CTC 수급가구와 전년도 시장소득이 가장 유사한 비수급가구를 통제가구로 선정함

자료: 한국복지패널(11차~13차)

## 분석결과 - 타당성 분석

-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의 적절성, 맞벌이가구 우대정책의 타당성,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의 적절성,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배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쟁점사항이 존재함
- 정부지원의 적절성: OECD(2018)는 한국의 아동빈곤의 주요 요인은 교육비 주거비와 부모의 고용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 급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세제 및 급여제도가 빈곤가구 아동빈곤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그림 1] 세전/세후 아동빈곤을 비교



자료: OECD(2018)

- 소득기준의 적절성: 1인당 GDP 대비 우리나라 소득상한액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지 않고, 다른 저소득층 지원제도보다 높은 편이지만, 제도 도입 이후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소득5분위별 3분위 소득: 4,400만원(2012년) → 4,932만원(2018년)

<표 5> 국가별 자녀장려세제 소득기준 비교

(단위: 미국달러, %)

국가	구분	미국달러			1인당 GDP 대비 비율		
		최대 급여액	점감 개시액	소득 상한액	최대 급여액	점감 개시액	소득 상한액
미국	부부(단독)	2,000 (1,400)	200,000	240,000	3.34 (2.34)	333.73	400.48
	부부(합산)	2,000 (1,400)	400,000	440,000	3.34 (2.34)	667.47	734.22
영국	자녀 1명	4,223	20,453	30,753	10.57	51.19	76.97
	자녀 2명	7,753		39,364	19.41		98.52
	자녀 3명	11,284		47,976	28.24		120.08
캐나다	자녀 1명	4,157 4,927	23,093	120,999 145,055	9.26 10.98	51.47	269.66 323.27
	자녀 2명	8,314 9,853		132,077 159,087	18.53 21.96		294.35 354.54
	자녀 3명	12,470 14,780		141,927 170,794	27.79 32.94		316.30 380.64
뉴질랜드	자녀 1명	3,879	28,182	43,700	9.11	66.18	102.62
	자녀 2명	7,011		56,227	16.46		132.04
	자녀 3명	10,143		68,754	23.82		161.46
우리나라	자녀 1명	602	18,060 (홀벌이) 21,500 (맞벌이)	34,400	2.02	60.72 (홀벌이) 72.29 (맞벌이)	115.66
	자녀 2명	1,204			4.05		
	자녀 3명	1,806			6.07		

자료: 각 국가별 국세청 자녀장려세제 안내자료 활용

<표 6>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소득기준 비교

(단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CTC
중위소득의	30	40	44	50	72.3

- 점감개시액의 적절성: 1인당 GDP 대비 우리나라의 점감개시액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나, 홀벌이와 맞벌이 가구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함
  - 또한, 2012년 중위소득의 50%에 맞추어져 있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함
  
- 최대급여액의 적절성: 1인당 GDP 대비 우리나라의 최대지급액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줄어드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우리나라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지급액이 동일하나, 영국, 뉴질랜드 등은 둘째부터 자녀 1인당 지급액이 감소함
  - 한부모가구와 장애아동가구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와 장애아동수당을 통하여 현금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한부모 및 장애요소를 추가로 반영할 필요성은 낮음

<표 7> 기혼여성(15~49세)의 월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액

(단위: 만원)

월평균 자녀양육비(총액)			자녀수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1자녀 가정	2자녀 가정	3자녀 가정	1자녀 → 2자녀	2자녀 → 3자녀
73.3	137.6	161.9	64.3	24.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재산요건의 적절성: 보유자산규모에 따라 생활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산요건을 유지할 타당성이 인정됨
  - 「가계동향조사」 소득 5분위별 3분위 가구자산: 시가 3억 4천만원(시가표준액 현실화율 75% 가정 환산가액: 2억 8천만원)
  
- 지급모형의 적절성: CTC는 근로장려의 목적보다 저소득가구 자녀양육비 보전의 성격이 강하므로, 현재와 같은 평탄-점감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타 제도와 중복성: 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가능한 반면,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불가능해 7세 이상 자녀부양가구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제도 개선방향

### 1) 소득상한액

- 자녀장려금의 소득상한액 4천만원은 2012년 소득 5분위별 3분위가구의 평균소득 90% 수준에서 설정된 것으로 3분위가구 소득의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혜대상자 범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지만, 자녀장려금 선정 기준은 가계동향조사의 중위 가구소득에 맞추어져 있어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귀속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1.5명으로 자녀장려금 상한액은 3인가구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평균값인 5,024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자녀장려금 소득상한액을 인상하였을 때 재정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기준을 각각 4,4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인상한 경우를 분석함
  - 소득기준 4,400만원은 현재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4,000만원)에 『가계동향조사』 소득 5분위별 3분위가구의 2012년 평균소득 대비 2018년 평균소득의 증가율 11.2%p를 적용한 것임
  - 소득기준 5,000만원은 2019년 3인 가구 중위소득과 4인 가구 중위소득의 평균으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적정 소득상한액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값임
- 소득상한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방안 1] 4,400만원 또는 [방안 2] 5,000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각각 640억원과 1,653억원의 조세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표 8〉 소득기준 조정으로 인한 재정효과

(단위: 가구, 백만원)

구분	현행		[방안 1]		[방안 2]	
	① 소득상한액: 4,000		① 소득상한액: 4,400		① 소득상한액: 5,000	
	② 점감개시액 - 맞벌이: 2,500 - 홀벌이: 2,100		② 점감개시액 - 맞벌이: 2,600 - 홀벌이: 2,200		② 점감개시액 - 맞벌이: 2,900 - 홀벌이: 2,500	
	③ 재산기준: 2억/1.4억		③ 재산기준: 2억/1.4억		③ 재산기준: 2억/1.4억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맞벌이	633,706	555,676	684,703	595,232	756,992	657,944
홀벌이	144,088	123,237	172,664	147,671	213,171	186,240
조세지출	777,794	678,913	857,367	742,903	970,163	844,184
증감			79,573	63,990	192,369	165,270

- 그러나 자녀장려금의 현행 소득상한 4,000만원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상한 인상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표 9〉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상한 비교

(단위: 만원, %)

구분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3,000	4,000	3,600	4,000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65	89	65	72

주: 홀벌이가구: 3인가구 기준, 맞벌이가구: 4인가구 기준

## 2) 점감개시액

- 우리나라의 점감개시액은 홀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이며, 중위 가구소득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이후 동일한 점감개시액이 유지되어 오고 있어 물가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함
- 또한 맞벌이와 홀벌이가구의 점감개시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아동빈곤가구 소득지원 및 근로활동 유도의 관점에서 홀벌이와 맞벌이가구 차별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사회복지 및 조세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홑벌이와 맞벌이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체계 통일에 찬성함
- 지원의 논리적 근거나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빈곤선 미만 가구는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게 홑벌이와 맞벌이가구의 점감개시액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 홑벌이와 맞벌이가구의 점감개시액을 통일할 경우 적정한 점감개시액은 OECD 빈곤층 분류기준인 중위소득의 50% 수준(2019년 기준 2,500만원)에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귀속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1.5인으로 2019년 3.5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2019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512만원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536만원의 평균) 5,024만원의 50%는 2,512만원임
- 맞벌이, 홑벌이 가구의 점감개시액을 2,500만원으로 통일할 경우 179억원의 조세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방안 2] 소득상한액을 4,400만원으로 인상하고, 점감개시액을 2,200만원으로 통일할 경우 601억원의 조세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방안 3] 소득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점감개시액을 2,500만원으로 통일할 경우 1,604억원의 조세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표 10> 맞벌이/홑벌이가구 점감개시액 통일으로 인한 재정효과

(단위: 가구, 백만원)

구분	[방안 1]		[방안 2]		[방안 3]	
	① 소득상한액: 4,000		① 소득상한액: 4,400		① 소득상한액: 5,000	
	② 점감개시액: 2,500		② 점감개시액: 2,200		② 점감개시액: 2,500	
	③ 재산기준: 2억/1.4억		③ 재산기준: 2억/1.4억		③ 재산기준: 2억/1.4억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맞벌이	633,706	570,004	684,703	595,232	756,992	657,944
홑벌이	144,088	126,845	172,664	143,823	213,171	181,358
조세지출	777,794	696,849	857,367	739,055	970,163	839,302
증감	-	17,936	79,573	60,142	192,369	160,388

### 3) 재산기준

- 재산요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재산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와 자녀장려세제의 재산요건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여부임
  - 재산요건은 아동빈곤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함
  
- 현재의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아동빈곤가구의 90% 이상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아동빈곤가구의 소득보전 목적에서 재산요건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됨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중 70% 이상이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따라 재산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거주 지역에 따른 재산요건 차등 적용은 동일한 재산 보유자 간 형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4) 최대지급액

- 우리나라 자녀장려세제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은 대체로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와 일치함. 그러나 이러한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 대비 우리나라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70만원으로 동일한 반면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둘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감소함
  
- 설문조사 결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양육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둘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둘째 자녀부터 최대지급액을 삭감하는 것은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현재보다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5)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배제 검토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공제 허용은 소득세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가구에  
만 의미가 있는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에 세제개편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6) 한부모가구 및 장애아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 인상

- 사회복지 및 조세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최대지급액 개편에 관해 질문한 결  
과, 한부모가구 및 장애아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높이는 것에 대한 긍  
정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다만, 한부모가구는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장애아부양가구는 장애아동수당을 통  
해 현금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 제도와 중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목 차

I. 서론	25
II. 자녀장려세제 제도	29
1.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CTC) 개요	31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32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36
4. 자녀장려금 지급액 결정	37
5. 자녀장려금 제도 변천과정	39
6. 자녀장려금 국세통계자료	43
III. 주요국의 자녀장려세제 제도	65
1. 국가별 자녀장려세제 제도 운영 현황	69
2. 국가별 자녀장려세제 제도 비교	79
IV. 설문조사	83
1. 조사 개요	85
2. 조사결과	89
3. 조사결과 분석	101
V. 효과성 평가	161
1.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163
2. 아동 빈곤문제 해결	169
3.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경감효과	176
4. 출산장려효과	180

5. 근로장려효과 .....	183
6.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효과 .....	187
7. 소득분배 개선효과 .....	188
<b>VI. 타당성 평가 .....</b>	<b>191</b>
1. 정부지원의 적절성 검토 .....	193
2. 수행방법의 적절성 검토 .....	195
3. 지원방식의 적절성 및 타 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	232
<b>VII. 결론 및 개선방안 .....</b>	<b>243</b>
1. 쟁점사항 및 제도개선 방향 .....	245
2.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	252
<b>참고문헌 .....</b>	<b>266</b>
<b>&lt;부 록&gt; .....</b>	<b>269</b>

## 표 목 차

<표 II-1> 사업소득 계산시 업종별 조정률 .....	34
<표 II-2> 2019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식 .....	37
<표 II-3> 2019년 자녀장려금 산정표 .....	38
<표 II-4> 자녀장려세제 제도 등의 변천과정 .....	42
<표 II-5> 자녀장려금 신청·지급 규모 .....	44
<표 II-6> 성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	45
<표 II-7>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	46
<표 II-8> 연령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	47
<표 II-9> 부양자녀 인원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	49
<표 II-10> 근로유형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	50
<표 II-11> 총급여액등 규모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	51
<표 II-12> 성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52
<표 II-13>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53
<표 II-14> 연령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54
<표 II-15> 부양자녀 인원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56
<표 II-16> 주택 보유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57
<표 II-17> 재산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58
<표 II-18> 장려금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60
<표 II-19> 총급여액 등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61
<표 II-20> 지급횟수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62
<표 II-21> 산정구간별 지급현황 .....	64
<표 III-1> 주요국의 자녀장려세제 현황 .....	68
<표 III-2> Child Tax Credit in U.S. ....	71
<표 III-3> 영국의 CTC 급여산정요소(2019~2020) .....	72
<표 III-4> 영국의 소득금액별 CTC금액(2019~2020) .....	73

<표 III-5> Child Tax Credit in U.K .....	74
<표 III-6> 뉴질랜드의 FTC 최대 수령액(2018. 4~2019. 3) .....	76
<표 III-7> 캐나다 자녀양육보조금(CCB) 계산방법 .....	77
<표 IV-1> 조사 설계 .....	86
<표 IV-2> 수급자 조사 세부 항목 .....	86
<표 IV-3> 전문가 조사 세부 항목 .....	87
<표 IV-4> 2017년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 현황 .....	87
<표 IV-5> 수급자 조사 응답자 특성 .....	88
<표 IV-6>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	88
<표 IV-7> 가구원 수 .....	89
<표 IV-8> 가구 형태 .....	89
<표 IV-9> 부양자녀 수 .....	89
<표 IV-10> 소득 유형별 소득 수준 .....	90
<표 IV-11> 재산 유형별 보유 수준 .....	90
<표 IV-12> 월 평균 생활비 및 양육비 .....	91
<표 IV-13> 자녀 양육 관련 정부지원금 수혜 경험 .....	91
<표 IV-14>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었던 지원 제도 .....	92
<표 IV-15> 출산장려에 효과적이었던 지원 제도 .....	92
<표 IV-16> 자녀장려금 수급 횟수 .....	93
<표 IV-17>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수령액 .....	93
<표 IV-18>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 .....	93
<표 IV-19>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 .....	94
<표 IV-20> 자녀장려금 분할 지급에 대한 의견 .....	94
<표 IV-21>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 .....	95
<표 IV-22> 자녀 양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제도 .....	95
<표 IV-23> 출산장려 효과가 가장 큰 제도 .....	96
<표 IV-24> 자녀장려금 개편 방안 .....	96
<표 IV-25> 자녀장려금 개편 시 중점 수정사항 .....	97
<표 IV-26>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개편 시 걱정 방안 .....	97

<표 IV-27>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적정 수준 .....	98
<표 IV-28>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지급체계 통일에 대한 의견 .....	98
<표 IV-29>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최대급여액 기준점 적정 수준 .....	98
<표 IV-30>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개편 시 적정 방안 .....	99
<표 IV-31>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적정 수준 .....	99
<표 IV-32> 자녀장려금 삭감 기준점 개편 시 적정 방안 .....	100
<표 IV-33> 도시-농어촌 가구 재산요건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 .....	100
<표 IV-34>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 .....	101
<표 IV-35> 가구원 수 .....	102
<표 IV-36> 가구 형태 .....	103
<표 IV-37> 소득 유형별 소득 수준 .....	104
<표 IV-38> 재산 유형별 보유 수준 .....	105
<표 IV-39> 월 평균 생활비 및 양육비 .....	106
<표 IV-40> 자녀 양육 관련 정부지원금 수혜 경험 .....	107
<표 IV-41>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었던 지원 제도(1순위+2순위+3순위) ...	108
<표 IV-42> 출산장려에 효과적이었던 지원 제도(1순위+2순위+3순위) .....	110
<표 IV-43> 자녀장려금 수급 횟수 .....	111
<표 IV-44> 2018년도 자녀장려금 수령액 .....	112
<표 IV-45> 2018년도 근로장려금 수령액 .....	114
<표 IV-46>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자녀 양육비 경감) .....	115
<표 IV-47>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출산장려 효과) .....	116
<표 IV-48>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근로활동 참여) .....	118
<표 IV-49>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	119
<표 IV-50>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자녀 양육비 경감) .....	121
<표 IV-51>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출산장려 효과) .....	122
<표 IV-52>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근로활동 참여) .....	124
<표 IV-53>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	125
<표 IV-54> 2018년도 자녀장려금 분할 지급에 대한 의견 .....	127
<표 IV-55>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자녀 양육비 경감) .....	128
<표 IV-56>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출산장려 효과) .....	130

<표 IV-57>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근로활동 참여) .....	131
<표 IV-58>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	132
<표 IV-59> 자녀 양육비 경감에 효과가 가장 큰 지원 제도(1순위+2순위+3순위) ..	134
<표 IV-60> 출산장려에 효과가 가장 큰 지원 제도(1순위+2순위+3순위) .....	135
<표 IV-61> 자녀장려금 개편 방안(지급 대상) .....	136
<표 IV-62> 자녀장려금 개편 방안(자녀 1인당 지급액) .....	138
<표 IV-63> 현행 자녀장려금 개편 시 가장 중점적으로 수정해야할 부분 .....	139
<표 IV-64>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개편 시 걱정 방안 .....	140
<표 IV-65>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걱정 수준 .....	142
<표 IV-66> 맞벌이가구-홀벌이가구 지급체계 통일에 대한 의견 .....	143
<표 IV-67> 홀벌이가구 최대급여액 기준점 걱정 수준 .....	145
<표 IV-68> 맞벌이가구 최대급여액 기준점 걱정 수준 .....	146
<표 IV-69>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개편 시 걱정 방안 .....	148
<표 IV-70>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걱정 수준 .....	149
<표 IV-71> 자녀장려금 삭감 기준점 개편 시 걱정 방안 .....	150
<표 IV-72> 도시-농어촌 가구 재산요건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 .....	152
<표 IV-73>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1) .....	153
<표 IV-74>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2) .....	154
<표 IV-75>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3) .....	156
<표 IV-76>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4) .....	157
<표 IV-77>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5) .....	158
<표 V-1> 한국복지패널의 표본구성 .....	165
<표 V-2> 한국복지패널의 가구분포(2017년 기준) .....	166
<표 V-3> 한국복지패널의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분포(2017년 기준) .....	167
<표 V-4> 한국복지패널의 소득분위별 평균 시장소득 .....	168
<표 V-5> 한국복지패널의 소득분위별 평균 아동 수 .....	168
<표 V-6> 소득구분 .....	170
<표 V-7> 소득종류별 아동빈곤율(가계동향조사) .....	171
<표 V-8> 연도별·가구유형별 아동빈곤율 .....	174

<표 V-9> 아동빈곤가구의 유형별 자녀장려금 수급비율 .....	175
<표 V-10> 아동빈곤가구의 유형별 생계급여 수급비율 .....	176
<표 V-11>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	177
<표 V-12> 자녀양육비 경감 효과에 대한 수급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177
<표 V-13>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자녀양육비 경감효과 .....	178
<표 V-14> 근로·자녀장려금의 주 사용처(한국복지패널 조사결과) .....	179
<표 V-15> 출산장려 효과에 대한 수급자 설문조사 결과 .....	180
<표 V-16> 자녀장려금 수급과 출산으로 인한 자녀수 증가 .....	182
<표 V-17> 근로장려 효과에 대한 수급자 설문조사 결과 .....	184
<표 V-18>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와 매칭가구 특성 분석 .....	185
<표 V-19> 자녀장려금이 부부가구의 근로개월에 미친 영향 추정결과(2015~2017) ..	186
<표 V-20>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효과에 대한 수급자 설문조사 결과 .....	187
<표 VI-1> 자녀장려금 지급가구 수와 평균지급액의 연도별 변화 .....	197
<표 VI-2> 가구형태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의 연도별 변화 .....	197
<표 VI-3> 총급여액 등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2017년 기준) .....	198
<표 VI-4> 재산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2017년 기준) .....	199
<표 VI-5> 국가별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비교 .....	204
<표 VI-6> 기준 중위소득 추이 .....	206
<표 VI-7> 2019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207
<표 VI-8> 연도별·소득분위별 아동빈곤율 .....	208
<표 VI-9> 소득분위별, 아동수별 아동빈곤율 .....	208
<표 VI-10> 한국복지패널의 소득분위별 경제 시장소득 .....	209
<표 VI-11>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전체 가구)의 소득규모별 가구자산 구성(2017) ..	213
<표 VI-12> 자녀장려금 수급가구(근로자가구)의 소득규모별 가구자산 구성(2017) ..	214
<표 VI-13>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자영업자가구)의 소득규모별 가구자산 구성(2017) ..	215
<표 VI-14>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지역별 가구자산 구성(2017) .....	216
<표 VI-15> 자녀장려제제와 다른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재산기준 비교 .....	219
<표 VI-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220
<표 VI-17> 지역별 가구자산 현황 .....	222

<표 VI-18> 지역별 아동빈곤율과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비율 .....	223
<표 VI-19> 아동빈곤가구의 자산값 .....	224
<표 VI-20> 가구특성 및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	225
<표 VI-21> 국가별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비교 .....	227
<표 VI-22> 기혼여성(15~49세)의 월평균 자녀양육비용 지출액(2018년) .....	228
<표 VI-23> 소득세 납부가구비율 및 월 평균 소득세 납부액 .....	232
<표 VI-24> 아동빈곤가구의 맞춤형 급여 수급실적 .....	233
<표 VI-25> 우리나라의 자녀양육비 지원제도 .....	235
<표 VI-26> 자녀장려세제를 통한 아동빈곤문제 해결효과 .....	237
<표 VI-27> 아동빈곤가구의 자녀양육지원금 수급비율 .....	238
<표 VI-28> 아동빈곤가구의 자녀양육지원금 수급실적 .....	238
<표 VI-29> 자녀장려세제를 통한 지니계수 변화(전체 가구) .....	239
<표 VI-30> 자녀장려세제를 통한 지니계수 변화(아동가구) .....	239
<표 VI-31> 7세 미만 자녀보유여부에 따른 자녀양육비 경감효과 비교 .....	240
<표 VI-32> 7세 미만 자녀보유여부에 따른 출산장려효과 비교 .....	242
<표 VII-1>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 수 추정 프로세스 .....	246
<표 VII-2> 소득규모별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 수(추정) .....	253
<표 VII-3> 소득규모별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추정) .....	254
<표 VII-4> 소득기준 변경 효과(4,400만원으로 인상) .....	255
<표 VII-5> 소득기준 변경 효과(5,000만원으로 인상) .....	257
<표 VII-6> 점감개시액 일치화 효과(소득상한액 4,000만원 기준) .....	258
<표 VII-7> 소득상한액 인상(4,400만원으로 인상)과 점감개시액 일치화 효과 .....	259
<표 VII-8> 점감개시액 일치화 효과(소득상한액 5,000만원 기준) .....	260
<표 VII-9> 재산기준 확대에 따른 재정효과 추정 .....	261
<표 VII-10> 재산기준의 지역별 차등화에 따른 재정효과 추정 .....	263
<표 VII-11> 자녀수에 따른 지급액 차등화 효과(첫째 자녀 80만원, 둘째 자녀부터 70만원) .....	265

## 그림 목 차

[그림 II-1] 자녀장려금 신청·지급 규모 .....	44
[그림 II-2] 성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	45
[그림 II-3]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	46
[그림 II-4] 연령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	48
[그림 II-5] 부양자녀 인원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	48
[그림 II-6] 근로유형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	50
[그림 II-7] 총급여액등 규모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	51
[그림 II-8] 성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52
[그림 II-9]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53
[그림 II-10] 연령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55
[그림 II-11] 부양자녀 인원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55
[그림 II-12] 주택 보유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57
[그림 II-13] 재산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59
[그림 II-14] 장려금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59
[그림 II-15] 총급여액 등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61
[그림 II-16] 지급횟수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62
[그림 II-17] 산정구간별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수 현황 .....	63
[그림 II-18] 산정구간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현황 .....	63
[그림 III-1] WTC 및 CTC 최대 급여액 소득수준 .....	73
[그림 IV-1]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85
[그림 IV-2] 가구원 수 .....	102
[그림 IV-3] 가구 형태 .....	104
[그림 IV-4] 자녀 양육 관련 정부지원금 수혜 경험 .....	106
[그림 IV-5]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었던 지원 제도 .....	109

[그림 IV-6] 출산장려에 효과적이었던 지원 제도 .....	109
[그림 IV-7] 자녀장려금 수급 횟수 .....	111
[그림 IV-8] 2018년도 자녀장려금 수령액 .....	113
[그림 IV-9] 2018년도 근로장려금 수령액 .....	113
[그림 IV-10]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자녀 양육비 경감) .....	115
[그림 IV-11]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출산장려 효과) .....	117
[그림 IV-12]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근로활동 참여) .....	117
[그림 IV-13]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	120
[그림 IV-14]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자녀 양육비 경감) .....	120
[그림 IV-15]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출산장려 효과) .....	123
[그림 IV-16]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근로활동 참여) .....	123
[그림 IV-17]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	126
[그림 IV-18] 자녀장려금 분할 지급에 대한 의견 .....	127
[그림 IV-19]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자녀 양육비 경감) .....	129
[그림 IV-20]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출산장려 효과) .....	129
[그림 IV-21]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근로활동 참여) .....	131
[그림 IV-22]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	133
[그림 IV-23] 자녀 양육비 경감에 효과가 가장 큰 지원 제도 .....	133
[그림 IV-24] 출산장려에 효과가 가장 큰 지원 제도 .....	135
[그림 IV-25] 자녀장려금 개편 방안(지급 대상) .....	137
[그림 IV-26] 자녀장려금 개편 방안(자녀 1인당 지급액) .....	137
[그림 IV-27] 현행 자녀장려금 개편 시 가장 중점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 .....	139
[그림 IV-28]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개편 시 걱정 방안 .....	141
[그림 IV-29]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걱정 수준 .....	141
[그림 IV-30] 맞벌이가구-홀벌이가구 지급체계 통일에 대한 의견 .....	144
[그림 IV-31] 홀벌이가구 최대급여액 기준점 걱정 수준 .....	144
[그림 IV-32] 맞벌이가구 최대급여액 기준점 걱정 수준 .....	147
[그림 IV-33]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개편 시 걱정 방안 .....	147
[그림 IV-34]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걱정 수준 .....	149
[그림 IV-35] 자녀장려금 삭감 기준점 개편 시 걱정 방안 .....	151



[그림 VI-17]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자녀양육지원제도 수혜경험 .....	240
[그림 VI-18]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었던 지원제도 .....	241
[그림 VI-19] 출산장려에 효과적이었던 지원제도 .....	241

# I. 서론





# I. 서론

-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장려세제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경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동빈곤 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함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근로유인 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자녀장려세제는 도입 역사가 비교적 짧아 제도의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국내연구는 많지 않음
  
- 연구 분석을 위하여 자녀장려금 수급자 및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공공기관에서 생성하고 있는 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자녀장려세제 도입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자 함
  -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가구특성에 따른 자녀양육비 부담을 조사하였고, 자녀장려금이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하였음
  - 사회복지 및 조세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제도의 정책효과 및 개편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였음
  - 국내 공공기관에서 생성하고 있는 복지 관련 패널조사 자료인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 도입 이후 아동빈곤율, 소득불평도 등의 개선이 있었는지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자녀장려세제 신청자격 및 지급액, 지급절차 등 제도 구성요소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신청자격(재산요건, 소득요건), 최대지급구간 및 최대지급액 등을 포함하여 제도설계가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지를 검토하였음
  
- 또한 정부가 시행 중인 다양한 자녀양육비 지원수단 각각이 지닌 장단점과 정책목표 달성수단으로서의 성과를 비교분석하였고, 자녀장려금과 타 제도 간의 중복여부를 검토하였음

- 다양한 자녀양육비 지원수단 중 아동빈곤율과 지니계수를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탐색하고, 자녀장려세제 정책효과를 타 지원수단과 비교분석하였음
  
- 최종적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자녀장려세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각 개편방안이 국가재정 및 아동빈곤율, 소득불평등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함
-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아동빈곤율 감소와 소득불평등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탐색함

## Ⅱ. 자녀장려세제 제도





## II. 자녀장려세제 제도

### 1.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CTC) 개요

- 정부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주요 요인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1일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를 도입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음
- 자녀장려세제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가구 총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출산 및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자녀장려세제는 부양자녀가 있으나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하여 조세제도를 통하여 현금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제도와 차별성이 있음
- 자녀장려세제는 18대 정부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삼아 ‘맞춤형 고용·복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전략 중 하나로 자녀장려세제 제도를 제시하면서 도입됨
  - 2013년 3월 국무회의에서 출산·양육·노후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을 심의·의결을 통하여 이를 최종 확정함
- 자녀장려세제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며,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1명당 최대 70만월을 지급하는 제도임
  -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아동빈곤을 예방하며, 신청자격을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2018년에는 총 110만 3,431가구에 6,496억 6,30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었음
  - 지급된 자녀장려금은 대상가구의 2017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함
  - 2017년과 비교하여 지급대상 가구수와 금액이 각각 13.1%, 16.4% 감소함

##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sup>2)</sup>

### 가. 신청대상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연계하여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근로·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청대상에 해당함
  - 가구 단위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1가구 내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인 경우 제한적으로 신청이 가능함
-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이란,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말하며 근로, 사업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비과세소득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
    - 단, 원천징수(3.3%)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음
- 가구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원 중 1명에게만 지급되며, 동일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부부인 경우에는 주소득자를 기준으로,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 정한 자를 기준으로 지급됨

2) 2019년 지급요건을 기준으로 작성됨

- 부부인 경우에 주소득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청인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부부가 아닌 경우에 합의에 의해 정한 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소득자 또는 부양자녀수가 많은 자를 기준으로 함
  -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더라도 형제(부양자녀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됨)·사촌이거나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보지 않으므로 각각 신청이 가능함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
-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의 자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
    - 동거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자,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자
  - 18세 미만일 것
    - 단, 중증장애인이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양도·퇴직소득 포함, 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은 제외
  -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이 허용됨
  -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나. 가구구분

- 자녀장려금은 가구구분(홀별이, 맞별이)에 따라 장려금 지급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구분 판단이 중요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맞별이 가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홀별이 가구로 구분됨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근로자 총급여액 +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 총수입금액)이 300만원이 이상인 경우에 맞별이 가구로 구분됨
  - 맞별이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시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함

## 다. 소득요건

- 자녀장려금 신청 시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총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과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되며,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을 합산하여 판단함
-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양도·퇴직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님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표 II -1> 사업소득 계산시 업종별 조정률

(단위: %)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주: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조정률)은 위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함

출처: 홈택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Idx=1004000000&tm3Idx=1004000000](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Idx=1004000000&tm3Idx=1004000000)), 검색일자: 2019. 6. 18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라. 재산요건

- 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이때 가구원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되,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액으로 계산함
  - 은행채무, 사채 등과 같은 채무가 많더라도 이는 재산가액에서 차감계산하지 않음
    - 이는 업무집행 시 부채가 재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임
  
- 재산의 합계액 요건 계산 시 고려되는 1세대 가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뜻함
  - 배우자
  - 부양자녀
  -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 단,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를 포함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보며,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며,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동일 세대로 봄
  
- 가구원의 재산의 합계액 계산 시 재산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공동주택가격
  - 오피스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자동차: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영업용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은 제외)
- 전세금: 주택·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임차주택의 기준시가 × 55%), 상가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함
  - 단, 주택·오피스텔의 간주 전세금이 실제 전세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가능함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등: 소유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 금융재산: 예금, 적금, 파생결합상품 등은 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
- 회원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평가됨
  - 소유기준일 현재 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

###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기한후 신청으로 나뉘어 있으며, 기한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에서 10%가 차감됨
  - 정기신청 기간은 당해연도 5.1~5.31까지임
  - 기한후 신청 기간은 당해연도 6.1~12.2까지임
  - 소득세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보이는 음성), 모바일 앱, 홈택스, 서면 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서면신청(세무서 방문)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빠르게 신청할 수 있음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ARS등을 통해 발송 여부 및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음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요건 충족시,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4. 자녀장려금 지급액 결정

- 장녀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의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됨
  -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됨
  
-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이란, ‘근로자 총급여액 +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 총수입금액’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소득은 제외됨
  - 비과세소득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
  
- 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녀 1인당 50만 6천원~70만원 규모의 장려금이 지급됨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됨
  -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표 II -2> 2019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식

(단위: 만원)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홀벌이	2,100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100 이상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 900분의 20]
맞벌이	2,500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500 이상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 500분의 20]

출처: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Idx=1004000000&tm3Idx=1004000000](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Idx=1004000000&tm3Idx=1004000000)), 검색일자: 2019. 6. 18

<표 II -3> 2019년 자녀장려금 산정표

(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소금액	6,000,000	7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700,000	700,000
21,000,000	21,500,000	700,000	700,000
21,500,000	22,000,000	695,000	700,000
22,000,000	22,500,000	690,000	700,000
22,500,000	23,000,000	685,000	700,000
23,000,000	23,500,000	679,000	700,000
23,500,000	24,000,000	674,000	700,000
24,000,000	24,500,000	669,000	700,000
24,500,000	25,000,000	664,000	700,000
25,000,000	25,500,000	658,000	700,000
25,500,000	26,000,000	653,000	694,000
26,000,000	26,500,000	648,000	687,000
26,500,000	27,000,000	643,000	680,000
27,000,000	27,500,000	637,000	674,000
27,500,000	28,000,000	632,000	667,000
28,000,000	28,500,000	627,000	660,000
28,500,000	29,000,000	622,000	654,000
29,000,000	29,500,000	616,000	647,000
29,500,000	30,000,000	611,000	640,000
30,000,000	30,500,000	606,000	634,000
30,500,000	31,000,000	600,000	627,000
31,000,000	31,500,000	595,000	620,000
31,500,000	32,000,000	590,000	614,000
32,000,000	32,500,000	585,000	607,000
32,500,000	33,000,000	579,000	600,000
33,000,000	33,500,000	574,000	594,000
33,500,000	34,000,000	569,000	587,000
34,000,000	34,500,000	564,000	580,000
34,500,000	35,000,000	558,000	574,000
35,000,000	35,500,000	553,000	567,000
35,500,000	36,000,000	548,000	560,000
36,000,000	36,500,000	543,000	554,000
36,500,000	37,000,000	537,000	547,000
37,000,000	37,500,000	532,000	540,000
37,500,000	38,000,000	527,000	534,000
38,000,000	38,500,000	522,000	527,000
38,500,000	39,000,000	516,000	520,000
39,000,000	39,500,000	511,000	514,000
39,500,000	39,999,990	506,000	507,000

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 산정표([https://www.nts.go.kr/support/encourage\\_popup/encourage\\_qna\\_10.html](https://www.nts.go.kr/support/encourage_popup/encourage_qna_10.html)),  
 검색일자: 2019. 6. 18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체납액으로 충당됨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장려금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5. 자녀장려금 제도 변천과정

-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자녀장려세제 관련 제도 변천과정을 조사함

### 가. 2015년(자녀장려세제 도입)

- 자녀양육과 관련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아동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함
  - 2014. 1. 1. 법 개정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를 신설함
  - 총소득 4,000만원 미만으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함
- 자녀장려세제 제도는 2015. 1.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세제와 동일하게 운영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고, 자녀수가 증가하면 자녀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함
- 자녀장려세제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을 배제함
  - 자녀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성격이 유사하며, 지급요건, 금액 등만 차이가 나므로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중복적용을 배제함
- 자녀장려세제 신청대상자 범위를 종전의 근로소득자에서 고소득 전문자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소득자로 확대함
  - 2015. 2. 3. 이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 나. 2016년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국적규정을 완화함
  - 종전의 자녀장려금 제외사유가 해당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을 보유한 날이 있는 자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 국적 보유자로 개정함
  - 이는 외국 국적자에 대한 신청자격을 합리화하기 위함이며 2016.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 자녀장려금의 체납액 충당비율을 일원화함
  - 종전에 자녀장려금 환급금의 체납액 충당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소득세 등 직접세의 경우, 장려금의 30%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가능함
    -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경우, 장려금의 전액을 체납액에 충당 가능함
  - 종전의 규정을 소득세 등과 마찬가지로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만 충당하도록 개정(즉, 자녀장려금의 70% 이상 지급하도록 함)
  -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려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2016.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 자녀장려금 1세대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 종전 1세대의 범위에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형제·자매 등을 포함)이었던 것을 형제·자매 등을 제외한 직계 준비속으로 개정함
  - 이는 2016. 2. 5.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 다. 2017년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을 폐지함
  - 재산요건은 유지하되 재산요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택요건을 폐지함
    - 종전 주택요건은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및 대체취득,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였음
  - 이는 2017.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

-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함
  - 종전 재산가액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함
  - 이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2017년 지급분부터 적용됨
  
- 자녀장려금 최저금액을 조정함
  - 종전 자녀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시 산정액의 최소금액은 1만 5천원으로 하며, 산정액에서 감액규정(재산요건, 기한후신청 등의 경우)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였음
  - 개정안에서는 산정액이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을 적용하도록 최저금액 규정을 개정하고, 감액 후 금액이 3만원 미만이라도 3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 이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2017.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 자녀장려금 가산세를 완화함
  - 종전 지급요건 불충족 등으로 경정시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개정됨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액 등 정보를 국세청에 잘못 제출한 경우 등임
  - 이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며 2017. 1. 1.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 라. 2018년

- 외국 국적을 가진 한부모 외국인에 대한 자녀장려금 적용범위를 확대함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의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2018.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 저소득 종교인 지원을 위한 종교인소득자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함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 방식에 관계없이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함

-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함
- 이는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

**마. 2019년**

- 장려금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압류 등 금지 규정을 신설함
  -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이를 2019.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함
  - 재산요건 중 가구원 재산합계 기준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시 지급액의 50% 감액하였던 것을 합계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1억 4천만원 이상시 지급액의 50%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함
  -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함
  -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이는 2019.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 자녀장려금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중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등을 추가함
  - 이는 2019. 2. 12.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표 II -4〉 자녀장려세제 제도 등의 변천과정

적용시기	자녀장려세제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장려금 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소득 4,000만원 미만으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li> <li>○ 주택요건: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li> <li>○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li> </ul> </li> <li>□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사업소득자</li> <li>○ 근로소득자 중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li> </ul> </li> <li>□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li> </ul>

적용시기	자녀장려세제
2016	<input type="checkbox"/> 신청자격 중 국적기준 완화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 국적 보유자 <input type="checkbox"/> 체납액 충당비율 일원화 ○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만 충당 가능 <input type="checkbox"/> 자녀장려금 1세대 범위 조정 ○ 형제·자매 등을 제외한 직계존비속으로 개정
2017	<input type="checkbox"/> 주택요건 폐지 ○ 삭제 <input type="checkbox"/> 재산요건 완화 ○ (재산가액) 1억 4천만원 미만 → 2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최저금액 조정 ○ (산정액 최소금액) 1만 5천원 → 3만원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완화 ○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2018	<input type="checkbox"/> 자녀장려금 적용범위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 적용 <input type="checkbox"/> 종교인소득에 대한 자녀장려금 적용 ○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
2019	<input type="checkbox"/> 압류 등 금지 규정 신설 ○ 150만원 이하에 대하여 압류 금지 <input type="checkbox"/> 요건완화 및 지급액 인상 ○ (재산요건 50% 감액 규정) 1억원 이상시 → 1억 4천만원 이상시 ○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허용 ○ (지급액 인상) 자녀 1인당 50만원 → 70만원 <input type="checkbox"/> 장려금 재산의 범위 확대 ○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등을 추가함

출처: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각 연도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 6. 자녀장려금 국세통계자료

### 가. 신청·지급 현황

- 2018년(2017년 귀속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을 신청가구는 1,103,431가구(신청금액은 6,496억 6,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3.1% 감소하였음
  - 1인당 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가구 수)은 58만 8,766원으로 계산됨

<표 II -5> 자녀장려금 신청·지급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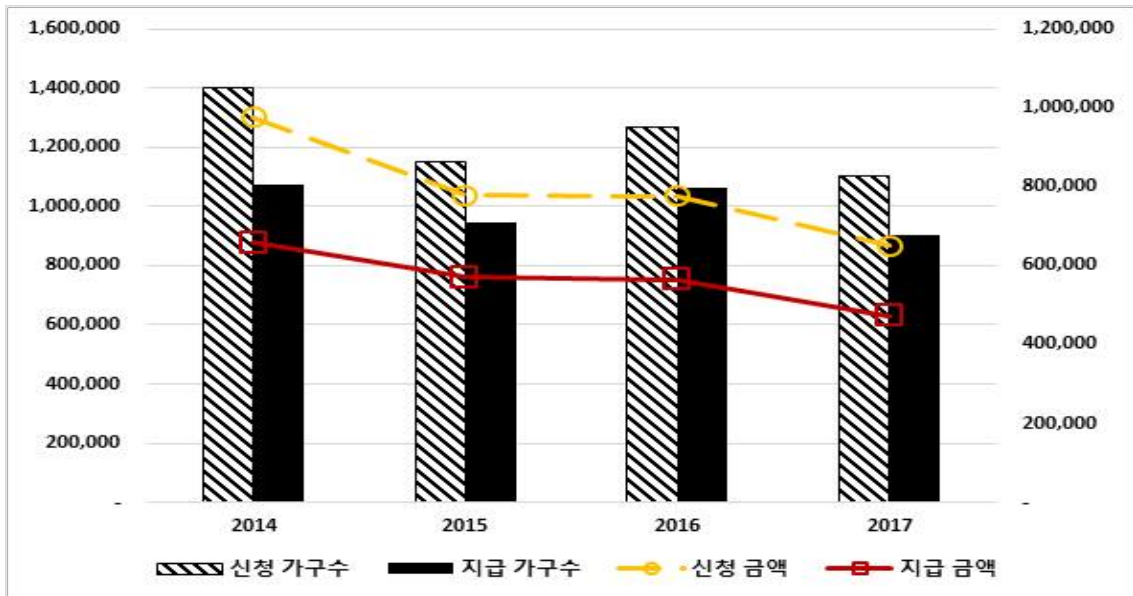
(단위: 가구,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신청	가구수	1,403,164	1,150,816	1,269,959	1,103,431
	금액	975,841	778,734	776,892	649,663
지급	가구수	1,074,814	943,860	1,061,797	904,938
	금액	657,898	570,023	563,670	472,918
지급비율	가구수	(76.6)	(82.0)	(83.6)	(82.0)
	금액	(67.4)	(73.2)	(72.6)	(72.8)
전년대비	가구수		(-18.0)	(10.4)	(-13.1)
	금액		(-20.2)	(-0.3)	(-16.4)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그림 II -1] 자녀장려금 신청·지급 규모

(단위: 가구(왼쪽), 백만원(오른쪽))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 2018년(2017년 귀속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이 지급된 가구는 904,938가구(신청금액은 472,918백만원)이며, 전년 대비 16.4% 감소하였음
  - 자녀장려금 신청가구 대비 지급가구의 비중은 82.0%이며, 신청금액 대비 지급금액 비중은 72.8%로 나타남
  - 1인당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가구 수)은 522,597원으로 계산됨

## 나.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 1) 성별

- 2018년(2017년 귀속소득 기준)에 가구원 중 남성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664,086가구(신청금액은 383,751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가구중 60.2%(신청금액은 59.1%)규모임
- 전체 가구중 남성 가구원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비중은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신청금액 비중 또한 감소추세임)

<표 II -6> 성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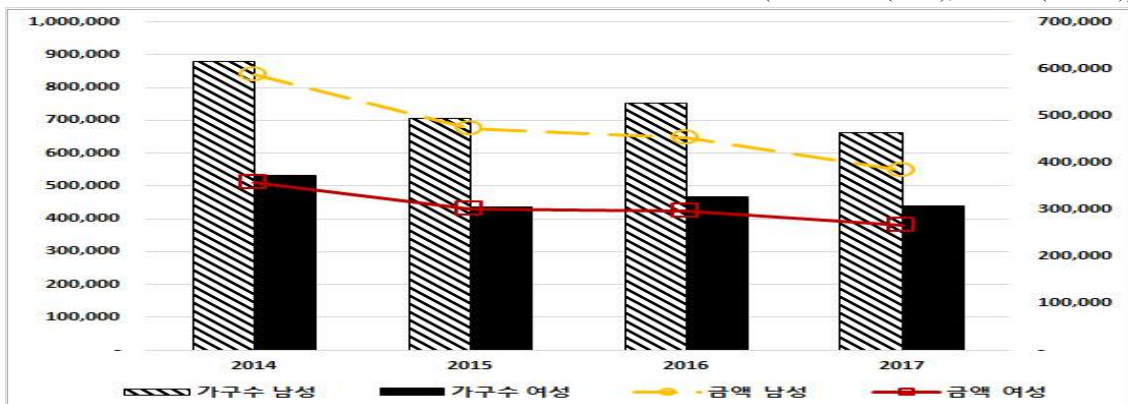
(단위: 가구,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남성	880,139 (62.4)	708,040 (61.9)	753,043 (61.7)	664,086 (60.2)
	여성	531,072 (37.6)	436,533 (38.1)	468,083 (38.3)	439,345 (39.8)
소계		1,411,211	1,144,573	1,221,126	1,103,431
금액	남성	587,289 (62.2)	473,246 (61.1)	452,808 (60.5)	383,751 (59.1)
	여성	357,358 (37.8)	301,862 (38.9)	296,196 (39.5)	265,912 (40.9)
소계		944,647	775,108	749,004	649,663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그림 II -2] 성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단위: 가구(왼쪽), 백만원(오른쪽))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 2) 가구유형별

- 2018년(2017년 귀속소득 기준)에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신청 비중은 홀벌이 가구가 82.7%(신청금액 기준 8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홀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 건수는 맞벌이 가구의 약 4.8배,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약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본래 단독가구의 경우 신청할 수 없으나 신청자의 판단오류로 신청된 것으로 보임

〈표 II -7〉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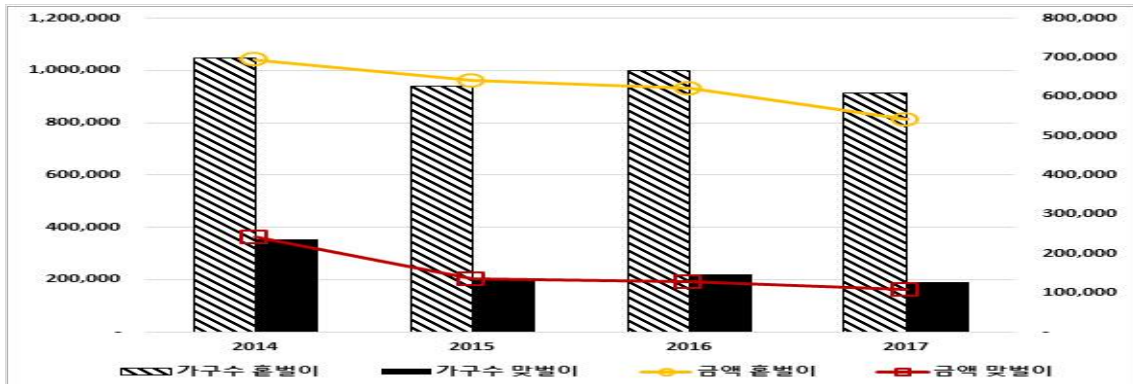
(단위: 가구,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단독	11,346 (0.8)	-	-	-
	홀벌이	1,047,606 (74.2)	939,420 (82.1)	999,675 (81.9)	912,334 (82.7)
	맞벌이	352,259 (25.0)	205,153 (17.9)	221,451 (18.1)	191,097 (17.3)
소 계		1,411,211	1,144,573	1,221,126	1,103,431
금액	단독	8,136 (0.9)	-	-	-
	홀벌이	694,436 (73.5)	640,490 (82.6)	621,542 (83.0)	541,847 (83.4)
	맞벌이	242,075 (25.6)	134,618 (17.4)	127,462 (17.0)	107,816 (16.6)
소 계		944,647	775,108	749,004	649,663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그림 II -3]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단위: 가구(왼쪽), 백만원(오른쪽))



주: 단독가구의 비율이 작아서 제외함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 3) 연령별

- 2018년(2017년 귀속소득 기준)에 자녀장려금을 신청자 연령은 40세 이상~50세 미만이 46.1%(신청금액 기준으로 48.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30세 이상~40세 미만이 34.4%(신청금액 기준으로 35.1%)로 높았음
- 20세 미만, 70세 이상 신청자 연령 비중이 낮게 나타남

<표 II -8> 연령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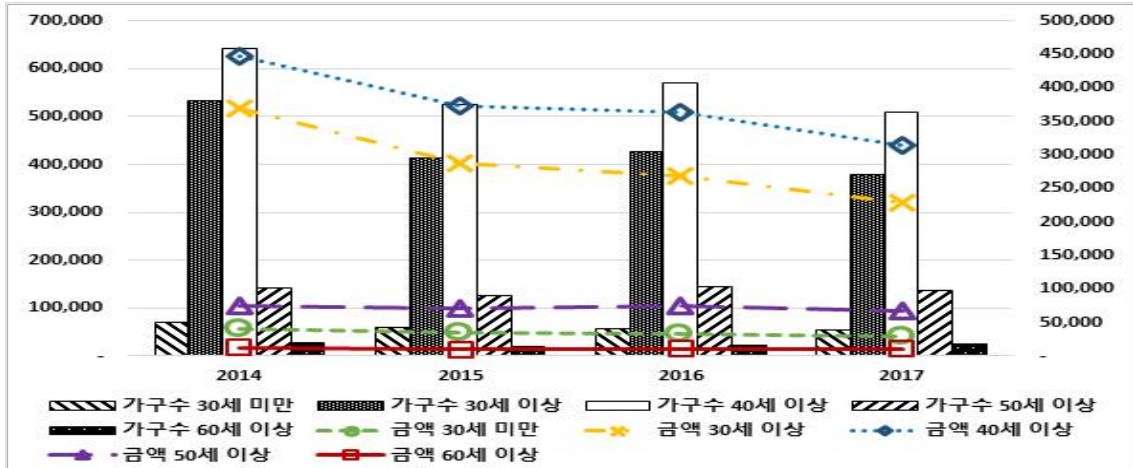
(단위: 가구,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20세 미만	510 (0.0)	369 (0.0)	466 (0.0)	283 (0.0)
	20세 이상	69,229 (4.9)	58,797 (5.1)	57,726 (4.7)	54,419 (4.9)
	30세 이상	531,958 (37.7)	413,333 (36.1)	426,332 (34.9)	379,190 (34.4)
	40세 이상	641,042 (45.4)	525,829 (45.9)	568,893 (46.6)	508,805 (46.1)
	50세 이상	141,899 (10.1)	126,723 (11.1)	145,571 (11.9)	137,021 (12.4)
	60세 이상	16,664 (1.2)	13,115 (1.1)	14,787 (1.2)	15,103 (1.4)
	70세 이상	9,909 (0.7)	6,407 (0.6)	7,351 (0.6)	8,610 (0.8)
소계		1,411,211	1,144,573	1,221,126	1,103,431
금액	20세 미만	238 (0.0)	188 (0.0)	246 (0.0)	131 (0.0)
	20세 이상	39,771 (4.2)	34,271 (4.4)	32,176 (4.3)	29,148 (4.5)
	30세 이상	369,636 (39.1)	287,658 (37.1)	268,822 (35.9)	227,899 (35.1)
	40세 이상	447,959 (47.4)	372,452 (48.1)	363,484 (48.5)	313,506 (48.3)
	50세 이상	74,733 (7.9)	70,468 (9.1)	73,983 (9.9)	68,118 (10.5)
	60세 이상	7,904 (0.8)	6,727 (0.9)	6,843 (0.9)	6,897 (1.1)
	70세 이상	4,406 (0.5)	3,344 (0.4)	3,450 (0.5)	3,964 (0.6)
소계		944,647	775,108	749,004	649,663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그림 II -4] 연령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단위: 가구(왼쪽), 백만원(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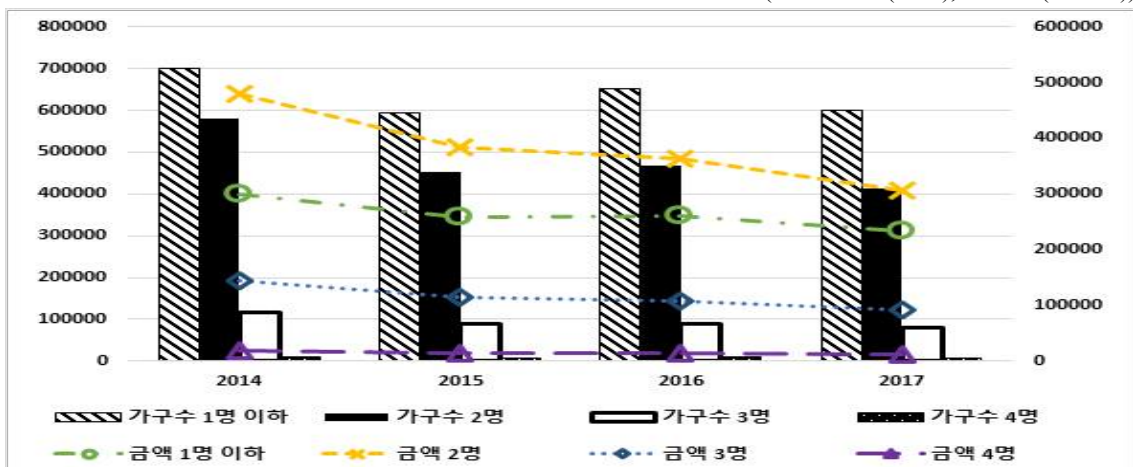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 4) 부양자녀 인원별

- 2018년(2017년 귀속소득 기준) 부양자녀 인원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양자녀가 1~2명인 가구가 전체의 91.8%(신청금액 기준으로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청자의 판단오류로 자녀가 0명인 경우에도 신청한 가구수의 비율이 1.6% 정도였으나, 이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였음

[그림 II -5] 부양자녀 인원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단위: 가구(왼쪽), 백만원(오른쪽))



주: 부양자녀 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의 비율이 매우 작아 표기하지 않았음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표 II -9> 부양자녀 인원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단위: 가구,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0명	22,975 (1.6)	333 (0.0)	59 (0.0)	39 (0.0)
	1명	676,444 (47.9)	594,848 (52.0)	651,779 (53.4)	601,386 (54.5)
	2명	580,410 (41.1)	451,192 (39.4)	468,417 (38.4)	411,923 (37.3)
	3명	117,642 (8.3)	88,350 (7.7)	90,514 (7.4)	80,848 (7.3)
	4명	11,817 (0.8)	8,537 (0.7)	9,005 (0.7)	8,021 (0.7)
	5명이상	1,923 (0.1)	1,313 (0.1)	1,352 (0.1)	1,214 (0.1)
소계		1,411,211	1,144,573	1,221,126	1,103,431
금액	0명	15,621 (1.7)	24 (0.0)	5 (0.0)	3 (0.0)
	1명	284,162 (30.1)	258,217 (33.3)	260,492 (34.8)	233,748 (36.0)
	2명	478,518 (50.7)	384,349 (49.6)	362,488 (48.4)	307,446 (47.3)
	3명	144,575 (15.3)	114,427 (14.8)	108,020 (14.4)	92,885 (14.3)
	4명	18,365 (1.9)	15,027 (1.9)	15,001 (2.0)	12,916 (2.0)
	5명이상	3,406 (0.4)	3,064 (0.4)	2,998 (0.4)	2,665 (0.4)
소계		944,647	775,108	749,004	649,663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5) 근로유형별

- 2018년(2017년 귀속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을 신청자의 41.1%(신청금액 기준으로 39.4%)는 상용근로 소득자였고, 42.0%(신청금액 기준으로 42.3%)는 사업 소득자로 이 두 그룹이 대다수를 차지함
- 일용근로 소득자는 9.2%(신청금액 기준으로 10.0%),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 소득이 중복으로 있는 중복 소득자는 6.4%(신청금액 기준으로 6.6%) 규모임

〈표 II -10〉 근로유형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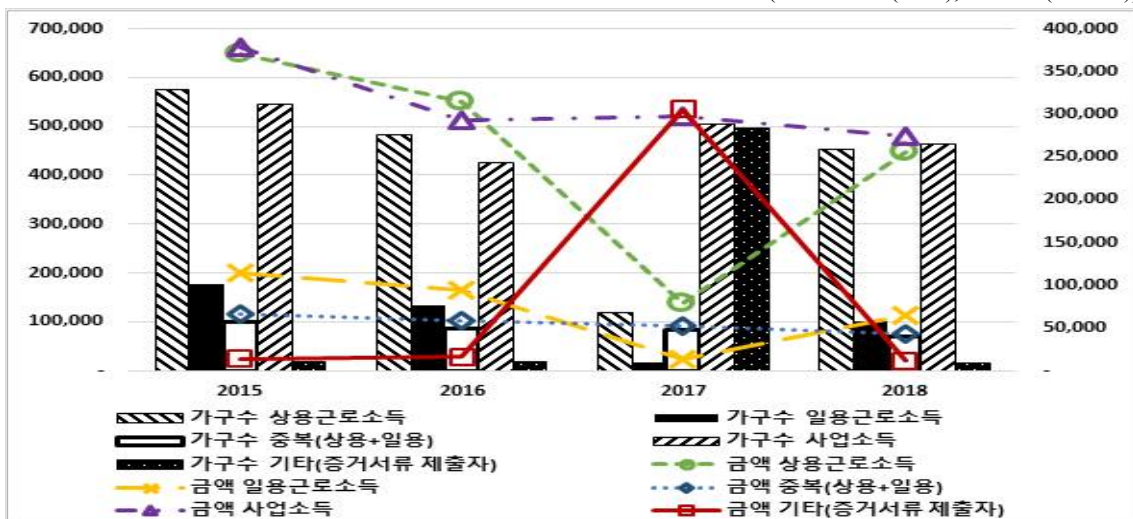
(단위: 가구,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상용근로	574,289 (40.7)	482,412 (42.1)	119,686 (9.8)	454,020 (41.1)
	일용근로	175,882 (12.5)	132,652 (11.6)	16,688 (1.4)	101,456 (9.2)
	중복	98,811 (7.0)	84,918 (7.4)	82,687 (6.8)	70,142 (6.4)
	사업소득	544,882 (38.6)	425,308 (37.2)	505,314 (41.4)	462,894 (42.0)
	기타	17,347 (1.2)	19,283 (1.7)	496,751 (40.7)	14,919 (1.4)
소계		1,411,211	1,144,573	1,221,126	1,103,431
금액	상용근로	371,277 (39.3)	314,728 (40.6)	78,785 (10.5)	255,844 (39.4)
	일용근로	114,679 (12.1)	93,492 (12.1)	14,142 (1.9)	64,989 (10.0)
	중복	66,336 (7.0)	58,369 (7.5)	52,275 (7.0)	42,569 (6.6)
	사업소득	378,766 (40.1)	292,562 (37.7)	298,152 (39.8)	274,738 (42.3)
	기타	13,589 (1.4)	15,957 (2.1)	305,650 (40.8)	11,523 (1.8)
소계		944,647	775,108	749,004	649,663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그림 II -6] 근로유형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단위: 가구(왼쪽), 백만원(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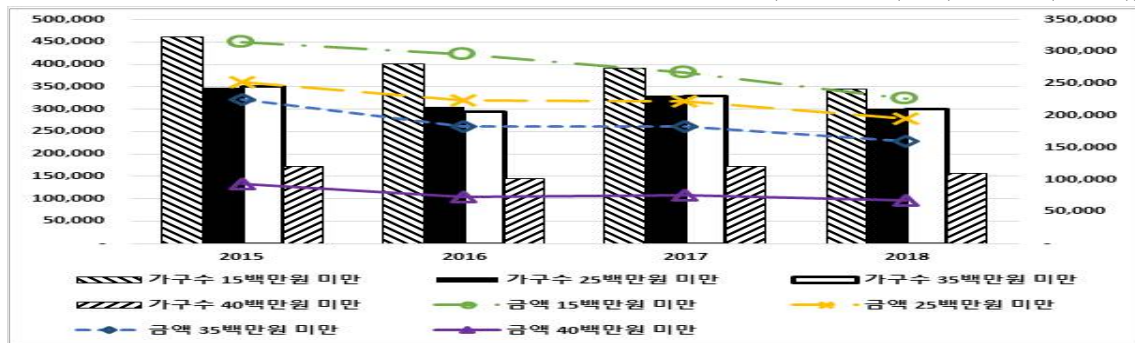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6) 총급여액 등 규모별

- 2018년(2017년 귀속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의 규모는 1,500만원 미만 그룹의 비중이 31.2%(신청금액 기준으로 34.9%)로 나타남
- 총급여액등이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합계를 의미함

[그림 II -7] 총급여액등 규모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단위: 가구(왼쪽), 백만원(오른쪽))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표 II -11> 총급여액등 규모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단위: 가구,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가 구 수	1,500만원 미만	460,878 (32.7)	400,433 (35.0)	390,615 (32.0)	344,494 (31.2)
	2,500만원 미만	348,651 (24.7)	304,901 (26.6)	329,726 (27.0)	300,982 (27.3)
	3,500만원 미만	350,291 (24.8)	295,030 (25.8)	329,528 (27.0)	300,515 (27.2)
	4,000만원 미만	172,500 (12.2)	144,209 (12.6)	171,257 (14.0)	157,440 (14.3)
	기타	78,891 (5.6)	-	-	-
소계		1,411,211	1,144,573	1,221,126	1,103,431
금 액	1,500만원 미만	314,823 (33.3)	295,277 (38.1)	267,511 (35.7)	227,034 (34.9)
	2,500만원 미만	252,906 (26.8)	224,191 (28.9)	222,503 (29.7)	195,307 (30.1)
	3,500만원 미만	224,751 (23.8)	182,852 (23.6)	182,807 (24.4)	160,198 (24.7)
	4,000만원 미만	92,936 (9.8)	72,788 (9.4)	76,183 (10.2)	67,124 (10.3)
	기타	59,231 (6.3)	-	-	-
소계		944,647	775,108	749,004	649,663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 다.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1) 성별

- 2018년(2017년 귀속소득 기준)에 가구원 중 남성에게 자녀장려금이 지급된 경우는 544,534가구(지급금액은 270,917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가구중 60.2%(지급금액은 57.3%)규모임
- 전체 가구중 남성 가구원에게 자녀장려금이 지급된 비중은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고, 가구수 기준으로 2017년 대비 1.7%p(금액기준으로 1.5%p) 감소함

<표 II -12> 성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가구,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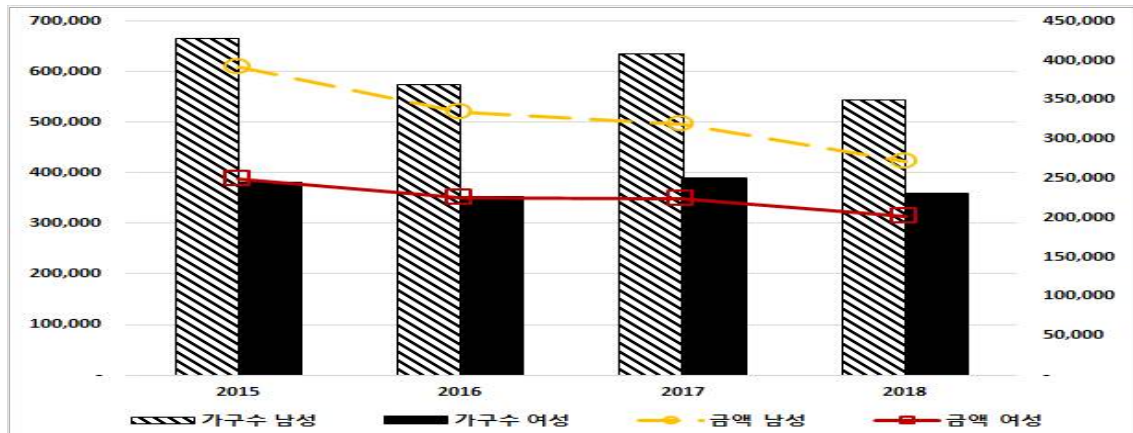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남성	666,042 (63.6)	574,166 (62.0)	635,805 (61.9)	544,534 (60.2)
	여성	380,642 (36.4)	352,178 (38.0)	390,824 (38.1)	360,404 (39.8)
	소계	1,046,684	926,344	1,026,629	904,938
금액	남성	392,083 (61.1)	334,683 (59.7)	319,029 (58.8)	270,917 (57.3)
	여성	249,652 (38.9)	225,974 (40.3)	223,750 (41.2)	202,001 (42.7)
	소계	641,735	560,657	542,779	472,918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그림 II -8] 성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가구(왼쪽), 백만원(오른쪽))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 2) 가구유형별

- 2018년(2017년 귀속소득 기준)에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 비중은 홀별이 가구가 79.7%(신청금액 기준 8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홀별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 수는 맞벌이 가구의 약 3.9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 -13〉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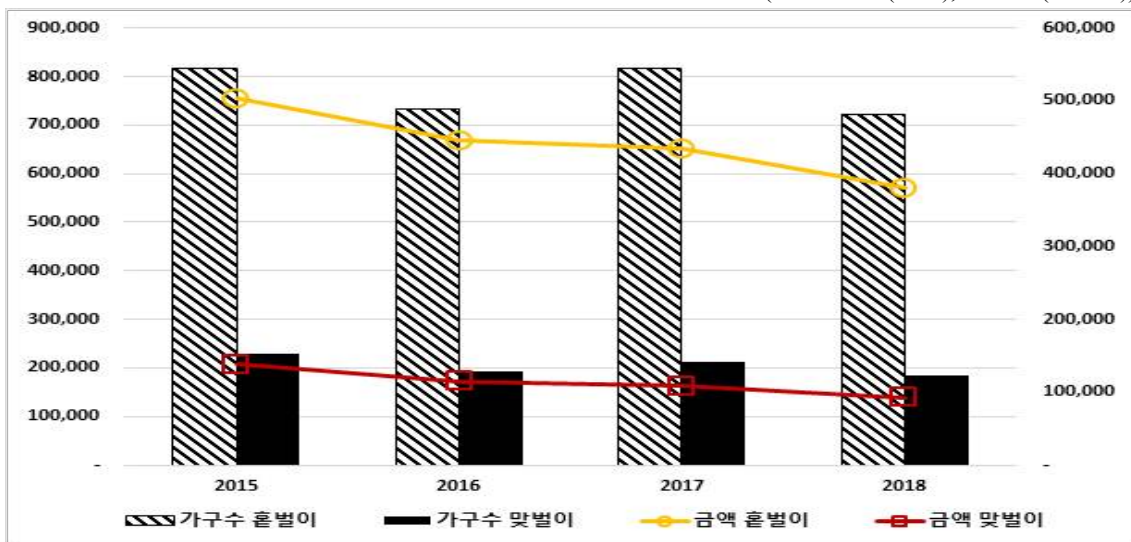
(단위: 가구,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홀별이	816,803 (78.0)	733,130 (79.1)	815,568 (79.4)	721,302 (79.7)
	맞벌이	229,881 (22.0)	193,214 (20.9)	211,061 (20.6)	183,636 (20.3)
소계		1,046,684	926,344	1,026,629	904,938
금액	홀별이	503,015 (78.4)	445,317 (79.4)	434,239 (80.0)	380,000 (80.4)
	맞벌이	138,720 (21.6)	115,340 (20.6)	108,540 (20.0)	92,918 (19.6)
소계		641,735	560,657	542,779	472,918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그림 II -9]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가구(왼쪽), 백만원(오른쪽))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 3) 연령별

- 2018년(2017년 귀속소득 기준)에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신청자의 연령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47.0%(지급금액 기준으로 49.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32.5%(지급금액 기준으로 32.7%)로 높았음
- 20세 미만, 70세 이상 신청자 연령 비중이 낮게 나타남

<표 II -14> 연령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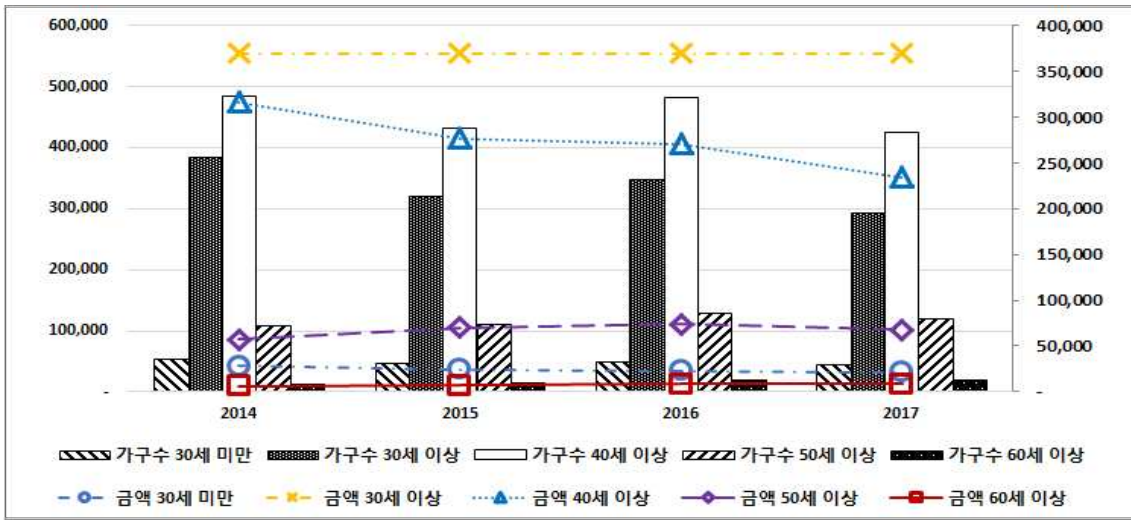
(단위: 가구,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20세 미만	325 (0.0)	271 (0.0)	279 (0.0)	185 (0.0)
	20세 이상	53,424 (5.1)	47,057 (5.1)	48,523 (4.7)	43,711 (4.8)
	30세 이상	385,537 (36.8)	320,804 (34.6)	347,426 (33.8)	294,414 (32.5)
	40세 이상	484,690 (46.3)	432,845 (46.7)	482,580 (47.0)	425,203 (47.0)
	50세 이상	109,440 (10.5)	109,962 (11.9)	128,355 (12.5)	120,562 (13.3)
	60세 이상	8,536 (0.8)	9,993 (1.1)	12,382 (1.2)	12,658 (1.4)
	70세 이상	4,732 (0.5)	5,412 (0.6)	7,084 (0.7)	8,205 (0.9)
소계		1,046,684	926,344	1,026,629	904,938
금액	20세 미만	162 (0.0)	136 (0.0)	135 (0.0)	85 (0.0)
	20세 이상	27,958 (4.4)	24,690 (4.4)	23,247 (4.3)	21,157 (4.5)
	30세 이상	234,045 (36.5)	194,747 (34.7)	181,652 (33.5)	154,856 (32.7)
	40세 이상	316,057 (49.3)	277,010 (49.4)	270,774 (49.9)	233,911 (49.5)
	50세 이상	57,233 (8.9)	56,755 (10.1)	58,701 (10.8)	54,132 (11.4)
	60세 이상	4,038 (0.6)	4,737 (0.8)	5,252 (1.0)	5,314 (1.1)
	70세 이상	2,242 (0.3)	2,582 (0.5)	3,018 (0.6)	3,463 (0.7)
소계		641,735	560,657	542,779	472,918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그림 II -10] 연령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가구(왼쪽), 백만원(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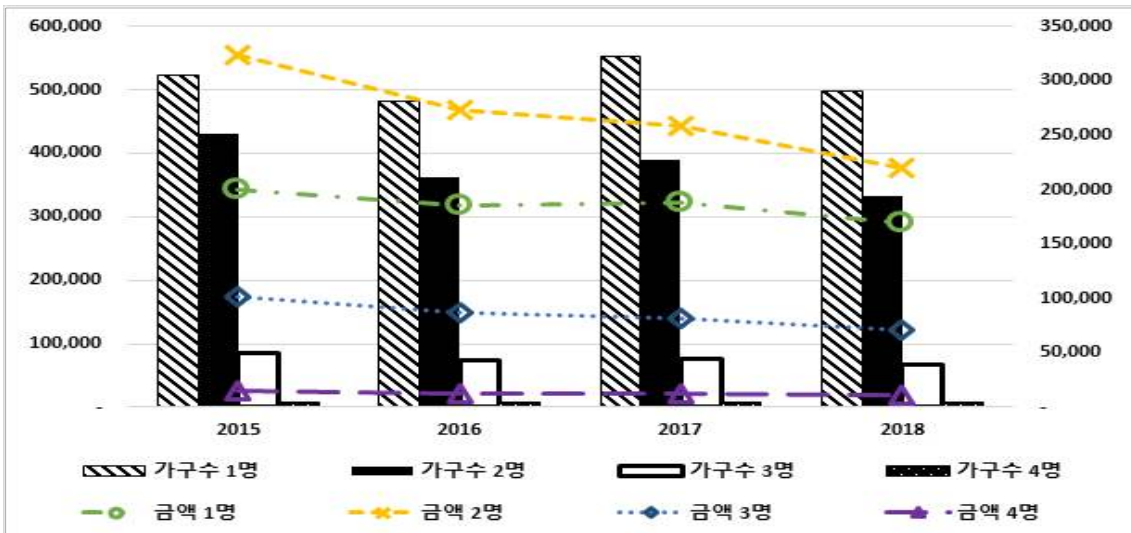
주: 20세 미만, 70세 이상 가구의 경우, 그 비중이 매우 작아 표기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4) 부양자녀 인원별

□ 2018년(2017년 귀속소득 기준) 부양자녀 인원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양자녀가 1~2명인 가구가 전체의 91.8%(지급금액 기준으로 82.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 -11] 부양자녀 인원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가구(왼쪽), 백만원(오른쪽))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표 II -15> 부양자녀 인원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가구,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1명	521,945 (49.9)	482,502 (52.1)	552,921 (53.9)	498,838 (55.1)
	2명	429,572 (41.0)	362,361 (39.1)	388,452 (37.8)	331,771 (36.7)
	3명	85,182 (8.1)	72,759 (7.9)	76,049 (7.4)	66,245 (7.3)
	4명	8,675 (0.8)	7,516 (0.8)	7,953 (0.8)	6,961 (0.8)
	5명 이상	1,310 (0.1)	1,206 (0.1)	1,254 (0.1)	1,123 (0.1)
소계		1,046,684	926,344	1,026,629	904,938
금액	1명	199,650 (31.1)	185,361 (33.1)	187,842 (34.6)	168,922 (35.7)
	2명	323,259 (50.4)	273,387 (48.8)	258,267 (47.6)	220,173 (46.6)
	3명	101,355 (15.8)	86,679 (15.5)	81,758 (15.1)	70,728 (15.0)
	4명	14,509 (2.3)	12,516 (2.2)	12,280 (2.3)	10,718 (2.3)
	5명 이상	2,962 (0.5)	2,714 (0.5)	2,632 (0.5)	2,377 (0.5)
소계		641,735	560,657	542,779	472,918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 5) 주택보유별

- 2018년(2017년 귀속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의 63.6%(지급금액 기준으로 71.5%)는 무주택자였고, 33.50%(지급금액 기준으로 26.5%)는 1주택자로 무주택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함
  - 일시적 2주택자는 2.9%(지급금액 기준으로 2.0%)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함

<표 II -16> 주택 보유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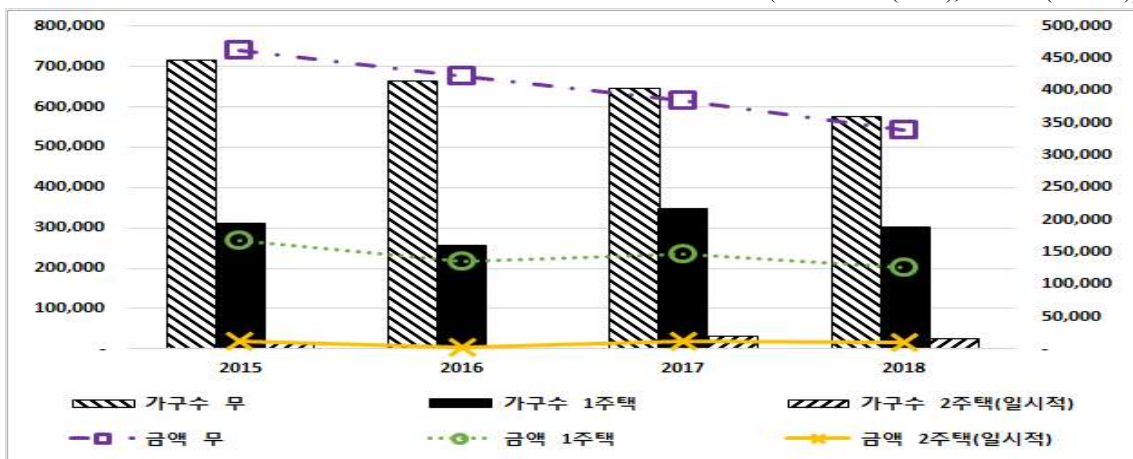
(단위: 가구,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무주택	715,399 (68.3)	665,975 (71.9)	647,066 (63.0)	575,628 (63.6)
	1주택	312,519 (29.9)	256,818 (27.7)	347,986 (33.9)	303,300 (33.5)
	2주택 (일시적)	18,766 (1.8)	3,551 (0.4)	31,577 (3.1)	26,010 (2.9)
	소계	1,046,684	926,344	1,026,629	904,938
금액	무주택	462,361 (72.0)	423,385 (75.5)	383,921 (70.7)	337,943 (71.5)
	1주택	168,021 (26.2)	135,313 (24.1)	147,106 (27.1)	125,343 (26.5)
	2주택 (일시적)	11,353 (1.8)	1,959 (0.3)	11,752 (2.2)	9,632 (2.0)
	소계	641,735	560,657	542,779	472,918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그림 II -12] 주택 보유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가구(왼쪽), 백만원(오른쪽))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 6) 재산규모별

- 2018년(2017년 귀속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의 34.5%(지급금액 기준으로 18.8%)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하였고, 17.9%(지급금액 기준으로 21.5%)는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하였음

- 상대적으로 7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한 그룹보다 7천만원 이상 재산을 소유한 가구 수가 많았지만, 지급금액은 전자 그룹의 비중이 더 큼
  - 이는 재산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의 50%가 감액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표 II -17〉 재산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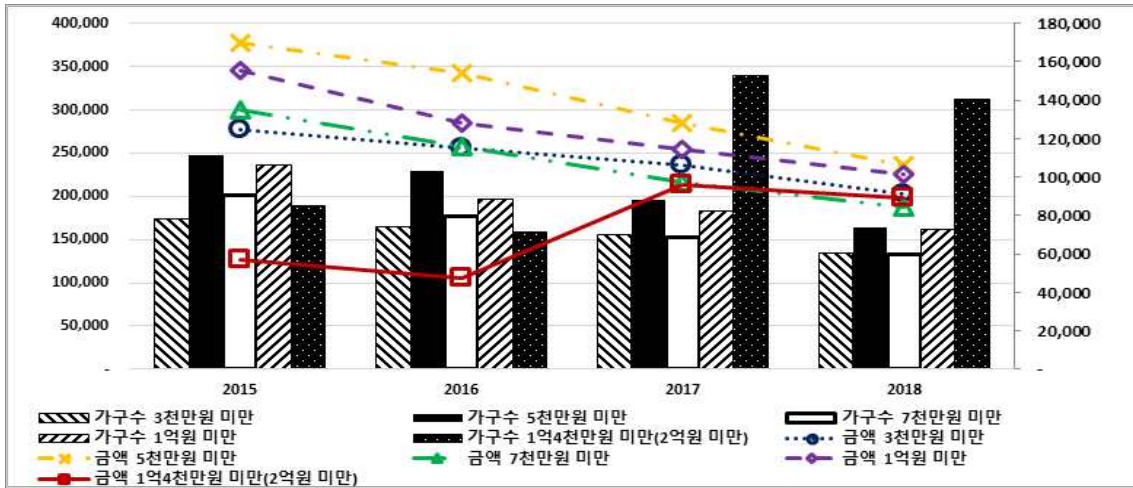
(단위: 가구,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1천만원 미만	24,875 (2.4)	16,928 (1.8)	16,965 (1.7)	21,274 (2.4)
	3천만원 미만	149,190 (14.3)	147,573 (15.9)	137,940 (13.4)	112,328 (12.4)
	5천만원 미만	246,962 (23.6)	229,706 (24.8)	196,419 (19.1)	163,733 (18.1)
	7천만원 미만	201,248 (19.2)	176,682 (19.1)	153,016 (14.9)	132,976 (14.7)
	1억원 미만	235,697 (22.5)	197,246 (21.3)	182,425 (17.8)	162,144 (17.9)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88,712 (18.0)	158,209 (17.1)	339,864 (33.1)	312,483 (34.5)
소계		1,046,684	926,344	1,026,629	904,938
금액	1천만원 미만	18,138 (2.8)	12,267 (2.2)	11,818 (2.2)	14,887 (3.1)
	3천만원 미만	106,479 (16.6)	102,692 (18.3)	94,475 (17.4)	76,551 (16.2)
	5천만원 미만	169,622 (26.4)	154,041 (27.5)	128,343 (23.6)	106,385 (22.5)
	7천만원 미만	135,028 (21.0)	116,124 (20.7)	97,643 (18.0)	84,417 (17.9)
	1억원 미만	155,482 (24.2)	128,231 (22.9)	114,741 (21.1)	101,547 (21.5)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6,986 (8.9)	47,302 (8.4)	95,759 (17.6)	89,131 (18.8)
소계		641,735	560,657	542,779	472,918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그림 II -13] 재산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가구(왼쪽), 백만원(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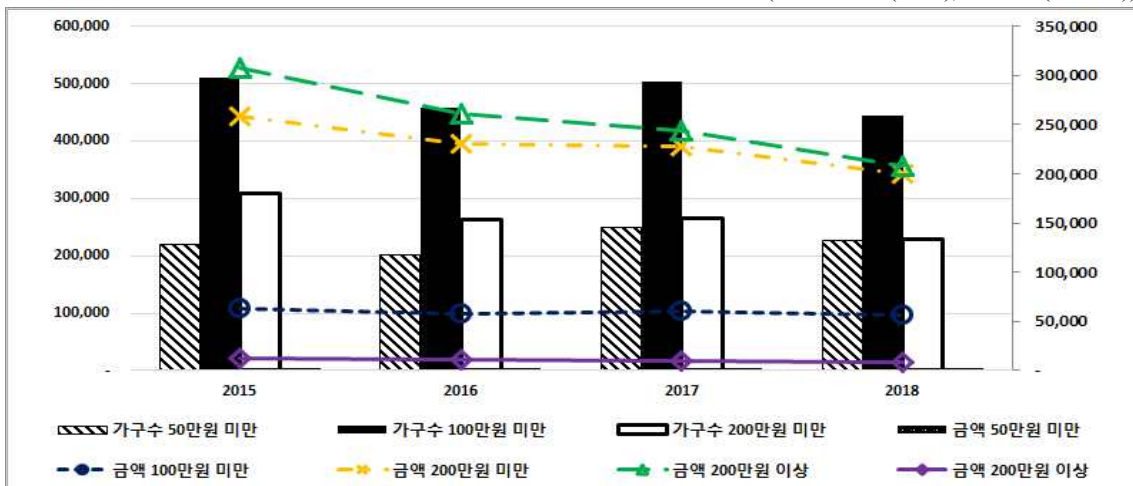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 7) 장려금 규모별

- 2018년(2017년 귀속소득 기준) 지급가구 중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 수의 비중이 49.0%로 가장 높았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장려금을 지급받은 그룹의 장려금 총규모 비중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0만원 이상의 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극히 일부였음

[그림 II -14] 장려금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가구(왼쪽), 백만원(오른쪽))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표 II -18> 장려금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가구,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50만원 미만	221,005 (21.1)	201,613 (21.8)	250,978 (24.4)	227,229 (25.1)
	100만원 미만	510,428 (48.8)	457,185 (49.4)	503,608 (49.1)	443,682 (49.0)
	200만원 미만	309,058 (29.5)	262,172 (28.3)	266,449 (26.0)	229,146 (25.3)
	200만원 이상	6,193 (0.6)	5,374 (0.6)	5,594 (0.5)	4,881 (0.5)
소계		1,046,684	926,344	1,026,629	904,938
금액	50만원 미만	63,175 (9.8)	57,977 (10.3)	60,743 (11.2)	55,771 (11.8)
	100만원 미만	258,270 (40.2)	230,336 (41.1)	227,665 (41.9)	200,114 (42.3)
	200만원 미만	308,070 (48.0)	261,730 (46.7)	244,031 (45.0)	208,011 (44.0)
	200만원 이상	12,220 (1.9)	10,614 (1.9)	10,340 (1.9)	9,022 (1.9)
소계		641,735	560,657	542,779	472,918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 8) 총급여액 등 규모별

- 2018년(2017년 귀속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의 소득분포는 1천만원 미만, 2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4천만원 미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경우,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급 대상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그룹의 장려금 지급 가구 수가 27.7% 비중으로 가장 높았음
  -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그룹의 장려금 지급금액 비중은 31.4%로 가장 높았음

<표 II -19> 총급여액 등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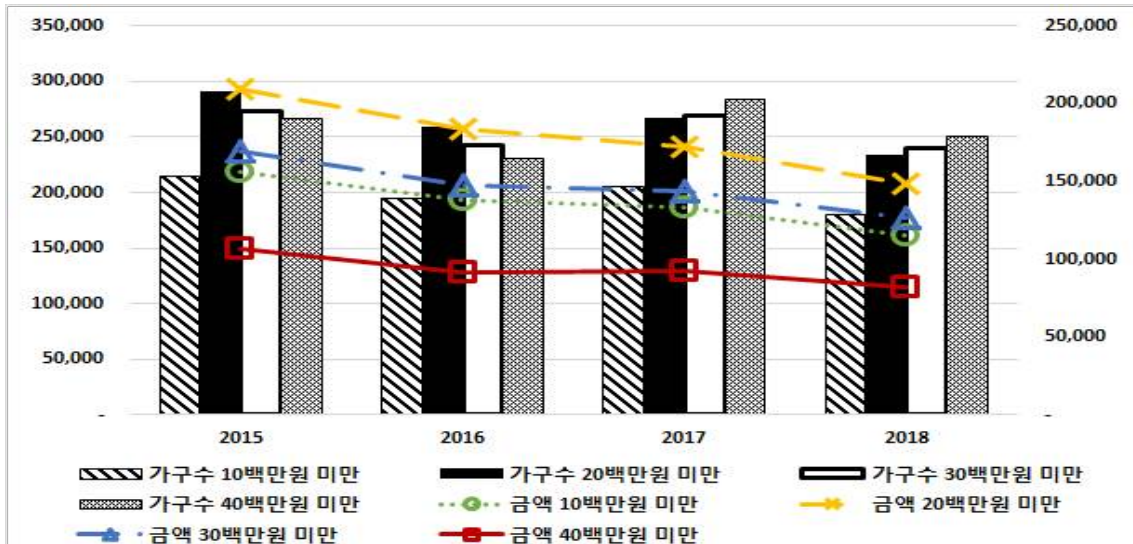
(단위: 가구,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1천만원 미만	215,086 (20.5)	194,589 (21.0)	205,890 (20.1)	180,831 (20.0)
	2천만원 미만	290,611 (27.8)	258,659 (27.9)	267,199 (26.0)	234,406 (25.9)
	3천만원 미만	273,520 (26.1)	242,551 (26.2)	268,979 (26.2)	239,384 (26.5)
	4천만원 미만	267,467 (25.6)	230,545 (24.9)	284,561 (27.7)	250,317 (27.7)
	소계	1,046,684	926,344	1,026,629	904,938
금액	1천만원 미만	155,877 (24.3)	137,768 (24.6)	133,575 (24.6)	115,686 (24.5)
	2천만원 미만	209,477 (32.6)	183,592 (32.7)	172,509 (31.8)	148,331 (31.4)
	3천만원 미만	169,159 (26.4)	147,694 (26.3)	144,239 (26.6)	126,560 (26.8)
	4천만원 미만	107,222 (16.7)	91,603 (16.3)	92,456 (17.0)	82,341 (17.4)
	소계	641,735	560,657	542,779	472,918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그림 II -15] 총급여액 등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가구(왼쪽), 백만원(오른쪽))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 9) 지급횟수별

- 2018년(2017년 귀속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을 4회 이상 지급받은 가구의 비중은 39.1%(지급금액 기준으로 44.6%)로 상당수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매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장려금을 1회 지급받은 가구의 비중은 18.0%(지급금액 기준으로 14.9%)로 나타남

〈표 II -20〉 지급횟수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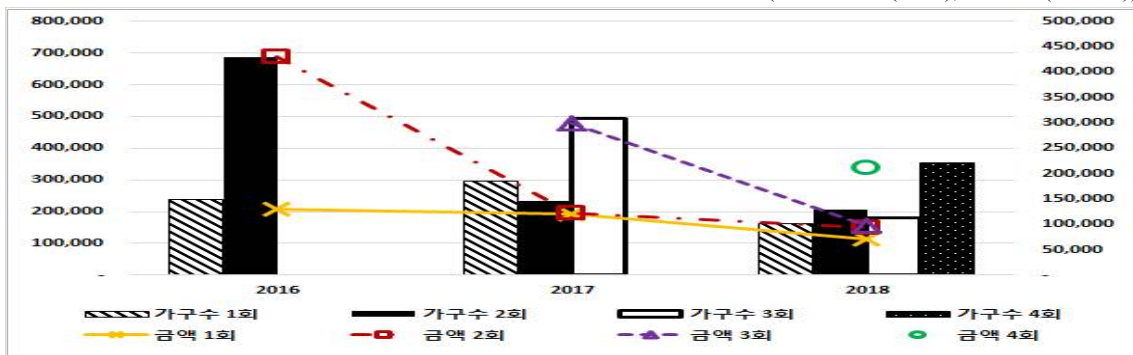
(단위: 가구, 백만원, %)

		2016	2017	2018
가구수	1회	239,152 (25.8)	296,942 (28.9)	163,025 (18.0)
	2회	687,192 (74.2)	235,112 (22.9)	206,037 (22.8)
	3회	-	494,575 (48.2)	181,715 (20.1)
	4회	-	-	354,161 (39.1)
	소계	926,344	1,026,629	904,938
금액	1회	129,911 (23.2)	120,832 (22.3)	70,249 (14.9)
	2회	430,746 (76.8)	122,410 (22.6)	94,032 (19.9)
	3회	-	299,537 (55.2)	97,764 (20.7)
	4회	-	-	210,873 (44.6)
	소계	560,657	542,779	472,918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그림 II -16] 지급횟수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가구(왼쪽), 백만원(오른쪽))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 10) 산정구간별

- 2018년(2017년 귀속소득 기준) 평탄구간에 속하는 지급가구 수의 비중이 52.5% (지급금액 기준으로 6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홀별이 가구의 비중이 87.2%(지급금액 기준으로 86.8%)로 높게 나타남
- 장려금이 40만원 미만인 점감구간에 속하는 가구 수의 비중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 -17] 산정구간별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수 현황

(단위: 가구)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그림 II -18] 산정구간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표 II -21> 산정구간별 지급현황

(단위: 가구,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가 구 수	평탄구간	홀별이	492,641 (47.1)	444,725 (48.0)	468,338 (45.6)	414,152 (45.8)
		맞별이	86,548 (8.3)	71,977 (7.8)	71,420 (7.0)	60,894 (6.7)
	점감구간 (50 미만)	홀별이	177,885 (17.0)	161,140 (17.4)	183,680 (17.9)	165,008 (18.2)
		맞별이	70,808 (6.8)	59,571 (6.4)	65,746 (6.4)	57,275 (6.3)
	점감구간 (40 미만)	홀별이	146,277 (14.0)	127,265 (13.7)	163,550 (15.9)	142,142 (15.7)
		맞별이	72,525 (6.9)	61,666 (6.7)	73,895 (7.2)	65,467 (7.2)
소계			1,046,684	926,344	1,026,629	904,938
금 액	평탄구간	홀별이	352,943 (55.0)	312,737 (55.8)	301,133 (55.5)	261,394 (55.3)
		맞별이	64,516 (10.1)	53,096 (9.5)	47,305 (8.7)	39,674 (8.4)
	점감구간 (50 미만)	홀별이	98,676 (15.4)	88,326 (15.8)	88,087 (16.2)	78,124 (16.5)
		맞별이	43,369 (6.8)	36,149 (6.4)	34,855 (6.4)	29,980 (6.3)
	점감구간 (40 미만)	홀별이	51,396 (8.0)	44,254 (7.9)	45,019 (8.3)	40,482 (8.6)
		맞별이	30,835 (4.8)	26,095 (4.7)	26,380 (4.9)	23,264 (4.9)
소계			641,735	560,657	542,779	472,918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 Ⅲ. 주요국의 자녀장려세제 제도





### Ⅲ. 주요국의 자녀장려세제 제도

- 주요국(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프랑스)의 부양자녀를 기준으로 한 인적공제(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조사하였음
  - 실제 지출금액(자녀보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부양자녀 세제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는 자녀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는 재정지원 정책을 통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는 한국과 유사하게 자녀장려세제를 세액공제(환급형 또는 비환급형)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비환급형 자녀세액공제 미사용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였을 때 추가로 환급형 세액공제(추가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본, 프랑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녀장려세제가 재정정책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요국의 자녀장려세제 또한 소득구간별로 장려금이 상이하게 지급되며,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평단-점감 구간 모형임
  - 한국의 경우에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되며, 가구유형별로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점감구간이 개시됨
    - 가구의 재산가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에서 50%가 감액되어 지급됨
  
- 미국은 수정된 조정총소득(AGI), 자녀 수, 소득세 신고유형(개별, 합산신고)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고, 소득에 따른 점증-평탄-점감 모형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짐
  - AGI가 개별신고 및 세대주 신고의 경우에는 200,000달러,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에는 4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달러당 50달러씩 세액공제액이 점진적으로 감액됨

- 미사용된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자녀 1인당 1,400달러를 한도로 2,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자녀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음

<표 III-1> 주요국의 자녀장려세제 현황

구분	소득 기준	연간 최대 지원액	비고	
한국	자녀장려금 (환급형) 18세 미만	4,000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	70만원	
	자녀세액공제 (비환급형) 7세 이상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15만원</li> <li>- 2인: 30만원</li> <li>- 3명 이상: 30만원+초과 1인당 30만원</li> </ul> </li> <li>○ 출산·입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30만원</li> <li>- 2인: 50만원</li> <li>- 3명 이상: 70만원</li> </ul> </li> </ul>	
미국	CTC (비환급형, 환급가능) 17세 미만	AGI 200,000달러 (합산신고 400,000달러) 초과시 점감 개시	2,000달러 (1,400달러까지 환급가능)	기타 부양자 공제 <sup>1)</sup>
영국	CTC (환급형) 16세 미만	16,105파운드 초과시 점감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3,300파운드</li> <li>- 2인: 6,110파운드</li> <li>- 3명 8,890파운드</li> </ul> </li> </ul>	장애자 추가공제 <sup>2)</sup>
뉴질랜드	FTC (환급형) 19세 미만	42,700뉴질랜드달러 부터 급여 점감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5,878뉴질랜드달러</li> <li>- 2인: 4,745뉴질랜드달러</li> </ul> </li> </ul>	WfFTC 관련 중복적용 <sup>3)</sup>
캐나다	CCB (환급형) 18세 미만	30,450캐나다달러부터 점감1 개시, 65,975캐나다달러부터 점감2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세 미만: 연간 6,496캐나다달러</li> <li>- 6세 이상: 5,481캐나다달러</li> </ul> </li> </ul>	장애자 추가공제 <sup>4)</sup>

주: 1) 미국은 CTC를 적용받는 자녀 외 공제대상 부양자에 대하여 1명당 500달러의 부양가족세액공제를 적용함(비환급형)  
 2) 영국은 공제대상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3,275파운드(중증장애의 경우, 4,600파운드)를 추가로 공제함  
 3) 뉴질랜드는 가족세액공제(FTC)와 유사 장려세제 간 중복적용이 가능함  
 4) 캐나다는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C \$2,771을 추가로 지급함

- 영국은 가족요소, 자녀의 수, 자녀의 장애 여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며, 수급자의 소득수준별로 평탄-점감 구간으로 구분되어 급여액이 결정됨
  - 장애 정도에 따라 일반 장애요소 급여와 중증장애요소 급여로 구분되고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요소 급여와 중증장애요소 급여의 합계액이 지급됨
  - 소득금액이 16,105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1파운드당 41펜스만큼 감액됨
  - 2018~2019 과세연도의 기준금액(자녀세액공제 단독 적용시)은 16,105파운드이며, 1인 자녀에 대한 최대 급여수준은 3,300파운드임
  
- 뉴질랜드는 자녀의 수 및 가구 소득금액의 규모에 따라 급여가 차등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평탄-점감 구간으로 구분되어 급여액이 결정됨
  - 2018년 7월 이전에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급여액이 상이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연령에 따른 구분이 없어짐
  - 소득이 42,700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5% 점감률로 급여액이 감액됨
  
- 캐나다는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부부합산 연간 순소득(AFNI), 자녀의 장애 여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며,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평탄-점감1-점감2 구간으로 구분되어 급여액이 지급됨
  - 자녀 수(1명/2명/3명/4명 이상) 및 부부 연간 순소득 수준(30,450~65,976, 65,976 캐나다달러 이상)에 따라 점감율이 달라짐
  - 연령(6세 미만, 6세 이상)에 따라 최대 급여액 수준이 달라짐
  -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급여액을 추가로 지급함

## 1. 국가별 자녀장려세제 제도 운영 현황

### 가. 미국의 Child Tax Credit<sup>3)</sup>

- 미국의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는 비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추가자녀세액공제(Additional CTC; ACTC) 제도를 통하여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납부한 후 환급 가능함

3) Publication 972(2018), [https://www.irs.gov/publications/p972#en\\_US\\_2018\\_publink100012081](https://www.irs.gov/publications/p972#en_US_2018_publink100012081), 검색일자: 2019. 6. 21.

- CTC는 17세 미만의 공제대상자녀(qualifying child)에 대하여 최대 2,0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함
  - 공제대상자녀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함
    - 과세연도 말 17세 미만으로 납세자의 딸, 아들, 양자, 양녀, 위탁아동, 형제, 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또는 이들의 자손(손자, 증손자 등)에 해당될 것
    -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을 납세자와 동거하고, 50% 이상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것<sup>4)</sup>
    -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을 것
  -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최대 세액공제액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두 배 증가하였음
  
- CTC는 수정된 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AGI), 자녀 수, 소득세 신고유형(개별신고, 합산신고)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고, 소득에 따른 점증-평탄-점감 모형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짐
  - AGI가 개별신고 및 세대주 신고의 경우에는 200,000달러,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에는 4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달러당 50달러씩 세액공제액이 점진적으로 감액됨
  
- 미사용된 CTC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2,5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15% 범위 내에서 환급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ACTC라고 함
  - 2,5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15%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최대 1,400달러까지 환급이 가능함<sup>5)</sup>
    - 예를 들면, 소득이 14,000달러이고 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11,500달러 (=14,000-2,500)의 15%인 1,725달러가 환급됨
  
- CBPP 연구보고서<sup>6)</sup>에 따르면 2017년에 EITC와 CTC제도를 통하여 2억 910만명의 미국인 소득이 증대됨과 동시에 빈곤가구 감소와 아동빈곤 퇴치에 효과가 있음을 암시함

---

4) 자녀가 자녀의 배우자와 합산 세무신고(joint return)할 경우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음  
 5) <https://www.cbpp.org/research/policy-basics-the-child-tax-credit>, 검색일자: 2019. 6. 21.  
 6) <https://www.cbpp.org/blog/working-family-tax-credits-lifted-89-million-people-out-of-poverty-in-2017>, 검색일자: 2019. 6. 21

- 2억 910만명의 미국인 중 890만명은 소득이 빈곤선 이상으로 올랐고, 2,020만 명의 빈곤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혜택자 중 1,250만명은 아동으로 나타나며, 480만명의 아동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770만명의 아동이 빈곤상태가 개선되었음
- 한편 2018~2025년까지 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CTC의 적용을 받지 못한 부양자녀에 대해 1인당 500달러의 부양가족세액공제(The Credit for Other Dependents, 이하 ‘ODC’)가 적용됨
- 17세이거나 17세 이상이더라도 대학생이거나 개인납세자 식별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가 있는 자녀 또는 납세자와 함께 거주하는 친척을 말함<sup>7)</sup>

<표 III-2> Child Tax Credit in U.S.

(단위: 천달러, %)

연 도 (과세 연도)		2015 (2014)	2016 (2015)	2017 (2016)	2018 (2017)	2019 (2018)
CTC 건 수	Individual income tax	116,562,491	116,848,831	120,119,142	119,853,012	120,226,272
	Child Tax Credit	16,799,897 (14.4)	16,261,110 (13.9)	15,964,320 (13.3)	15,535,213 (13.0)	14,854,934 (12.4)
CTC 환급액	Individual income tax	330,561,145	346,394,376	366,645,533	382,865,300	394,886,856
	Child Tax Credit	21,489,589 (6.5)	20,556,345 (5.9)	20,133,616 (5.5)	19,368,257 (5.1)	18,596,631 (4.7)

주: 1. 수치는 환급 가능한 CTC급여액만 반영한 것임  
2. ( ) 안은 비중임

자료: IRS Data Book Table7 and 8(<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irs-data-book-index-of-tables>),  
검색일자: 2019. 6. 24

#### 나. 영국 Child Tax Credit<sup>8)</sup>

- 영국의 자녀장려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는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 지원 목적으로 만들어진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임
- 2003년 4월에 Working Tax Credit(WTC) 제도와 함께 도입됨

7) <https://www.irs.gov/pub/irs-pdf/p5307.pdf>, p. 9, 검색일자: 2019. 3. 21.

8) 김재진(2014), pp. 31~33, 참고. 이후 변경내용은 HMRC(2018)에 의해 저자 업데이트

- 영국 CTC는 16세 미만 또는 16세 이상 20세 미만으로서 승인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음)
  - 주 양육자로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CTC를 신청할 수 있음
  - WTC와 달리 신청자는 근로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함
  
- CTC 급여산정요소로는 가족요소, 자녀의 수, 장애 여부가 있으며, 수급자의 소득 수준별로 평탄-점감 구간으로 구분되어 CTC 금액이 결정됨
  - 가족요소는 2017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의 양육자인 경우에만 지급됨
  - 2017년 4월 6일 이후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최대 2명의 적격 자녀에 대해서 까지 지급됨
    - 반면, 장애요소 및 중증장애요소는 3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도 고려됨

<표 III-3> 영국의 CTC 급여산정요소(2019~2020)

(단위: 파운드)

구성요소	연간금액
가족요소(Family Element, 가족당 한번)	545
자녀요소(Child Element, 자녀 또는 적격 청년 1인당)	2,780
장애요소 <sup>1)</sup> (Disability Element, 자녀요소에 추가)	3,355
중증장애요소 <sup>2)</sup> (Severe Disability Element, 자녀요소에 추가)	4,715

주: 1) 적격자녀가 장애인인 경우를 의미하며, 자녀요소 연간금액과 함께 만큼 지급됨  
 2) 적격자녀가 중증 장애인 경우를 의미하며, 자녀요소, 중증장애요소 연간금액의 합계만큼 지급됨

출처: <https://www.gov.uk/child-tax-credit/new-claim>, 검색일자: 2016. 6. 24.

- CTC만 단독으로 적용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16,105파운드(2019~2020년 과세연도)인 경우 급여 최대액을 수령함
  - 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41%의 점감률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소득 1파운드당 41펜스만큼 감액됨

9) 승인된 교육·훈련은 전일제 학생으로서 대학교(university) 전 단계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의미함

<표 III-4> 영국의 소득금액별 CTC금액(20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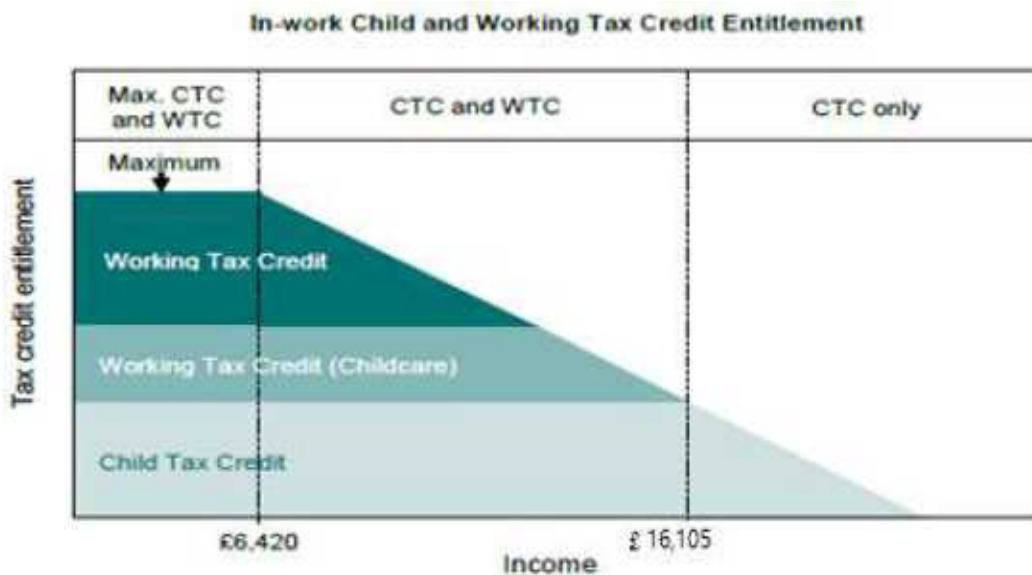
(단위: 파운드)

연간소득금액	적격 자녀 1명	적격 자녀 2명	적격 자녀 3명
0	3,330	6,110	8,890
5,000	3,330	6,110	8,890
8,000	3,330	6,110	8,890
10,000	3,330	6,110	8,890
15,000	3,330	6,110	8,890
20,000	1,730	4,515	7,295
25,000	0	2,465	5,245
30,000	0	415	3,195
35,000	0	0	1,145
40,000+	0	0	0

주: 1.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표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자료: HMRC,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April 2018, p. 7.

- 만일 WTC와 CTC를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6,420파운드(2019~2020년 과세연도)를 초과하는 경우 41%의 점감률로 급여액은 감액됨([그림 1] 참조)
  - 이 경우 감액은 WTC 급여에서 먼저 차감되고 이후 CTC 급여에서 차감되는데 급여가 소진되는 소득수준간은 각 가구의 상황과 급여산정요소에 따라 결정됨

[그림 III-1] WTC 및 CTC 최대 급여액 소득수준



자료: HMRC, 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Statistics, Provisional awards geographical analysis, 2018. 12, p. 4.

<표 III -5> Child Tax Credit in U.K

(단위: 천파운드, 백만파운드)

year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out-of-work families	Number of families	1,484	1,397	1,311	1,240	1,190
	Entitlement to CTC	8,903	8,522	8,163	7,903	7,738
in-work families	Number of families	842	838	825	805	803
	Entitlement to CTC	2,995	3,072	3,115	3,110	3,137

자료: HM Revenue and Customs(2018), Child and Working Tax Credit Statistics.

- 자녀세액공제는 전년도 세액을 근거로 우선 지급되며, 연말에 당해연도 소득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과정을 거침
  
- 예산·결산·회계상 취급을 보면, 통계청은 공공부문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녀장려세제를 부(-)의 소득세 또는 재정지출로 분류하고 있음<sup>10)</sup>
  - 과세대상 가구의 납부세액과 같거나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로 분류하고, 예산서의 경제·재정전망 파트에 수록하고 있음
  - 과세대상 가구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재정지출(Public expenditure)로 분류하고, 예산서의 정책별 예산파트에 계상하고 있음
  - 결산서에서는 개별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세액공제 총량으로 흡수되어 표현되는데, 세액공제는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사회보장지출로 계상함
  
- 영국은 아이 양육을 위한 재정정책 수단으로 아동수당(Child Benefit)제도를 운영하고 있음<sup>11)</sup>
  - 1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승인된 교육 및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20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음

10) 안종석 외(2017), 『근로·자녀장려금제도 성과분석 및 운용방안 연구』 재인용.

11) <https://www.gov.uk/child-benefit>, 검색일자: 2019. 6. 24

- 한편 연간 개인소득이 50,000파운드(개인소득공제 전 총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수당금 전액 및 일부를 과세함
- 아동수당 규모는 첫째 자녀의 경우 주당 20.70파운드가 지급되며, 둘째부터는 자녀당 13.70파운드를 추가하여 지급됨

#### 다. 뉴질랜드의 Family Tax Credit

- 뉴질랜드는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으로 가족세액공제(Family Tax Credit, FTC)제도를 두고 있음
  - 과거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WfFTC)제도가 2004년에 FTC를 포함한 Best Start tax Credit(BSTC), In-work Tax Credit(IWTC), Minimum Family Tax Credit(MFTC), Parental Tax Credit(PTC)으로 개편됨<sup>12)</sup>
    - 이들 제도는 가구의 합산소득규모, 소득의 종류, 부양자녀 조건에 따라 위 네 가지 중 적용가능한 지원세제가 결정되며, 중복수급이 가능함
- 16세 이상의 신청자가 주 양육자로서 19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FTC를 신청할 수 있음
  - 대상 자녀는 다음과 같음
    - 15세 이하의 자녀
    - 16세 및 17세로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
    - 18세로서 아직 중·고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
    - 결혼, 합법적 동성결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자녀
  - 신청자의 근로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 FTC 급여액은 자녀의 수와 가구 소득금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됨
  - 급여액 규모는 자녀 수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가구 소득금액이 42,700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한 후부터 축소됨

12) 이 중, 근로와 연계된 세액공제는 IWTC와 MFTC이며 BSTC는 2018년 7월 이후 출생한 자녀의 첫 3년간의 비용지원제도, PTC는 자녀 출산 후 최초 10주간 지급되는 제도임.

- 2018년 7월 이전에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였으나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연령에 따른 구분이 없어짐
- 가족소득금액은 급여, 자영업소득, 학생보조금, 연금소득(NZ Superannuation or Veteran's Pension)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소득금액을 의미함

<표 III-6> 뉴질랜드의 FTC 최대 수령액(2018. 4~2019. 3)

(단위: 뉴질랜드달러)

자녀의 수와 나이	2018. 4. 1		2018. 7. 1 이후	
	주 단위	연 단위	주 단위	연 단위
16~18세 첫째 자녀	101	5,303	113	5,878
0~15세 첫째 자녀	92	4,822	113	5,878
16~18세 첫째 자녀 이후 추가자녀	91	4,745	91	4,745
13~15세 첫째 자녀 이후 추가자녀	73	3,822	91	4,745
0~12세 첫째 자녀 이후 추가자녀	64	3,351	91	4,745
점감률(Abatement rate)	-	22.5	-	25
점감 시작소득(Abatement threshold)	-	36,350	-	42,700

자료: <https://www.ird.govt.nz/wff-tax-credits/understanding/all-about/ftc/>, 검색일자: 2019. 3. 25.

## 라. 캐나다의 Canada Child Benefit

- 캐나다의 자녀양육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CCB)은 기존에 있던, Canada Child Tax Benefit,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을 통합하여 2016. 7. 1.부터 운영되는 제도임
  - Canada Child Tax Benefit은 가구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상이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제도였음
  - 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은 가구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매달 보조금이 지원되는 제도였음
  -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은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로, 자녀 수에 따라 연간보조금은 상이하게 지급하였음

- 캐나다의 CCB는 18세 미만의 적격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과세하지 않는(tax-free) 보조금을 매월 1회씩 지급됨
  -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은 부부의 소득세 및 급여수준에 따라 CCB 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함
  - CCB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부 소득세 및 전년도 환급액에 따라 계상됨
  
- CCB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sup>13)</sup>
  - 신청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자녀의 연령이 18세 미만이어야 함
  - 신청자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신청자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해야 함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사실혼 상대방)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자, 임시 거주자일 것
    - 임시 거주자의 경우, 18개월 이상 캐나다에 체류하며 19개월이 되는 시점에 유효한 비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표 III-7> 캐나다 자녀양육보조금(CCB) 계산방법

(단위: 캐나다달러)

적격 자녀의 수	부부 연간 순소득(AFNI)	보조금 감액
1명	30,450캐나다달러 이상	초과하는 소득의 7% 감액
	65,976캐나다달러 이상 <sup>1)</sup>	초과하는 소득의 3.2 감액
2명	30,450캐나다달러 이상	초과하는 소득의 13.5% 감액
	65,976캐나다달러 이상 <sup>1)</sup>	초과하는 소득의 5.7% 감액
3명	30,450캐나다달러 이상	초과하는 소득의 19% 감액
	65,976캐나다달러 이상 <sup>1)</sup>	초과하는 소득의 8% 감액
4명 이상	30,450캐나다달러 이상	초과하는 소득의 23% 감액
	65,976캐나다달러 이상 <sup>1)</sup>	초과하는 소득의 9.5% 감액

주: 1) 30,450~65,970캐나다달러에 해당하는 소득 감액비율만큼 감액된 후 65,970캐나다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비율만큼 추가로 감액됨

자료: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nada-child-benefit-overview/canada-child-benefit-we-calculate-your-ccb.html>, 검색일자: 2019. 6. 25

13)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nada-child-benefit-overview/canada-child-benefit-before-you-apply.html> 검색일자: 2019. 6. 25.

- CCB는 자녀 수, 자녀의 연령, 가구(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연간 순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 AFNI), 장애여부에 따라 계산됨
  - 6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6,496캐나다달러(541.33캐나다달러/월)
  - 6세 이상 17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5,481캐나다달러(456.75캐나다달러/월)
  - AFNI가 30,450캐나다달러 이상인 경우, 자녀수에 따라 차등된 비율로 보조금이 감액됨
  
- 만약에 AFNI가 80,000캐나다달러인 4살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일반적인 CCB는  $(6,496 \times \text{자녀수}) - 7\% \times (65,976 - 30,450) - 3.2\% \times (80,000 - 65,976) = 3560.412$ 캐나다달러(연간) 수준임
  
-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자녀 1인당 연간 2,771캐나다달러(230.91캐나다달러/월)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보조금은 자녀수와 부부 AFNI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됨
  - 장애아동이 1명: AFNI가 65,97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의 3.2%를 감액함
  - 장애아동이 2명 이상: AFNI가 65,97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의 5.7%를 감액함

#### 마. 일본

- 일본은 부양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재정정책인 아동수당(兒童手当)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부양자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두지 않음
  - 2010년 민주당 정권출범 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수당으로의 전환’이라는 조세·재정정책 개편 방향에 따라 16세 미만 자녀 양육지원은 어린이수당(子ども手当)제도로 일원화하고, 관련 조세지원은 폐지·축소함<sup>14)</sup>

14) 일본 민주당, 「税制改正過程の抜本改革」, <http://www1.dpj.or.jp/policy/manifesto/seisaku2009/10.html>, 검색일자: 2019. 3. 20; 일본 재무성, 「扶養控除の見直しについて(22年度改正)」,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047a.htm](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047a.htm), 검색일자: 2019. 3. 20.

- 16세 미만 부양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연소부양친족 소득공제를 폐지함에 따라 16세 미만 자녀는 어린이수당제도만 적용되며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님
- 16세 이상 부양자녀 소득공제액은 33만엔이며, 자녀가 19세 이상 23세 미만인 경우 12만엔을 가산하여 45만엔으로 함
- 2012년 정권교체로 어린이수당을 아동수당으로 대체하였으나,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는 큰 차이가 없음

## 바. 프랑스

- 프랑스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자녀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sup>15)</sup>
-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 CAF) 등 재정지원을 통해 자녀양육을 지원함

## 2. 국가별 자녀장려세제 제도 비교

### 가. 적격 자녀요건

- 우리나라는 자녀양육 관련한 조세정책으로 자녀장려세제(환급형), 자녀세액공제(비환급형)와 함께 재정정책인 아동수당을 운영하고 있음
- 아동수당이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프랑스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에 도입함
-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
- 주요국의 자녀장려세제 제도의 적격자녀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이 조사됨
  - 한국은 18세 미만의 자녀, 미국은 17세 미만의 자녀, 영국은 16세 미만의 자녀, 뉴질랜드는 19세 미만의 자녀, 캐나다는 18세 이하 자녀를 적격자녀로 정의함

15) 안종석·박수진·이서현(2017), p. 133; 안종석·송헌재·홍우형(2017), pp. 67~70.

- 영국은 국가가 승인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20세 미만 자녀도 가능함
- 뉴질랜드는 자녀가 16~17세의 경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여야 하며, 18세의 경우에는 아직 중·고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여야 함

- 자녀의 연령요건 외에도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 자녀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연령조건과 함께 6개월 이상 신청자(납세자)와 동거하고, 50% 이상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야 함
  - 영국의 경우, 신청자가 자녀의 주 양육자여야 하며,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함
  - 캐나다의 경우, 신청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며, 신청자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나. 장려금(보조금) 계산방법

- 우리나라는 부부합산 총급여액등, 가구유형(홀별이, 맞별이),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장려금이 결정되며, 소득에 따른 평탄-점감 모형에 따라 장려금이 달라짐
  -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이 일정수준(홀별이 2,150만원, 맞별이 2,550만원)에 도달하면 점감구간이 개시됨
  - 또한, 가구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액이 50% 감액됨
- 미국은 수정된 조정총소득(AGI), 자녀 수, 소득세 신고 유형(개별, 합산신고)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고, 소득에 따른 점증-평탄-점감 모형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짐
  - AGI가 개별신고 및 세대주 신고의 경우에는 200,000달러,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에는 4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달러당 50달러씩 세액공제액이 점진적으로 감액됨
- 영국은 가족요소, 자녀의 수, 자녀의 장애 여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며, 수급자의 소득수준별로 평탄-점감 구간으로 구분되어 급여액이 결정됨
  - 장애 정도에 따라 일반 장애요소 급여와 중증장애요소 급여로 구분되고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요소 급여와 중증장애요소 급여의 합계액이 지급됨
  - 소득금액이 16,105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1파운드당 41펜스만큼 감액됨

- 뉴질랜드는 자녀의 수 및 가구 소득금액의 규모에 따라 급여가 차등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평탄-점감 구간으로 구분되어 급여액이 결정됨
  - 2018년 7월 이전에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급여액이 상이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연령에 따른 구분이 없어짐
  - 소득이 42,700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5% 점감률로 급여액이 감액됨
  
- 캐나다는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부부합산 연간 순소득(AFNI), 자녀의 장애 여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며,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평탄-점감1-점감2 구간으로 구분되어 급여액이 지급됨
  - 자녀 수(1명/2명/3명/4명 이상) 및 부부 연간 순소득 수준(30,450~65,976, 65,976 캐나다달러 이상)에 따라 점감률이 달라짐
  - 연령(6세 미만, 6세 이상)에 따라 최대 급여액 수준이 달라짐
  -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급여액을 추가로 지급함

#### 다. 기타

- 영국, 캐나다의 경우에는 자녀가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 제도를 통하여 추가로 급여액을 지급함
  - 영국의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자녀 1명당 3,275파운드(중증장애의 경우에는 4,600파운드)를 추가로 지급함
  - 캐나다의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771캐나다달러를 추가로 지급함
  
- 조사대상 국가중 미국을 제외한 한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의 아동수당과 같은 자녀 양육을 위한 재정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 일본,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자녀장려세제와 같은 자녀 양육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는 없지만, 프랑스는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 CAF), 일본은 어린이수당(子ども手当)으로 불리는 재정정책으로 지원을 함



## IV. 설문조사





## IV. 설문조사

### 1. 조사 개요

#### 가.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및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임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직전연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2019년도 제도 개편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포함 되었으며,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되었음
- 부양자녀 수, 가구원 구성을 고려한 자녀장려금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음

[그림 IV-1]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본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자녀장려금 수급 실태 및 제도 인식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 수립 및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나. 조사 설계

-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수급실태 및 인식조사와 세무,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녀장려세제 인식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 설계는 아래와 같음

<표 IV-1> 조사 설계

구분	자녀장려금 수급자 조사	자녀장려금 전문가 조사
조사 대상	2018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일반 국민	세무, 사회복지, 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온라인 조사 패널 활용)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 및 모바일 링크 발송)
샘플 수	1,000명	133명
조사 기간	2018년 6월 19일~6월 25일	2018년 6월 25일~7월 5일
조사 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 다. 조사 내용

- 수급자 및 전문가 대상 조사의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음

<표 IV-2> 수급자 조사 세부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응답자 가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 수 및 가구 형태</li> <li>• 연간 소득 수준</li> <li>• 보유 재산 수준</li> </ul>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평균 생활비</li> <li>• 월평균 양육비</li> <li>• 자녀별 양육비 지출액</li> </ul>
자녀 양육 관련 정부지원금 수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자녀양육 관련 정부지원금 수혜 경험</li> <li>•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 지원 제도</li> <li>• 출산장려에 도움이 된 지원 제도</li> </ul>
자녀장려금 수급 실태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장려금 수급 횟수 및 금액</li> <li>•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및 금액</li> <li>•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li> <li>•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li> <li>• 자녀장려금 분할 지급에 대한 의견</li> </ul>

<표 IV-3> 전문가 조사 세부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li> <li>•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li> <li>•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li> </ul>
자녀장려금 개편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개편 방향</li> <li>• 자녀장려금 개편 시 중점 수정 사항</li> <li>•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개편에 대한 의견</li> <li>• 자녀장려금 적정 소득요건</li> <li>• 자녀장려금 홀별이/맞별이 차등 지급에 대한 의견</li> <li>•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개편에 대한 의견</li> <li>• 자녀장려금 적정 재산요건</li> <li>• 자녀장려금 도시/농어촌 가구 차등 지급에 대한 의견</li> <li>• 자녀 1인당 지급액 관련 의견</li> </ul>

라. 응답자 특성

□ 아래 표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파악한 2017년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 현황 및 본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이며,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특성별 비율이 실제 수급 가구 비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조사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IV-4> 2017년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904,938	100.0
성별	남성	544,534	60.2
	여성	360,404	39.8
가구 유형별	단독가구	-	0.0
	홀별이가구	721,302	79.7
	맞별이가구	183,636	20.3
연령별	20세 미만	185	0.0
	30세 미만	43,711	4.8
	40세 미만	294,414	32.5
	50세 미만	425,203	47.0
	60세 미만	120,562	13.3
	70세 미만	12,658	1.4
	70세 이상	8,205	0.9
부양자녀 수	1명	498,838	55.1
	2명	331,771	36.7
	3명	66,245	7.3
	4명	6,961	0.8
	5명 이상	1,123	0.1

자료: 2017년 국세통계 -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표 IV-5> 수급자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00	100.0
연령대	20대	0.8
	30대	58.3
	40대	34.7
	50대 이상	6.2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2명	45.9
	3명	6.6
	4명 이상	0.9
자녀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2회	29.3
	3회	21.6
	4회	13.2
가구원 수	2명	2.9
	3명	39.8
	4명	46.2
	5명 이상	11.1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69.2
	중소도시	27.3
	농어촌	3.5
주택 보유 형태	무주택	73.2
	1주택 보유	26.8

<표 IV-6>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33	100.0
전공 분야 (중복응답)	회계 및 세무	42.9
	사회복지	27.8
	경제학	24.8
	기타	6.0
직업	전문직	7.5
	교수 및 연구소 직원	60.2
	일반 기업 근무자	18.0
	학생	4.5
	사회복지 공무원	8.3
	기타	1.5
경력 (학생 제외)	5년 미만	24.4
	5년~10년 미만	32.3
	10년~15년 미만	13.4
	15년~20년 미만	14.2
	20년 이상	15.7

## 2. 조사결과

### 가. 자녀장려세제 수급자 조사

#### 1) 응답자 가구원 구성

- 응답자 가구는 4인 가구(46.2%)와 3인 가구(39.8%)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가구 형태는 일반 가구(홀별이+맞별이, 97.1%)가 대부분을 차지함
  -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가구 형태 비율로는 맞별이가구가 20.3%인 반면,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맞별이가구는 46.8%로 실수급자의 맞별이가구 비율 대비 2배 이상 높게 표집되었음
  - 부양자녀 수의 경우, 2017년 자녀장려금 실수급자 대비 부양자녀가 2명인 가구가 더 많이 표집되었으며, 4명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

<표 IV-7> 가구원 수

(단위: %)

	사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전체	(1,000)	2.9	2.9	39.8	46.2	11.1

주: 사례 수는 해당 문항에 응답한 응답자 수를 의미함.

<표 IV-8> 가구 형태

(단위: %)

	맞별이가구	홀별이가구	
국세통계연보	20.3	79.7	
	일반가구(맞별이)	일반가구(홀별이)	한부모가구
본 조사	46.8	50.3	2.9

<표 IV-9> 부양자녀 수

(단위: %)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국세통계연보	55.1	36.7	7.3	0.8	0.1
본 조사	46.6	45.9	6.6	0.9	

## 2) 연간 소득 수준

- 2018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소득 유형은 사업소득이 3,39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자/연금/배당 등 재산소득은 150만원으로 나타나 가장 낮았음
- 근로소득의 경우 평균 2,648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응답자가 816명으로 4개의 소득 유형 중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0> 소득 유형별 소득 수준

(단위: 만원)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근로소득	(816)	3.0	4,000.0	2,648.0	1,162.5
사업소득	(272)	15.0	9,000.0	3,394.3	2,058.2
재산소득	(273)	1.0	800.0	150.2	162.2
기타소득	(221)	3.0	3,000.0	228.7	388.1

## 3) 보유 재산 수준

- 응답자의 보유 재산 유형은 부동산이 평균 9,71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 재산이 779만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응답자 중 재산 총합이 가장 많은 경우는 3억 4천만원이며, 평균적으로 8,587만원 수준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표 IV-11> 재산 유형별 보유 수준

(단위: 만원)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부동산	(358)	100.0	19,000.0	9,709.8	5,069.6
금융자산	(823)	1.0	3,850.0	1,151.9	851.6
자동차	(821)	10.0	4,500.0	1,433.1	1,068.5
전세보증금	(426)	50.0	18,500.0	5,928.6	4,820.3
기타	(227)	10.0	4,000.0	778.9	797.6
합계	(967)	10.0	34,000.0	8,586.5	6,281.7

#### 4) 생활비 및 양육비

- 응답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47만원, 양육비는 78만원으로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 양육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자녀별로 비교했을 때, 첫째(56만원)와 둘째(36만원) 자녀의 양육비가 전체 평균 양육비 78만원의 절반 수준이거나 그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대 양육비 지출분은 첫째 자녀가 300만원으로 둘째(150만원), 셋째(100만원) 자녀보다 큰 차이로 높게 조사됨

〈표 IV-12〉 월 평균 생활비 및 양육비

(단위: 만원)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월 평균 생활비	(1,000)	2.0	330.0	146.7	74.7
월 평균 양육비	(996)	1.0	320.0	78.3	52.0
첫째 자녀 양육비	(993)	1.0	300.0	56.3	38.9
둘째 자녀 양육비	(541)	2.0	150.0	36.4	23.5
셋째 자녀 양육비	(70)	2.0	100.0	28.6	19.9
넷째 자녀 양육비	(9)	5.0	50.0	17.2	13.7
다섯째 자녀 양육비	(5)	2.0	50.0	28.4	17.1

#### 5) 자녀 양육 관련 정부지원금 수혜 경험

- 2018년 한 해 동안 지원받았던 자녀양육 관련 정부지원으로는 자녀장려금을 제외하고 아동수당이 70.2%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양육수당(39.0%), 보육료 지원(33.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3〉 자녀 양육 관련 정부지원금 수혜 경험

(단위: %)

	사례수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바우처 지원금	한부모가족 지원
전체	(1,000)	70.2	39.0	33.2	6.8	2.1

6)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었던 지원 제도

- 지원받았던 자녀 양육 관련 정부 지원 중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지원 제도로는 1+2+3순위 응답 비율 기준 자녀장려금이 82.9%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아동수당(58.2%), 양육수당(37.0%)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

<표 IV-14>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었던 지원 제도

(단위: %)

	1순위	1+2+3순위
자녀장려금	37.5	82.9
아동수당	31.5	58.2
양육수당	14.7	37.0
보육료 지원	12.8	28.8
한부모가족 지원	0.4	1.4
바우처 지원금	0.4	4.6
기타	2.7	10.8

7) 출산장려에 효과적이었던 지원 제도

- 출산장려 효과에 대한 의견 또한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이 7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동수당(62.4%), 양육수당(37.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5> 출산장려에 효과적이었던 지원 제도

(단위: %)

	1순위	1+2+3순위
자녀장려금	37.8	75.0
아동수당	27.3	62.4
양육수당	17.5	37.4
보육료 지원	11.9	29.0
바우처 지원금	0.9	4.6
한부모가족 지원	0.4	1.4
기타	4.2	10.8

### 8) 자녀장려금 수급 횟수

-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을 몇 회 수급하였는지 설문한 결과, 1회 35.9%, 2회 29.3%, 3회 21.6%, 4회 13.2%로 1회 수급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수급 횟수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표 IV-16> 자녀장려금 수급 횟수

(단위: %)

	사례수	1회	2회	3회	4회
전체	(1,000)	35.9	29.3	21.6	13.2

### 9)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수령액

- 2018년 자녀장려금 수령액은 평균 51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근로장려금을 함께 수급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평균 95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17>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수령액

(단위: 만원)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자녀장려금	(1,000)	31.0	250.0	51.1	23.0
근로장려금	(534)	10.0	300.0	94.6	71.7

### 10)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

- 자녀장려금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자녀양육비 경감에는 긍정적인 반응(매우+약간 도움이 되었다)이 81.7%로 높게 나타났으나, 출산장려 효과, 근로활동 참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크게 보이지 않음

<표 IV-18>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

(단위: %)

	사례수	긍정			부정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공정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자녀양육비 경감	(1,000)	28.0	53.7	81.7	13.2	5.1	18.3
출산장려 효과	(1,000)	19.6	36.7	56.3	27.9	15.8	43.7
근로활동 참여	(1,000)	20.2	37.0	57.2	30.2	12.6	42.8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1,000)	17.5	34.6	52.1	32.7	15.2	47.9

## 11)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

- 자녀장려금의 타 제도 대비 상대적 도움 정도에 대해서도 자녀양육비 경감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 비율이 79.2%로 높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 외 부문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55% 내외로 높지 않았음

〈표 IV-19〉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

(단위: %)

	사례수	긍정			부정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자녀양육비 경감	(1,000)	27.1	52.1	15.3	5.5	20.8
출산장려 효과	(1,000)	19.1	37.7	28.0	15.2	43.2
근로활동 참여	(1,000)	17.7	38.0	30.4	13.9	44.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1,000)	16.2	36.7	31.6	15.5	47.1

## 12) 자녀장려금 분할 지급에 대한 의견

- 자녀장려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 방법인 일괄 지급에 대한 응답이 응답자 절반 수준인 49.6%로 분할 지급에 대한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분할 지급에 대한 응답은 6개월씩 나누어 분할 지급이 26.2%로 가장 많았으며, 3개월/1개월씩 나누어 분할 지급은 각각 12.6%, 11.6%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표 IV-20〉 자녀장려금 분할 지급에 대한 의견

(단위: %)

	사례수	1년에 한 번 일괄 지급	6개월씩 나누어 분할 지급	3개월씩 나누어 분할 지급	1개월씩 나누어 분할 지급
전체	(1,000)	49.6	26.2	12.6	11.6

## 나. 자녀장려세제 전문가 조사

### 1)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

- 자녀장려금의 효과성에 대해 자녀양육비 경감 부문에서 83.5%의 높은 긍정 응답 비율을 보임
  - 출산장려 효과, 근로활동 참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40% 이하 수준으로 나타남

<표 IV-21>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

(단위: %)

	사례수	긍정			부정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자녀양육비 경감	(133)	25.6	57.9	12.8	3.7	16.5
출산장려 효과	(133)	5.3	15.8	45.1	33.8	78.9
근로활동 참여	(133)	6.0	34.6	42.9	16.5	59.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133)	6.8	31.5	43.7	18.0	61.7

### 2) 자녀 양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지원 제도

- 자녀 양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지원 제도로 1+2+3순위 응답 비율 기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보육료 지원이 57.1%였으며, 자녀장려금은 42.9%로 4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 IV-22> 자녀 양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제도

(단위: %)

	1순위	1+2+3순위
아동수당	26.3	64.7
양육수당	17.3	64.7
보육료 지원	18.0	57.1
자녀장려금	16.5	42.9
바우처 지원금	12.8	31.6
한부모가족 지원	5.3	15.8
기타	3.8	21.8

### 3) 출산장려 효과가 가장 큰 지원 제도

- 출산장려 효과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이 71.4%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료 지원 또한 69.2%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이어서 자녀장려금은 28.6%로 자녀 양육비 경감 효과에 대한 응답보다 낮게 나타남

〈표 IV-23〉 출산장려 효과가 가장 큰 제도

(단위: %)

	1순위	1+2+3순위
양육수당	22.6	71.4
보육료 지원	20.3	69.2
아동수당	20.3	56.4
바우처 지원금	21.8	40.6
자녀장려금	9.0	28.6
한부모가족 지원	0.0	2.3
기타	6.0	24.8

### 4) 자녀장려금 개편 방안

- 향후 자녀장려금 개편 방안으로는 지급 대상을 현재보다 (소폭+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43.6%로 현행 수준 유지(36.1%)보다 다소 높았음
  - 자녀 1인당 지급액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소폭+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1.1%로 과반으로 나타남

〈표 IV-24〉 자녀장려금 개편 방안

(단위: %)

	사례수	현재보다 대폭 축소	현재보다 소폭 축소	현행 수준 유지	현재보다 소폭 확대	현재보다 대폭 확대
지급 대상	(133)	9.8	10.5	36.1	27.8	15.8
자녀 1인당 지급액	(133)	5.3	15.0	28.6	30.8	20.3

### 5) 자녀장려금 개편 시 중점 수정사항

- 자녀장려금 개편 시 가장 중점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으로는 유사한 타 제도와 중복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소득요건 조정(25.6%), 맞벌이/홀벌이가구 차등 폐지(1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5> 자녀장려금 개편 시 중점 수정사항

(단위: %)

	사례수	유사 제도와 중복문제 해소	소득요건 조정	맞벌이/홀벌이가구 차등 폐지	자녀 1인당 급여액 조정	재산요건 조정	기타
전체	(133)	38.3	25.6	15.8	11.3	8.3	0.7

### 6)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개편 시 적정 방안

- 소득요건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음
  -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또한 32.3%로 비교적 높은 모습을 보임

<표 IV-26>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개편 시 적정 방안

(단위: %)

	사례수	현재 수준 유지	소득기준 상향 조정	소득기준 하향 조정	소득기준 폐지
전체	(133)	32.3	46.7	10.5	10.5

### 7)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적정 수준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인 4,000만원 응답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상향 조정에 대한 응답으로는 5,000만원 수준으로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9.4%로 4,500만원(22.7%)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표 IV-27>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적정 수준

(단위: %)

	사례수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 (2,500만원)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 (3,000만원)	기준 중위소득의 80% 수준 (4,000만원)	기준 중위소득의 90% 수준 (4,500만원)	기준 중위소득의 100% 수준 (5,000만원)
전체	(119)	5.1	6.7	36.1	22.7	29.4

8) 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 지급체계 통일에 대한 의견

홀벌이-맞벌이가구 지급체계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대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0.3%로 낮게 나타남

<표 IV-28> 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 지급체계 통일에 대한 의견

(단위: %)

	사례수	현행 기준 유지 (맞벌이가구 우대)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체계 통일
전체	(119)	30.3	69.7

9) 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 최대급여액 기준점 적정 수준

홀벌이-맞벌이가구 최대급여액 기준점의 적정 수준을 물어본 결과, 홀벌이가구의 경우 맞벌이가구 현행 기준에 해당하는 2,500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맞벌이가구의 경우 현행 기준 2,500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음

<표 IV-29> 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 최대급여액 기준점 적정 수준

(단위: %)

	사례수	홀벌이 가구 현행 기준		맞벌이 가구 현행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0% 수준 (4,000만원)	기준 중위소득의 100% 수준 (5,000만원)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 (1,500만원)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2,000만원)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 (2,500만원)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 (3,000만원)			
홀벌이가구	(119)	2.5	5.9	22.7	32.8	14.3	21.0	0.8
맞벌이가구	(119)	0.9	1.7	15.1	35.3	17.6	26.9	2.5

10)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개편 시 걱정 방안

- 재산요건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상향 조정(34.6%)과 현재 수준 유지(32.3%)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이외에 하향 조정은 18.0%, 재산합계 기준 폐지 의견은 15.1%로 나타남

<표 IV-30>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개편 시 걱정 방안

(단위: %)

	사례수	현재 수준 유지	재산합계 기준 상향 조정	재산합계 기준 하향 조정	재산합계 기준 폐지
전체	(133)	32.3	34.6	18.0	15.1

11)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적정 수준

- 재산요건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인 2억원에 대한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음
  - 가구당 평균자산의 70% 수준인 2억 9천만원 응답 또한 23.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1>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적정 수준

(단위: %)

	사례수	가구당 평균자산의 30% (1억 2천만원)	가구당 평균자산의 40% (1억 6천만원)	현재 수준 (2억원)	가구당 평균자산의 60% (2억 4천만원)	가구당 평균자산의 70% (2억 9천만원)	기타
전체	(113)	3.5	17.7	38.1	15.0	23.9	1.8

12) 자녀장려금 삭감 기준점 개편 시 걱정 방안

- 자녀장려금 삭감 기준점의 적정 수준은 현재 수준인 1억 4천만원과 가구당 평균 자산의 50% 수준인 2억원 응답 비율이 각각 31.0%, 30.1%로 비슷하게 나타남

〈표 IV-32〉 자녀장려금 삭감 기준점 개편 시 적정 방안

(단위: %)

	사례수	가구당 평균자산의 20% (8천만원)	가구당 평균자산의 30% (1억 2천만원)	현재 수준 (1억 4천만원)	가구당 평균자산의 40% (1억 6천만원)	가구당 평균자산의 50% (2억원)	기타
전체	(113)	4.4	15.0	31.0	18.6	30.1	0.9

### 13) 도시-농어촌 가구 재산요건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

-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가구 재산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긍정적으로 반응한 응답자가 70.8%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응답자보다 큰 차이로 많았음

〈표 IV-33〉 도시-농어촌 가구 재산요건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

(단위: %)

	사례수	긍정			부정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	
전체	(113)	31.9	38.9	70.8	23.0	6.2	29.2

### 14)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

-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에 대한 다양한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장애아를 가진 가구의 최대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82.0%로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69.2%로 비교적 높은 모습을 보임
- 반면 자녀수와 자녀의 연령 변화에 따라 최대지급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IV-34>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

(단위: %)

	사례수	긍정			그렇지 않다		부정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긍정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줄인다	(133)	12.0	40.6	52.6	29.3	18.1	47.4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133)	9.8	39.1	48.9	37.6	13.5	51.1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133)	9.0	31.6	40.6	51.1	8.3	59.4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133)	27.1	42.1	69.2	23.3	7.5	30.8
장애아를 가진 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133)	43.6	38.4	82.0	12.7	5.3	18.0

### 3. 조사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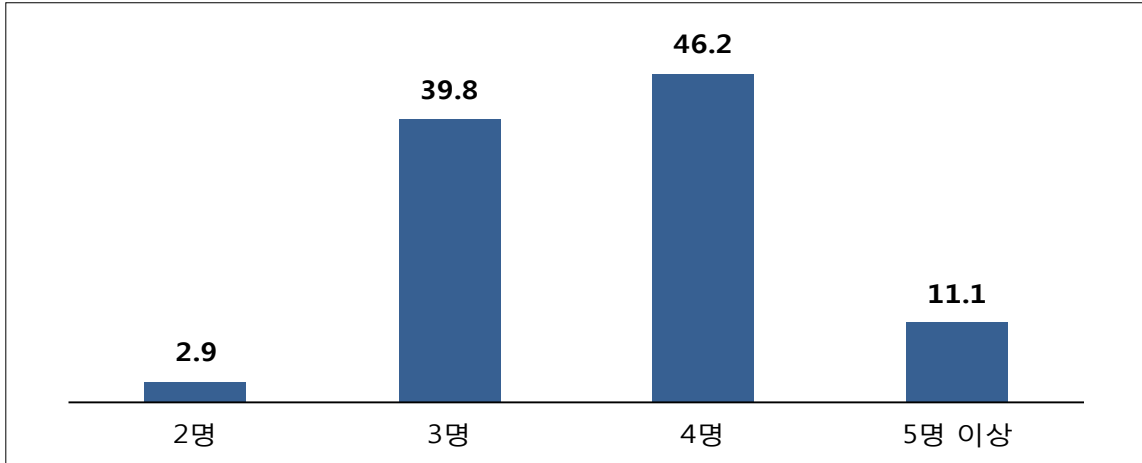
#### 가. 자녀장려세제 수급자 조사

##### 1) 가구원 수

-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 가구 특성으로는 4인 가구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3인 가구 또한 39.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2018년까지 매년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응답자(4회 수급)의 경우, 4인 가구 (51.5%)와 5인 이상 가구(16.7%)에 대한 응답 비율이 3회 이하 수급자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IV-2] 가구원 수

(N=1,000, 단위: %)



<표 IV-35> 가구원 수

(단위: %)

		사례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전체		(1,000)	2.9	39.8	46.2	11.1
연령대	20대	(8)	12.5	62.5	12.5	12.5
	30대	(583)	2.4	45.1	43.9	8.6
	40대	(347)	3.5	31.1	50.7	14.7
	50대 이상	(62)	3.2	35.5	46.8	14.5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6.2	84.5	6.2	3.0
	2명	(459)	0.0	0.9	93.7	5.4
	3명	(66)	0.0	0.0	4.5	95.5
	4명 이상	(9)	0.0	0.0	0.0	100.0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1.4	50.1	40.4	8.1
	2회	(293)	2.7	36.5	51.2	9.6
	3회	(216)	5.6	33.8	45.8	14.8
	4회	(132)	3.0	28.8	51.5	16.7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692)	2.6	41.5	44.5	11.4
	중소도시	(273)	3.3	37.0	50.2	9.5
	농어촌	(35)	5.7	28.6	48.6	17.1
주택 보유형태	무주택	(732)	2.9	42.6	44.0	10.5
	1주택보유	(268)	3.0	32.1	52.2	12.7
주소득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816)	2.3	39.8	46.2	11.6
	임시/일용직	(63)	11.1	47.6	38.1	3.2
	자영업	(83)	1.2	38.6	48.2	12.0
	실업	(34)	5.9	29.4	52.9	11.8
	기타	(4)	0.0	25.0	75.0	0.0

## 2) 가구 형태

- 응답자 가구 형태로는 일반가구(홀벌이), 일반가구(맞벌이)가 각각 50.3%, 46.8%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가구는 2.9%로 낮았음
- 자녀장려금 매년(4회) 수급한 응답자가 맞벌이가구인 경우는 54.5%로 과반인 반면, 3회 이하 수급자의 경우 홀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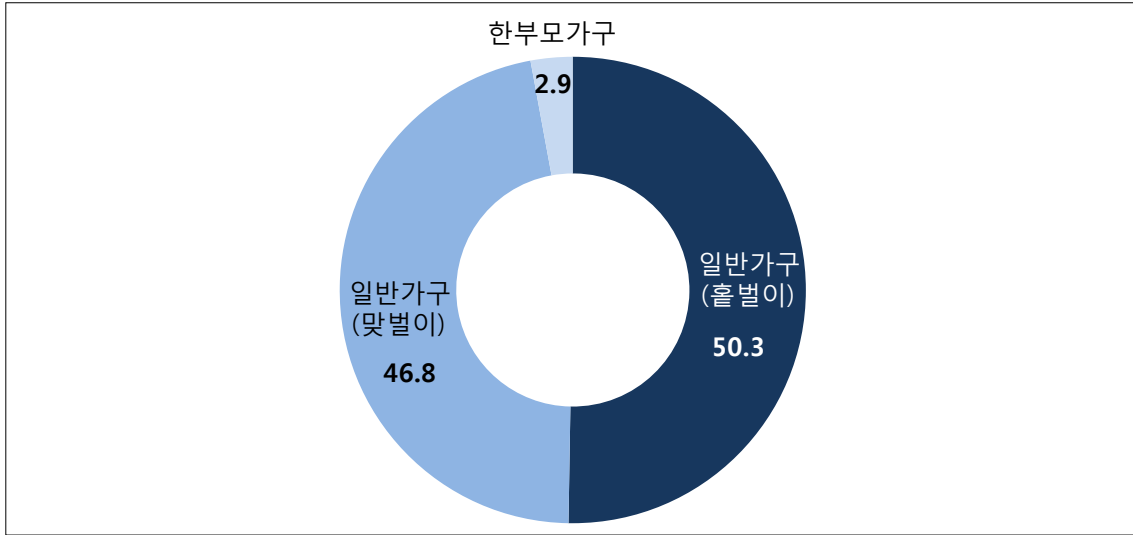
〈표 IV-36〉 가구 형태

(단위: %)

		사례수	일반가구 (홀벌이)	일반가구 (맞벌이)	한부모가구
전체		(1,000)	50.3	46.8	2.9
연령대	20대	(8)	25.0	62.5	12.5
	30대	(583)	48.0	50.8	1.2
	40대	(347)	53.9	41.2	4.9
	50대 이상	(62)	54.8	38.7	6.5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48.5	46.1	5.4
	2명	(459)	52.1	47.3	0.7
	3명	(66)	47.0	51.5	1.5
	4명 이상	(9)	77.8	22.2	0.0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52.1	46.5	1.4
	2회	(293)	49.5	48.1	2.4
	3회	(216)	52.3	40.7	6.9
	4회	(132)	43.9	54.5	1.5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692)	47.5	50.7	1.7
	중소도시	(273)	55.7	39.6	4.8
	농어촌	(35)	62.9	25.7	11.4
주택 보유형태	무주택	(732)	48.4	48.4	3.3
	1주택보유	(268)	55.6	42.5	1.9
주소득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816)	46.7	51.2	2.1
	임시/일용직	(63)	58.7	30.2	11.1
	자영업	(83)	67.5	30.1	2.4
	실업	(34)	73.5	17.6	8.8
	기타	(4)	100.0	0.0	0.0

[그림 IV-3] 가구 형태

(N=1,000, 단위: %)



### 3) 연간 소득 수준

- 2018년 기준, 소득 유형별 응답자 가구의 연간 소득으로는 사업소득(자영업 총 매출액)이 평균 3,39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재산소득(이자·배당·연금)은 평균 150만원으로 가장 낮았음
- 근로소득은 평균 2,648만원으로 4개 소득 유형 중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근로소득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816명으로 4개 소득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수를 보임
- 이외에 사업소득은 272명, 재산소득은 273명, 기타소득은 221명으로 사례수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사업소득의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자 소득 산정 시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표 IV-37> 소득 유형별 소득 수준

(단위: 만원)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근로소득	(816)	3.0	4,000.0	2,648.0	1,162.5
사업소득	(272)	15.0	9,000.0	3,394.3	2,058.2
재산소득	(273)	1.0	800.0	150.2	162.2
기타소득	(221)	3.0	3,000.0	228.7	388.1

#### 4) 보유 재산 수준

- 보유 재산에 대해서는 5개 재산 유형 중 부동산이 평균 9,71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재산이 779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금융자산 및 자동차는 각각 823명, 821명의 높은 사례수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보유 수준은 각각 평균 1,152만원, 1,433만원으로 타 재산 유형 대비 낮게 조사됨
- 전세보증금(426명)은 부동산(358명)보다 많은 응답자가 보유하고 있었지만, 평균 5,929만원으로 부동산 보유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보임
- 부동산의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자 재산 산정 시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IV-38> 재산 유형별 보유 수준

(단위: 만원)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부동산	(358)	100.0	19,000.0	9,709.8	5,069.6
금융자산	(823)	1.0	3,850.0	1,151.9	851.6
자동차	(821)	10.0	4,500.0	1,433.1	1,068.5
전세보증금	(426)	50.0	18,500.0	5,928.6	4,820.3
기타재산	(227)	10.0	4,000.0	778.9	797.6
합계	(967)	10.0	34,000.0	8,586.5	6,281.7

#### 5) 월평균 생활비 및 양육비

-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47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78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자녀 순서별로 월 평균 양육비를 비교분석한 결과, 첫째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5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둘째 자녀(36만원), 셋째 자녀(29만원)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임
- 전반적으로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중심으로 양육비가 지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임

<표 IV-39> 월 평균 생활비 및 양육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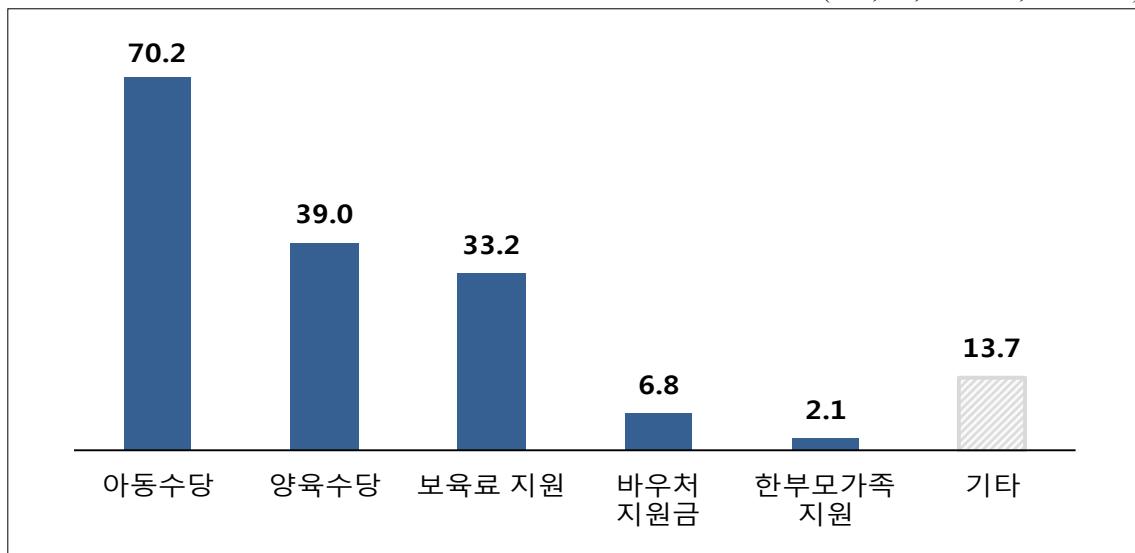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월평균 생활비	(1,000)	2.0	330.0	146.7	74.7
월평균 양육비	(996)	1.0	320.0	78.3	52.0
첫째 자녀 양육비	(993)	1.0	300.0	56.3	38.9
둘째 자녀 양육비	(541)	2.0	150.0	36.4	23.5
셋째 자녀 양육비	(70)	2.0	100.0	28.6	19.9
넷째 자녀 양육비	(9)	5.0	50.0	17.2	13.7
다섯째 자녀 양육비	(5)	2.0	50.0	28.4	17.1

6) 자녀 양육 관련 정부지원금 수혜 경험

-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제외했을 때 아동수당이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 외에 양육수당(39.0%), 보육료 지원(33.2%)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임
  - 전반적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정부지원금 수혜 경험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만 20세 미만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모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IV-4] 자녀 양육 관련 정부지원금 수혜 경험

(N=1,000, 단위: %, 중복응답)



<표 IV-40> 자녀 양육 관련 정부지원금 수혜 경험

(단위: %, 중복응답)

		사례수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전체		(1,000)	70.2	39.0	33.2
연령대	20대	(8)	100.0	50.0	25.0
	30대	(583)	83.9	49.7	39.6
	40대	(347)	52.7	27.1	27.1
	50대 이상	(62)	35.5	3.2	8.1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64.8	35.8	24.7
	2명	(459)	73.6	40.3	38.1
	3명	(66)	80.3	48.5	56.1
	4명 이상	(9)	100.0	66.7	55.6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74.7	40.9	28.4
	2회	(293)	66.2	39.9	36.5
	3회	(216)	67.1	31.5	29.6
	4회	(132)	72.0	43.9	44.7

		사례수	바우처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	기타
전체		(1,000)	6.8	2.1	13.7
연령대	20대	(8)	12.5	12.5	12.5
	30대	(583)	7.7	2.1	13.2
	40대	(347)	5.2	2.3	12.7
	50대 이상	(62)	6.5	0.0	24.2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5.8	3.4	11.6
	2명	(459)	7.4	0.2	13.7
	3명	(66)	9.1	4.5	24.2
	4명 이상	(9)	11.1	11.1	44.4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5.6	1.1	8.9
	2회	(293)	7.2	3.4	13.0
	3회	(216)	7.9	3.2	20.4
	4회	(132)	7.6	0.0	17.4

7)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었던 지원 제도

- 지원받은 제도 중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었던 제도로는 1+2+3순위 기준, 자녀장려금이 8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아동수당(58.2%), 양육수당(37.0%), 보육료 지원(28.8%)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자녀장려금과 아동수당 간 응답 비율 차이(24.7%p)는 지원 대상이 되는 자녀 기준(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자녀장려금(37.5%)과 아동수당(31.5%)이 비슷한 수준으로 타 제도 대비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표 IV-41>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었던 지원 제도(1순위+2순위+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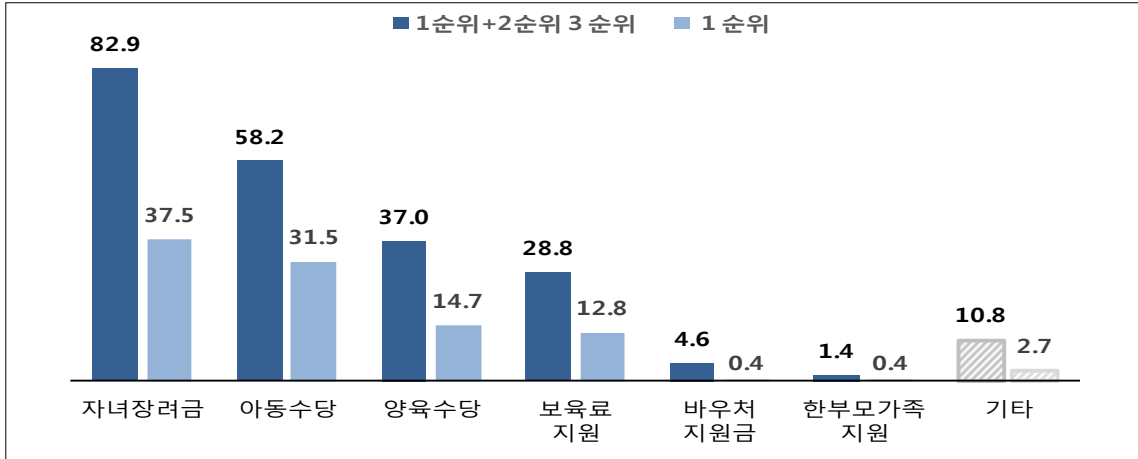
(단위: %, 중복응답)

		사례수	자녀장려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전체		(1,000)	82.9	58.2	37.0
연령대	20대	(8)	87.5	100.0	50.0
	30대	(583)	81.3	69.3	47.5
	40대	(347)	85.9	43.8	25.1
	50대 이상	(62)	80.6	29.0	3.2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87.1	56.0	34.5
	2명	(459)	81.5	59.7	37.5
	3명	(66)	66.7	57.6	47.0
	4명 이상	(9)	55.6	100.0	66.7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86.4	64.6	39.8
	2회	(293)	80.9	53.6	37.2
	3회	(216)	83.3	52.3	28.2
	4회	(132)	77.3	60.6	43.2

		사례수	보육료 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바우처 지원금	기타
전체		(1,000)	28.8	4.6	1.4	10.8
연령대	20대	(8)	12.5	0.0	12.5	0.0
	30대	(583)	33.6	4.6	1.4	9.1
	40대	(347)	24.8	4.3	1.4	11.5
	50대 이상	(62)	8.1	6.5	0.0	24.2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21.5	3.9	2.4	9.4
	2명	(459)	33.8	5.0	0.2	10.5
	3명	(66)	45.5	7.6	3.0	19.7
	4명 이상	(9)	33.3	0.0	0.0	33.3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24.2	3.9	0.6	6.4
	2회	(293)	31.1	4.4	2.0	10.9
	3회	(216)	25.9	6.0	2.8	17.6
	4회	(132)	40.9	4.5	0.0	11.4

[그림 IV-5]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었던 지원 제도

(N=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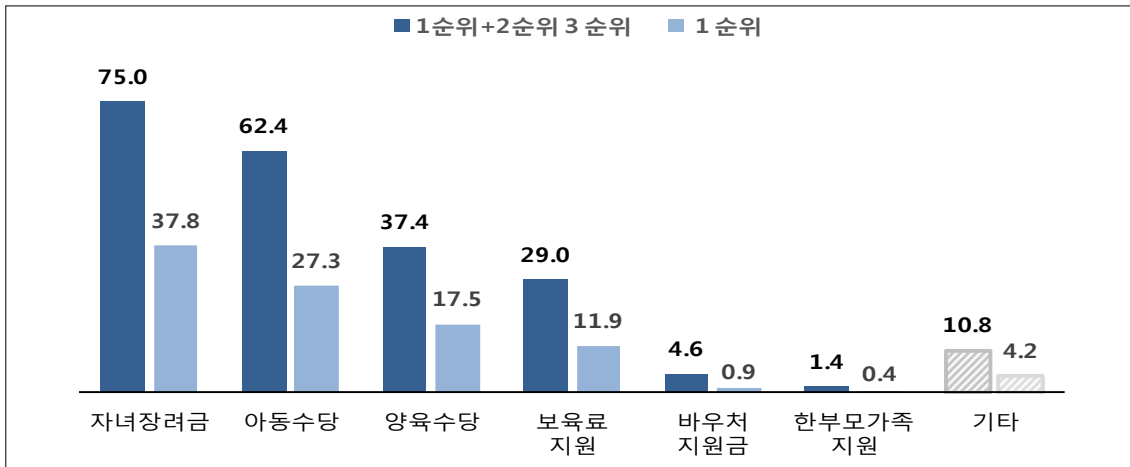


8) 출산장려에 효과적이었던 지원 제도

- 출산장려 효과에 대해서는 1+2+3순위 기준, 자녀장려금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수당 또한 62.4%로 높은 모습을 보임
- 그다음으로 양육수당(37.4%), 보육료 지원(29.0%)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출산장려 효과에 대해서는 만 6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비교적 높은 모습을 보임
- 연령대별로는 20대~30대 응답자에서 아동수당에 대한 응답 비율이 자녀장려금 응답 비율보다 높은 모습을 보임

[그림 IV-6] 출산장려에 효과적이었던 지원 제도

(N=1,000, 단위: %)



<표 IV-42> 출산장려에 효과적이었던 지원 제도(1순위+2순위+3순위)

(단위: %, 중복응답)

		사례수	자녀장려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전체		(1,000)	75.0	62.4	37.4
연령대	20대	(8)	75.0	87.5	50.0
	30대	(583)	73.8	74.4	48.0
	40대	(347)	76.9	47.3	25.4
	50대 이상	(62)	75.8	30.6	3.2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78.3	59.9	34.8
	2명	(459)	74.1	64.7	38.6
	3명	(66)	63.6	62.1	43.9
	4명 이상	(9)	33.3	77.8	66.7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78.8	68.8	39.8
	2회	(293)	75.1	55.3	37.5
	3회	(216)	71.8	59.3	30.1
	4회	(132)	69.7	65.9	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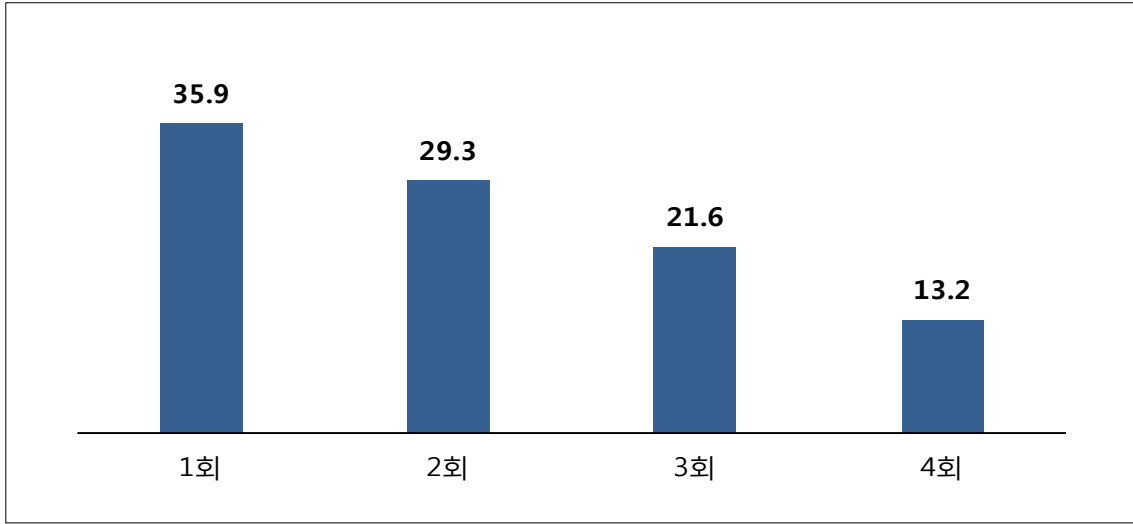
		사례수	보육료 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바우처 지원금	기타
전체		(1,000)	29.0	4.6	1.4	10.8
연령대	20대	(8)	25.0	0.0	12.5	0.0
	30대	(583)	33.6	4.6	1.4	9.4
	40대	(347)	25.1	4.3	1.4	11.0
	50대 이상	(62)	8.1	6.5	0.0	24.2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20.8	4.1	2.6	9.4
	2명	(459)	34.4	4.8	0.0	10.0
	3명	(66)	45.5	7.6	3.0	21.2
	4명 이상	(9)	55.6	0.0	0.0	44.4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25.1	3.9	0.6	6.4
	2회	(293)	32.8	4.4	1.7	9.6
	3회	(216)	25.5	6.0	3.2	18.1
	4회	(132)	37.1	4.5	0.0	13.6

### 9) 자녀장려금 수급 횟수

- 자녀장려금 수급 횟수로는 1회 수급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4회 수급이 13.2%로 수급 횟수가 많을수록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 1회 수급에 대한 응답 비율(35.9%)이 가장 높았지만, 2회(29.3%) 및 3회(21.6%) 수급 비율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 IV-7] 자녀장려금 수급 횟수

(N=1,000, 단위: %)



<표 IV-43> 자녀장려금 수급 횟수

(단위: %)

		사례수	1회	2회	3회	4회
전체		(1,000)	35.9	29.3	21.6	13.2
연령대	20대	(8)	37.5	25.0	0.0	37.5
	30대	(583)	37.2	30.2	19.0	13.6
	40대	(347)	34.9	27.7	23.9	13.5
	50대 이상	(62)	29.0	30.6	35.5	4.8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42.3	28.1	19.7	9.9
	2명	(459)	31.2	31.8	22.2	14.8
	3명	(66)	27.3	22.7	27.3	22.7
	4명 이상	(9)	11.1	11.1	44.4	33.3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692)	37.4	28.0	20.7	13.9
	중소도시	(273)	31.9	31.9	24.5	11.7
	농어촌	(35)	37.1	34.3	17.1	11.4
주택 보유형태	무주택	(732)	35.0	29.5	22.0	13.5
	1주택보유	(268)	38.4	28.7	20.5	12.3
주소득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816)	36.0	29.0	21.2	13.7
	임시/일용직	(63)	23.8	36.5	27.0	12.7
	자영업	(83)	38.6	27.7	24.1	9.6
	실업	(34)	47.1	29.4	17.6	5.9
	기타	(4)	50.0	0.0	0.0	50.0

### 10) 2018년도 자녀장려금 수령액

- 2018년 기준 자녀장려금 수령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55.3%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또한 2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자녀장려금을 매년(4회) 수급한 경우,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16.7%)과 100만원 이상(15.9%) 응답 비율이 3회 이하 수급한 경우보다 높은 모습을 보임
- 20세 미만 자녀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55.6%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자녀가 3명인 경우도 100만원 이상 수급이 3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주소득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중 자영업의 경우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12.0%로 가장 많았으며, 실업의 경우도 11.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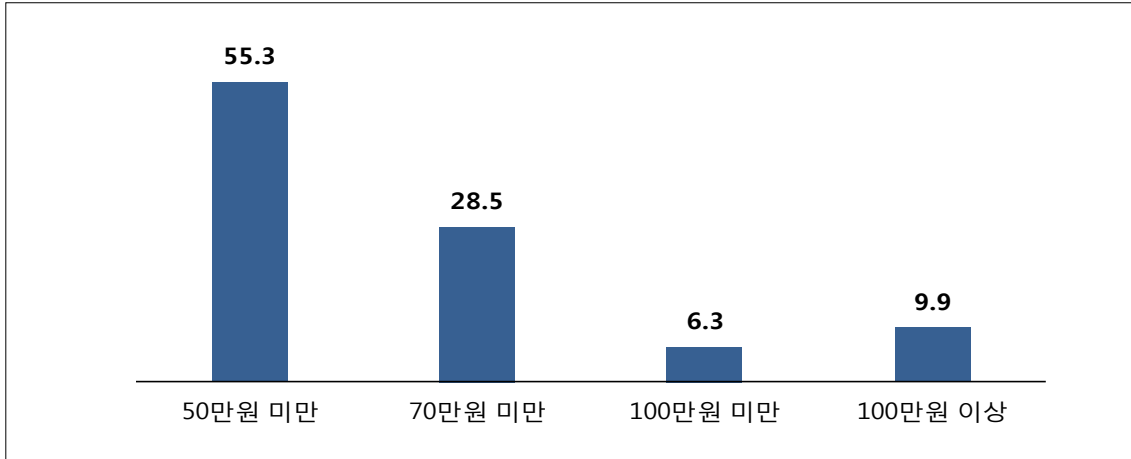
<표 IV-44> 2018년도 자녀장려금 수령액

(단위: %)

		사례수	50만원 미만	7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체		(1,000)	55.3	28.5	6.3	9.9
연령대	20대	(8)	37.5	62.5	0.0	0.0
	30대	(583)	54.5	29.7	5.3	10.5
	40대	(347)	57.6	23.9	8.9	9.5
	50대 이상	(62)	51.6	38.7	1.6	8.1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65.7	34.1	0.0	0.2
	2명	(459)	48.8	24.4	12.0	14.8
	3명	(66)	34.8	16.7	10.6	37.9
	4명 이상	(9)	0.0	33.3	11.1	55.6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63.8	26.7	3.1	6.4
	2회	(293)	57.3	28.0	5.8	8.9
	3회	(216)	47.7	32.9	6.0	13.4
	4회	(132)	40.2	27.3	16.7	15.9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692)	55.1	29.3	6.4	9.2
	중소도시	(273)	54.9	27.5	6.2	11.4
	농어촌	(35)	62.9	20.0	5.7	11.4
주택 보유형태	무주택	(732)	54.0	29.5	6.7	9.8
	1주택보유	(268)	59.0	25.7	5.2	10.1
주소득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816)	55.9	28.1	6.4	9.7
	임시/일용직	(63)	52.4	30.2	7.9	9.5
	자영업	(83)	45.8	37.3	4.8	12.0
	실업	(34)	64.7	17.6	5.9	11.8
	기타	(4)	100.0	0.0	0.0	0.0

[그림 IV-8] 2018년도 자녀장려금 수령액

(N=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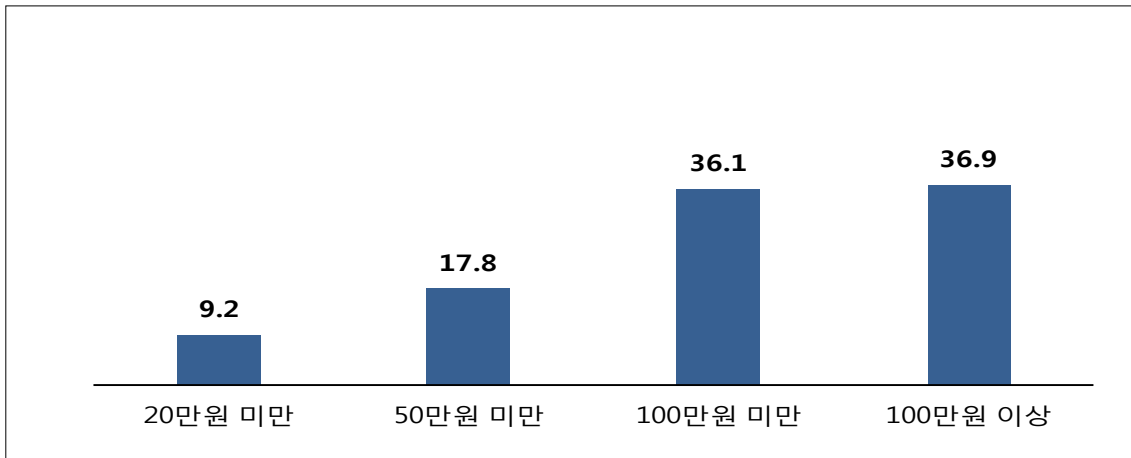


### 11) 2018년도 근로장려금 수령액

- 2018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동시 수급자 534명을 대상으로 2018년 기준 근로장려금 수령액을 물어본 결과, 100만원 이상과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각각 36.9%, 36.1%로 비교적 높게 조사됨
-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 이상에서 근로장려금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각각 40.5%, 40.0%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남
- 자녀장려금 수급 횟수와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응답 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IV-9] 2018년도 근로장려금 수령액

(N=534, 단위: %)



<표 IV-45> 2018년도 근로장려금 수령액

(단위: %)

		사례수	2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체		(1,000)	9.2	17.8	36.1	36.9
연령대	20대	(534)	14.3	14.3	57.1	14.3
	30대	(7)	8.9	18.9	37.4	34.8
	40대	(302)	7.6	17.3	34.6	40.5
	50대 이상	(185)	17.5	12.5	30.0	40.0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0)	11.4	18.1	34.3	36.2
	2명	(254)	7.4	17.9	38.0	36.7
	3명	(229)	2.2	17.8	35.6	44.4
	4명 이상	(45)	33.3	0.0	50.0	16.7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6)	14.6	12.7	34.4	38.2
	2회	(157)	7.1	20.0	37.1	35.9
	3회	(170)	8.3	16.5	36.8	38.3
	4회	(133)	4.1	25.7	36.5	33.8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376)	8.5	18.4	37.5	35.6
	중소도시	(139)	10.8	15.8	33.1	40.3
	농어촌	(19)	10.5	21.1	31.6	36.8
주택 보유형태	무주택	(380)	8.9	16.6	35.5	38.9
	1주택보유	(154)	9.7	20.8	37.7	31.8
주소득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442)	8.6	17.6	36.4	37.3
	임시/일용직	(40)	12.5	22.5	37.5	27.5
	자영업	(36)	8.3	19.4	33.3	38.9
	실업	(14)	14.3	7.1	28.6	50.0
	기타	(2)	50.0	0.0	5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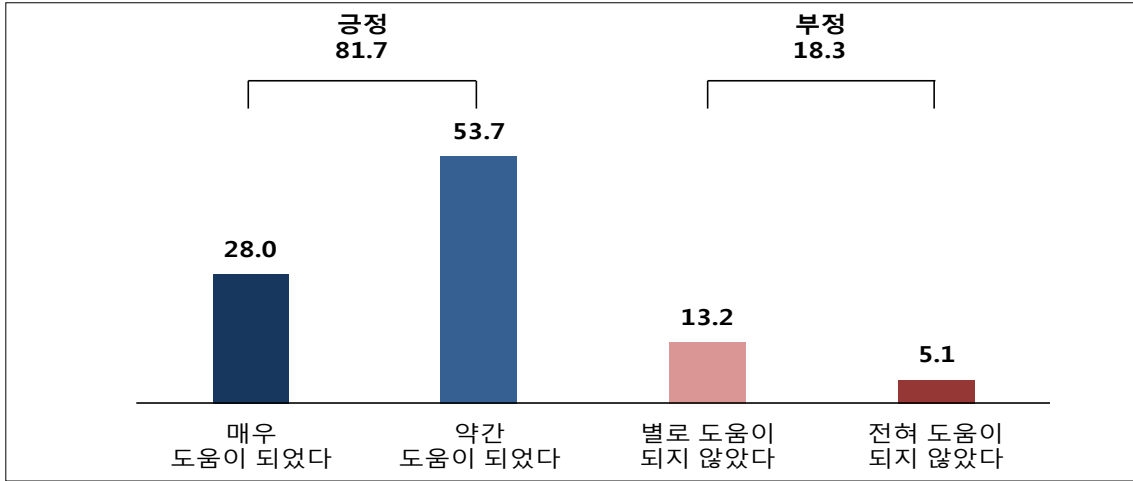
12)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자녀 양육비 경감)

□ 자녀장려금이 응답자의 자녀 양육비를 경감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물어본 결과, 긍정 응답(매우+약간 도움이 되었다)이 81.7%로 부정 응답(전혀+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18.3%) 대비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남

- 자녀장려금 횟수가 많아질수록 자녀 양육비 경감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 또한 높아지는 모습을 보임
- 농어촌(74.3%)보다는 대도시(81.9%)와 중소도시(82.1%)에서 자녀 양육비 경감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부양자녀 수별로는 20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가 긍정 응답 비율이 83.3%로 가장 높았음

[그림 IV-10]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자녀 양육비 경감)

(N=1,000, 단위: %)



<표 IV-46>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자녀 양육비 경감)

(단위: %)

	사례수	긍정			부정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정		
전체	(1,000)	28.0	53.7	81.7	13.2	5.1	18.3	
연령대	20대	(8)	25.0	25.0	50.0	50.0	0.0	50.0
	30대	(583)	26.2	55.9	82.2	12.0	5.8	17.8
	40대	(347)	30.3	50.7	81.0	15.0	4.0	19.0
	50대 이상	(62)	32.3	53.2	85.5	9.7	4.8	14.5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25.1	55.2	80.3	14.6	5.2	19.7
	2명	(459)	30.5	52.7	83.2	11.8	5.0	16.8
	3명	(66)	31.8	50.0	81.8	13.6	4.5	18.2
	4명 이상	(9)	22.2	55.6	77.8	11.1	11.1	22.2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21.2	56.5	77.7	14.5	7.8	22.3
	2회	(293)	31.7	51.5	83.3	13.0	3.8	16.7
	3회	(216)	27.8	53.2	81.0	15.3	3.7	19.0
	4회	(132)	38.6	51.5	90.2	6.8	3.0	9.8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692)	27.7	54.2	81.9	4.3	81.9	18.1
	중소도시	(273)	29.3	52.7	82.1	6.6	82.1	17.9
	농어촌	(35)	22.9	51.4	74.3	8.6	74.3	25.7
주택 보유형태	무주택	(732)	27.9	53.3	81.1	5.5	81.1	18.9
	1주택보유	(268)	28.4	54.9	83.2	4.1	83.2	16.8
주소득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816)	28.4	52.5	80.9	4.7	80.9	19.1
	임시/일용직	(63)	28.6	58.7	87.3	7.9	87.3	12.7
	자영업	(83)	26.5	61.4	88.0	2.4	88.0	12.0
	실업	(34)	20.6	52.9	73.5	17.6	73.5	26.5
	기타	(4)	25.0	75.0	100.0	0.0	100.0	0.0

### 13)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출산장려 효과)

□ 자녀장려금이 응답자의 출산장려 효과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긍정 응답(매우+약간 도움이 되었다)은 56.3%로 부정 응답(전혀+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43.7%)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 출산장려에 보다 관심이 많을 20대~30대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각각 62.5%, 58.5%로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만 20세 미만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66.7%)와 자녀장려금을 매년(4회) 수급한 경우(65.9%)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긍정 응답 비율이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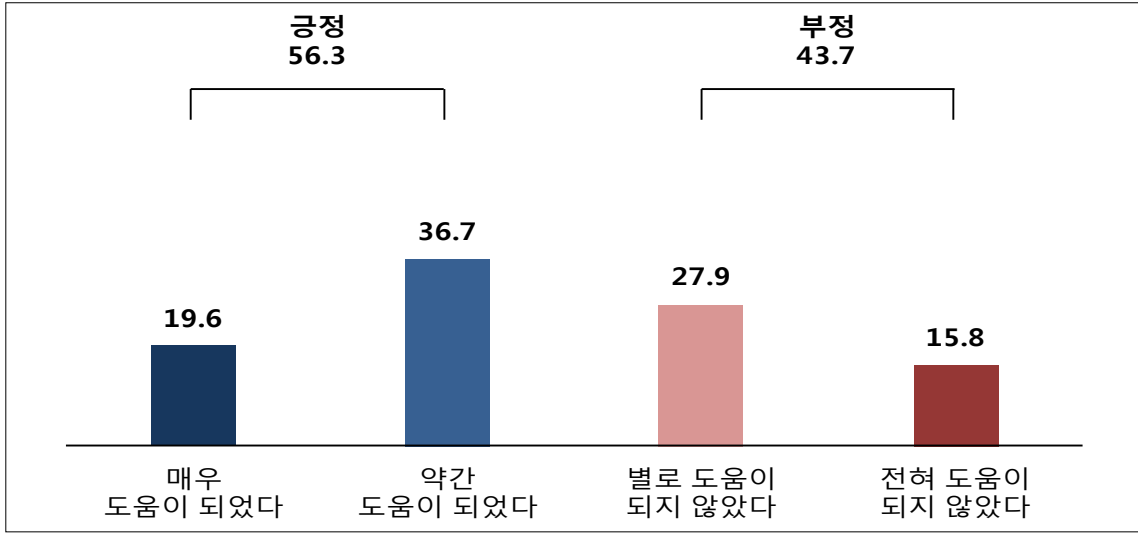
<표 IV-47>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출산장려 효과)

(단위: %)

	사례수	긍정			부정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체	(1,000)	19.6	36.7	56.3	27.9	15.8	43.7	
연령대	20대	(8)	12.5	50.0	62.5	37.5	0.0	37.5
	30대	(583)	20.6	37.9	58.5	27.1	14.4	41.5
	40대	(347)	17.9	35.2	53.0	29.4	17.6	47.0
	50대 이상	(62)	21.0	32.3	53.2	25.8	21.0	46.8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18.9	35.2	54.1	28.3	17.6	45.9
	2명	(459)	21.6	37.9	59.5	27.5	13.1	40.5
	3명	(66)	13.6	34.8	48.5	28.8	22.7	51.5
	4명 이상	(9)	0.0	66.7	66.7	22.2	11.1	33.3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17.0	39.0	56.0	28.1	15.9	44.0
	2회	(293)	20.5	35.2	55.6	29.4	15.0	44.4
	3회	(216)	21.8	30.1	51.9	30.1	18.1	48.1
	4회	(132)	21.2	44.7	65.9	20.5	13.6	34.1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692)	20.2	37.6	57.8	27.9	14.3	42.2
	중소도시	(273)	18.7	34.1	52.7	29.3	17.9	47.3
	농어촌	(35)	14.3	40.0	54.3	17.1	28.6	45.7
주택 보유형태	무주택	(732)	18.9	37.6	56.4	27.2	16.4	43.6
	1주택보유	(268)	21.6	34.3	56.0	29.9	14.2	44.0
주소득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816)	19.6	35.5	55.1	29.2	15.7	44.9
	임시/일용직	(63)	15.9	31.7	47.6	27.0	25.4	52.4
	자영업	(83)	22.9	47.0	69.9	20.5	9.6	30.1
	실업	(34)	20.6	44.1	64.7	17.6	17.6	35.3
	기타	(4)	0.0	75.0	75.0	25.0	0.0	25.0

[그림 IV-11]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출산장려 효과)

(N=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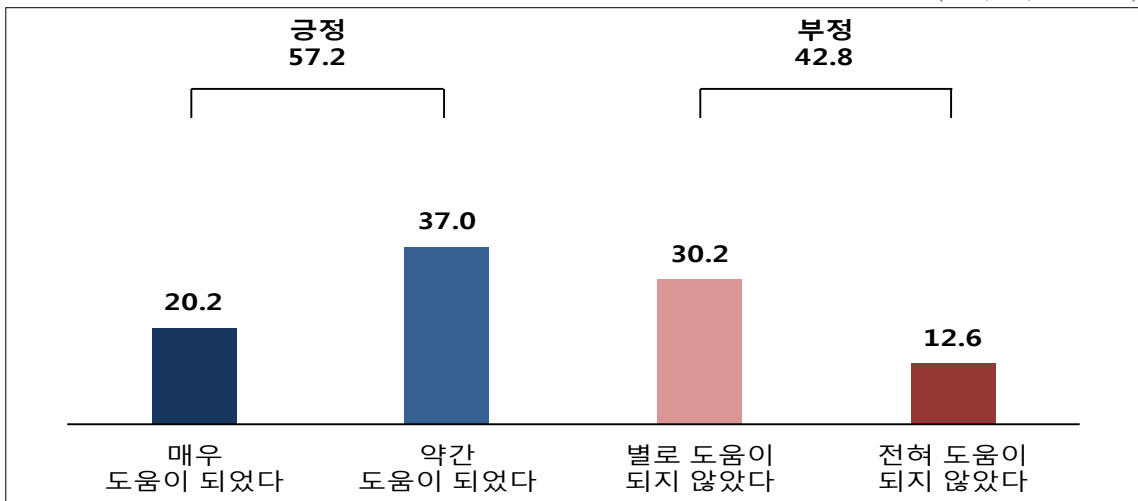


14)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근로활동 참여)

- 자녀장려금의 근로활동 참여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매우+약간 도움이 되었다)은 57.2%, 부정 응답(전혀+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은 42.8%로 출산장려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 모습을 보임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66.1%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IV-12]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근로활동 참여)

(N=1,000, 단위: %)



- 또한 대도시에서의 긍정 응답 비율이 60.0%로 중소도시(50.9%)와 농어촌(51.4%)에 비해 높은 모습을 보임
- 주소득자 경제활동 참여상태별로는 자영업의 경우가 67.5%의 긍정 응답 비율을 보이며, 임금근로자의 긍정 응답 비율(상용직 55.5%, 임시/일용직 57.1%)보다 높게 나타남

<표 IV-48>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근로활동 참여)

(단위: %)

	사례수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긍정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정	
전체	(1,000)	20.2	37.0	57.2	30.2	12.6	42.8	
연령대	20대	(8)	0.0	62.5	62.5	37.5	0.0	37.5
	30대	(583)	19.9	37.0	56.9	30.7	12.3	43.1
	40대	(347)	20.7	35.2	55.9	30.3	13.8	44.1
	50대 이상	(62)	22.6	43.5	66.1	24.2	9.7	33.9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20.0	36.7	56.7	31.1	12.2	43.3
	2명	(459)	21.1	38.3	59.5	27.9	12.6	40.5
	3명	(66)	18.2	28.8	47.0	39.4	13.6	53.0
	4명 이상	(9)	0.0	44.4	44.4	33.3	22.2	55.6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15.6	36.5	52.1	32.0	15.9	47.9
	2회	(293)	23.9	37.2	61.1	28.7	10.2	38.9
	3회	(216)	20.8	36.6	57.4	29.6	13.0	42.6
	4회	(132)	23.5	38.6	62.1	29.5	8.3	37.9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692)	21.2	38.7	60.0	29.3	10.7	40.0
	중소도시	(273)	18.3	32.6	50.9	33.7	15.4	49.1
	농어촌	(35)	14.3	37.1	51.4	20.0	28.6	48.6
주택 보유형태	무주택	(732)	19.1	37.4	56.6	31.3	12.2	43.4
	1주택보유	(268)	23.1	35.8	59.0	27.2	13.8	41.0
주소득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816)	20.5	35.0	55.5	31.5	13.0	44.5
	임시/일용직	(63)	20.6	36.5	57.1	33.3	9.5	42.9
	자영업	(83)	21.7	45.8	67.5	24.1	8.4	32.5
	실업	(34)	11.8	58.8	70.6	11.8	17.6	29.4
	기타	(4)	0.0	75.0	75.0	0.0	25.0	25.0

15)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매우+약간 도움이 되었다)이 52.1%, 부정 응답(전혀+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은 47.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자녀장려금을 4회 수급한 경우, 긍정 응답 비율이 61.4%였으며, 3회 이하 수급한 경우보다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의 긍정 응답 비율이 54.2%로 중소도시(47.3%)와 농어촌(48.6%) 대비 높은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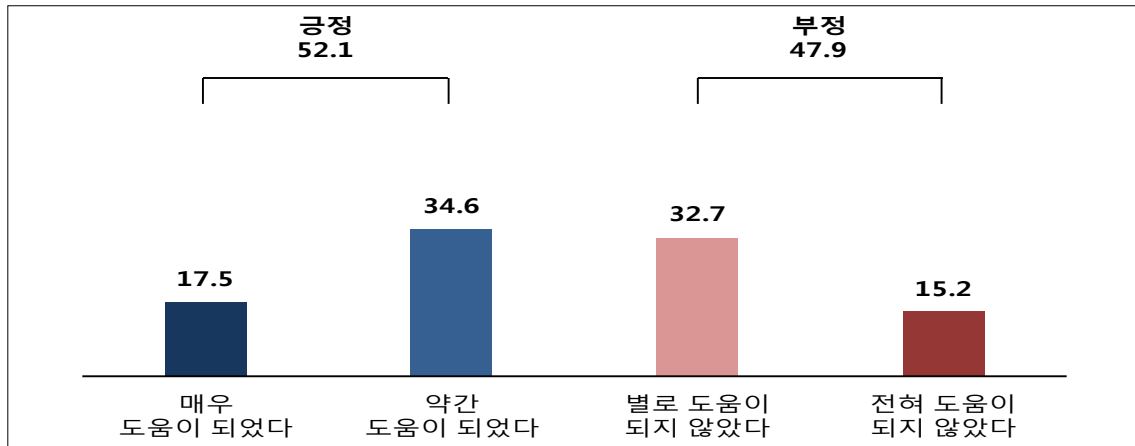
<표 IV-49>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단위: %)

	사례수	긍정			부정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체	(1,000)	17.5	34.6	52.1	32.7	15.2	47.9	
연령대	20대	(8)	0.0	62.5	62.5	25.0	12.5	37.5
	30대	(583)	17.5	35.7	53.2	31.7	15.1	46.8
	40대	(347)	17.0	31.4	48.4	35.4	16.1	51.6
	50대 이상	(62)	22.6	38.7	61.3	27.4	11.3	38.7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16.7	34.1	50.9	34.3	14.8	49.1
	2명	(459)	18.7	34.9	53.6	32.0	14.4	46.4
	3명	(66)	15.2	36.4	51.5	27.3	21.2	48.5
	4명 이상	(9)	11.1	33.3	44.4	22.2	33.3	55.6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13.6	32.0	45.7	37.6	16.7	54.3
	2회	(293)	18.1	37.5	55.6	30.4	14.0	44.4
	3회	(216)	19.0	33.3	52.3	32.4	15.3	47.7
	4회	(132)	24.2	37.1	61.4	25.0	13.6	38.6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692)	17.9	36.3	54.2	32.7	13.2	45.8
	중소도시	(273)	16.5	30.8	47.3	34.4	18.3	52.7
	농어촌	(35)	17.1	31.4	48.6	20.0	31.4	51.4
주택 보유형태	무주택	(732)	17.3	33.9	51.2	33.1	15.7	48.8
	1주택보유	(268)	17.9	36.6	54.5	31.7	13.8	45.5
주소득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816)	17.6	33.0	50.6	33.9	15.4	49.4
	임시/일용직	(63)	15.9	39.7	55.6	25.4	19.0	44.4
	자영업	(83)	20.5	42.2	62.7	28.9	8.4	37.3
	실업	(34)	11.8	41.2	52.9	29.4	17.6	47.1
	기타	(4)	0.0	75.0	75.0	0.0	25.0	25.0

[그림 IV-13] 자녀장려금 절대적 도움 정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N=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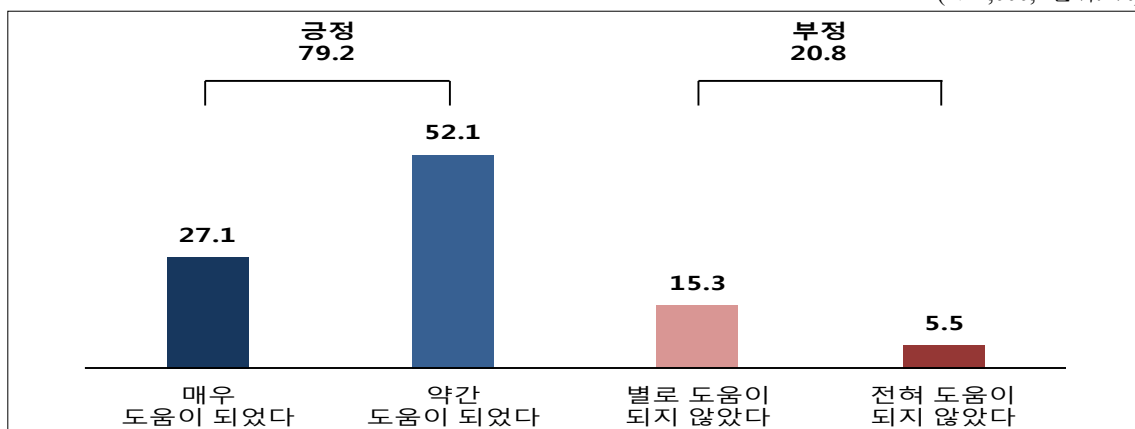
### 16)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자녀 양육비 경감)

□ 다른 지원 제도와 비교했을 때 자녀장려금이 응답자의 자녀 양육비를 경감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긍정 응답(매우+약간 도움이 되었다)이 79.2%로 부정 응답(전혀+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0.8%) 대비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남

- 20세 미만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긍정 응답 비율이 88.9%로 3명 이하인 경우보다 큰 차이로 높게 조사됨
- 농어촌(68.6%)보다는 대도시(79.5%)와 중소도시(79.9%)에서 자녀 양육비 경감에 대한 상대적 도움 정도의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IV-14]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자녀 양육비 경감)

(N=1,000, 단위: %)



<표 IV-50>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자녀 양육비 경감)

(단위: %)

	사례수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긍정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정	
전체	(1,000)	27.1	52.1	79.2	15.3	5.5	20.8	
연령대	20대	(8)	12.5	62.5	75.0	25.0	0.0	25.0
	30대	(583)	24.5	55.7	80.3	13.6	6.2	19.7
	40대	(347)	31.4	45.8	77.2	17.9	4.9	22.8
	50대 이상	(62)	29.0	51.6	80.6	16.1	3.2	19.4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23.6	54.5	78.1	15.9	6.0	21.9
	2명	(459)	30.3	50.8	81.0	14.2	4.8	19.0
	3명	(66)	30.3	42.4	72.7	21.2	6.1	27.3
	4명 이상	(9)	22.2	66.7	88.9	0.0	11.1	11.1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19.5	56.0	75.5	16.2	8.4	24.5
	2회	(293)	31.4	49.1	80.5	15.7	3.8	19.5
	3회	(216)	28.2	50.0	78.2	17.1	4.6	21.8
	4회	(132)	36.4	51.5	87.9	9.1	3.0	12.1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692)	27.6	51.9	79.5	15.9	4.6	20.5
	중소도시	(273)	26.7	53.1	79.9	13.2	7.0	20.1
	농어촌	(35)	20.0	48.6	68.6	20.0	11.4	31.4
주택 보유형태	무주택	(732)	26.5	52.9	79.4	14.8	5.9	20.6
	1주택보유	(268)	28.7	50.0	78.7	16.8	4.5	21.3
주소득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816)	27.3	51.8	79.2	15.7	5.1	20.8
	임시/일용직	(63)	25.4	49.2	74.6	17.5	7.9	25.4
	자영업	(83)	30.1	55.4	85.5	9.6	4.8	14.5
	실업	(34)	17.6	55.9	73.5	14.7	11.8	26.5
	기타	(4)	25.0	50.0	75.0	25.0	0.0	25.0

17)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출산장려 효과)

- 타 제도 대비 자녀장려금이 출산장려 효과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물어본 결과, 긍정 응답(매우+약간 도움이 되었다)이 56.8%로 부정 응답(전혀+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43.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긍정 응답 비율 58.8%로 타 연령대 대비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부양자녀 수별로는 20세 미만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긍정 응답 비율이 66.7%로 높은 모습을 보임
- 또한 자녀장려금 수급 횟수가 4회인 경우 66.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급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보다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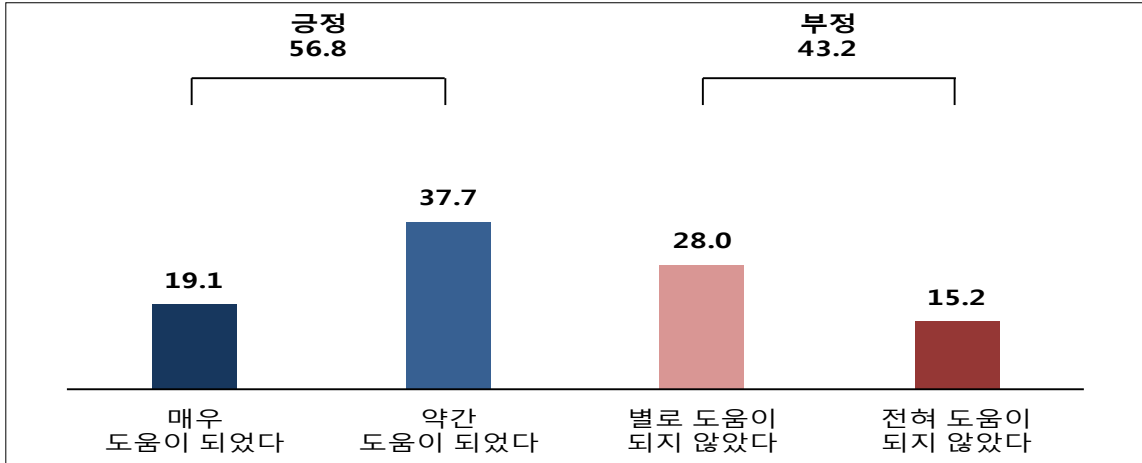
<표 IV-51>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출산장려 효과)

(단위: %)

	사례수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긍정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정	
전체	(1,000)	19.1	37.7	56.8	28.0	15.2	43.2	
연령대	20대	(8)	12.5	37.5	50.0	50.0	0.0	50.0
	30대	(583)	19.9	38.9	58.8	26.9	14.2	41.2
	40대	(347)	17.6	36.3	53.9	29.7	16.4	46.1
	50대 이상	(62)	21.0	33.9	54.8	25.8	19.4	45.2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17.6	37.6	55.2	29.6	15.2	44.8
	2명	(459)	21.4	38.1	59.5	26.1	14.4	40.5
	3명	(66)	15.2	33.3	48.5	30.3	21.2	51.5
	4명 이상	(9)	11.1	55.6	66.7	22.2	11.1	33.3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16.4	38.7	55.2	30.6	14.2	44.8
	2회	(293)	19.8	35.8	55.6	28.7	15.7	44.4
	3회	(216)	17.6	37.5	55.1	27.8	17.1	44.9
	4회	(132)	27.3	39.4	66.7	19.7	13.6	33.3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692)	20.1	39.3	59.4	28.0	12.6	40.6
	중소도시	(273)	17.2	34.1	51.3	28.6	20.1	48.7
	농어촌	(35)	14.3	34.3	48.6	22.9	28.6	51.4
주택 보유형태	무주택	(732)	19.4	37.0	56.4	27.7	15.8	43.6
	1주택보유	(268)	18.3	39.6	57.8	28.7	13.4	42.2
주소득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816)	18.5	37.1	55.6	29.3	15.1	44.4
	임시/일용직	(63)	14.3	31.7	46.0	31.7	22.2	54.0
	자영업	(83)	27.7	47.0	74.7	12.0	13.3	25.3
	실업	(34)	23.5	35.3	58.8	29.4	11.8	41.2
	기타	(4)	0.0	75.0	75.0	25.0	0.0	25.0

[그림 IV-15]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출산장려 효과)

(N=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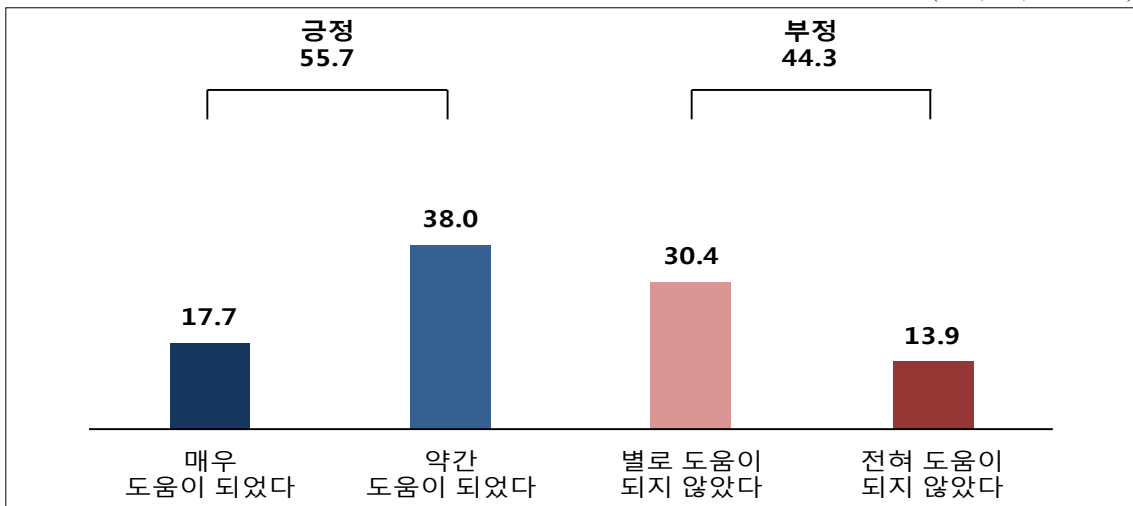


18)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근로활동 참여)

- 다른 제도와 비교해서 자녀장려금이 근로활동 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긍정 응답(매우+약간 도움이 되었다)이 55.7%로 부정 응답(전혀+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44.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자녀장려금 수급 횟수가 많을수록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녀장려금을 매년(4회) 수급한 응답자의 경우 65.2%가 근로활동 참여에 대한 상대적 도움 정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함

[그림 IV-16]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근로활동 참여)

(N=1,000, 단위: %)



- 부양자녀 수에 따른 긍정 응답 비율을 비교했을 때에도,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66.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3명 이하인 경우보다 큰 차이로 높았음
- 임근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53.6%, 임시/일용직 57.1%로 자영업(69.9%) 대비 긍정 응답 비율이 낮은 모습을 보임

<표 IV-52>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근로활동 참여)

(단위: %)

	사례수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긍정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정	
전체	(1,000)	17.7	38.0	55.7	30.4	13.9	44.3	
연령대	20대	(8)	0.0	62.5	62.5	37.5	0.0	37.5
	30대	(583)	17.2	37.9	55.1	32.1	12.9	44.9
	40대	(347)	17.9	36.0	53.9	30.0	16.1	46.1
	50대 이상	(62)	24.2	46.8	71.0	16.1	12.9	29.0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15.5	37.6	53.0	33.0	13.9	47.0
	2명	(459)	20.7	38.6	59.3	27.0	13.7	40.7
	3명	(66)	13.6	34.8	48.5	37.9	13.6	51.5
	4명 이상	(9)	11.1	55.6	66.7	11.1	22.2	33.3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15.0	36.2	51.3	34.0	14.8	48.7
	2회	(293)	18.4	38.2	56.7	32.1	11.3	43.3
	3회	(216)	17.1	38.9	56.0	27.8	16.2	44.0
	4회	(132)	24.2	40.9	65.2	21.2	13.6	34.8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692)	19.2	38.7	57.9	30.3	11.7	42.1
	중소도시	(273)	14.7	36.3	50.9	31.5	17.6	49.1
	농어촌	(35)	11.4	37.1	48.6	22.9	28.6	51.4
주택 보유형태	무주택	(732)	16.5	37.6	54.1	31.7	14.2	45.9
	1주택보유	(268)	20.9	39.2	60.1	26.9	13.1	39.9
주소득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816)	16.8	36.8	53.6	32.4	14.1	46.4
	임시/일용직	(63)	20.6	36.5	57.1	27.0	15.9	42.9
	자영업	(83)	22.9	47.0	69.9	19.3	10.8	30.1
	실업	(34)	23.5	44.1	67.6	20.6	11.8	32.4
	기타	(4)	0.0	75.0	75.0	0.0	25.0	25.0

19)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 타 제도 대비 자녀장려금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물어본 결과, 긍정 응답(매우+약간 도움이 되었다)이 52.9%로 부정 응답(전혀+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47.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부양자녀 수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 20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 55.8%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표 IV-53>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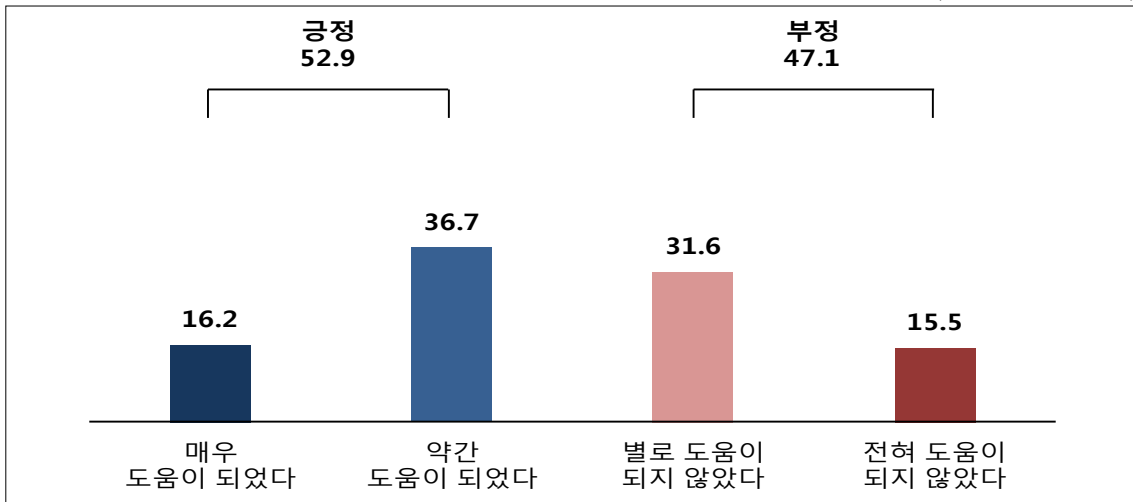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긍정			부정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체		(1,000)	16.2	36.7	52.9	31.6	15.5	47.1
연령대	20대	(8)	0.0	75.0	75.0	25.0	0.0	25.0
	30대	(583)	15.6	38.1	53.7	31.0	15.3	46.3
	40대	(347)	15.6	34.0	49.6	34.0	16.4	50.4
	50대 이상	(62)	27.4	33.9	61.3	24.2	14.5	38.7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14.2	36.5	50.6	34.3	15.0	49.4
	2명	(459)	18.7	37.0	55.8	29.2	15.0	44.2
	3명	(66)	15.2	34.8	50.0	30.3	19.7	50.0
	4명 이상	(9)	0.0	44.4	44.4	22.2	33.3	55.6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12.3	37.6	49.9	35.4	14.8	50.1
	2회	(293)	16.4	36.5	52.9	33.4	13.7	47.1
	3회	(216)	18.5	32.9	51.4	29.6	19.0	48.6
	4회	(132)	22.7	40.9	63.6	20.5	15.9	36.4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692)	16.2	38.4	54.6	31.9	13.4	45.4
	중소도시	(273)	16.1	33.0	49.1	31.9	19.0	50.9
	농어촌	(35)	17.1	31.4	48.6	22.9	28.6	51.4
주택 보유형태	무주택	(732)	15.7	36.6	52.3	31.8	15.8	47.7
	1주택보유	(268)	17.5	36.9	54.5	31.0	14.6	45.5
주소득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816)	15.7	35.7	51.3	32.6	16.1	48.7
	임시/일용직	(63)	22.2	30.2	52.4	30.2	17.5	47.6
	자영업	(83)	19.3	48.2	67.5	22.9	9.6	32.5
	실업	(34)	11.8	41.2	52.9	35.3	11.8	47.1
	기타	(4)	0.0	75.0	75.0	0.0	25.0	25.0

- 또한 자녀장려금을 매년(4회) 수급한 경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에 대해 63.6%가 긍정 응답 비율을 보이며, 3회 이하인 경우보다 긍정 응답 비율이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54.6%로 중소도시(49.1%), 농어촌(48.6%)보다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IV-17] 자녀장려금 상대적 도움 정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N=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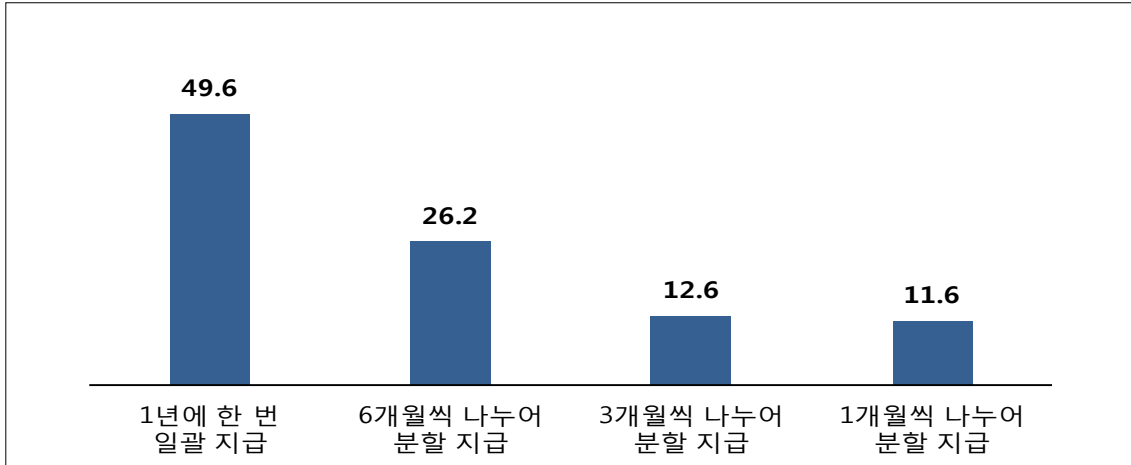


## 20) 자녀장려금 분할 지급에 대한 의견

- 자녀장려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현행대로 1년에 한번 일괄 지급하자는 의견이 49.6%로 절반 가까이 나타남
  - 전체 분할 지급에 대한 의견 50.4% 중 6개월씩 나누어 분할 지급이 26.2%로 가장 높았으며, 3개월씩 나누어 분할 지급(12.6%)과 1개월씩 나누어 분할 지급(11.6%)은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자녀장려금을 4회 수급한 응답자의 경우, 분할 지급에 대한 응답 비율이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1회 수급자는 현행 유지가 54.3%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임
  - 또한, 만 20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와 3명인 경우 각각 현행 유지가 51.9%, 51.5%로 과반을 보인 반면, 자녀가 1명인 경우 현행 유지에 대한 응답 비율은 47.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IV-18] 자녀장려금 분할 지급에 대한 의견

(N=1,000, 단위: %)



<표 IV-54> 2018년도 자녀장려금 분할 지급에 대한 의견

(단위: %)

		사례수	1년에 한 번 일괄 지급 (현행 유지)	6개월씩 나누어 분할 지급	3개월씩 나누어 분할 지급	1개월씩 나누어 분할 지급
전체		(1,000)	49.6	26.2	12.6	11.6
연령대	20대	(8)	12.5	25.0	25.0	37.5
	30대	(583)	49.6	25.2	13.9	11.3
	40대	(347)	50.7	26.5	11.0	11.8
	50대 이상	(62)	48.4	33.9	8.1	9.7
20세 미만 자녀 수	1명	(466)	47.2	29.4	12.0	11.4
	2명	(459)	51.9	23.5	12.0	12.6
	3명	(66)	51.5	22.7	18.2	7.6
	4명 이상	(9)	44.4	22.2	33.3	0.0
자녀 장려금 수급 횟수	1회	(359)	54.3	21.7	10.3	13.6
	2회	(293)	45.4	32.4	13.3	8.9
	3회	(216)	52.3	26.4	11.6	9.7
	4회	(132)	41.7	24.2	18.9	15.2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692)	48.1	26.3	13.6	12.0
	중소도시	(273)	52.4	25.6	10.6	11.4
	농어촌	(35)	57.1	28.6	8.6	5.7
주택 보유형태	무주택	(732)	48.8	26.2	12.8	12.2
	1주택보유	(268)	51.9	26.1	11.9	10.1
주소득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816)	49.6	25.7	12.1	12.5
	임시/일용직	(63)	54.0	30.2	9.5	6.3
	자영업	(83)	43.4	32.5	16.9	7.2
	실업	(34)	52.9	17.6	17.6	11.8
	기타	(4)	75.0	0.0	25.0	0.0

## 나. 자녀장려세제 전문가 조사

### 1)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자녀 양육비 경감)

- 자녀장려금 제도의 자녀 양육비 경감 효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물어본 결과, 긍정적인 의견(매우+약간 그렇다)이 83.5%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전공분야별로는 회계/세무 분야 전문가(77.2%)보다 사회복지(86.5%) 및 경제학(87.9%) 분야 전문가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전문직(90.0%) 및 교수/연구원(88.8%)의 긍정 응답 비율은 높았으나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긍정 응답 비율이 54.5%로 비교적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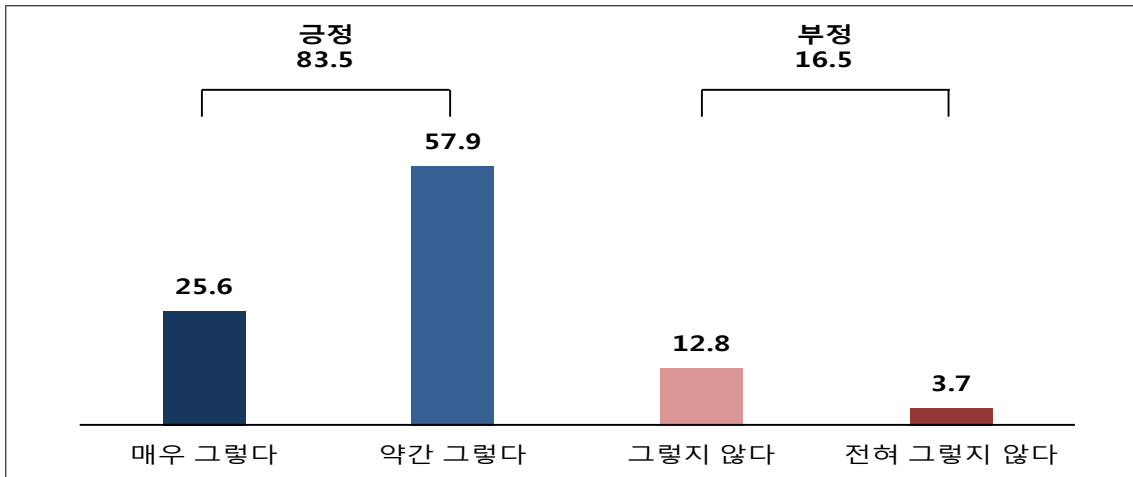
<표 IV-55>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자녀 양육비 경감)

(단위: %)

	사례수	긍정			부정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		
전체	(133)	25.6	57.9	83.5	12.8	3.7	16.5	
전공 분야	회계/세무	(57)	22.8	54.4	77.2	15.8	7.0	22.8
	사회복지	(37)	16.2	70.3	86.5	10.8	2.7	13.5
	경제학	(33)	36.4	51.5	87.9	12.1	0.0	12.1
	기타	(8)	37.5	62.5	100.0	0.0	0.0	0.0
	전문직	(10)	30.0	60.0	90.0	10.0	0.0	10.0
직업	교수/연구원	(80)	35.0	53.8	88.8	11.3	0.0	11.3
	일반기업근무자	(24)	4.2	70.8	75.0	16.7	8.3	25.0
	학생	(6)	16.7	66.7	83.3	16.7	0.0	16.7
	사회복지공무원	(11)	9.1	45.5	54.5	18.2	27.3	45.5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경력 기간	5년 미만	(31)	35.5	41.9	77.4	12.9	9.7
5년~10년 미만	(41)	22.0	70.7	92.7	4.9	2.4	7.3	
10년~15년 미만	(17)	11.8	58.8	70.6	23.5	5.9	29.4	
15년~20년 미만	(18)	16.7	77.8	94.4	5.6	0.0	5.6	
20년 이상	(20)	40.0	35.0	75.0	25.0	0.0	25.0	

[그림 IV-19]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자녀 양육비 경감)

(N=13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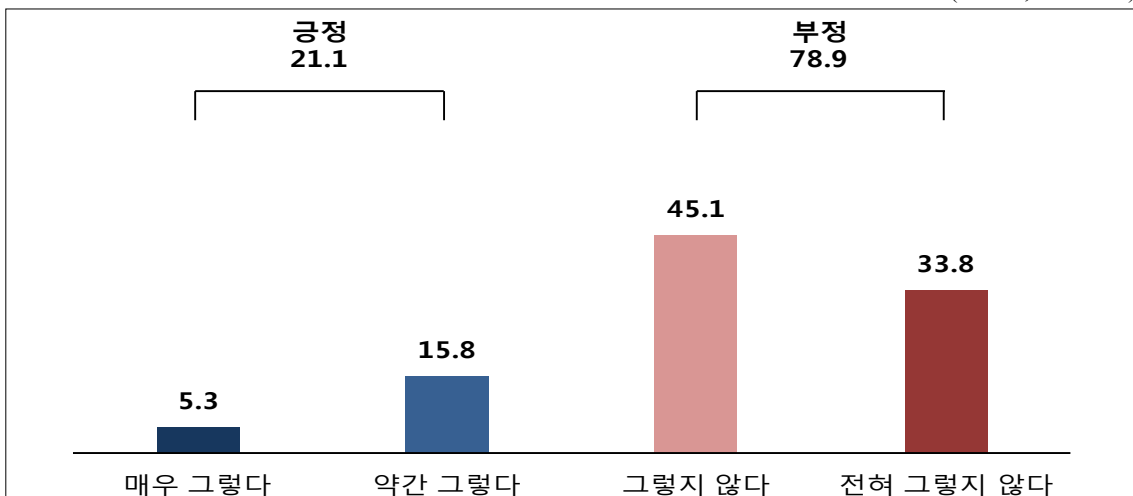


## 2)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출산장려 효과)

- 출산장려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 비율이 21.1%로 자녀 양육비 경감에 대한 응답 대비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남
  - 전공분야별로는 경제학 분야 전문가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15.2%로 특히 낮게 조사됨
  - 직업별로는 전문직(20.0%), 교수/연구원(25.0%), 사회복지 공무원(18.2%) 등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그림 IV-20]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출산장려 효과)

(N=133, 단위: %)



<표 IV-56>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출산장려 효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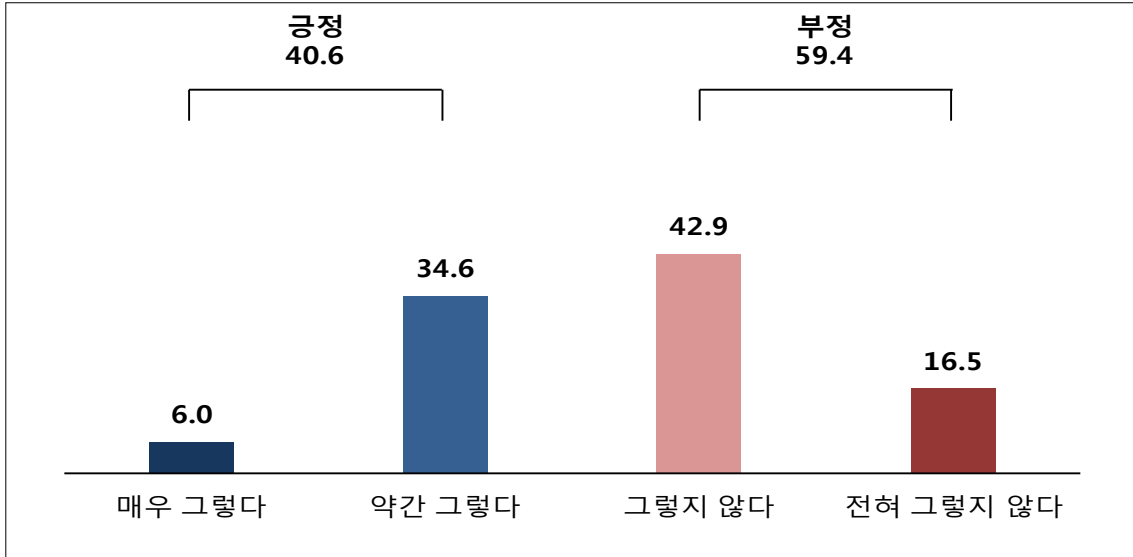
	사례수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긍정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	
전체	(133)	5.3	15.8	21.1	45.1	33.8	78.9	
전공 분야	회계/세무	(57)	5.3	17.5	22.8	43.9	33.3	77.2
	사회복지	(37)	2.7	21.6	24.3	45.9	29.7	75.7
	경제학	(33)	6.1	9.1	15.2	45.5	39.4	84.8
	기타	(8)	12.5	0.0	12.5	50.0	37.5	87.5
직업	전문직	(10)	0.0	20.0	20.0	20.0	60.0	80.0
	교수/연구원	(80)	8.8	16.3	25.0	42.5	32.5	75.0
	일반기업근무자	(24)	0.0	12.5	12.5	58.3	29.2	87.5
	학생	(6)	0.0	16.7	16.7	66.7	16.7	83.3
	사회복지공무원	(11)	0.0	18.2	18.2	45.5	36.4	81.8
	기타	(2)	0.0	0.0	0.0	50.0	50.0	100.0
경력 기간	5년 미만	(31)	3.2	25.8	29.0	35.5	35.5	71.0
	5년~10년 미만	(41)	7.3	12.2	19.5	43.9	36.6	80.5
	10년~15년 미만	(17)	0.0	11.8	11.8	47.1	41.2	88.2
	15년~20년 미만	(18)	0.0	5.6	5.6	55.6	38.9	94.4
	20년 이상	(20)	15.0	20.0	35.0	45.0	20.0	65.0

3)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근로활동 참여)

- 자녀장려금 제도를 통한 근로활동 참여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40.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전공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가 45.9%의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경력기간별로는 2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에서 60.0%의 높은 긍정 응답 비율을 보임

[그림 IV-21]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근로활동 참여)

(N=133, 단위: %)



<표 IV-57>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근로활동 참여)

(단위: %)

	사례수	긍정			부정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부정	
전체	(133)	6.0	34.6	40.6	42.9	16.5	59.4	
전공 분야	회계/세무	(57)	3.5	33.3	36.8	42.1	21.1	63.2
	사회복지	(37)	10.8	35.1	45.9	40.5	13.5	54.1
	경제학	(33)	6.1	33.3	39.4	45.5	15.2	60.6
	기타	(8)	0.0	37.5	37.5	62.5	0.0	62.5
직업	전문직	(10)	0.0	40.0	40.0	40.0	20.0	60.0
	교수/연구원	(80)	8.8	36.3	45.0	40.0	15.0	55.0
	일반기업근무자	(24)	0.0	25.0	25.0	58.3	16.7	75.0
	학생	(6)	16.7	50.0	66.7	33.3	0.0	33.3
	사회복지공무원	(11)	0.0	36.4	36.4	27.3	36.4	63.6
	기타	(2)	0.0	0.0	0.0	100.0	0.0	100.0
경력 기간	5년 미만	(31)	6.5	35.5	41.9	38.7	19.4	58.1
	5년~10년 미만	(41)	7.3	29.3	36.6	41.5	22.0	63.4
	10년~15년 미만	(17)	0.0	17.6	17.6	52.9	29.4	82.4
	15년~20년 미만	(18)	5.6	33.3	38.9	50.0	11.1	61.1
	20년 이상	(20)	5.0	55.0	60.0	40.0	0.0	40.0

#### 4)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효과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8.3%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 비교적 낮은 모습을 보임
  - 전공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43.2%로 전체 응답 대비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27.3%가 긍정 의견을 보여 타 직업군 응답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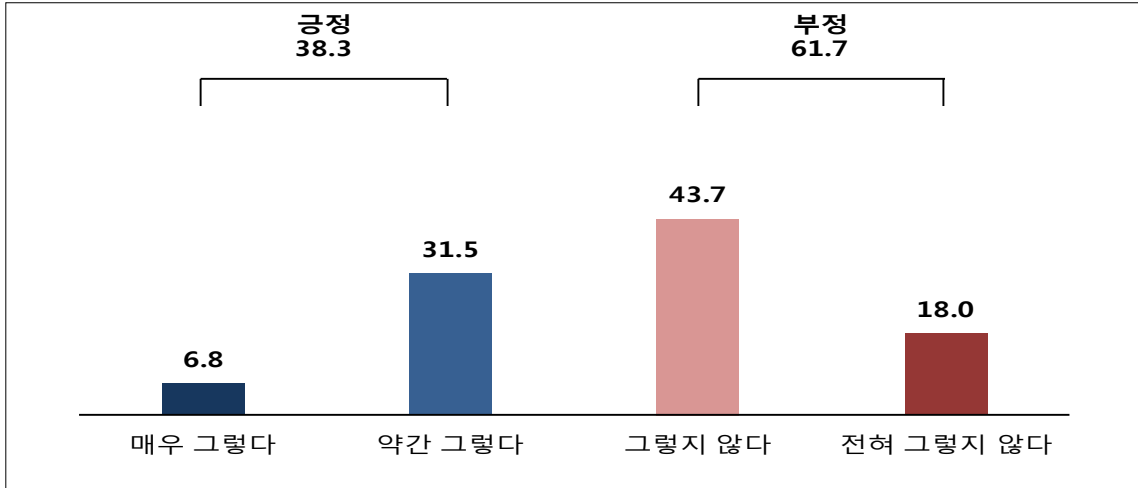
<표 IV-58>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단위: %)

		사례수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긍정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
전체		(133)	6.8	31.5	38.3	43.7	18.0	61.7
전공 분야	회계/세무	(57)	1.8	33.3	35.1	40.4	24.6	64.9
	사회복지	(37)	10.8	32.4	43.2	40.5	16.2	56.8
	경제학	(33)	12.1	24.2	36.4	51.5	12.1	63.6
	기타	(8)	0.0	50.0	50.0	50.0	0.0	50.0
직업	전문직	(10)	0.0	30.0	30.0	40.0	30.0	70.0
	교수/연구원	(80)	8.8	30.0	38.8	47.5	13.8	61.3
	일반기업근무자	(24)	0.0	37.5	37.5	41.7	20.8	62.5
	학생	(6)	16.7	50.0	66.7	33.3	0.0	33.3
	사회복지공무원	(11)	9.1	18.2	27.3	27.3	45.5	72.7
	기타	(2)	0.0	50.0	50.0	50.0	0.0	50.0
경력 기간	5년 미만	(31)	9.7	29.0	38.7	41.9	19.4	61.3
	5년~10년 미만	(41)	7.3	29.3	36.6	39.0	24.4	63.4
	10년~15년 미만	(17)	0.0	17.6	17.6	52.9	29.4	82.4
	15년~20년 미만	(18)	5.6	22.2	27.8	61.1	11.1	72.2
	20년 이상	(20)	5.0	55.0	60.0	35.0	5.0	40.0

[그림 IV-22] 자녀장려금 정책 효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N=13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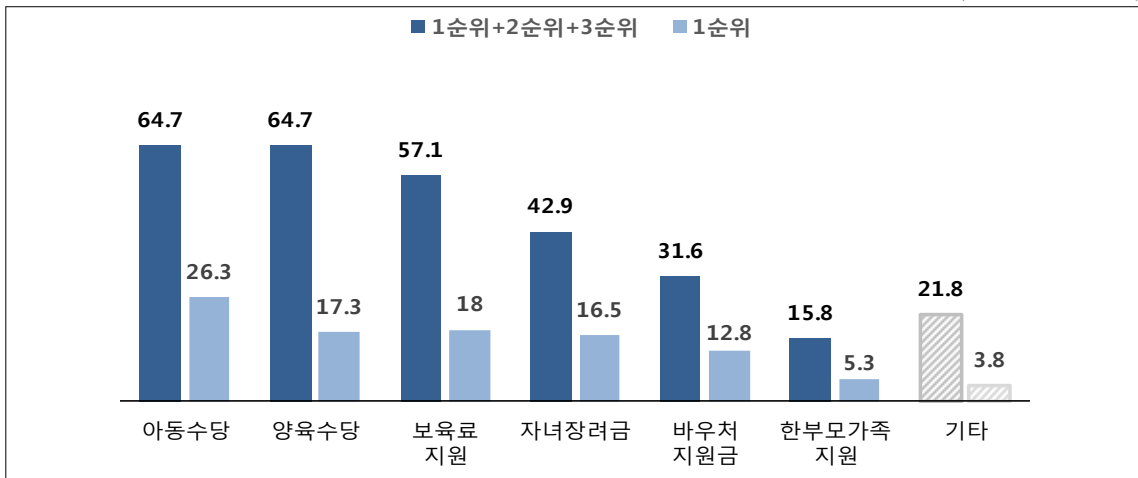


5) 자녀 양육비 경감에 효과가 가장 큰 지원 제도

- 자녀 양육비 경감에 효과가 가장 큰 지원 제도를 물어본 결과, 1+2+3순위 응답 비율 기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각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보육료 지원이 57.1%였으며, 자녀장려금은 42.9%로 4번째로 높게 조사됨
- 전공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에서 자녀장려금에 대한 응답 비율이 27.0%로 타 전공분야 대비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임

[그림 IV-23] 자녀 양육비 경감에 효과가 가장 큰 지원 제도

(N=133, 단위: %)



<표 IV-59> 자녀 양육비 경감에 효과가 가장 큰 지원 제도(1순위+2순위+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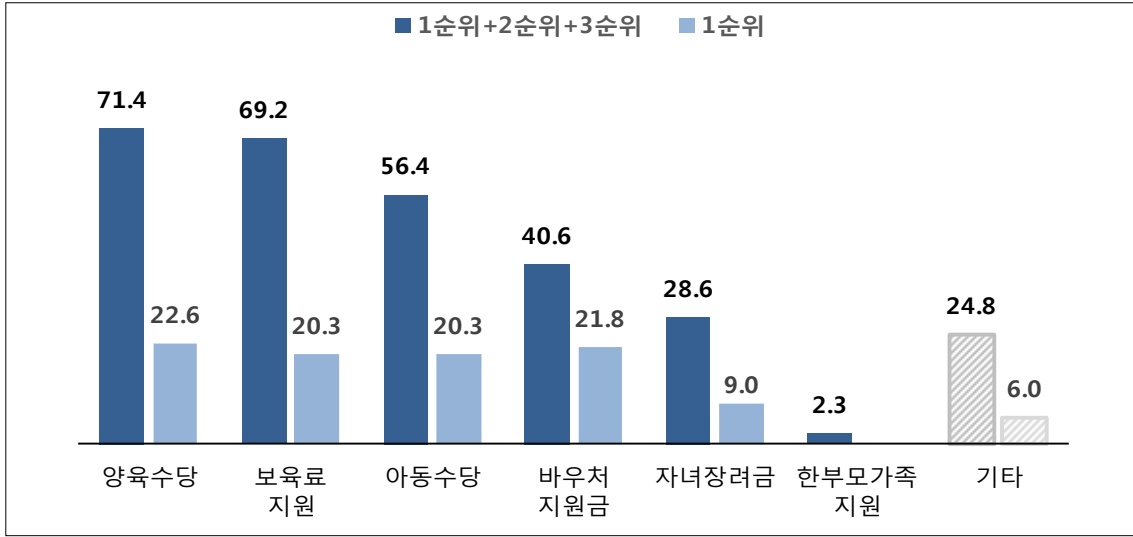
		사례수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자녀장려금	바우처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	기타
전체		(133)	64.7	64.7	57.1	42.9	31.6	15.8	21.8
전공분야	회계/세무	(57)	57.9	63.2	57.9	43.9	33.3	17.5	26.3
	사회복지	(37)	73.0	59.5	70.3	27.0	32.4	10.8	21.6
	경제학	(33)	69.7	69.7	48.5	54.5	24.2	18.2	15.2
	기타	(8)	62.5	75.0	25.0	50.0	50.0	12.5	25.0
직업	전문직	(10)	70.0	30.0	60.0	70.0	60.0	0.0	10.0
	교수/연구원	(80)	67.5	73.8	56.3	45.0	26.3	16.3	15.0
	일반기업근무자	(24)	62.5	58.3	50.0	45.8	25.0	20.8	37.5
	학생	(6)	83.3	33.3	83.3	33.3	50.0	0.0	16.7
	사회복지공무원	(11)	36.4	63.6	63.6	9.1	36.4	18.2	54.5
	기타	(2)	50.0	50.0	50.0	0.0	100.0	50.0	0.0
경력기간	5년 미만	(31)	61.3	71.0	61.3	25.8	25.8	16.1	38.7
	5년~10년 미만	(41)	58.5	75.6	51.2	46.3	36.6	19.5	12.2
	10년~15년 미만	(17)	64.7	58.8	58.8	35.3	29.4	11.8	29.4
	15년~20년 미만	(18)	83.3	77.8	44.4	55.6	11.1	16.7	11.1
	20년 이상	(20)	60.0	35.0	65.0	60.0	45.0	15.0	20.0

6) 출산장려에 효과가 가장 큰 지원 제도

- 출산장려 효과에 대해서는 1+2+3순위 응답 비율 기준,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이 각각 71.4%, 69.2%로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아동수당(56.4%), 바우처 지원금(40.6%)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자녀장려금(28.6%)은 5번째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경력기간이 길수록 자녀장려금 응답 비율 또한 올라가는 경향을 보임

[그림 IV-24] 출산장려에 효과가 가장 큰 지원 제도

(N=133, 단위: %)



<표 IV-60> 출산장려에 효과가 가장 큰 지원 제도(1순위+2순위+3순위)

(단위: %)

		사례수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바우처 지원금	자녀장려금	한부모가족 지원	기타
전체		(133)	71.4	69.2	56.4	40.6	28.6	2.3	24.8
전공 분야	회계/세무	(57)	70.2	66.7	52.6	45.6	22.8	3.5	36.8
	사회복지	(37)	64.9	83.8	67.6	32.4	27.0	2.7	16.2
	경제학	(33)	78.8	66.7	54.5	36.4	33.3	0.0	12.1
	기타	(8)	87.5	37.5	37.5	62.5	50.0	0.0	25.0
직업	전문직	(10)	60.0	60.0	50.0	70.0	30.0	0.0	30.0
	교수/연구원	(80)	73.8	71.3	53.8	38.8	30.0	2.5	21.3
	일반기업근무자	(24)	70.8	58.3	62.5	37.5	37.5	4.2	29.2
	학생	(6)	66.7	83.3	83.3	33.3	33.3	0.0	0.0
	사회복지공무원	(11)	63.6	81.8	45.5	36.4	0.0	0.0	54.5
	기타	(2)	100.0	50.0	100.0	50.0	0.0	0.0	0.0
경력 기간	5년 미만	(31)	71.0	77.4	58.1	41.9	16.1	0.0	29.0
	5년~10년 미만	(41)	70.7	63.4	61.0	41.5	26.8	2.4	24.4
	10년~15년 미만	(17)	58.8	70.6	58.8	35.3	23.5	0.0	35.3
	15년~20년 미만	(18)	88.9	66.7	66.7	27.8	38.9	0.0	11.1
	20년 이상	(20)	70.0	65.0	25.0	55.0	45.0	10.0	30.0

7) 자녀장려금 개편 방안(지급 대상)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관련한 개편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현재보다 (소폭+대폭) 확대하자는 의견이 43.6%로 축소 의견 20.3% 대비 높았음
  - 현행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 또한 36.1%로 비교적 높게 조사됨
  - 전공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에서 확대하자는 의견이 64.9%로 특히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학 분야 전문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51.5%로 과반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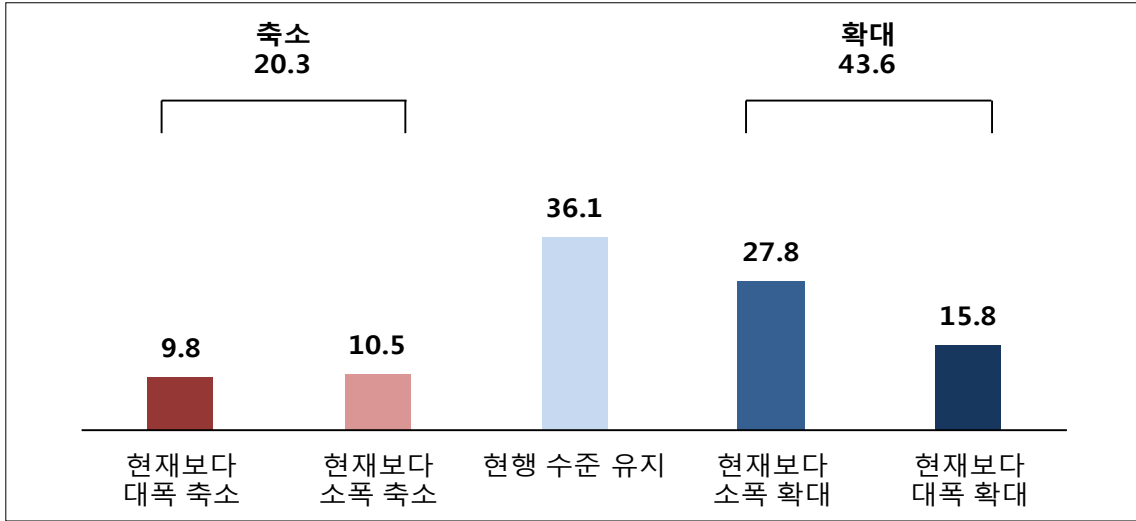
<표 IV-61> 자녀장려금 개편 방안(지급 대상)

(단위: %)

	사례수	현재보다	현재보다	축소	현행 수준 유지	현재보다	현재보다	확대	
		대폭 축소	소폭 축소			소폭 확대	대폭 확대		
전체	(133)	9.8	10.5	20.3	36.1	27.8	15.8	43.6	
전공 분야	회계/세무	(57)	19.3	14.0	33.3	31.6	22.8	12.3	35.1
	사회복지	(37)	2.7	5.4	8.1	27.0	40.5	24.3	64.9
	경제학	(33)	3.0	12.1	15.2	51.5	27.3	6.1	33.3
	기타	(8)	0.0	0.0	0.0	37.5	25.0	37.5	62.5
직업	전문직	(10)	10.0	10.0	20.0	20.0	30.0	30.0	60.0
	교수/연구원	(80)	6.3	10.0	16.3	41.3	26.3	16.3	42.5
	일반기업근무자	(24)	12.5	8.3	20.8	41.7	20.8	16.7	37.5
	학생	(6)	0.0	16.7	16.7	16.7	50.0	16.7	66.7
	사회복지공무원	(11)	36.4	18.2	54.5	9.1	36.4	0.0	36.4
	기타	(2)	0.0	0.0	0.0	50.0	50.0	0.0	50.0
경력 기간	5년 미만	(31)	9.7	12.9	22.6	35.5	25.8	16.1	41.9
	5년~10년 미만	(41)	12.2	9.8	22.0	31.7	26.8	19.5	46.3
	10년~15년 미만	(17)	23.5	5.9	29.4	29.4	29.4	11.8	41.2
	15년~20년 미만	(18)	5.6	11.1	16.7	50.0	27.8	5.6	33.3
	20년 이상	(20)	0.0	10.0	10.0	45.0	25.0	20.0	45.0

[그림 IV-25] 자녀장려금 개편 방안(지급 대상)

(N=13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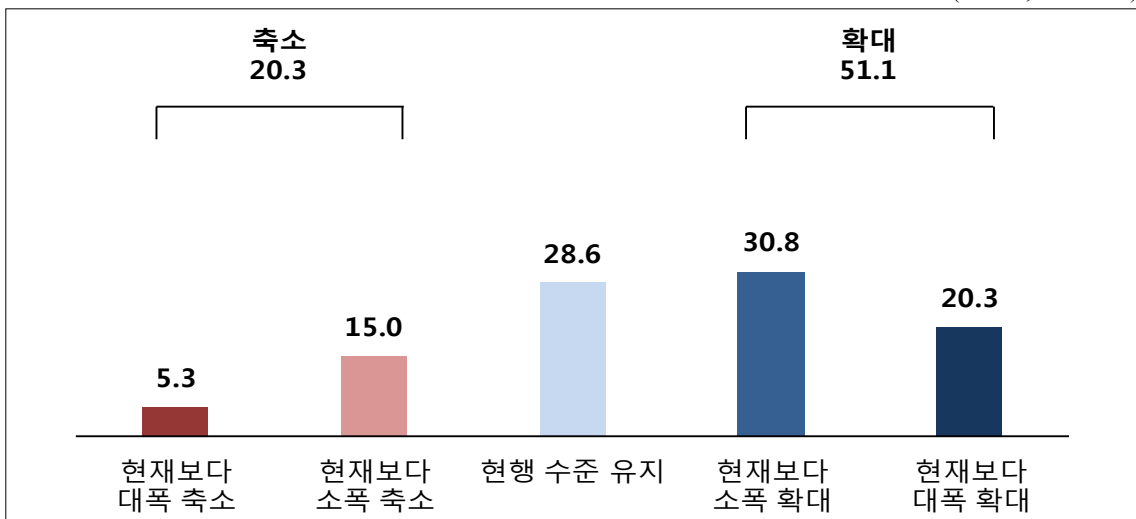


8) 자녀장려금 개편 방안(자녀 1인당 지급액)

- 자녀 1인당 지급액 개편에 대해서는 확대 의견이 51.1%로 절반 수준을 보임
  - 현행 유지(28.6%)와 축소(20.3%) 의견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
  - 전공분야별로는 지급 대상 개편에 대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에서 70.3%의 확대 의견을 보였으며, 경제학 분야 전문가는 현행 유지가 48.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함

[그림 IV-26] 자녀장려금 개편 방안(자녀 1인당 지급액)

(N=133, 단위: %)



<표 IV-62> 자녀장려금 개편 방안(자녀 1인당 지급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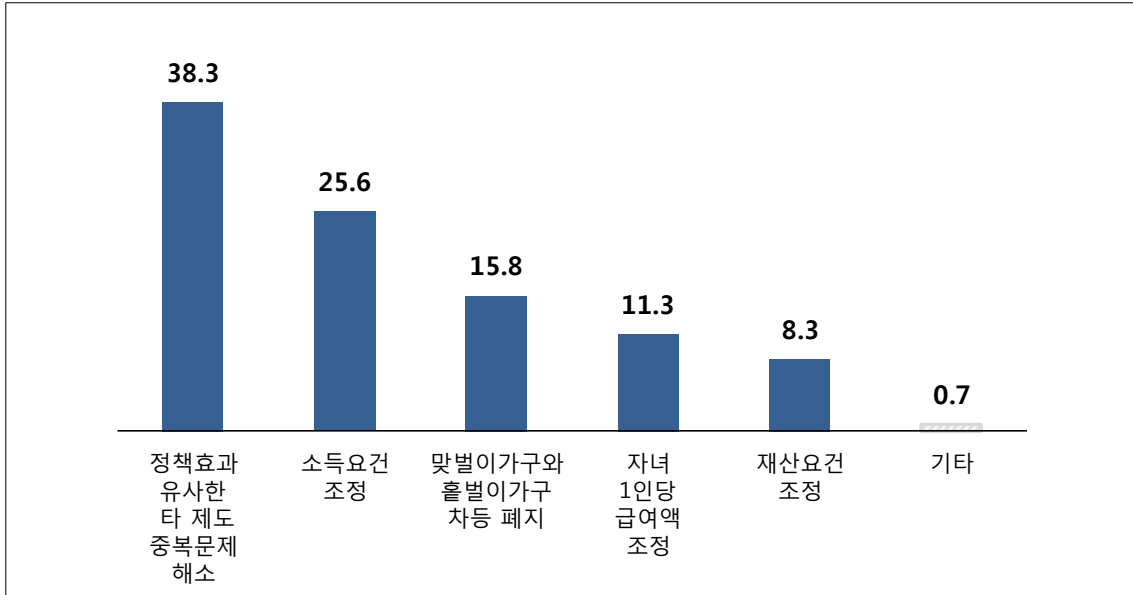
	사례수	현재보다	현재보다	축소	현행 수준 유지	현재보다	현재보다	확대	
		대폭 축소	소폭 축소			소폭 확대	대폭 확대		
전체	(133)	5.3	15.0	20.3	28.6	30.8	20.3	51.1	
전공 분야	회계/세무	(57)	10.5	21.1	31.6	28.1	17.5	22.8	40.4
	사회복지	(37)	2.7	10.8	13.5	16.2	51.4	18.9	70.3
	경제학	(33)	0.0	9.1	9.1	48.5	27.3	15.2	42.4
	기타	(8)	0.0	12.5	12.5	0.0	50.0	37.5	87.5
직업	전문직	(10)	0.0	0.0	0.0	0.0	50.0	50.0	100.0
	교수/연구원	(80)	1.3	16.3	17.5	31.3	31.3	20.0	51.3
	일반기업근무자	(24)	12.5	8.3	20.8	41.7	16.7	20.8	37.5
	학생	(6)	0.0	16.7	16.7	0.0	66.7	16.7	83.3
	사회복지공무원	(11)	27.3	27.3	54.5	27.3	18.2	0.0	18.2
	기타	(2)	0.0	50.0	50.0	0.0	50.0	0.0	50.0
경력 기간	5년 미만	(31)	9.7	16.1	25.8	19.4	38.7	16.1	54.8
	5년~10년 미만	(41)	4.9	14.6	19.5	24.4	26.8	29.3	56.1
	10년~15년 미만	(17)	5.9	23.5	29.4	23.5	35.3	11.8	47.1
	15년~20년 미만	(18)	5.6	16.7	22.2	50.0	16.7	11.1	27.8
	20년 이상	(20)	0.0	5.0	5.0	45.0	25.0	25.0	50.0

9) 현행 자녀장려금 개편 시 가장 중점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

- 자녀장려금 제도 개편 시 중점 수정사항으로는 유사 타 제도와의 중복문제에 대한 지적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요건을 조정해야한다는 의견 또한 25.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홀벌이-맞벌이가구 차등 폐지(15.8%), 자녀 1인당 급여액 조정(1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공분야별로는 회계/세무 분야 전문가에서 소득요건 조정에 대한 응답이 31.6%로 사회복지(18.9%), 경제학(18.2%) 분야 전문가 대비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27] 현행 자녀장려금 개편 시 가장 중점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

(N=133, 단위: %)



<표 IV-63> 현행 자녀장려금 개편 시 가장 중점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

(단위: %)

		사례수	정책효과가 유사한 타 제도와 중복문제 해소	소득요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조정	맞벌이가구 홀벌이가구 차등 폐지	자녀 1인당 급여액 조정	재산요건 (총재산 2억원 미만) 조정	기타
전체		(133)	38.3	25.6	15.8	11.3	8.3	0.7
전공 분야	회계/세무	(57)	40.4	31.6	8.8	10.5	7.0	1.8
	사회복지	(37)	32.4	18.9	24.3	10.8	13.5	0.0
	경제학	(33)	39.4	18.2	21.2	15.2	6.1	0.0
	기타	(8)	37.5	37.5	25.0	0.0	0.0	0.0
직업	전문직	(10)	30.0	50.0	0.0	0.0	20.0	0.0
	교수/연구원	(80)	40.0	28.8	11.3	12.5	7.5	0.0
	일반기업근무자	(24)	33.3	16.7	25.0	12.5	8.3	4.2
	학생	(6)	33.3	16.7	33.3	16.7	0.0	0.0
	사회복지공무원	(11)	45.5	9.1	36.4	9.1	0.0	0.0
	기타	(2)	50.0	0.0	0.0	0.0	50.0	0.0
경력 기간	5년 미만	(31)	35.5	22.6	16.1	22.6	3.2	0.0
	5년~10년 미만	(41)	36.6	22.0	19.5	12.2	9.8	0.0
	10년~15년 미만	(17)	41.2	23.5	11.8	5.9	17.6	0.0
	15년~20년 미만	(18)	38.9	33.3	22.2	0.0	0.0	5.6
	20년 이상	(20)	45.0	35.0	0.0	5.0	15.0	0.0

### 10)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개편 시 걱정 방안

- 소득요건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았음
- 현재 수준 유지 또한 32.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전공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에서 소득기준 상향 조정 응답이 59.5%로 높았으며, 경제학 분야 전문가는 48.5%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점이 특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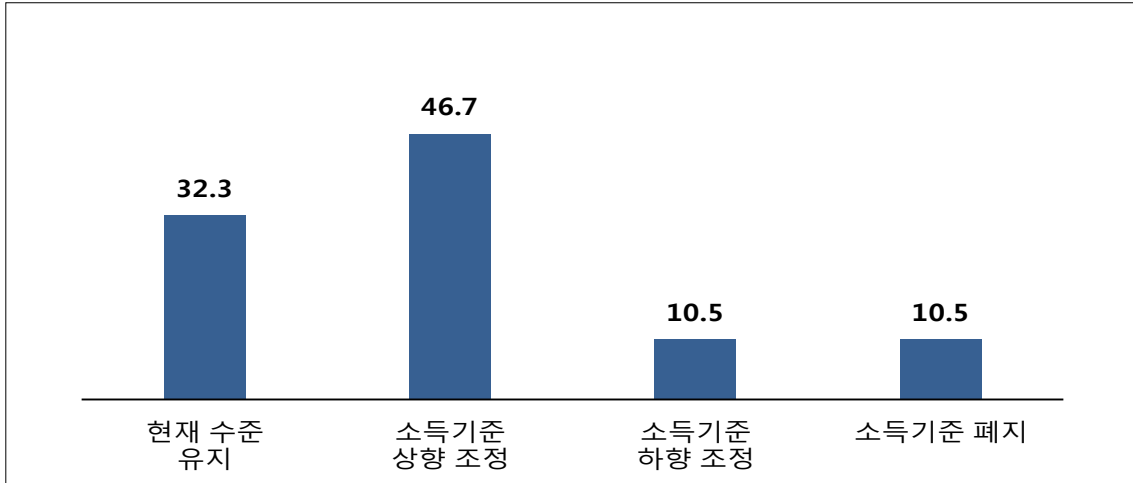
<표 IV-64>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개편 시 걱정 방안

(단위: %)

		사례수	현재 수준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 수준 유지	소득기준 상향 조정	소득기준 하향 조정	소득기준 폐지
전체		(133)	32.3	46.7	10.5	10.5
전공 분야	회계/세무	(57)	33.3	42.1	12.3	12.3
	사회복지	(37)	18.9	59.5	13.5	8.1
	경제학	(33)	48.5	45.5	3.0	3.0
	기타	(8)	12.5	37.5	12.5	37.5
직업	전문직	(10)	10.0	70.0	10.0	10.0
	교수/연구원	(80)	37.5	43.8	7.5	11.3
	일반기업근무자	(24)	37.5	45.8	4.2	12.5
	학생	(6)	0.0	33.3	66.7	0.0
	사회복지공무원	(11)	27.3	54.5	9.1	9.1
	기타	(2)	0.0	50.0	50.0	0.0
경력 기간	5년 미만	(31)	22.6	58.1	3.2	16.1
	5년~10년 미만	(41)	34.1	51.2	7.3	7.3
	10년~15년 미만	(17)	23.5	41.2	17.6	17.6
	15년~20년 미만	(18)	55.6	22.2	11.1	11.1
	20년 이상	(20)	40.0	50.0	5.0	5.0

[그림 IV-28]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개편 시 걱정 방안

(N=13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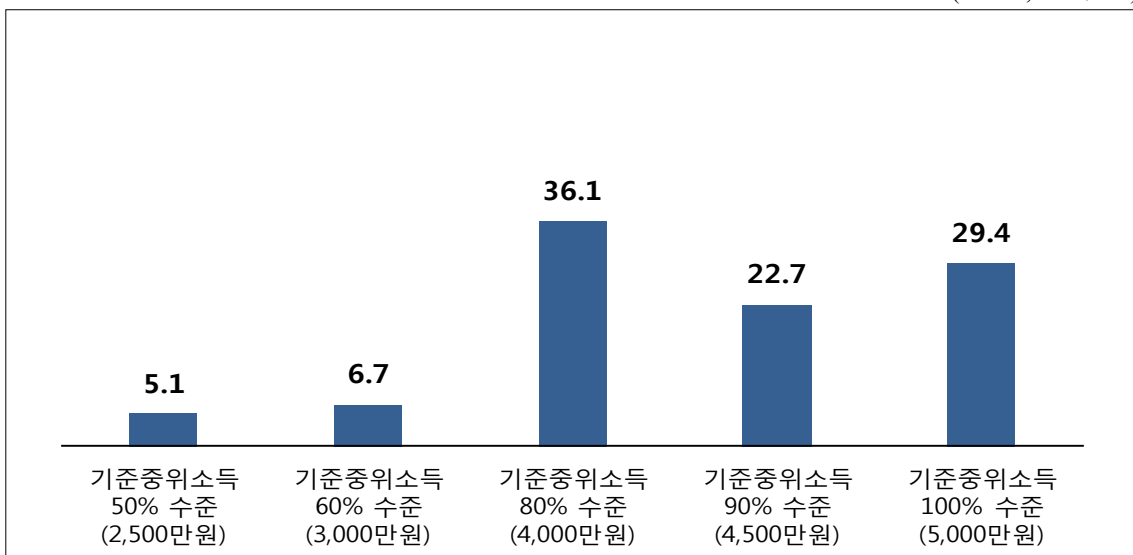


### 11)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걱정 수준

- 소득요건 개편 시 걱정 수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소득요건을 상향 조정 시 기준중위소득의 100% 수준인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29.4%로 가장 높았음
- 기준중위소득의 90% 수준(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 또한 2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IV-29]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걱정 수준

(N=119, 단위: %)



- 전공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1.2%로 타 전공분야 대비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전문직 및 사회복지 공무원에서 기준중위소득의 100% 수준인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66.7%, 40.0%로 높게 나타남

<표 IV-65>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적정 수준

(단위: %)

		사례수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 (2,500만원)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 (3,000만원)	기준 중위소득의 80% 수준 (4,000만원)	기준 중위소득의 90% 수준 (4,500만원)	기준 중위소득의 100% 수준 (5,000만원)
전체		(119)	5.1	6.7	36.1	22.7	29.4
전공 분야	회계/세무	(50)	6.0	8.0	38.0	22.0	26.0
	사회복지	(34)	5.9	8.8	20.6	23.5	41.2
	경제학	(32)	0.0	3.1	50.0	21.9	25.0
	기타	(5)	20.0	0.0	20.0	60.0	0.0
직업	전문직	(9)	11.1	0.0	11.1	11.1	66.7
	교수/연구원	(71)	2.8	5.6	42.3	25.4	23.9
	일반기업근무자	(21)	4.8	0.0	42.9	23.8	28.6
	학생	(6)	16.7	50.0	0.0	0.0	33.3
	사회복지공무원	(10)	10.0	0.0	30.0	20.0	40.0
	기타	(2)	0.0	50.0	0.0	50.0	0.0
경력 기간	5년 미만	(26)	0.0	3.8	26.9	34.6	34.6
	5년~10년 미만	(38)	2.6	5.3	36.8	21.1	34.2
	10년~15년 미만	(14)	14.3	7.1	28.6	21.4	28.6
	15년~20년 미만	(16)	6.3	6.3	62.5	12.5	12.5
	20년 이상	(19)	5.3	0.0	42.1	26.3	26.3

## 12) 맞벌이가구-홀벌이가구 지급체계 통일에 대한 의견

-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 간 차등 지급체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지급체계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69.7%로 높게 나타남
  - 전공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에서 지급체계 통일에 대한 응답이 82.4%로 타 전공분야 대비 높게 나타남
  - 경력기간별로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70% 이상이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 간 지급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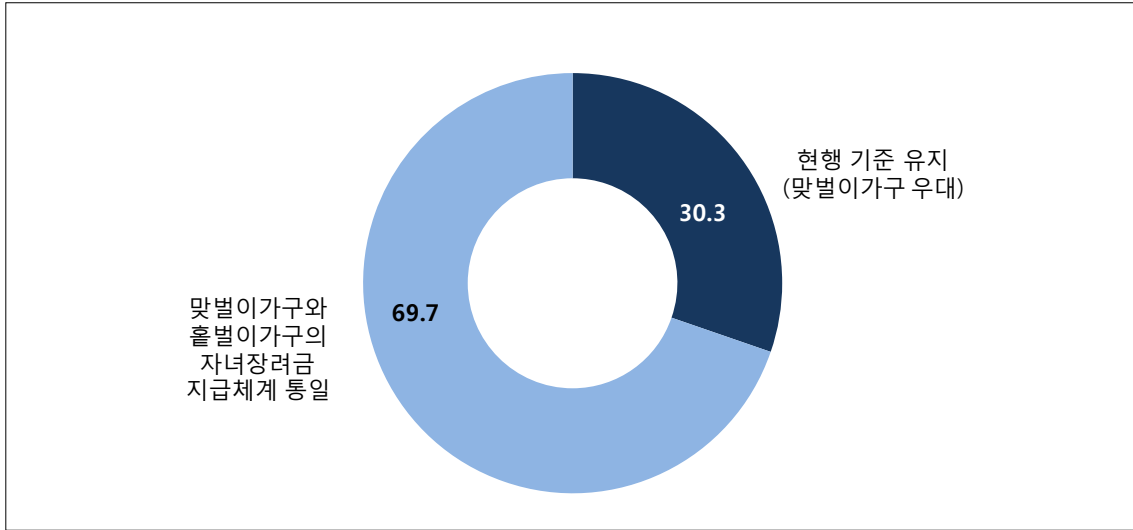
〈표 IV -66〉 맞벌이가구-홀벌이가구 지급체계 통일에 대한 의견

(단위: %)

		사례수	현행 기준 유지 (맞벌이가구 우대)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체계 통일
전체		(119)	30.3	69.7
전공 분야	회계/세무	(50)	34.0	66.0
	사회복지	(34)	17.6	82.4
	경제학	(32)	34.4	65.6
	기타	(5)	40.0	60.0
직업	전문직	(9)	44.4	55.6
	교수/연구원	(71)	29.6	70.4
	일반기업근무자	(21)	28.6	71.4
	학생	(6)	50.0	50.0
	사회복지공무원	(10)	20.0	80.0
	기타	(2)	0.0	100.0
경력 기간	5년 미만	(26)	38.5	61.5
	5년~10년 미만	(38)	31.6	68.4
	10년~15년 미만	(14)	21.4	78.6
	15년~20년 미만	(16)	18.8	81.3
	20년 이상	(19)	26.3	73.7

[그림 IV-30] 맞벌이가구-홀벌이가구 지급체계 통일에 대한 의견

(N=1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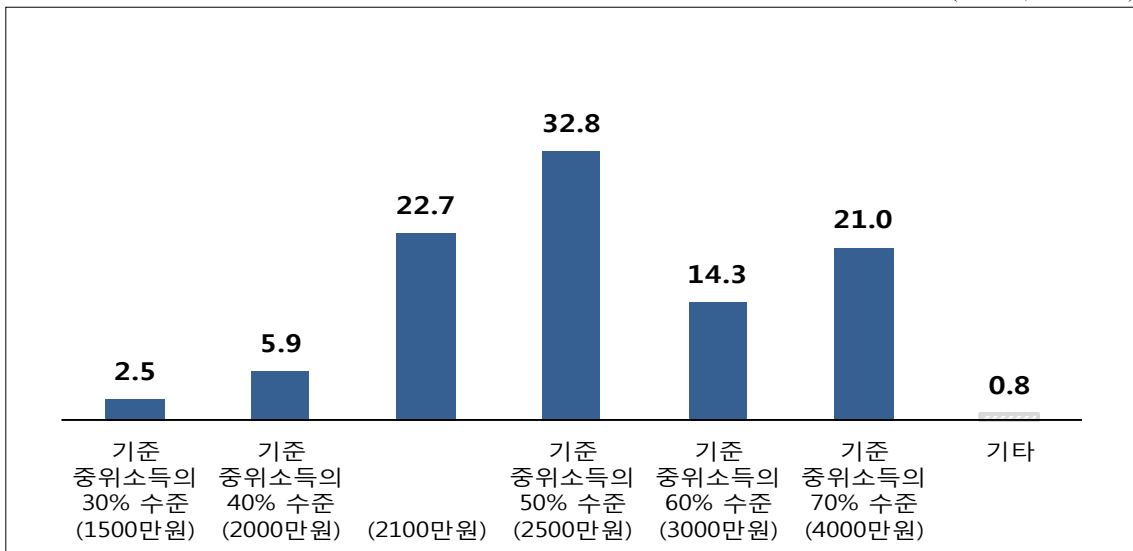


### 13) 홀벌이가구 최대급여액 기준점 적정 수준

- 홀벌이가구의 자녀장려금 최대급여액 적정 기준점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기준중위소득의 50% 수준(2,500만원) 응답이 32.8%로 가장 높았음
- 맞벌이가구에 적용되는 현행 수준만큼 홀벌이가구의 최대급여액 기준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음

[그림 IV-31] 홀벌이가구 최대급여액 기준점 적정 수준

(N=119, 단위: %)



- 홀벌이가구 현행 기준인 2,10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로 2,500만원에 대한 응답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남
- 전공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에서 2,5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11.8%로 타 전공분야 대비 특히 낮게 나타남

<표 IV-67> 홀벌이가구 최대급여액 기준점 적정 수준

(단위: %)

		사례수	기준 중위 소득의 30% 수준 (1,500만원)	기준 중위 소득의 40% 수준 (2,000만원)	기준 중위 소득의 50% 수준 (2,100만원)	기준 중위 소득의 60% 수준 (2,500만원)	기준 중위 소득의 70% 수준 (3,000만원)	기준 중위 소득의 80% 수준 (4,000만원)	기타
전체		(119)	2.5	5.9	22.7	32.8	14.3	21.0	0.8
전공 분야	회계/세무	(50)	2.0	12.0	22.0	42.0	12.0	10.0	0.0
	사회복지	(34)	5.9	2.9	11.8	11.8	20.6	44.1	2.9
	경제학	(32)	0.0	0.0	34.4	40.6	12.5	12.5	0.0
	기타	(5)	0.0	0.0	20.0	40.0	0.0	40.0	0.0
직업	전문직	(9)	0.0	22.2	22.2	11.1	22.2	22.2	0.0
	교수/연구원	(71)	0.0	4.2	21.1	43.7	12.7	16.9	1.4
	일반기업근무자	(21)	4.8	0.0	38.1	23.8	14.3	19.0	0.0
	학생	(6)	16.7	33.3	0.0	0.0	33.3	16.7	0.0
	사회복지공무원	(10)	10.0	0.0	20.0	20.0	0.0	50.0	0.0
	기타	(2)	0.0	0.0	0.0	0.0	50.0	50.0	0.0
경력 기간	5년 미만	(26)	0.0	0.0	26.9	42.3	11.5	19.2	0.0
	5년~10년 미만	(38)	0.0	5.3	21.1	31.6	10.5	31.6	0.0
	10년~15년 미만	(14)	7.1	7.1	21.4	7.1	21.4	28.6	7.1
	15년~20년 미만	(16)	6.3	6.3	31.3	31.3	18.8	6.3	0.0
	20년 이상	(19)	0.0	5.3	21.1	52.6	10.5	10.5	0.0

#### 14) 맞벌이가구 최대급여액 기준점 적정 수준

- 맞벌이가구의 최대급여액 기준점에 대해서는 현행 2,500만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음
- 그다음으로 4,000만원을 상향 조정(26.9%),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17.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공분야 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는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0.0%로 절반을 차지한 반면, 회계/세무 및 경제학 분야 전문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0.0%, 31.3%로 사회복지 전문가(17.6%)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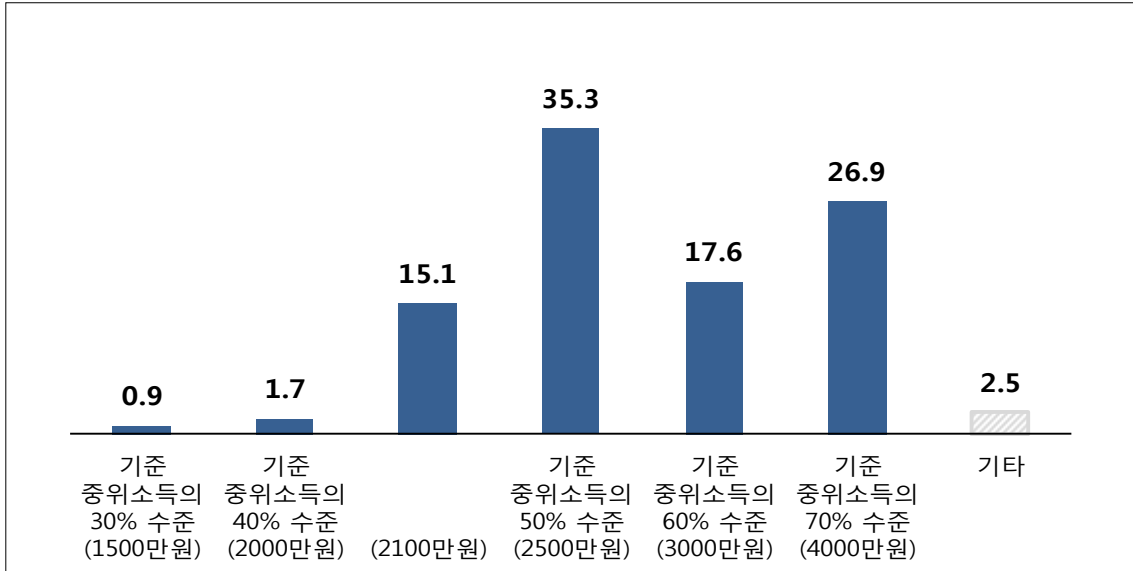
<표 III-68> 맞벌이가구 최대급여액 기준점 적정 수준

(단위: %)

		사례수	기준 중위 소득의 30% 수준 (1,500만원)	기준 중위 소득의 40% 수준 (2,000만원)	기준 중위 소득의 50% 수준 (2,500만원)	기준 중위 소득의 60% 수준 (3,000만원)	기준 중위 소득의 70% 수준 (4,000만원)	기타	
전체		(119)	0.9	1.7	15.1	35.3	17.6	26.9	2.5
전공 분야	회계/세무	(50)	2.0	2.0	16.0	50.0	16.0	12.0	2.0
	사회복지	(34)	0.0	2.9	5.9	17.6	20.6	50.0	2.9
	경제학	(32)	0.0	0.0	25.0	31.3	18.8	21.9	3.1
	기타	(5)	0.0	0.0	0.0	40.0	0.0	60.0	0.0
직업	전문직	(9)	0.0	0.0	11.1	33.3	22.2	33.3	0.0
	교수/연구원	(71)	0.0	1.4	15.5	40.8	16.9	21.1	4.2
	일반기업근무자	(21)	4.8	0.0	19.0	28.6	14.3	33.3	0.0
	학생	(6)	0.0	0.0	16.7	16.7	50.0	16.7	0.0
	사회복지공무원	(10)	0.0	10.0	10.0	30.0	0.0	50.0	0.0
	기타	(2)	0.0	0.0	0.0	0.0	50.0	50.0	0.0
경력 기간	5년 미만	(26)	0.0	0.0	15.4	30.8	15.4	38.5	0.0
	5년~10년 미만	(38)	0.0	0.0	15.8	31.6	15.8	31.6	5.3
	10년~15년 미만	(14)	0.0	7.1	21.4	14.3	14.3	35.7	7.1
	15년~20년 미만	(16)	6.3	6.3	18.8	43.8	12.5	12.5	0.0
	20년 이상	(19)	0.0	0.0	5.3	63.2	21.1	10.5	0.0

[그림 IV-32] 맞벌이가구 최대급여액 기준점 적정 수준

(N=1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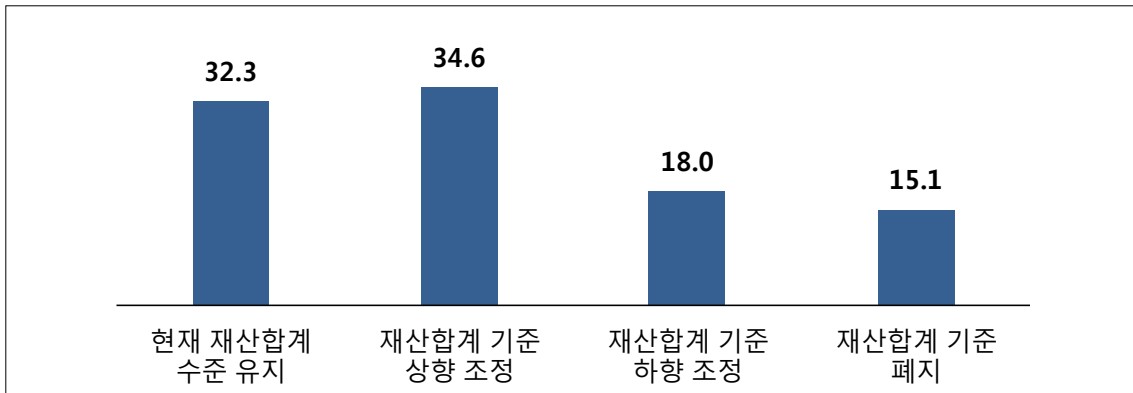


### 15)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개편 시 적정 방안

- 재산요건 개편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현행 유지(32.3%)와 상향 조정(34.6%)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하향 조정은 18.0%, 재산 기준 폐지는 15.1%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전공분야별로는 경제학 분야 전문가에서 현행 수준 유지가 54.5%로 높았으며, 상향 조정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응답이 51.4%로 타 전공분야 대비 높게 조사됨

[그림 IV-33]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개편 시 적정 방안

(N=133, 단위: %)



<표 IV-69>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개편 시 적정 방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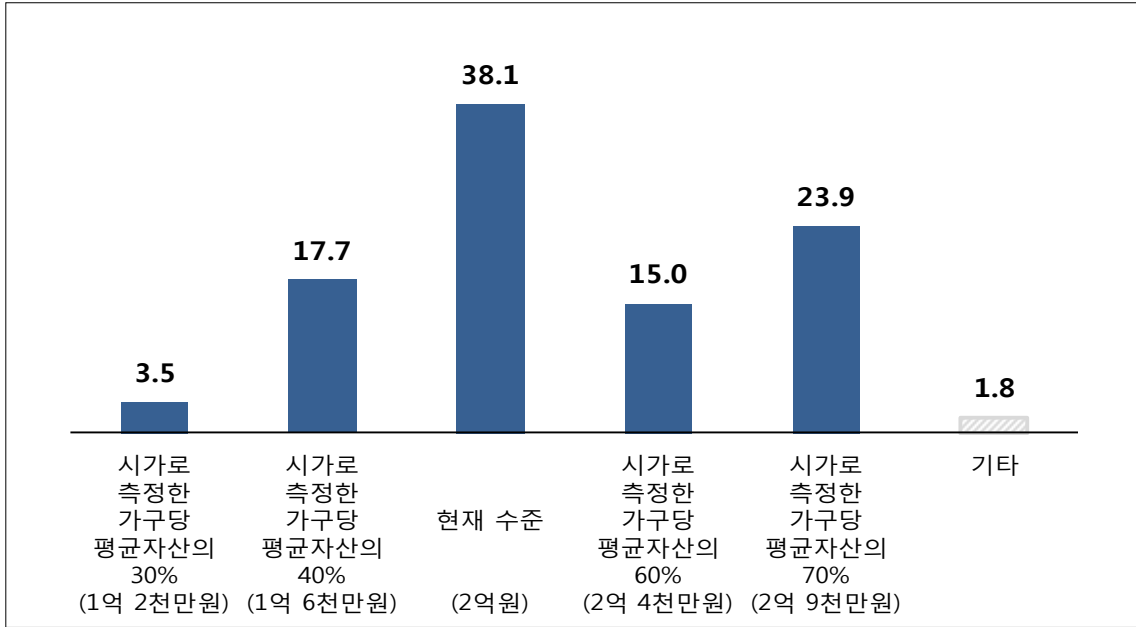
		사례수	현재 재산합계 2억원 미만 수준 유지	재산합계 기준 상향 조정	재산합계 기준 하향 조정	재산합계 기준 폐지
전체		(133)	32.3	34.6	18.0	15.1
전공 분야	회계/세무	(57)	28.1	31.6	19.3	21.1
	사회복지	(37)	18.9	51.4	16.2	13.5
	경제학	(33)	54.5	24.2	18.2	3.0
	기타	(8)	25.0	25.0	12.5	37.5
직업	전문직	(10)	0.0	70.0	20.0	10.0
	교수/연구원	(80)	36.3	31.3	18.8	13.8
	일반기업근무자	(24)	37.5	25.0	20.8	16.7
	학생	(6)	33.3	16.7	16.7	33.3
	사회복지공무원	(11)	27.3	54.5	0.0	18.2
	기타	(2)	0.0	50.0	50.0	0.0
경력 기간	5년 미만	(31)	25.8	54.8	3.2	16.1
	5년~10년 미만	(41)	24.4	34.1	26.8	14.6
	10년~15년 미만	(17)	29.4	35.3	17.6	17.6
	15년~20년 미만	(18)	61.1	11.1	16.7	11.1
	20년 이상	(20)	35.0	30.0	25.0	10.0

16)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적정 수준

- 재산요건의 적정 수준으로는 현행 2억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시가로 측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70%인 2억 9천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23.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전공분야별로는 경제학 분야 전문가에서 현행 유지 의견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는 37.5%가 2억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임

[그림 IV-34]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적정 수준

(N=113, 단위: %)



<표 IV-70>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적정 수준

(단위: %)

		사례수	시가로 측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30% (1억 2천만원)	시가로 측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40% (1억 6천만원)	현재 수준 (2억원)	시가로 측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60% (2억 4천만원)	시가로 측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70% (2억 9천만원)	기타
전체		(113)	3.5	17.7	38.1	15.0	23.9	1.8
전공 분야	회계/세무	(45)	8.9	15.6	35.6	20.0	17.8	2.2
	사회복지	(32)	0.0	18.8	21.9	18.8	37.5	3.1
	경제학	(32)	0.0	18.8	56.3	3.1	21.9	0.0
	기타	(5)	0.0	20.0	40.0	40.0	0.0	0.0
직업	전문직	(9)	11.1	11.1	0.0	22.2	44.4	11.1
	교수/연구원	(69)	2.9	18.8	42.0	13.0	21.7	1.4
	일반기업근무자	(20)	5.0	20.0	45.0	15.0	15.0	0.0
	학생	(4)	0.0	25.0	50.0	25.0	0.0	0.0
	사회복지공무원	(9)	0.0	0.0	33.3	22.2	44.4	0.0
	기타	(2)	0.0	50.0	0.0	0.0	50.0	0.0
경력 기간	5년 미만	(26)	0.0	3.8	30.8	26.9	38.5	0.0
	5년~10년 미만	(35)	2.9	28.6	28.6	8.6	28.6	2.9
	10년~15년 미만	(14)	14.3	7.1	35.7	14.3	28.6	0.0
	15년~20년 미만	(16)	6.3	12.5	68.8	6.3	6.3	0.0
	20년 이상	(18)	0.0	27.8	38.9	16.7	11.1	5.6

### 17) 자녀장려금 삭감 기준점 개편 시 적정 방안

- 자녀장려금 삭감 기준점 적정 수준을 물어본 결과, 현행 1억 4천만원 유지 응답과 2억원으로 상향 조정 응답이 각각 31.0%, 30.1%로 높게 나타남
- 전공분야별로는 경제학 분야 전문가의 50.0%가 현행 유지 의견을 보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의 경우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6.9%로 타 전공분야 대비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전문직에서 2억원 상향 조정 응답이 55.6%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교수/연구원의 경우 현행 유지 응답이 37.7%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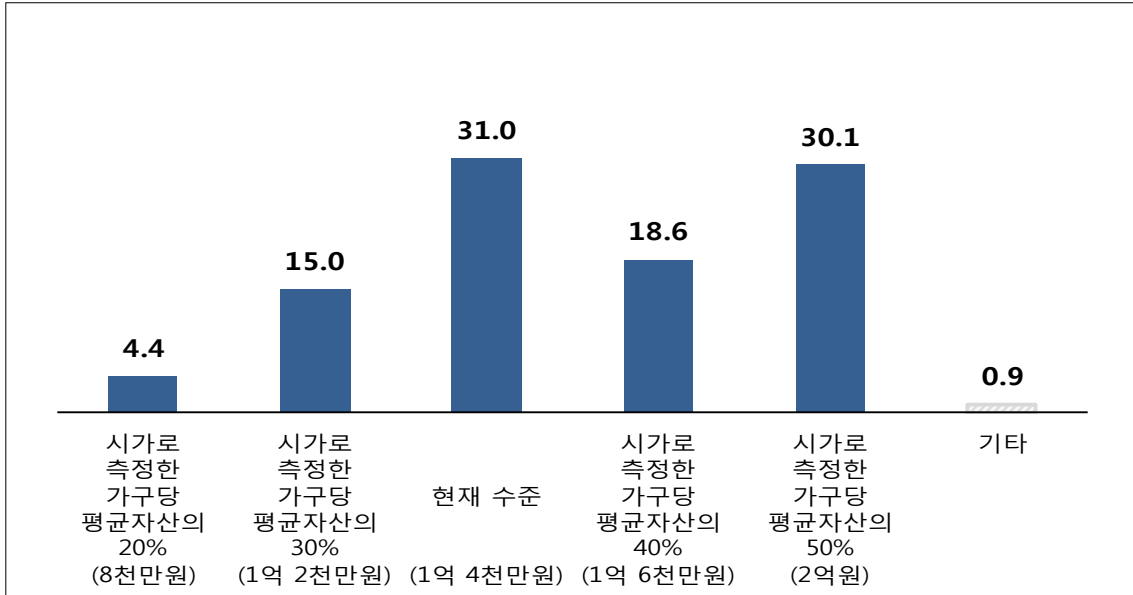
<표 IV-71> 자녀장려금 삭감 기준점 개편 시 적정 방안

(단위: %)

	사례수	시가로 추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20% (8천만원)	시가로 추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30% (1억 2천만원)	현재 수준 (1억 4천만원)	시가로 추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40% (1억 6천만원)	시가로 추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50% (2억원)	기타	
전체	(113)	4.4	15.0	31.0	18.6	30.1	0.9	
전공 분야	회계/세무	(45)	8.9	22.2	22.2	22.2	24.4	0.0
	사회복지	(32)	3.1	9.4	25.0	12.5	46.9	3.1
	경제학	(32)	0.0	9.4	50.0	15.6	25.0	0.0
	기타	(5)	0.0	20.0	20.0	60.0	0.0	0.0
직업	전문직	(9)	11.1	22.2	0.0	11.1	55.6	0.0
	교수/연구원	(69)	2.9	15.9	37.7	20.3	21.7	1.4
	일반기업근무자	(20)	10.0	5.0	20.0	20.0	45.0	0.0
	학생	(4)	0.0	25.0	50.0	25.0	0.0	0.0
	사회복지공무원	(9)	0.0	11.1	33.3	11.1	44.4	0.0
	기타	(2)	0.0	50.0	0.0	0.0	50.0	0.0
경력 기간	5년 미만	(26)	3.8	0.0	26.9	26.9	42.3	0.0
	5년~10년 미만	(35)	2.9	20.0	28.6	11.4	34.3	2.9
	10년~15년 미만	(14)	0.0	28.6	21.4	14.3	35.7	0.0
	15년~20년 미만	(16)	6.3	6.3	56.3	18.8	12.5	0.0
	20년 이상	(18)	11.1	22.2	22.2	22.2	22.2	0.0

[그림 IV-35] 자녀장려금 삭감 기준점 개편 시 적정 방안

(N=11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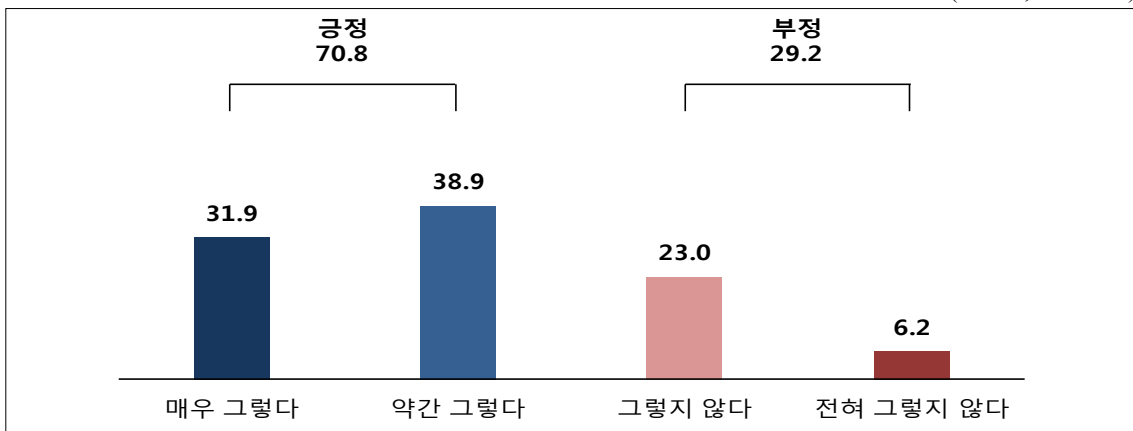


### 18) 도시-농어촌 가구 재산요건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

-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따라 재산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70.8%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특히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90.6%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회계/세무 및 경제학 분야 전문가의 경우 긍정 응답 비율이 각각 62.2%, 62.5%로 비교적 낮았음

[그림 IV-36] 도시-농어촌 가구 재산요건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

(N=113, 단위: %)



- 직업별로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긍정 응답 비율이 88.9%로 높은 반면, 교수/연구원의 경우 긍정 의견이 68.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V-72> 도시-농어촌 가구 재산요건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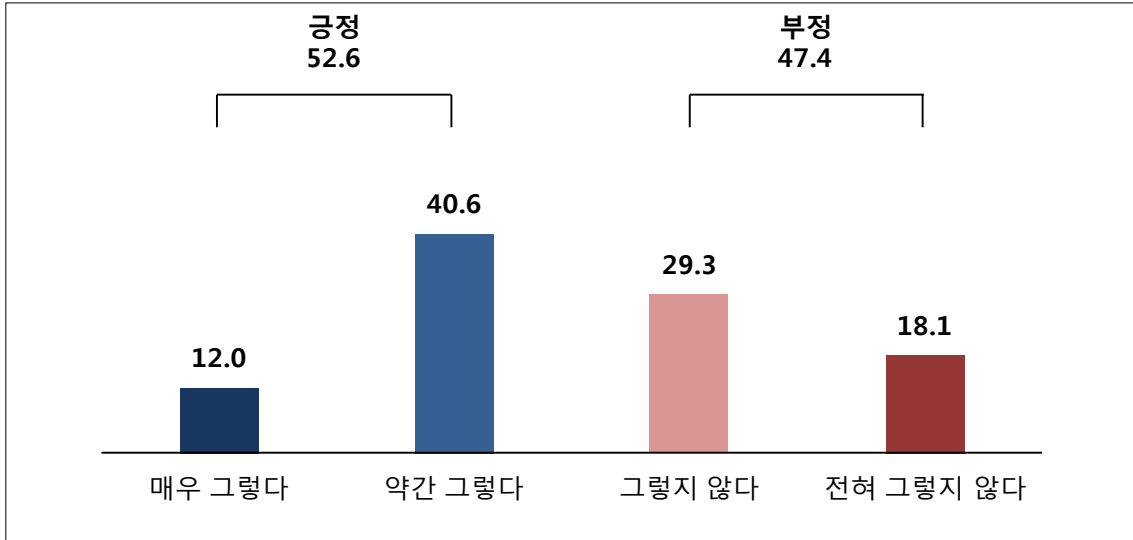
	사례수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긍정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	
전체	(113)	31.9	38.9	70.8	23.0	6.2	29.2	
전공 분야	회계/세무	(45)	24.4	37.8	62.2	26.7	11.1	37.8
	사회복지	(32)	50.0	40.6	90.6	6.3	3.1	9.4
	경제학	(32)	25.0	37.5	62.5	34.4	3.1	37.5
	기타	(5)	20.0	60.0	80.0	20.0	0.0	20.0
직업	전문직	(9)	33.3	44.4	77.8	11.1	11.1	22.2
	교수/연구원	(69)	34.8	33.3	68.1	24.6	7.2	31.9
	일반기업근무자	(20)	20.0	45.0	65.0	30.0	5.0	35.0
	학생	(4)	25.0	50.0	75.0	25.0	0.0	25.0
	사회복지공무원	(9)	44.4	44.4	88.9	11.1	0.0	11.1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경력 기간	5년 미만	(26)	34.6	46.2	80.8	15.4	3.8	19.2
	5년~10년 미만	(35)	45.7	28.6	74.3	20.0	5.7	25.7
	10년~15년 미만	(14)	14.3	50.0	64.3	28.6	7.1	35.7
	15년~20년 미만	(16)	25.0	31.3	56.3	37.5	6.3	43.8
	20년 이상	(18)	22.2	44.4	66.7	22.2	11.1	33.3

19)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줄인다)

- 영국/뉴질랜드의 사례처럼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52.6%가 긍정 의견을 보여 절반 수준으로 나타남
  - 전공분야별로는 경제학 분야 전문가에서 66.7%로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됨
  - 직업별로는 전문직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40.0%로 타 직업 대비 가장 낮았음

[그림 IV-37]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1)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줄인다)

(N=133, 단위: %)



<표 IV-73>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1)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줄인다)

(단위: %)

	사례수	긍정			부정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	
전체	(133)	12.0	40.6	29.3	18.1	47.4	
전공 분야	회계/세무	(57)	10.5	36.8	29.8	22.8	52.6
	사회복지	(37)	5.4	45.9	27.0	21.6	48.6
	경제학	(33)	18.2	48.5	27.3	6.1	33.3
	기타	(8)	25.0	25.0	37.5	12.5	50.0
직업	전문직	(10)	0.0	40.0	40.0	20.0	60.0
	교수/연구원	(80)	12.5	36.3	30.0	21.3	51.3
	일반기업근무자	(24)	8.3	58.3	20.8	12.5	33.3
	학생	(6)	0.0	50.0	33.3	16.7	50.0
	사회복지공무원	(11)	18.2	36.4	36.4	9.1	45.5
	기타	(2)	100.0	0.0	0.0	0.0	0.0
경력 기간	5년 미만	(31)	9.7	38.7	29.0	22.6	51.6
	5년~10년 미만	(41)	14.6	36.6	29.3	19.5	48.8
	10년~15년 미만	(17)	11.8	58.8	11.8	17.6	29.4
	15년~20년 미만	(18)	16.7	27.8	50.0	5.6	55.6
	20년 이상	(20)	10.0	45.0	25.0	20.0	45.0

20)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 비율이 48.9%로 절반이 채 안되는 모습을 보임
  - 전공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에서 59.5%의 가장 높은 긍정 의견을 보였으며, 경제학 분야 전문가의 경우 33.3%로 낮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전문직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40.0%로 타 직업 대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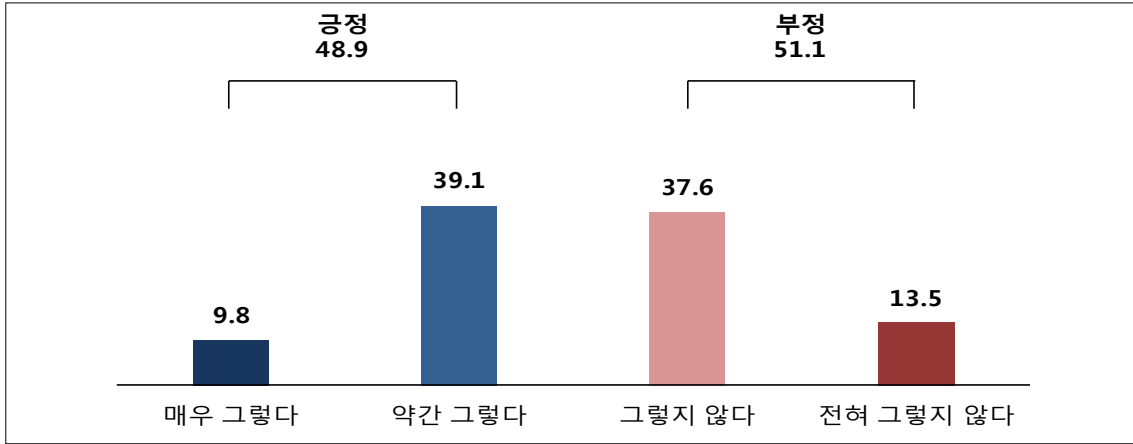
〈표 IV-74〉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2)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단위: %)

	사례수	긍정			그렇지 않다		부정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33)	9.8	39.1	48.9	37.6	13.5	51.1	
전공 분야	회계/세무	(57)	10.5	42.1	52.6	36.8	10.5	47.4
	사회복지	(37)	16.2	43.2	59.5	27.0	13.5	40.5
	경제학	(33)	3.0	30.3	33.3	51.5	15.2	66.7
	기타	(8)	0.0	37.5	37.5	37.5	25.0	62.5
직업	전문직	(10)	10.0	30.0	40.0	50.0	10.0	60.0
	교수/연구원	(80)	8.8	37.5	46.3	41.3	12.5	53.8
	일반기업근무자	(24)	12.5	41.7	54.2	37.5	8.3	45.8
	학생	(6)	16.7	66.7	83.3	16.7	0.0	16.7
	사회복지공무원	(11)	9.1	36.4	45.5	18.2	36.4	54.5
	기타	(2)	0.0	50.0	50.0	0.0	50.0	50.0
경력 기간	5년 미만	(31)	3.2	38.7	41.9	35.5	22.6	58.1
	5년~10년 미만	(41)	12.2	46.3	58.5	19.5	22.0	41.5
	10년~15년 미만	(17)	17.6	23.5	41.2	52.9	5.9	58.8
	15년~20년 미만	(18)	5.6	33.3	38.9	55.6	5.6	61.1
	20년 이상	(20)	10.0	35.0	45.0	55.0	0.0	55.0

[그림 IV-38]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2)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N=13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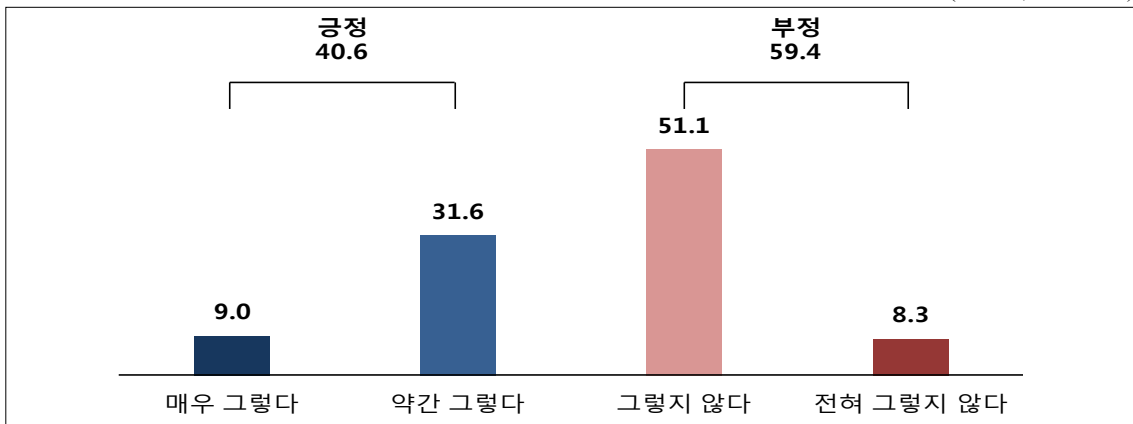


21)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 반대로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 비율이 40.6%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리자는 의견 대비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 전공분야별로는 회계/세무 분야 전문가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36.8%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IV-39]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3)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N=133, 단위: %)



○ 직업별로는 교수/연구원의 경우 긍정 의견이 37.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표 IV-75>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3)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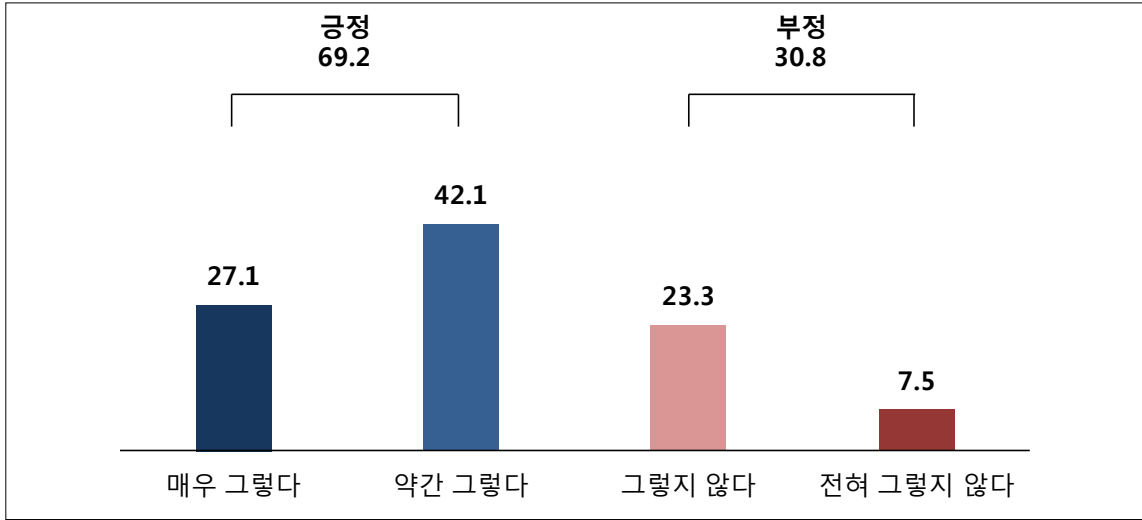
	사례수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긍정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	
전체	(133)	9.0	31.6	40.6	51.1	8.3	59.4	
전공 분야	회계/세무	(57)	10.5	26.3	36.8	52.6	10.5	63.2
	사회복지	(37)	5.4	37.8	43.2	54.1	2.7	56.8
	경제학	(33)	12.1	30.3	42.4	48.5	9.1	57.6
	기타	(8)	0.0	50.0	50.0	37.5	12.5	50.0
직업	전문직	(10)	40.0	20.0	60.0	40.0	0.0	40.0
	교수/연구원	(80)	7.5	30.0	37.5	55.0	7.5	62.5
	일반기업근무자	(24)	4.2	37.5	41.7	45.8	12.5	58.3
	학생	(6)	0.0	33.3	33.3	66.7	0.0	66.7
	사회복지공무원	(11)	0.0	36.4	36.4	45.5	18.2	63.6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경력 기간	5년 미만	(31)	6.5	32.3	38.7	45.2	16.1	61.3
	5년~10년 미만	(41)	12.2	34.1	46.3	43.9	9.8	53.7
	10년~15년 미만	(17)	5.9	52.9	58.8	35.3	5.9	41.2
	15년~20년 미만	(18)	11.1	16.7	27.8	72.2	0.0	72.2
	20년 이상	(20)	10.0	20.0	30.0	65.0	5.0	70.0

22)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69.2%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전공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와 경제학 분야 전문가 각각 78.4%, 72.7%의 높은 긍정 응답 비율을 보임
  - 직업별로는 사회복지 공무원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63.6%로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임

[그림 IV-40]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4)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N=133, 단위: %)



<표 IV-76>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4)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단위: %)

	사례수	긍정			부정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		
전체	(133)	27.1	42.1	69.2	23.3	7.5	30.8	
전공 분야	회계/세무	(57)	26.3	36.8	63.2	28.1	8.8	36.8
	사회복지	(37)	29.7	48.6	78.4	16.2	5.4	21.6
	경제학	(33)	27.3	45.5	72.7	21.2	6.1	27.3
	기타	(8)	12.5	50.0	62.5	25.0	12.5	37.5
직업	전문직	(10)	50.0	20.0	70.0	30.0	0.0	30.0
	교수/연구원	(80)	30.0	38.8	68.8	23.8	7.5	31.3
	일반기업근무자	(24)	12.5	54.2	66.7	25.0	8.3	33.3
	학생	(6)	33.3	50.0	83.3	16.7	0.0	16.7
	사회복지공무원	(11)	18.2	45.5	63.6	18.2	18.2	36.4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경력 기간	5년 미만	(31)	29.0	41.9	71.0	16.1	12.9	29.0
	5년~10년 미만	(41)	24.4	53.7	78.0	9.8	12.2	22.0
	10년~15년 미만	(17)	29.4	23.5	52.9	41.2	5.9	47.1
	15년~20년 미만	(18)	22.2	55.6	77.8	22.2	0.0	22.2
	20년 이상	(20)	30.0	20.0	50.0	50.0	0.0	50.0

23)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장애아를 가진 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 장애아가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0%가 긍정 응답을 보임
  - 직업별로는 일반기업 근무자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75.0%로 비교적 낮았음
  - 경력기간별로는 20년 미만의 경력에서 모두 80% 이상의 긍정 응답 비율을 보인 반면, 20년 이상 경력의 응답자의 경우 긍정 의견이 75.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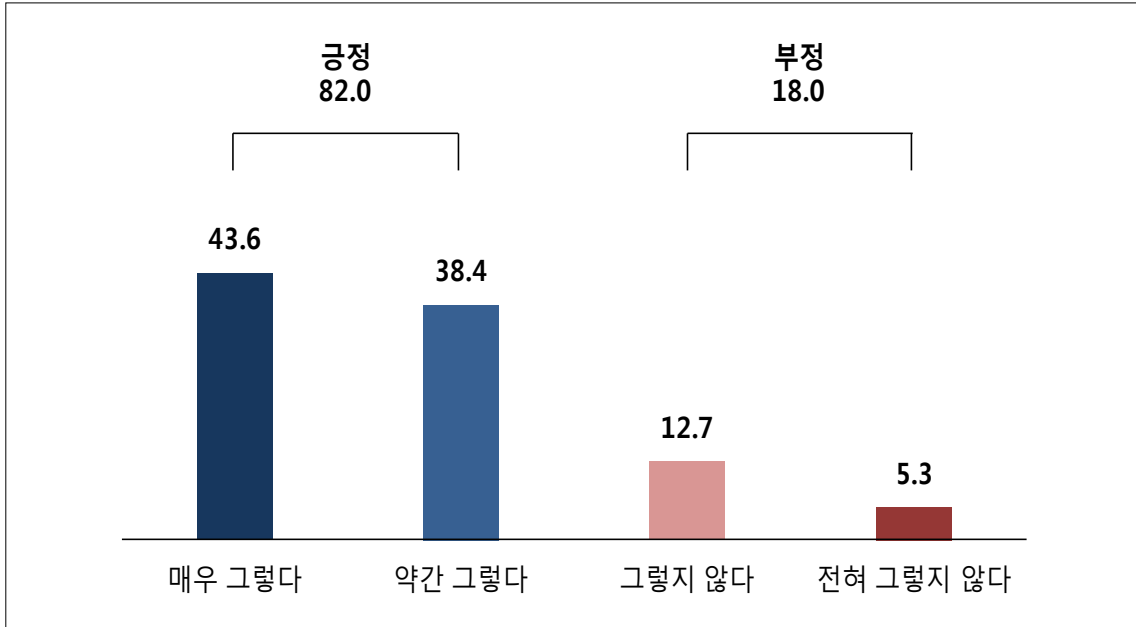
〈표 IV-77〉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5)  
(장애아를 가진 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단위: %)

	사례수	긍정			그렇지 않다		부정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33)	43.6	38.4	82.0	12.7	5.3	18.0	
전공 분야	회계/세무	(57)	43.9	36.8	80.7	12.3	7.0	19.3
	사회복지	(37)	40.5	43.2	83.8	13.5	2.7	16.2
	경제학	(33)	42.4	39.4	81.8	12.1	6.1	18.2
	기타	(8)	62.5	25.0	87.5	12.5	0.0	12.5
직업	전문직	(10)	50.0	30.0	80.0	20.0	0.0	20.0
	교수/연구원	(80)	47.5	36.3	83.8	11.3	5.0	16.3
	일반기업근무자	(24)	25.0	50.0	75.0	16.7	8.3	25.0
	학생	(6)	50.0	33.3	83.3	16.7	0.0	16.7
	사회복지공무원	(11)	45.5	36.4	81.8	9.1	9.1	18.2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경력 기간	5년 미만	(31)	51.6	29.0	80.6	6.5	12.9	19.4
	5년~10년 미만	(41)	41.5	41.5	82.9	12.2	4.9	17.1
	10년~15년 미만	(17)	47.1	35.3	82.4	17.6	0.0	17.6
	15년~20년 미만	(18)	33.3	55.6	88.9	11.1	0.0	11.1
	20년 이상	(20)	40.0	35.0	75.0	20.0	5.0	25.0

[그림 IV-41]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5)  
 (장애아를 가진 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N=133, 단위: %)





## V. 효과성 평가





## V. 효과성 평가

### 1.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 가. 분석방법

- 자녀장려세제의 정책목표는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여 아동빈곤율을 낮추고, 출산과 근로를 장려하는 것임
  - 자녀장려세제의 효과는 동 제도 도입 이후 아동빈곤율이 감소하였는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자녀장려금 수급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출산율 및 근로시간이 유의하게 더 많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아동빈곤율 감소 효과)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아동빈곤율이 감소하였는지 살펴봄
  - ‘시장소득+자녀장려금’ 기준 아동빈곤율이 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하기 전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보다 낮으면 자녀장려세제 도입이 아동빈곤문제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빈곤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출규모를 파악하고, 자녀장려금이 아동빈곤가구의 자녀양육비 경감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봄
- (출산장려효과)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녀장려금 수급이 자녀양육 및 출산에 대한 저소득가구의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봄
  - 아울러 자녀장려금 수급가구가 자녀장려금 수급 이후 연도에 출산을 통하여 자녀가 증가한 비율이 자녀장려금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가구에 비하여 높는지 살펴봄

- (근로유인효과)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장려금 수급가구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수급가구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유의하게 더 높은지를 살펴봄
  - 아울러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녀장려금 수급이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봄
  
-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지니계수가 개선되었는지 살펴봄
  - ‘시장소득+자녀장려금’ 기준 지니계수가 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하기 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보다 낮으면 자녀장려세제 도입이 소득불평등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나. 분석자료

- 자녀장려세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의 제11차년도(기준연도 2015년)부터 제13차년도(기준연도 2017년)<sup>16)</sup>까지 자료와 2018년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함
  -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2015년부터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조사결과가 마지막 공표 내용으로 2017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2018년 자녀장려금 수급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장려금이 자녀양육비 경감, 출산장려, 근로의욕 고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등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함

### 1) 한국복지패널 자료

-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한국의료패널조사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이며<sup>17)</sup>,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정책이나 빈곤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sup>18)</sup>

16) 제13차년도 조사는 2018년에 시행되었으며, 2017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17)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님

-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중위소득 60% 미만 저소득가구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하고 있으며,<sup>19)</sup> 자녀장려금을 비롯하여 정부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각종 현금급여제도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어 자녀장려세제와 유사제도 간 효과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 제13차년도(기준연도 2017년)에는 총 6,474가구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아동부양가구는 21.25%,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는 3.48%를 차지함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663개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실적이 있다고 응답함

<표 V-1> 한국복지패널의 표본구성

(단위: 가구, %)

구분	연도	가구가중치 <sup>1)</sup> 적용 전		가구가중치 <sup>1)</sup> 적용 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전체 가구	2015	6,723	33.99	18,705,004	32.52
	2016	6,581	33.27	19,284,671	33.53
	2017	6,474	32.73	19,523,587	33.95
	소계	19,778	100.00	57,513,262	100.00
아동가구	2015	1,582	23.53	4,737,386	25.33
	2016	1,486	22.58	4,806,560	24.92
	2017	1,376	21.25	4,614,976	23.64
	소계	4,444	22.47	14,158,922	24.62
자녀장려금 수령가구	2015	228	3.39	612,313	3.27
	2016	210	3.19	613,683	3.18
	2017	225	3.48	701,440	3.59
	소계	663	3.35	1,927,436	3.35

주: 1) 저소득가구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함으로써 발생하는 표본의 대표성 상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분석에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가구경제활동 형태는 홀벌이가 47.52%로 가장 많고, 18세 미만 자녀부양가구가 전체 표본의 23.64%를 차지함

- 가구 내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가구가 76.36%, 1명인 가구가 11.11%, 2명인 가구가 9.97%이고, 최대 자녀수는 5명임

18)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19) 저소득가구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함으로써 발생하는 표본의 대표성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분석에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7세 미만 자녀부양가구가 전체 표본의 8.37%를 차지함

<표 V-2> 한국복지패널의 가구분포(2017년 기준)

(단위: 가구, %)

구분		가구가중치 <sup>1)</sup> 적용 전		가구가중치 <sup>1)</sup> 적용 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가구경제 활동형태	실업	1,741	26.89	3,984,450	20.41
	홀벌이	2,791	43.11	9,277,145	47.52
	맞벌이	1,942	30.00	6,261,992	32.07
	소계	6,474	100	19,523,587	100
가구형태	한부모	156	2.41	491,414	2.52
	양부모	1,220	18.84	4,123,563	21.12
	무자녀	5,098	78.75	14,908,611	76.36
	소계	6,474	100	19,523,588	100
18세 미만 자녀 수	0명	5,098	78.75	14,908,611	76.36
	1명	618	9.55	2,168,402	11.11
	2명	619	9.56	1,945,872	9.97
	3명	124	1.92	415,448	2.13
	4명	12	0.19	78,676	0.40
	5명	3	0.05	6,579	0.03
	소계	6,474	100.00	19,523,588	100.00
7세 미만 자녀 수	0명	5,959	92.05	17,890,265	91.63
	1명	360	5.56	1,199,734	6.15
	2명	142	2.19	402,579	2.06
	3명	13	0.20	31,009	0.16
	소계	6,474	100	19,523,587	100

주: 1) 저소득가구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함으로써 발생하는 표본의 대표성 상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분석에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한국복지패널 자료 내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맞벌이가구가 51.97%, 홀벌이가구가 46.95%로 맞벌이가구가 소폭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sup>20)</sup>

○ 한부모가구는 전체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약 18.16%를 차지함

○ 18세 미만 자녀는 1명인 가구가 41.6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인 2명(38.91%)인 가구로 18세 미만 자녀수가 2명 이하인 가구가 전체 표본의 80% 이상을 차지함

20)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었다가 실직한 가구가 당년도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에 포함되어 실업가구 비중이 1.08% 나타남

<표 V-3> 한국복지패널의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분포(2017년 기준)

(단위: 가구, %)

구분		가구가중치 적용 전		가구가중치 적용 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가구경제 활동형태	실업 <sup>1)</sup>	3	1.33	7,585	1.08
	홀벌이	104	46.22	329,292	46.95
	맞벌이	118	52.44	364,563	51.97
	소계	225	100	701,440	100
가구형태	한부모	39	17.33	127,361	18.16
	양부모	161	71.56	490,140	69.88
	무자녀	25	11.11	83,939	11.97
	소계	225	100	701,440	100
18세 미만 자녀 수	0명 <sup>2)</sup>	25	11.11	83,939	11.97
	1명	91	40.44	292,121	41.65
	2명	91	40.44	272,918	38.91
	3명	18	8.00	52,462	7.48
	소계	225	100.00	701,440	100.00
7세 미만 자녀 수	0명	153	68.00	470,120	67.02
	1명	42	18.67	140,109	19.97
	2명	27	12.00	76,977	10.97
	3명	3	1.33	14,233	2.03
	소계	225	100	701,439	100

주: 1) 자녀장려금은 전년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었으나 당해 연도 실직 상태인 경우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로 분류될 수 있음

2)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년도 자녀의 나이가 17세인 경우, 기준연도에 18세 미만 자녀수가 0명이더라도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로 분류될 수 있음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2017년 전체 가구의 평균 시장소득은 4,672만원이며, 아동부양가구가 아동이 없는 가구에 비하여 평균 시장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부양가구의 평균 시장소득은 7,200만원으로 아동이 없는 가구의 평균 시장소득 3,890만원에 비하여 3,30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아동부양가구가 아동이 없는 가구에 비하여 평균 시장소득이 높았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아동부양가구와 아동이 없는 가구의 시장소득 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4> 한국복지패널의 소득분위별 평균 시장소득

(단위: 만원)

소득 분위 <sup>1)</sup>	전체 가구			아동 <sup>2)</sup> 이 없는 가구			아동 <sup>2)</sup> 이 있는 가구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분위	222	306	-188	236	312	343	-14	176	-11,864
2분위	1,125	1,286	1,331	1,066	1,206	1,264	1,673	2,007	2,067
3분위	2,240	2,346	2,553	2,054	2,124	2,319	2,989	3,153	3,419
4분위	3,238	3,338	3,546	2,875	2,967	3,130	4,024	4,243	4,552
5분위	4,061	4,241	4,446	3,618	3,804	3,994	4,835	5,141	5,478
6분위	4,901	4,978	5,230	4,502	4,323	4,702	5,750	6,010	6,313
7분위	5,648	5,804	6,088	4,999	5,188	5,512	6,582	6,813	7,122
8분위	6,611	6,888	7,218	5,904	6,336	6,497	7,851	8,082	8,667
9분위	8,433	8,564	9,039	7,820	7,730	8,426	9,450	9,947	10,460
10분위	15,932	14,099	15,148	11,856	13,119	13,806	24,552	16,072	17,424
전체	4,522	4,530	4,672	3,487	3,703	3,890	7,571	7,019	7,200

주: 1)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2)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분류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2017년 전체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수는 평균 0.39명이며, 아동부양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1.66명으로 나타남
- 소득분위별 평균 아동 수는 1.50~1.86명으로 소득분위 간 큰 차이는 없음

<표 V-5> 한국복지패널의 소득분위별 평균 아동 수

(단위: 명)

소득분위 <sup>2)</sup>	전체 가구			아동 <sup>1)</sup> 이 있는 가구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분위	0.09	0.06	0.07	1.63	1.48	1.54
2분위	0.14	0.17	0.12	1.46	1.70	1.50
3분위	0.35	0.36	0.34	1.76	1.66	1.58
4분위	0.57	0.52	0.54	1.81	1.79	1.86
5분위	0.63	0.57	0.53	1.72	1.75	1.73
6분위	0.57	0.69	0.59	1.77	1.78	1.79
7분위	0.67	0.64	0.56	1.64	1.69	1.56
8분위	0.63	0.50	0.58	1.74	1.58	1.75
9분위	0.60	0.62	0.47	1.58	1.64	1.57
10분위	0.49	0.48	0.56	1.52	1.45	1.51
전체	0.42	0.42	0.39	1.68	1.67	1.66

주: 1)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분류

2) 시장소득을 이용하여 10분위 구분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2) 설문조사 자료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조사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자료, 국세청 설문조사 결과, 자체 설문조사 결과 크게 3가지임
-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2015년부터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설문내용을 포함하였으며, 2018년 기준 설문참여가구 중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는 225가구임
  -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특성 및 자녀양육보조금 수급내역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그러나 표본 수가 적어 결과의 편차가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국세청은 매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3,250가구에 대하여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함
  - 표본 수는 많지만, 가구특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구분하여 응답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자녀장려금의 정책효과를 구분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자체 설문조사 결과는 2018년에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1,000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므로 표본 수 증가로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2018년에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1,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 자녀양육비 지출수준, 자녀양육 관련 정부지원금 수혜실적, 자녀장려금 수급 실태 및 인식에 관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2. 아동 빈곤문제 해결

### 가. 자녀장려세제의 아동빈곤을 감소효과 분석

#### 1) 분석방법

- 자녀장려세제의 도입목적 중 하나는 아동빈곤문제 해결로 동 제도 도입 이후 상대적 아동빈곤을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자녀장려금 지급이 아동빈곤문제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봄

- 『가계동향조사』 및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상대적 아동빈곤율이 감소하였는지 분석함

- 아동빈곤율은 절대적 아동빈곤율과 상대적 아동빈곤율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상대적 아동빈곤율은 전체 부양가구 중 빈곤선 이하에 있는 아동부양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 본 연구는 균등화된 중위가구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함

-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과 ‘시장소득+자녀장려금’ 기준 아동빈곤율을 비교함으로써 자녀장려세제 시행이 아동빈곤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봄

- 시장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기 전 가구소득으로 ‘시장소득+자녀장려금’ 기준 아동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보다 높으면 자녀장려세제 시행이 아동빈곤문제 해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표 V-6> 소득구분

통계청			OECD					미국
소득	비경상 소득	경조소득 제품매각대금 기타						
		근로소득	Wages and Salary Income	1차 소득	시장 소득	총소득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
	사업·부업소득	Gross Self-Employment Income						
	재산소득	Realized Property Income						
	경상 소득	이전 소득	사적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과 기타 사적 현금소득				
공적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현금급여					
지출	비소비 지출	공적연금 사회보험	사회보장 부담금					
		조세	소득세 재산세, 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기타 비소비지출						
	소비 지출							

자료: 한국복지패널 13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p. 96 재인용

## 2)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상대적 아동빈곤율 분석

-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상승한 반면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2014년 8.4%에서 2016년 8.7%로 상승하였으나,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2014년 7.9%와 7.5%에서 2016년에는 7.6%와 7.2%로 하락함

<표 V-7> 소득종류별 아동빈곤율<sup>1)</sup>(가계동향조사)

(단위: %)

구분	아동빈곤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장소득 <sup>2)</sup>	12.4	12.9	12.1	12.4	11.3	11.1	10.5	9.1	8.4	8.7	8.7
경상소득 <sup>3)</sup>	11.1	11.5	10.8	10.2	9.3	9.7	9.4	8.5	7.9	7.9	7.6
가처분소득 <sup>4)</sup>	10.4	11.0	10.4	9.5	9.1	9.1	9.3	8.1	7.5	7.4	7.2

- 주: 1) 아동빈곤율은 전체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 중 빈곤선(중위가구소득의 50%) 이하에 있는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시장소득 = 근로소득+사업·부업소득+재산소득  
 3) 경상소득 = 시장소득+사적 이전소득  
 4)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사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  
 5) 아동빈곤율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5년 이전에 사용됐던 OECD 가처분소득 정의에 따라 아동빈곤율을 산출함

자료: 사회보장위원회(<https://www.ssc.go.kr/stats>),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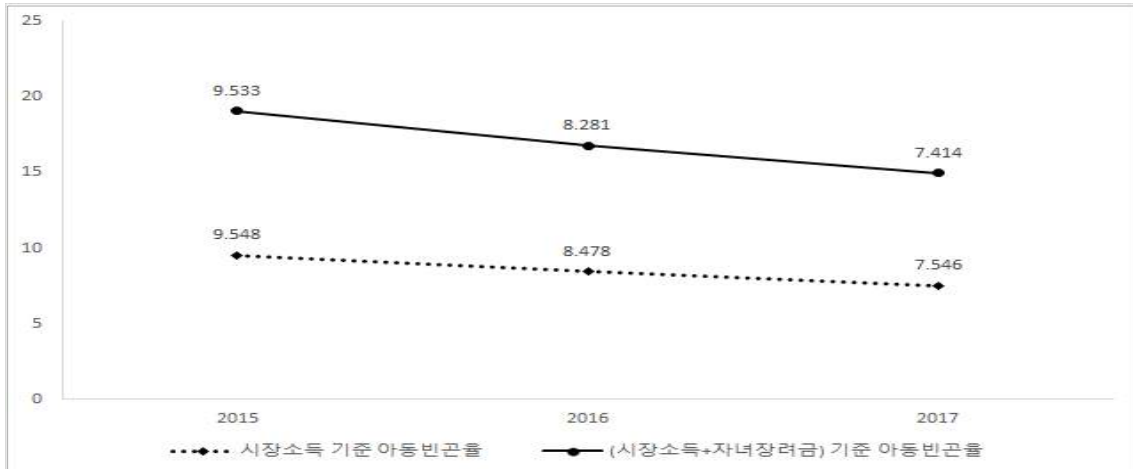
- <표 V-7>에서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상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이 하락하였다는 것은 자녀장려금을 비롯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아동빈곤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시사함
  -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가산하여 계산되는데, 시장소득에서 경상소득으로 변함에 따라 아동빈곤율이 하락하였다는 것은 공적이전소득이 아동빈곤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3)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상대적 아동빈곤율 분석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2017년 기준 자녀장려금은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을 1.75%p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7.546%이나, ‘시장소득+자녀장려금’ 기준 아동빈곤율은 7.414%로 자녀장려금은 시장소득 아동빈곤율을 1.75%p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V-1] 자녀장려세제를 통한 아동빈곤문제 해결효과

(단위: %)



- 주: 1.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전체 아동부양가구 중 가구의 시장소득이 중위가구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부업소득+재산소득)의 50% 이하에 있는 아동부양가구의 비율을 의미함(21)  
 2. ‘시장소득+자녀장려금’ 기준 아동빈곤율은 전체 아동부양가구 중 ‘시장소득+자녀장려금’이 중위가구 시장소득의 50% 이하에 있는 아동부양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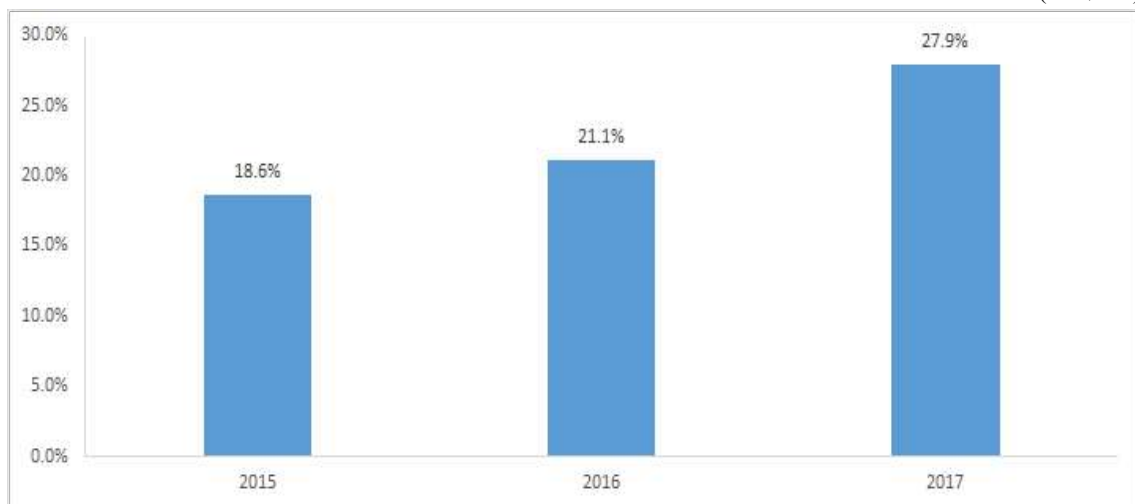
- 2017년 기준 아동빈곤가구의 27.9%가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아동빈곤가구의 자녀장려금 수급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완화로 아동빈곤가구 중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비율이 2015년 18.6%에서 2017년에는 27.9%로 증가함
  - 아동빈곤가구 중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비율이 3분의 1에 불과한 이유는 2019년 이전에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가구의 30% 미만)는 자녀장려금 중복수급이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21)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2015년(조사연도 2016년)과 2016년(조사연도 2017년) 아동빈곤율은 8.7%(표 III-5 참조)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2015년과 2016년의 아동빈곤율 9.5%와 8.5%와 차이를 보임.

- 세법개정으로 2019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으므로 자녀장려금의 아동빈곤율 감소 효과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이전에는 유사제도 간 중복지원 방지 및 제한적인 정부 재정여건을 고  
 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8년  
 말 세법개정으로 2019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그림 V-2] 아동빈곤가구 중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가구유형별 아동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맞벌이가구에 비하여 홀벌이가구가, 양부  
 모가구에 비하여 한부모가구의 아동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맞벌이가구의 아동빈곤율은 2.5%이나, 홀벌이가구의 아동빈곤율  
 은 이보다 4배가량 높은 9.9%임
- 한부모가구의 아동빈곤율은 35.7%로 양부모가구의 아동빈곤율 4.9%보다 현저  
 히 높음
- 자녀수별 아동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자녀수가 적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높음
- 2인자녀 또는 3인자녀 가구가 1인자녀 가구보다 아동빈곤율이 낮음
- 빈곤가구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에 자녀수가 적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표 V-8〉 연도별·가구유형별 아동빈곤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전체가구		9.548	8.478	7.546
가구경제활동형태	홀별이	13.299	12.353	9.900
	맞별이	3.464	2.677	2.541
한부모가구 여부	한부모	40.001	38.374	35.724
	양부모	6.846	5.976	4.948
18세 미만 자녀수	1명	12.024	9.918	9.566
	2명	7.140	6.506	6.054
	3명	9.714	10.157	5.711
	4명	20.650	14.141	10.550
7세 미만 자녀수	0명	11.380	9.720	8.662
	1명	8.110	6.727	6.488
	2명	2.550	6.307	3.594
	3명	7.017	1.581	4.784

주: 아동빈곤율은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중 가구의 시장소득이 중위가구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부업소득+재산소득)의 50% 이하에 있는 아동부양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아동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비율이 가구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맞별이가구가 홀별이가구보다, 양부모가구가 한부모가구보다 자녀장려금 지급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맞별이 아동빈곤가구는 41.8%가 자녀장려금을 지급한 반면 홀별이 아동빈곤가구는 이보다 낮은 39.1%가 자녀장려금을 수령함
  - 양부모 아동빈곤가구는 40.2%가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반면 한부모 아동빈곤가구는 12.0%만이 자녀장려금을 수령함
  
- 자녀수에 따라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8세 미만 자녀가 2~3명인 아동빈곤가구가 1명인 아동빈곤가구보다 자녀장려금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1명인 아동빈곤가구는 18.2%만이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반면 자녀가 2~3명인 아동빈곤가구는 각각 47.6%와 28.6%가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표 V-9〉 아동빈곤가구의 유형별 자녀장려금 수급비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전체 아동빈곤가구		19.734	21.285	28.971
가구경제활동형태	홀벌이	22.257	26.781	39.108
	맞벌이	31.945	27.307	41.750
한부모가구 여부	한부모	11.515	14.626	12.043
	양부모	24.015	24.853	40.179
18세 미만 자녀수	1명	9.644	12.403	18.229
	2명	30.956	30.671	47.627
	3명	32.367	32.384	28.646
	4명	0.477	0.851	-
7세 미만 자녀수	0명	15.776	18.509	25.106
	1명	31.909	33.518	29.666
	2명	33.169	9.118	81.044

주: 1. 아동빈곤가구는 18세 미만 가구의 시장소득이 중위가구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부업소득+재산소득)의 50% 이하에 있는 아동부양가구를 의미함

2. 자녀장려금 수급비율 = 해당 유형의 아동빈곤가구 중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수/해당 유형의 아동빈곤가구수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전반적으로 아동빈곤율이 높은 가구유형에서 자녀장려금 수급비율이 낮게 나타남
  - 아동빈곤율은 맞벌이가구보다 홀벌이가구가, 양부모가구보다 한부모가구가, 자녀수가 적은 가구가 높음
  - 자녀장려금 수급비율은 이와 반대로 맞벌이가구보다 홀벌이가구가, 양부모가구보다 한부모가구가, 자녀수가 적은 가구가 낮게 나타남
  
- 아동빈곤율이 높은 가구유형에서 자녀장려금 수급비율이 낮은 이유는 2019년 이전에는 자녀장려금과 생계급여 간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됨
  - 아동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홀벌이가구, 한부모가구, 1인 자녀가구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중위 가구소득 30% 미만 저소득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으로 자녀장려금 수혜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아동빈곤율이 높은 가구유형에서 자녀장려금 수급비율이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표 V-10> 아동빈곤가구의 유형별 생계급여 수급비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전체 아동빈곤가구		34.549	32.248	32.170
가구경제활동형태	홀벌이	25.657	22.137	18.445
	맞벌이	16.930	7.361	4.452
한부모가구 여부	한부모	64.166	59.564	55.217
	양부모	19.123	17.615	16.911
18세 미만 자녀수	1명	41.033	39.569	40.485
	2명	26.184	26.821	16.627
	3명	14.382	5.425	17.642
	4명	99.523	99.149	100.000
7세 미만 자녀수	0명	43.000	36.746	36.297
	1명	11.537	27.612	26.294

주: 아동빈곤가구는 18세 미만 아동부양가구 중 시장소득이 중위가구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부업소득+재산소득)의 50% 이하에 있는 아동부양가구를 의미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세법개정으로 2019년부터 생계급여와 자녀장려금 간 중복수급이 가능하여졌기 때문에 아동빈곤율이 높은 그룹에서 자녀장려금 수혜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3.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경감효과

- 2015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을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음
  - 가구소득 월 100만원 미만 가구는 64.6%가 ‘경제적 부담’을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택한 반면 가구소득 월 400만원 이상 가구는 그 비율이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V-11>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이유	가족 월 소득				
	~100만원	100만원~200만원	200만원~300만원	300만원~400만원	400만원 이상
경제적 부담	64.6	54	46.3	43	24.2
학업성적	0	12.2	11.2	12.5	20.4
대화단절	6.1	7.6	5.4	5	4.6
자녀의 이성 및 성문제	0	1.5	1.7	2.3	1.7
진로문제	6.9	12.4	19.2	19.8	28.2
친구관계	0	1.4	1.8	2.1	3
생활태도, 음주, 흡연, 약물 등	0	1.1	0.2	0.6	1.6
게임중독	2.9	1.2	3.9	3.7	3.3
기타	5.4	1.4	0.6	0	0.4
없음	14.1	7.1	9.7	10.9	12.6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 2018년에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1,000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2%가 자녀장려금이 자녀양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자녀장려금이 자녀양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은 20.8%에 불과하였으며,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자녀양육비 경감효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냄

<표 V-12> 자녀양육비 경감 효과에 대한 수급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응답	전체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7세 미만 자녀 있는 가구	7세 미만 자녀 없는 가구
매우 도움 됨	27.1	30.6	24.6
약간 도움 됨	52.1	51.3	52.7
별로 도움 안 됨	15.3	13.8	16.4
전혀 도움 안 됨	5.5	4.3	6.3
긍정 응답	79.2	81.9	77.3
부정 응답	20.8	18.1	22.7

주: 1. 2018년 자녀장려금 수급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자녀양육비 대비 자녀장려금 수급액을 비교한 결과, 자녀장려금 수급은 수급가구의 자녀양육비를 평균 5.46% 경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2018년 신청) 가구당 자녀장려금 수급액은 51.1만원으로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평균 자녀양육비 936만원의 약 5.46%에 해당함
- 가구유형별 자녀양육비 경감효과를 살펴본 결과, 홀벌이가구, 한부모가구, 자녀수가 많은 가구에서 자녀양육비 경감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홀벌이가구, 한부모가구가 맞벌이가구, 양부모가구에 비하여 자녀장려금 수급액이 적지만, 자녀양육비 지출이 적어 자녀양육비 경감효과가 홀벌이가구, 한부모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양육비 지출이 증가하나, 자녀수에 비례하여 자녀장려금 수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녀양육비 경감효과가 자녀수가 많은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남
- 부양자녀의 연령이 자녀양육비 경감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자녀양육비 경감효과가 더 낮지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2018년부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녀양육비 경감효과는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표 V-13〉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자녀양육비 경감효과<sup>1)</sup>

(단위: 만원, %)

구분	가구당 자녀장려금(A) <sup>2)</sup>	자녀양육비(B)	경감효과(=A/B)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51.1	936	5.46	
가구경제활동형태	홀벌이	50.5	852	5.93
	맞벌이	51.8	1,031	5.03
가구형태	한부모	49.5	628	7.88
	양부모	51.2	945	5.42
18세 미만 자녀수	1명	42.0	766	5.48
	2명	55.1	1,032	5.34
	3명 이상	80.4	1,333	6.03
7세 미만 자녀수	1명	49.8	930	5.35
	2명	53.1	917	5.79
	3명	66.3	1,080	6.13
7세 미만 자녀 보유여부	있음	51.4	946	5.44
	없음	50.9	929	5.49

주: 1) 2018년에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 자녀장려금 수급자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한편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주로 ‘일상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복지패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90% 이상이 장려금의 주 사용처를 ‘일상 생활비’라고 밝힘<sup>22)</sup>
    - 근로·자녀장려금을 둘 다 수령한 가구의 90.2%, 자녀장려금만 수령한 가구의 90.1%가 장려금을 주로 ‘일상 생활비’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함
  - 근로·자녀장려금을 둘 다 수령한 가구는 일상 생활비(90.2%) 다음으로 자녀 교육비(6.3%)가 많았으나, 자녀장려금만 수령한 가구는 장려금의 주 사용처를 일상 생활비(90.1%), 저축(5.2%), 의료비(3.9%) 순서로 응답함
    -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에 비하여 ‘일상 생활비’를 장려금의 주 사용처로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녀 교육비’에 사용하였다는 비율은 오히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표 V-14> 근로·자녀장려금의 주 사용처(한국복지패널 조사결과)

(단위: %, 가구)

주 사용처	근로·자녀장려금 둘 다 수령한 가구	자녀장려금만 수령한 가구	근로장려금만 수령한 가구
자녀 교육비	6.3	0.8	14.1
일상 생활비	90.2	90.1	82.0
의료비	0.1	3.9	0.4
문화오락비	2.3	0.0	0.7
저축	0.7	5.2	2.8
기타	0.4	0.0	0.0
합계	100.0	100.0	100.0
가중치 적용 전 표본 수	112	232	113
가중치 적용 후 표본 수	310,342	674,324	391,097

주: 1. 조사연도 2018년, 기준연도 2017년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자녀장려금이 자녀양육에 직접 사용되기보다 가족생활비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가족생활비에는 자녀생활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녀장려금이 자녀양육과 무관한 분야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22)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응답자의 약 70%가 장려금의 주 사용처를 ‘일상 생활비’라고 밝힘. 그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항목은 ‘자녀교육비’로 11.4%임.

#### 4. 출산장려효과

- 자녀장려세제의 정책목표 중 하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임
  -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장려세제가 출산장려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수급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수급 이후 연도에 출산으로 자녀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지 살펴봄

##### 가. 자녀장려세제의 출산장려효과에 대한 수급자 설문조사 결과

- 2018년에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1,000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가구의 절반 정도만이 자녀장려세제가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함
  - 자녀장려금 지급이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56.8%이고, 43.2%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함
    - 자녀장려금이 출산장려에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가구 비율이 37.7%로 가장 높았으나,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응답가구 비율 또한 28.0%에 달함
  -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 긍정 응답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는 자녀장려금이 출산장려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움

<표 V-15> 출산장려 효과에 대한 수급자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응답	전체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7세 미만 자녀 있는 가구	7세 미만 자녀 없는 가구
매우 도움 됨	19.1	19.8	18.6
약간 도움 됨	37.7	37.2	38.0
별로 도움 안 됨	28.0	27.0	28.8
전혀 도움 안 됨	15.2	16.0	14.6
긍정 응답	56.8	57.0	56.6
부정 응답	43.2	43.0	43.4

주: 1. 2018년 자녀장려금 수급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한편 국세청이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장려금의 출산장려효과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2%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함
  - ‘효과가 없다’는 응답비율은 10.2%에 불과하였으나, ‘보통이다(21.2%)’ 또는 ‘모르겠다(19.4)’는 응답비율이 높아 이러한 조사결과만으로는 자녀장려금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온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움

#### 나. 자녀장려금 수급과 출산을 관계 분석 결과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장려금 수급과 이후 연도 출산으로 인한 자녀수 증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자녀장려금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에 비하여 출산으로 인해 자녀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 2015년에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실적이 있는 가구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출산으로 자녀수가 증가한 가구비율은 1.21%이며, 이 중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는 0.13%로 비수급가구 1.08%에 비하여 낮음
  - 2016년에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실적이 있는 가구 중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출산으로 자녀수가 증가한 가구비율은 0.80%이며, 이 중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는 0.12%로 비수급가구 0.68%에 비하여 낮음
  - 2017년에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실적이 있는 가구 중 2017년에 출산으로 인하여 자녀수가 증가한 가구비율은 0.33%이며, 이 중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는 0.06%로 비수급가구 0.28%에 비하여 낮음
- 가구의 소득수준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장소득 10분위별 3분위 이하 저소득층 가구<sup>23)</sup>를 대상으로 자녀장려금 수급과 이후 연도 출산으로 인한 자녀수 증가와의 관계를 재검토한 결과, 2016년 자녀장려금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에 비하여 이후 연도에 출산으로 자녀가 증가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에 자녀장려금 수급실적이 있는지 설문조사한 가구 중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출산으로 인해 자녀수가 증가한 가구비율은 0.27%이며, 이 중

23) 아동부양가구의 시장소득 10분위별 3분위의 평균시장소득은 2015년 2,989만원, 2016년 3,153만원, 2017년 3,419만원임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비율이 0.25%로 자녀장려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구 0.02%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에 자녀장려금 수급실적이 있는지 설문조사한 가구 중 2017년에 출산으로 인하여 자녀수가 증가한 가구비율은 0.18%이며, 이 중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비율이 0.14%로 자녀장려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구 0.05%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의 가구주 연령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비교이기 때문에 결과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보다 가임기 여성비율이 높아 수급가구의 출산율이 비수급가구에 비해 높은 것처럼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

<표 V-16> 자녀장려금 수급과 출산으로 인한 자녀수 증가

(단위: %)

구분			기준연도 2015년		기준연도 2016년		기준연도 2017년	
			출산으로 인한 자녀수		출산으로 인한 자녀수		출산으로 인한 자녀수	
			증가 <sup>1)</sup>	비증가	증가 <sup>2)</sup>	비증가	증가 <sup>3)</sup>	비증가
전체 가구	자녀 장려금	수급	0.13	3.15	0.12	3.06	0.06	3.54
		비수급	1.08	95.64	0.68	96.14	0.28	96.13
		소계	1.21	98.79	0.80	99.20	0.33	99.67
저소득 가구 <sup>4)</sup>	자녀 장려금	수급	0.05	2.37	0.25	2.90	0.14	3.69
		비수급	0.40	97.18	0.02	96.84	0.05	96.13
		소계	0.45	99.55	0.27	99.73	0.18	99.82

주: 1) 2015년에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실적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가구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자녀수가 증가한 가구비율

2) 2016년에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실적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가구 중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자녀수가 증가한 가구비율

3) 2018년에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실적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가구 중 2018년에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자녀수가 증가한 가구비율

4) 시장소득 기준 소득 3분위 이하 가구를 저소득가구로 분류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5. 근로장려효과

- 자녀장려세제는 전년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며, 전년도 근로·사업소득이 없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음
  - 다만, 점증-평탄-점감 구간을 가진 근로장려세제와 달리 자녀장려세제는 점증 구간이 없으므로 근로장려효과가 근로장려세제에 비하여 낮음
  
- 자녀장려금의 근로장려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회귀분석, 두 가지를 실시함
  - 2018년에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1,000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장려세제가 근로장려에 효과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함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장려금 수급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유의하게 더 많은지 회귀분석을 실시함

### 가. 자녀장려금의 근로장려 효과에 대한 수급자 설문조사 결과

- 2018년에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1,000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가구의 55.7%가 자녀장려금 지급이 근로활동 참여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44.3%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함<sup>24)</sup>
  - 자녀장려금이 근로활동 참여에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가구 비율이 38.0%로 가장 높았으나,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응답가구 비율 또한 3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긍정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는 자녀장려세제가 근로장려에 큰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움

24) 그러나 한국복지패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80.2%, 자녀장려금만 수급한 가구의 68.4%가 장려금 수령으로 일할 의욕이 증가되었다고 응답함. 국세청 설문조사 결과 역시 2018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한 응답자의 68.1%가 장려금이 구직 및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효과가 없다는 응답자는 7.1%에 불과했음.

<표 V-17> 근로장려 효과에 대한 수급자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응답	전체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7세 미만 자녀 있는 가구	7세 미만 자녀 없는 가구
매우 도움 됨	17.7	19.8	16.2
약간 도움 됨	38.0	42.0	35.1
별로 도움 안 됨	30.4	25.5	33.9
전혀 도움 안 됨	13.9	12.7	14.8
긍정 응답	55.7	61.8	51.3
부정 응답	44.3	38.2	48.7

주: 1. 2018년 자녀장려금 수급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그러나 한국복지패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80.2%, 자녀장려금만 수급한 가구의 68.4%가 장려금 수령으로 일할 의욕이 증가되었다고 응답함
  - 국세청 설문조사 결과 역시 2018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수령한 응답자의 68.1%가 장려금이 구직 및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효과가 없다는 응답자는 7.1%에 불과했음

#### 나. 자녀장려금 수급과 가구근로시간과의 관계 분석결과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장려금 수급이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실제로 가구근로시간의 증가를 가져왔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봄
  -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와 자녀장려금을 수령하지 않은 매칭가구의 장려금 수급 연도 부부의 총근로시간을 비교함
- 매칭가구는 총자산(시가 기준) 3억원 이하 가구 중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와 전년도 시장소득이 가장 유사한 가구로 선정함<sup>25)</sup>
  - 자녀장려금 재산기준은 2억원 미만이나 자녀장려금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가구의 자산규모를 파악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을 약 75%로 가정하고, 시가 기준 재산 3억원 이하 가구 중 매칭기업을 선정함

25)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와 시장소득이 가장 유사한 가구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와 총자산이 가장 유사한 가구를 매칭가구로 선정함

- ① 자녀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와 시장소득이 가장 유사한 가구를 매칭가구로 선정하는 방법과 ② 자녀부양가구 중 해당 연도에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와 시장소득이 가장 유사한 가구를 매칭가구로 선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함

□ 처리집단(자녀장려금 수급가구)과 통제집단(자녀장려금 비수급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부부합산 근로기간은 평균 16.9개월(17.1개월)이고, 매칭가구의 부부합산 근로기간은 평균 13.6개월(14.3개월)로 자녀장려금 수급가구가 유사한 시장소득을 가진 자녀장려금 비수급가구에 비하여 부부합산 근로기간이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전기 시장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와 전기 시장소득이 유사한 가구가 매칭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표 V-18>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와 매칭가구 특성 분석

(단위: 만원, 개월)

변수명	전체 가구에서 매칭가구 선정			아동가구에서 매칭가구 선정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매칭가구 <sup>1)</sup>	평균차이 (t-test) <sup>3)</sup>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매칭가구 <sup>2)</sup>	평균차이 (t-test) <sup>3)</sup>
전년도 시장소득	3,820	3,820	0.028	3,821	3,821	0.272
부부 총근로시간 <sup>4)</sup>	16.932	13.610	3.321***	17.117	14.372	2.745***
Ln(비근로·사업소득) <sup>5)</sup>	4.608	4.837	-0.229**	4.661	4.895	-0.234**
Ln(가구총자산)	7.147	7.587	-0.440***	7.151	7.737	-0.587***
18세 미만 자녀수	1.533	0.504	1.029***	1.678	1.563	0.115***
여성 가구주 더미	0.151	0.259	-0.108***	0.142	0.120	0.022
대졸이상 가구주 더미	0.210	0.219	-0.009	0.222	0.272	-0.050**
근로장려금 수급 더미	0.492	0.049	0.443***	0.478	0.048	0.430***

주: 1) 총자산이 3억원 이하(시가 기준)인 전체 가구 중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와 전년도 시장소득이 가장 유사한 가구를 매칭가구로 선정

2) 총자산이 3억원 이하(시가 기준)인 아동가구 중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와 전년도 시장소득이 가장 유사한 가구를 매칭가구로 선정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4) 가구주와 배우자의 상용근로자 일한 개월수+임시일용근로자 일한 개월수+고용주자영자 일한 개월수+농림축산업 경영주 일한 개월수+어업 경영주 일한 개월수

5)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 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T-test 결과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는 매칭기업에 비하여 근로·사업소득 이외의 가구소득(즉, 재산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이 적고, 가구재산이 적고, 18세 미만 자녀수가 많고,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단일변량 분석결과는 부부합산 근로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고 단순히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를 비교한 결과이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자녀장려금 수급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표 V-19> 자녀장려금이 부부가구의 근로개월에 미친 영향 추정결과(2015~2017)

변수명	모형 1 (전체 가구 중 매칭 선정) <sup>1)</sup>	모형 2 (아동가구 중 매칭가구 선정) <sup>2)</sup>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더미	1.409*** (2.972)	2.758*** (6.720)
LN(비근로·사업소득) <sup>3)</sup>	-0.451*** (-4.557)	-0.330*** (-3.182)
LN(가구총자산)	0.725*** (6.845)	0.476*** (4.493)
18세 미만 자녀수	1.137*** (5.128)	0.610** (2.295)
여성 가구주 더미	-4.971*** (-10.732)	-5.104*** (-9.221)
대출이상 확률 가구주 더미	-0.321 (-0.734)	-0.201 (-0.478)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더미	0.944** (2.044)	0.510 (1.093)
상수항	11.204*** (11.291)	12.352*** (11.545)
연도더미	포함	포함
표본수	1,314	1,200
Adj. R2	0.221	0.153
F값	42.409***	25.113***

주: 1) 총자산이 3억원 이하(시가 기준)인 전체 가구 중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와 전년도 시장소득이 가장 유사한 가구를 매칭가구로 선정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3) 가구주와 배우자의 상용근로자 일한 개월수+임시일용근로자 일한 개월수+고용주자영자 일한 개월수+농림축산업 경영주 일한 개월수+어업 경영주 일한 개월수

4)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 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표 V-19>는 자녀장려금 수급이 부부합산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로 자녀장려금 수급가구가 매칭가구에 비하여 부부의 근로개월 수가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매칭가구를 전체 가구 중에서 선택하든, 아동부양가구 중에서 선택하든 관계 없이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더미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재산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이 적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18세 미만 자녀가 많을수록, 가구주가 남성이고,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가구의 부부의 근로개월 수가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6.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효과

- 자녀장려세제는 홑벌이가구에 비하여 맞벌이가구에 높은 점감개시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음
  - 홑벌이가구는 소득 2,100만원부터, 맞벌이가구는 소득 2,500만원부터 자녀 1인당 최고지급액이 감소하기 시작함

<표 V-20>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효과에 대한 수급자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응답	전체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7세 미만 자녀 있는 가구	7세 미만 자녀 없는 가구
매우 도움 됨	16.2	18.1	14.8
약간 도움 됨	36.7	38.2	35.6
별로 도움 안 됨	31.6	29.6	33.1
전혀 도움 안 됨	15.5	14.1	16.5
긍정 응답	52.9	56.3	50.4
부정 응답	47.1	43.7	49.6

주: 1. 2018년 자녀장려금 수급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2018년에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1,000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가구의 52.9%가 자녀장려금 지급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47.1%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함
  - 자녀장려금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에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가구

비율이 36.7%로 가장 높았으나,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응답가구 비율 또한 31.6%에 달함

-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긍정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는 자녀장려금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움

## 7. 소득분배 개선효과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 자녀장려금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 자녀장려금 지급 전후 지니계수<sup>26)</sup>의 변화를 살펴봄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7년 기준 자녀장려금은 지니계수를 0.08%p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79916이고, (시장소득+자녀장려금) 기준 지니계수는 0.379596으로 자녀장려세제는 지니계수를 0.08%p 낮추는 효과가 있음

[그림 V-3] 자녀장려세제를 통한 지니계수 변화(전체 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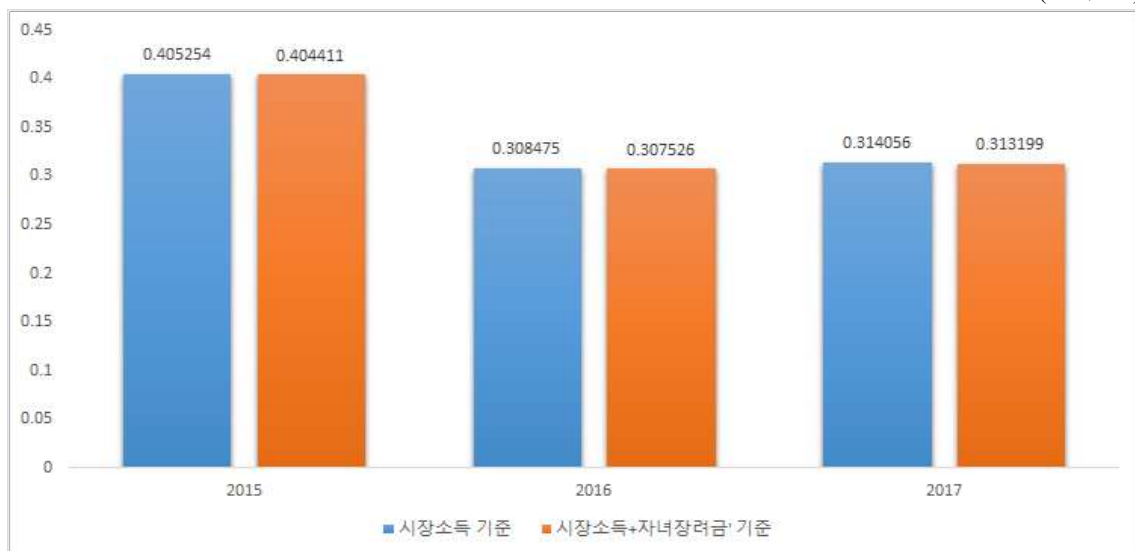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26)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로렌즈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 면적의 비율로 작성되며, 0(완전균등)부터 1(완전불균등) 사이의 값을 가짐

- 아동부양가구만을 대상으로 자녀장려세제를 통한 지니계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자녀장려세제는 아동가구의 지니계수를 0.27%p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아동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14056이고, ‘시장소득+자녀장려금’ 기준 지니계수는 0.313199로 자녀장려금은 아동가구의 지니계수를 0.27%p 낮추는 효과가 있음

[그림 V-4] 자녀장려세제를 통한 지니계수 변화(아동부양가구)

(단위: %)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자녀장려금이 소득불평등도를 개선하는 효과는 높지 않았는데, 분석대상기간의 자녀장려금 수혜자가 최저소득층이 아닌 중위가구소득의 30~100% 사이 가구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2015~2017년 귀속 자녀장려금(즉, 2017~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계산함
- 2019년 이전에는 중위 가구소득의 30% 미만인 최저소득층은 생계급여 수급으로 자녀장려금 수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간 동안 자녀장려금은 중위가구소득의 30~100% 가구에 집중됨
- 중위가구소득의 30% 미만 가구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자녀장려금의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2019년부터 생계급여와 자녀장려금 중복수급 허용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중위가구소득 30% 미만 가구가 포함됐으므로 향후 자녀장려세제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VI. 타당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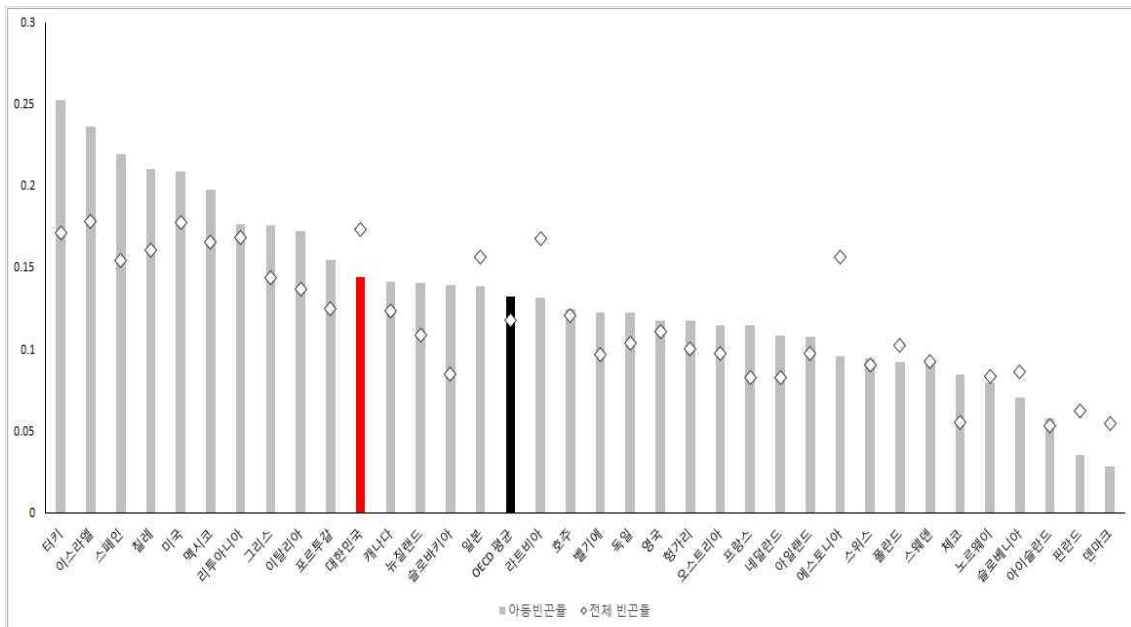


## VI. 타당성 평가

### 1. 정부지원의 적절성 검토

-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아동빈곤율은 2017년 기준 14.5%로 OECD 평균 13.2%보다 높은 편이나, 이는 2018년부터 시행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sup>27)</sup>
-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2015년 16%에서 2016년 15.2%, 2017년 14.5%로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VI-1] OECD 회원국의 아동빈곤율



주: 1. 2017년 또는 가장 최근의 자료 이용

2. 아동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이 빈곤선(중위가구소득의 50%) 이하인 인구비율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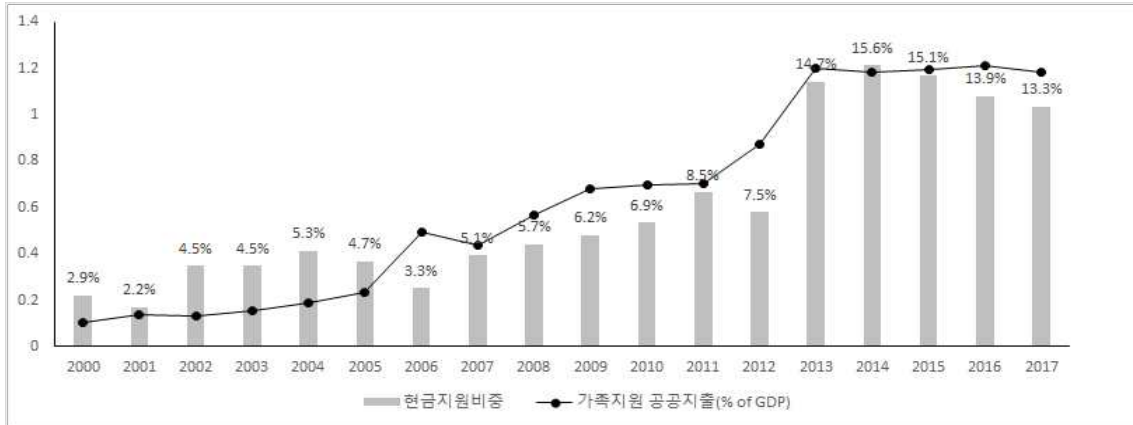
자료: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Income distribution(<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검색일자: 2019. 6. 10)

27) 2018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으로 가족지원 공공지출이 상승하고 아동빈곤율이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반영한 OECD 통계자료는 아직까지 공표된 것이 없음. 아동수당과 관련한 2019년 예산은 2조 1,627억원으로 이는 2018년 우리나라 GDP의 약 0.11%에 해당함.



[그림 VI-3] 가족지원 공공지출에서 현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2000~2017)

(단위: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https://data.oecd.org/socialexp/family-benefits-public-spending.htm>, 검색일자: 2019. 6. 10)

- 아동빈곤율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가족지원 공공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비에 대한 정부의 현금지원은 정책적 타당성을 지닌다고 판단됨
  -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2018년부터 시행된 보편적 아동수당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통계자료에 기초한 결론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2018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으로 가족지원 공공지출이 상승하고, 아동빈곤율이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반영한 OECD 통계자료는 아직까지 공표된 것이 없음
    - 아동수당과 관련한 2019년 예산은 2조 1,627억원으로 이는 2018년 우리나라 GDP의 약 0.11%에 해당함

## 2. 수행방법의 적절성 검토

### 가. 분석자료

#### 1) 자료원천

- 국세청 미시자료 및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장려세제 수행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함

- (국세청 미시자료) 2015~2018년까지 기간 중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20만가구의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을 수행함
  - (한국복지패널 자료) 2015~2017년까지 기간 중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663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 국세청 미시자료는 표본 수가 많고 정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자료만 존재하고, 자녀장려금 이외에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수령한 현금지원금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유사 제도 간 효과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그에 반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자녀장려금 신청가구뿐 아니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가구의 자료를 모두 이용 가능하고, 자녀장려금 이외에 저소득가구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수령한 현금지원금 정보를 담고 있어 자녀장려세제와 유사제도 간 효과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 2) 국세청 미시자료의 특성 분석

- 2015~2018년까지 기간 중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390만가구 중 5.1%에 해당하는 20만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함
-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수급연도는 2015~2018년까지이나, 자녀장려금 귀속연도는 2014~2017년임
- 국세청 미시자료가 모집단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속성을 비교함
- (가구당 장려금 지급액) 국세청 미시자료와 모집단(국세통계연보)의 가구당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연도별 변화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봄
  - (맞벌이/홀벌이 가구구성) 국세청 미시자료와 모집단(국세통계연보)의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 비율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봄
  - (소득규모·재산규모별 가구구성) 국세청 미시자료와 모집단(국세통계연보)의 소득규모 및 재산규모별 가구구성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봄

- (가구당 장려금 지급액) 연도별로 추출한 표본 수가 모집단의 5.1~5.2% 사이로 안정적일 뿐 아니라 국세청 미시자료의 가구당 평균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국세통계연보』가 연도별로 유사한 변동 추이를 나타냄
  - 2014년과 2015년에는 가구당 평균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60만~61만원 수준이었으나, 2016년부터 52만~53만원 수준으로 감소함

〈표 VI-1〉 자녀장려금 지급가구 수와 평균지급액의 연도별 변화

(단위: 가구, %, 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합계
국세통계연보	가구수	1,046,684	926,344	1,026,629	904,938	3,904,595
	평균지급액	61.3	60.5	52.9	52.3	
미시자료	가구수	53,600	47,042	52,996	47,032	200,670
	평균지급액	60.9	60.4	53.2	52.6	
표본비율(표본/모집단)		5.1	5.1	5.2	5.2	5.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와 국세청에서 입수한 미시자료를 근거로 저자 작성

- (홀별이/맞별이 가구구성) 국세청 미시자료의 맞별이가구 비율이 『국세통계연보』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두 자료의 연도별 맞별이가구 비율은 20~22% 수준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맞별이가구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임

〈표 VI-2〉 가구형태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의 연도별 변화

(단위: 가구, 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국세통계연보	홀별이가구	816,803	733,130	815,568	721,302
	맞별이가구	229,881	193,214	211,061	183,636
	맞별이가구 비율	22	21	21	20
미시자료	홀별이가구	41,790	37,316	42,023	37,562
	맞별이가구	11,810	9,726	10,973	9,470
	맞별이가구 비율	22	21	21	20

□ (소득규모별 가구분포) 국세청 미시자료의 소득규모별 가구 구성과 『국세통계연보』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 미시자료의 가구소득 1천만원 미만 가구 비중은 20.40%, 1천만~2천만원 가구 비중은 26.10%, 2천만~3천만원 가구 비중은 26.10%, 3천만~4천만원 가구 비중은 27.30%임
- 『국세통계연보』의 가구소득 1천만원 미만 가구 비중은 20.00%, 1천만~2천만원 가구 비중은 25.90%, 2천만~3천만원 가구 비중은 26.40%, 3천만~4천만원 가구 비중은 27.70%로 국세청 미시자료와 소득규모별 가구분포가 일치함

<표 VI-3> 총급여액 등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2017년 기준)

(단위: 가구, %)

총급여액 등 규모별	미시자료		국세통계연보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1백만원 미만	1,227	2.6	23,023	2.5
2백만원 미만	1,018	2.2	18,787	2.1
3백만원 미만	1,019	2.2	19,590	2.2
4백만원 미만	862	1.8	16,200	1.8
5백만원 미만	874	1.9	16,676	1.8
6백만원 미만	858	1.8	16,000	1.8
8백만원 미만	1,771	3.8	34,081	3.8
9백만원 미만	907	1.9	17,301	1.9
10백만원 미만	1,026	2.2	19,173	2.1
12백만원 미만	2,018	4.3	37,728	4.2
13백만원 미만	1,141	2.4	21,951	2.4
15백만원 미만	2,236	4.8	43,863	4.8
17백만원 미만	2,978	6.3	56,584	6.3
20백만원 미만	3,917	8.3	74,280	8.2
21백만원 미만	1,246	2.6	24,238	2.7
25백만원 미만	4,908	10.4	95,345	10.5
30백만원 미만	6,171	13.1	119,801	13.2
35백만원 미만	6,598	14.0	128,219	14.2
40백만원 미만	6,257	13.3	122,098	13.5
합계	47,032	100.0	904,938	1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와 국세청에서 입수한 미시자료를 근거로 저자 작성

- (재산규모별 가구분포) 국세청 미시자료의 재산규모 1억~2억원 사이 가구비중이 『국세통계연보』보다 소폭 낮지만, 모집단과 국세청 미시자료의 재산규모별 가구 분포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산규모 1억~2억원 미만 가구비중이 국세청 미시자료 33.6%, 『국세통계연보』 34.5%로 모집단이 국세청 미시자료보다 0.9%p 높음

〈표 VI-4〉 재산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2017년 기준)

(단위: 가구, %)

재산 규모별	미시자료		국세통계연보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1천만원 미만	1,161	2.5	21,274	2.4
3천만원 미만	5,920	12.6	112,328	12.4
5천만원 미만	8,783	18.7	163,733	18.1
7천만원 미만	6,973	14.8	132,976	14.7
1억원 미만	8,409	17.9	162,144	17.9
2억원 미만	15,786	33.6	312,483	34.5
합계	47,032	100.0	904,938	1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와 국세청에서 입수한 미시자료를 근거로 저자 작성

- 가구당 장려금 지급액, 홀별이/맞별이 가구비율, 소득규모별·재산규모별 가구분포 등을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국세청 미시자료는 모집단(국세통계연보)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 나. 장려금 지급모형의 적절성 검토

### 1) 평탄-점감 구조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의 자녀장려세제는 평탄-점감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홀별이가구는 2,100만원, 맞별이가구는 2,500만원까지 자녀 1인당 70만원이 지급되며, 이후 자녀 1인당 지급액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가구소득이 4,000만원(소득 상한액)일 때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함

- 자녀장려세제를 운영 중인 대부분 국가가 평탄-점감구조를 가지고 있음
  -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평탄-점감 2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만 점증-평탄-점감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자녀장려세제는 근로 장려의 목적보다 아동빈곤문제 해결에 정책우선순위가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평탄-점감 구조가 정책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부양자녀가 있는 빈곤층 가구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최대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부분 국가가 자녀장려세제를 점증구간 없이 평탄-점감 2단계로 설계함

#### 다. 소득요건의 적절성 검토

- 자녀장려세제의 소득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정해야 적절한지는 절대적 평가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될 문제임
  
- 본 연구는 자녀장려세제의 적절한 소득기준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다음의 자료를 검토함
  - 첫째, 자녀장려세제 도입 당시 고려한 소득상한액 및 점감개시액의 설정근거가 타당한지 검토함
  - 둘째, 조세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지 설문조사를 실시함
  - 셋째, 자녀장려세제를 운영 중인 다른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들의 소득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소득기준이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함
  - 넷째, 저소득층 빈곤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운영 중인 현금급여제도의 소득기준과 자녀장려세제의 소득기준을 비교함
  - 다섯째, 한국복지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의 소득기준이 아동빈곤을 감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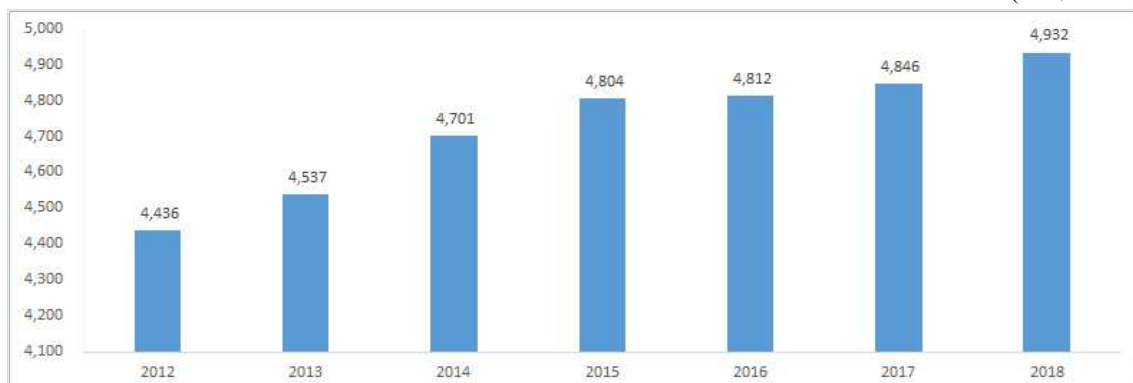
## 1) 소득상한액의 적절성 검토

### 가) 자녀장려세제 도입 당시 소득요건 설정근거의 타당성 검토

- 자녀장려세제는 중산층 중 중하층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75%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경감해줌으로써 아동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고안된 제도임<sup>28)</sup>
  - 아동부양가구를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상한액을 중위 가구소득의 90% 수준에서 설정함
  
- 장녀장려세제 도입 당시 소득상한액과 점감개시액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2012년 가구소득을 참조하여 설정됐음
  - 소득상한액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2012년 2인 이상 비농가 소득 5분위별 3분위가구 평균소득, 점감개시액은 2012년 중위 가구소득의 50% 수준에서 결정됨<sup>29)</sup>
  
- 자녀장려세제 소득상한액 설정근거인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5분위별 3분위가구 평균소득은 2012년 4,436만원에서 2018년에는 4,932만원으로 11.2%p가 증가함
  - 자녀장려금 점감개시액 설정근거인 『가계동향조사』의 중위 가구소득의 50%는 2012년 2,218만원에서 2018년에는 2,466만원으로 11.2%p가 증가함

[그림 VI-4] 가계동향조사 3분위 소득(2인 이상 가구)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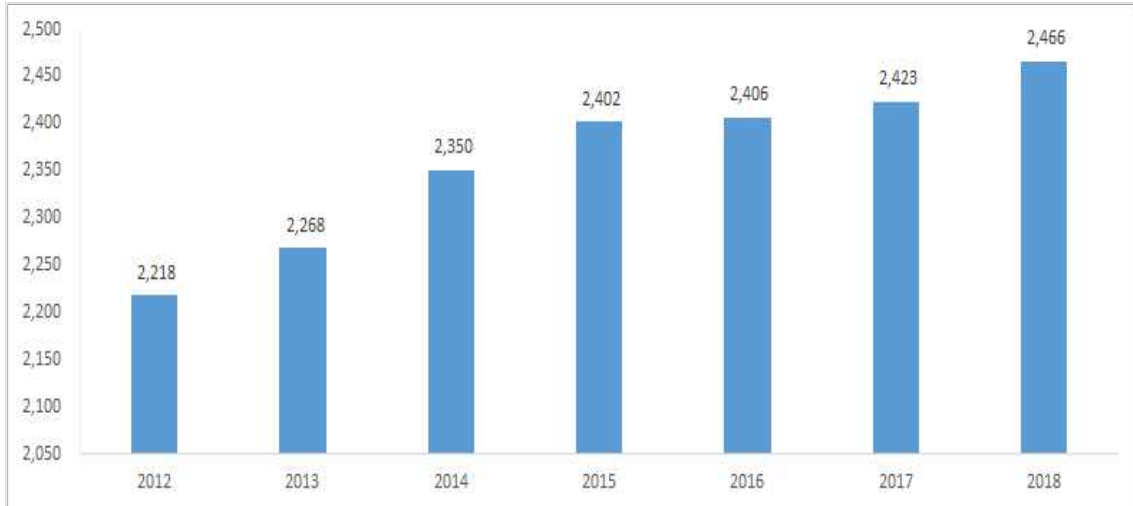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2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녀장려세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3.

2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녀장려세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3.

[그림 VI-5] 가계동향조사 3분위 소득의 50%(2인 이상 가구)

(단위: 만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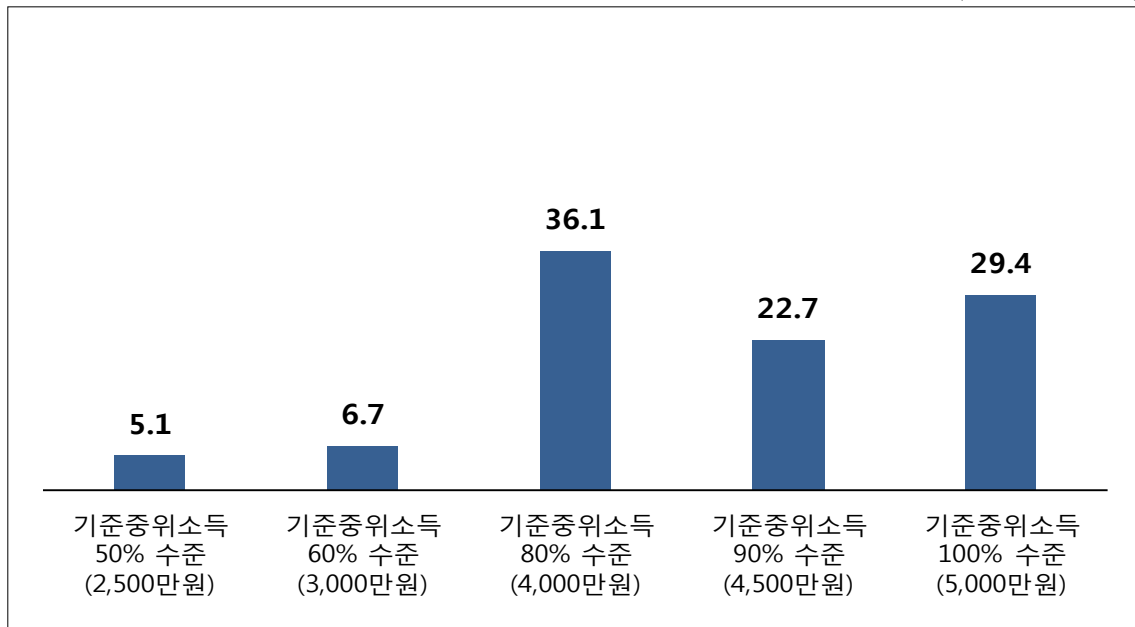
- 그러나 중위 가구소득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세제의 소득상한액(4천만원)과 점감개시액(2,100만원/2,500만원)이 제도 도입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어 물가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는바, 자녀장려세제의 소득상한액과 점감개시액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자녀장려세제의 소득상한액과 점감개시액 설정기준인 가계동향조사의 중위 가구소득은 비농가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2인 이상 가구를 자녀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불리함
- 기준 중위소득을 소득요건 설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주기적으로 소득상한액과 점감개시액을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갱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세제는 2018년 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소득상한액과 점감개시액을 변경한 반면 자녀장려세제는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소득상한액과 점감개시액을 변동없이 유지하고 있음

나) 전문가 설문조사결과를 통한 소득기준의 적절성 검토

- 사회복지 및 조세분야의 전문가 119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자녀장려금 소득상한액이 적절한지 질문한 결과, 과반수 이상(52.1%)이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현재의 소득상한액인 4,00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1%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29.4%와 22.7%가 소득상한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 (5,000만원) 또는 90%(4,5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함
  - 소득상한액을 현재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11.8%에 불과했음
  
- 전공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가 타 전공분야보다 소득상한액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VI-6] 적정 소득상한액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N=119, 단위: %)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자녀장려세제의 소득상한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80~100%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다) 국제비교를 통한 소득기준의 적절성 검토

- 아래 표는 자녀장려세제를 운영 중인 국가들의 소득상한액과 점감개시액을 비교한 결과임
  - 표의 왼쪽 세 개 열은 세 개 지표를 미국달러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이고, 오른쪽 세 개 열은 각 지표를 해당 국가의 2017년 기준 1인당 GDP로 나눈 비율임

<표 VI-5> 국가별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비교<sup>1)</sup>

(단위: 달러, %)

국가	구분	미국달러 <sup>3)</sup>		1인당 GDP 대비 비율 <sup>2)</sup>	
		점감개시액	소득상한액	점감개시액	소득상한액
미국	부부(단독)	200,000	240,000	333.73	400.48
	부부(합산)	400,000	440,000	667.47	734.22
영국	자녀 1명	20,453	30,753	51.19	76.97
	자녀 2명		39,364		98.52
	자녀 3명		47,976		120.08
캐나다	자녀 1명	23,093	6세 이상 120,999	51.47	6세 이상 269.66
			6세 미만 145,055		6세 이상 323.27
	자녀 2명		6세 이상 132,077		6세 이상 294.35
			6세 미만 159,087		6세 이상 354.54
	자녀 3명		6세 이상 141,927		6세 이상 316.30
			6세 미만 170,794		6세 이상 380.64
뉴질랜드	자녀 1명	28,182	43,700	66.18	102.62
	자녀 2명		56,227		132.04
	자녀 3명		68,754		161.46
우리나라	자녀 1명	홀벌이 18,060 맞벌이 21,500	34,400	홀벌이 60.72 맞벌이 72.29	115.66
	자녀 2명				
	자녀 3명				

주: 1) 제2장에서 설명한 주요국 제도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2) World Bank Database, GDP per capita(current 미국달러),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검색 일자: 2019. 6. 23.

3) 2019. 6. 22. 매매기준을 적용 US달러로 환산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와 국세청에서 입수한 미시자료를 근거로 저자 작성

- 우리나라와 미국은 부양자녀수와 관계없이 소득상한액이 동일한 반면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상한액이 증가하는 구조임
  - 영국은 자녀수가 1명 늘어날 때 소득상한액이 8,611달러씩 증가하며, 뉴질랜드는 12,527달러씩 증가함

- 미국달러 기준으로 소득상한액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상한액은 조사대상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편임
  - 소득상한액은 미국이 440,000달러(부부합산 신고)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캐나다 > 뉴질랜드 > 영국 > 우리나라의 순서임
  - 자녀 1인 가구는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소득상한액이 높지만, 그 외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국가 중 소득상한액이 가장 낮음
  - 미국은 초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납세자가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반드시 있어야 함
  
- 1인당 GDP 대비 소득상한액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상한액은 1인당 GDP의 115.66%로 미국, 캐나다보다 낮은 편이나, 영국, 뉴질랜드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움
  - 우리나라의 소득상한액은 영국의 자녀 3인 가구보다 높고, 뉴질랜드의 자녀 1인 가구보다 높으며, 자녀 2인 가구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 자녀장려세제의 출산장려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자녀가구에 더 높은 소득상한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부양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장려금 지급액뿐 아니라 소득상한액이 증가함
  - 우리나라는 부양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증가하나, 소득상한액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일률적으로 4,000만원을 적용함
  - 부양자녀수가 많은 가구는 수입이 많아도 자녀양육비 지출 때문에 순소득이 적을 수 있으므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상한액을 높이는 것이 출산장려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라) 다른 저소득층 지원제도와와의 비교를 통한 소득기준의 적절성 검토

- 우리나라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소득요건은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로 설정됨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위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됨

<표 VI-6> 기준 중위소득 추이

(단위: 만원)

연도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15	1,875	3,120	4,130	5,067	6,004
2016	1,950	3,320	4,295	5,270	6,245
2017	1,984	3,377	4,369	5,361	6,353
2018	2,007	3,417	4,420	5,423	6,426
2019	2,048	3,488	4,512	5,536	6,560

주: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부터 발표되었으며,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4,130만원에서 2019년에는 4,51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5,067만원에서 2019년에는 5,536만원으로 증가함
  
- 소득인정액이 기준점(중위소득의 일정 %) 미만인 저소득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7종의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재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30% 미만으로 가장 낮고, 교육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가장 높음
  
- 자녀장려세제의 소득상한액은 2019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 4인 가구 중위소득의 72% 수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비하여 높은 편임
  - 다만, 자녀장려세제는 부부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순소득(=총수입-총지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녀장려세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기준의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표 VI-7> 2019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만원)

급여종류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615	1,046	1,354	1,661	1,96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19	1,395	1,805	2,214	2,624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4%	901	1,535	1,985	2,436	2,88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024	1,744	2,256	2,768	3,280
근로장려세제	단독가구: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2,000만원) 홑벌이가구: 3인 가구 중위소득의 65%(3,000만원) 맞벌이가구: 4인 가구 중위소득의 65%(3,600만원)					
자녀장려세제	4,000만원(3인 가구 중위소득의 88.7%, 4인 가구 중위소득의 72.3%)					

주: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검색일자: 2019. 6. 23.

마) 정책목표 달성 관점에서 소득기준의 적절성 검토

- 자녀장려세제의 정책목표가 아동빈곤문제의 해소에 있다면 적절한 소득기준은 아동빈곤가구의 경계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론상 아동빈곤가구의 경계소득보다 높은 수준에서 소득수준이 설정되면 모든 아동빈곤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것임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소득분위별 아동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연도에서 아동빈곤가구는 소득 10분위별 3분위가구까지 나타남
  - 소득 10분위별 2분위가구까지 아동빈곤율이 100%이고, 3분위가구의 아동빈곤율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7~17% 사이로 나타남

<표 VI-8> 연도별·소득분위별 아동빈곤율<sup>1)</sup>

(단위: %)

소득분위 <sup>2)</sup>	2015	2016	2017
1분위	100.000	100.000	100.000
2분위	100.000	100.000	100.000
3분위	17.140	10.630	7.651
4분위	0.000	0.000	0.000
5분위	0.000	0.000	0.000
6분위	0.000	0.000	0.000
7분위	0.000	0.000	0.000
8분위	0.000	0.000	0.000
9분위	0.000	0.000	0.000
10분위	0.000	0.000	0.000

주: 1) 아동빈곤율은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전체 아동부양가구 중 가구의 시장소득이 중위가구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부업소득+재산소득)의 50% 이하에 있는 아동부양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시장소득 10분위 기준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2017년 기준 소득분위별·아동수별 아동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 10분위별 1, 2분위가구는 1인 자녀 가구의 빈곤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3분위가구는 2인 자녀 가구의 빈곤비중이 가장 높음
  - 소득이 낮은 가구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1, 2분위가구에서 자녀 1인가구의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표 VI-9> 소득분위별, 아동수별 아동빈곤율<sup>1)</sup>

(단위: %)

소득분위 <sup>2)</sup>	아동수					
	1명	2명	3명	4명	전체	
소득분위	1분위	57.582	21.824	12.743	7.851	100.000
	2분위	45.712	42.652	10.881	0.756	100.000
	3분위	4.845	5.318	2.367	1.701	14.232
	4분위	0.000	0.000	0.000	0.000	0.000
	5분위	0.000	0.000	0.000	0.000	0.000
	6분위	0.000	0.000	0.000	0.000	0.000
	7분위	0.000	0.000	0.000	0.000	0.000
	8분위	0.000	0.000	0.000	0.000	0.000
	9분위	0.000	0.000	0.000	0.000	0.000
	10분위	0.000	0.000	0.000	0.000	0.000

주: 1) 아동빈곤율은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전체 아동부양가구 중 가구의 시장소득이 중위가구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부업소득+재산소득)의 50% 이하에 있는 아동부양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시장소득 10분위 기준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빈곤문제가 나타나는 소득 10분위별 3분위 가구의 경제 시장소득을 계산한 결과, 2017년 기준 4,931만원으로 나타남
  - 소득 10분위별 2분위가구의 경제 시장소득은 3,303만원이며, 3분위가구의 경제 시장소득은 4,931만원임
  - 4분위 이상 가구는 아동빈곤가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의 상한은 4,931만원 미만에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VI-10〉 한국복지패널의 소득분위별 경제 시장소득

(단위: 만원)

소득 분위 <sup>1)</sup>	전체 가구			아동 <sup>2)</sup> 이 없는 가구			아동이 있는 가구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분위	1,201	1,369	1,380	908	1,078	1,117	1,201	1,369	1,380
2분위	2,823	3,052	3,303	2,581	2,744	2,759	2,823	3,052	3,303
3분위	4,855	4,880	4,931	3,563	4,135	4,100	4,855	4,880	4,931
4분위	5,405	6,174	6,186	4,817	4,720	5,832	5,405	6,174	6,186
5분위	7,091	7,082	7,215	5,880	6,142	6,616	7,091	7,082	7,215
6분위	7,901	7,995	8,682	6,943	7,115	7,502	7,901	7,995	8,682
7분위	10,104	10,613	11,199	8,413	9,108	11,199	10,104	10,613	9,462
8분위	10,826	12,023	11,693	10,337	12,023	11,624	10,826	10,168	11,693
9분위	12,809	13,006	13,656	11,645	13,001	13,656	12,809	13,006	13,569
10분위	466,989	127,499	124,327	56,671	81,573	124,327	466,989	127,499	85,044

주: 1)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를 구분함

2)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분류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2) 점감개시액의 적절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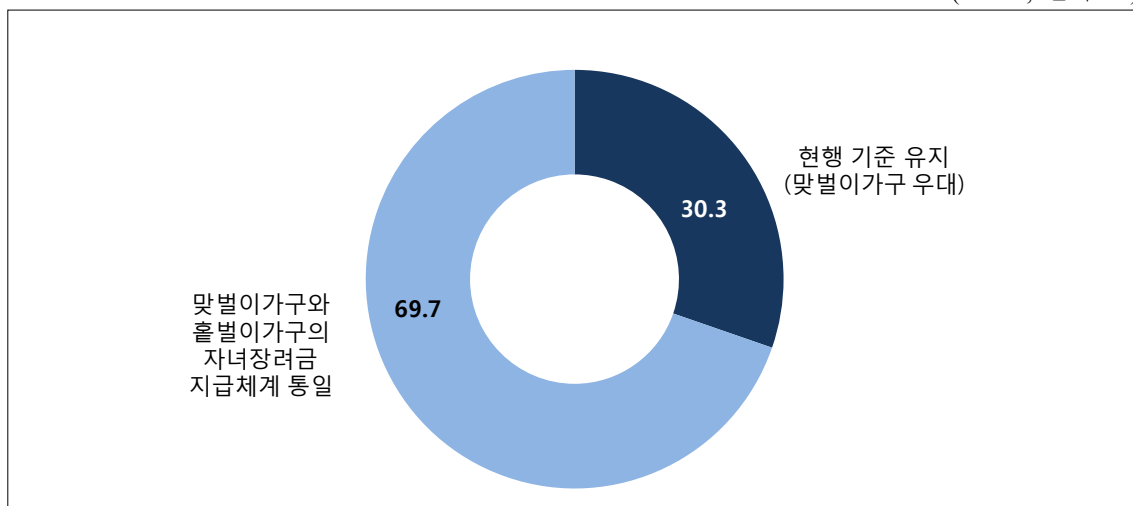
- 자녀장려세제 도입 당시 점감개시액은 2012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2,212만원)에서 결정됨<sup>30)</sup>
  - OECD의 일반적 빈곤층 기준인 중위 가구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최고급여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점감개시액을 중위 가구소득의 50% 수준으로 설정함

3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녀장려세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3.

-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점감개시액은 미국을 제외하고, 낮은 편으로 보기 어려움
  - 미국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점감개시액은 미국보다 현저히 낮지만, 영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캐나다 및 뉴질랜드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 1인당 GDP 대비 우리나라의 점감개시액은 영국, 캐나다보다 높은 수준이며, 홀별이가구는 뉴질랜드보다 낮지만, 맞별이가구는 뉴질랜드보다 높은 수준임
  
- 한편 우리나라는 홀별이가구와 맞별이가구의 점감개시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반면 다른 조사대상 국가들은 자녀수 또는 맞별이 여부에 관계없이 점감개시액이 동일한 것이 특징임
  -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소득상한액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나, 점감개시액은 자녀수 또는 맞별이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함
  - 가구소득이 기준점 미만인 모든 아동빈곤가구는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최대급 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의지가 담긴 설계방식임
  
- 사회복지 및 조세분야의 119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홀별이가구와 맞별이가구의 점감개시액을 동일해야 한다고 응답함
  - 특히,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가 타 전공분야보다 홀별이가구와 맞별이가구의 점감개시액 통일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음

[그림 VI-7] 맞별이가구-홀별이가구 지급체계 통일에 대한 전문가 의견

(N=1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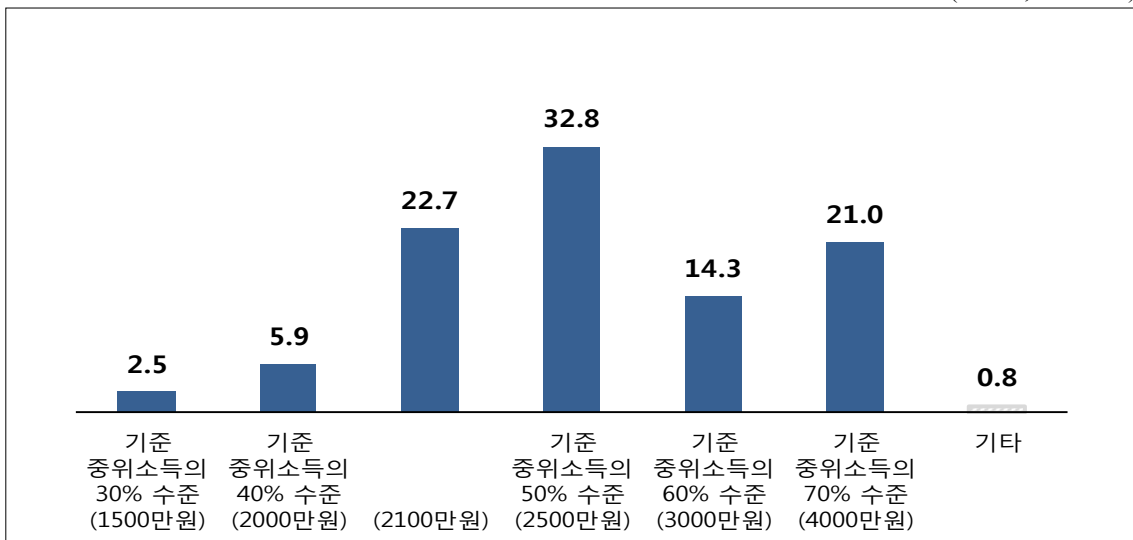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자녀장려금의 점감개시액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32.8%가 중위소득의 50% 수준(2,500만원) 적절하다고 응답함
-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적정 점감개시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 즉 2,500만원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음

[그림 VI-8] 홀벌이가구의 적정 점감개시액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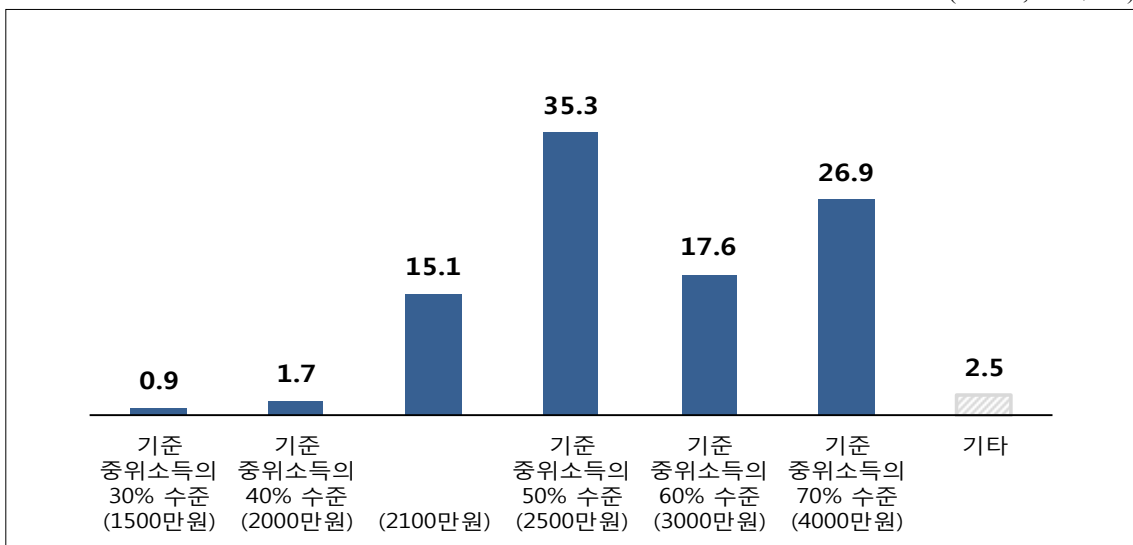
(N=119, 단위: %)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그림 VI-9] 맞벌이가구의 적정 점감개시액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N=119, 단위: %)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우리나라의 점감개시액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지만, 2012년 이후 물가변동 효과를 고려하여 홀별이가구의 점감개시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인 2,500만원으로 인상하여 홀별이가구와 맞별이가구의 점감개시액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홀별이가구의 점감개시액 2,100만원은 2012년 중위 가구소득의 50% 수준에서 설정된 것으로 그 간의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홀별이가구가 맞별이가구보다 아동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아동빈곤문제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했을 때 맞별이가구를 홀별이가구에 비하여 우대할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또한 응답자의 약 70%가 맞별이가구와 홀별이가구의 점감개시액 통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홀별이가구의 점감개시액을 높여 맞별이가구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홀별이가구와 맞별이가구의 점감개시액을 통일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2018년에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1,000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녀장려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높인다는 뚜렷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홀별이가구와 맞별이가구의 점감개시액 통일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라. 재산요건의 적절성 검토

-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정해야 적절한 것인지는 절대적 평가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임
  
- 본 연구는 자녀장려세제의 적절한 재산기준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다음의 자료를 검토함
  - 첫째, 조세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상대로 적절한 재산요건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둘째, 자녀장려세제를 운영 중인 다른 국가들(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사례를 살펴보고, 재산요건 유지의 필요성을 검토함

-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제도 등 저소득층 빈곤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운영 중인 다양한 현금급여제도의 재산기준과 자녀장려 세제의 재산기준을 비교함
- 넷째, 한국복지패널 자료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재산기준이 아동빈곤을 감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함

### 1)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보유자산 현황

□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소득규모별 가구자산 구성을 살펴본 결과, 2017년 귀속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총재산은 평균 8,250만원이며, 이 중 부동산이 42%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전세금(37%), 금융재산(16%), 기타재산(6%)의 순서로 나타남

<표 VI-11>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전체 가구)의 소득규모별 가구자산 구성(2017)

(단위: 만원, %)

총급여액 등 규모별	전세금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재산		총재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백만원	3,310	46	2,490	35	1,020	14	334	5	7,160
1~2백만원	3,020	41	2,760	38	1,160	16	331	5	7,280
2~3백만원	2,920	39	2,950	39	1,300	17	319	4	7,490
3~4백만원	3,210	43	2,690	36	1,260	17	344	5	7,500
4~5백만원	3,040	44	2,460	35	1,160	17	318	5	6,980
5~6백만원	3,120	44	2,450	34	1,210	17	384	5	7,170
6~8백만원	2,970	42	2,610	37	1,100	16	363	5	7,050
8~9백만원	3,110	43	2,630	36	1,150	16	360	5	7,250
9~10백만원	2,920	40	2,990	41	1,050	14	347	5	7,310
10~12백만원	3,140	43	2,650	36	1,150	16	345	5	7,280
12~13백만원	3,220	43	2,580	35	1,260	17	406	5	7,460
13~15백만원	3,140	41	3,020	39	1,180	15	407	5	7,740
15~17백만원	3,070	39	3,220	41	1,240	16	400	5	7,920
17~20백만원	3,140	40	3,120	39	1,250	16	402	5	7,920
20~21백만원	3,050	37	3,350	41	1,330	16	453	6	8,180
21~25백만원	3,120	37	3,600	43	1,300	15	453	5	8,470
25~30백만원	3,070	35	3,810	43	1,390	16	522	6	8,790
30~35백만원	3,000	33	4,090	45	1,450	16	579	6	9,120
35~40백만원	2,960	32	4,280	46	1,390	15	582	6	9,210
전체 가구	3,060	37	3,430	42	1,290	16	459	6	8,250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5%)를 기초로 저자 작성

- 소득이 낮을수록 전세금 비중이 높으며, 소득이 증가하면 전세금 비중은 감소하고 부동산 비중이 증가함
  - 금융재산 및 기타재산 비중은 가구의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한 것으로 나타남
-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중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가구자산 구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근로자가구가 자영업자가구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재산이 더 많고, 전세금비중이 높은 대신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가구의 평균재산은 8,770만원, 자영업자가구의 평균재산은 8,160만원으로 근로자가구 평균재산이 자영업자가구보다 크며, 이러한 차이는 주로 전세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가구는 자영업자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세보증금이 많고, 부동산이 적은 특징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
  - 금융재산 및 기타재산비중은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표 VI-12> 자녀장려금 수급가구(근로자가구)의 소득규모별 가구자산 구성(2017)

(단위: 만원, %)

총급여액 등 규모별	전세금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재산		총재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백만원	3,440	46	2,590	34	1,110	15	369.75	5	7,510
1~2백만원	3,370	43	2,720	35	1,230	16	457.44	6	7,780
2~3백만원	3,400	42	3,260	40	1,010	12	458.84	6	8,140
3~4백만원	3,280	40	3,050	37	1,410	17	394.10	5	8,140
4~5백만원	3,310	43	2,460	32	1,470	19	373.22	5	7,610
5~6백만원	3,180	39	3,130	38	1,500	18	426.49	5	8,240
6~8백만원	3,190	41	2,970	39	1,170	15	365.26	5	7,690
8~9백만원	3,600	42	3,160	37	1,480	17	394.00	5	8,640
9~10백만원	3,270	41	3,120	39	1,190	15	357.48	5	7,940
10~12백만원	3,590	44	2,890	35	1,290	16	423.80	5	8,190
12~13백만원	3,790	43	3,230	37	1,200	14	567.34	6	8,790
13~15백만원	3,850	45	3,130	36	1,170	14	465.95	5	8,620
15~17백만원	3,690	40	3,650	39	1,400	15	547.58	6	9,300
17~20백만원	3,800	41	3,570	39	1,360	15	490.76	5	9,220
20~21백만원	3,530	39	3,620	40	1,440	16	511.23	6	9,090
21~25백만원	3,550	38	3,800	41	1,500	16	449.46	5	9,300
25~30백만원	3,620	38	3,940	42	1,320	14	551.09	6	9,440
30~35백만원	3,840	39	4,100	41	1,490	15	533.42	5	9,970
35~40백만원	3,590	36	4,300	43	1,490	15	544.31	5	9,930
전체 가구	3,560	41	3,410	39	1,330	15	465.98	5	8,770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5%)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VI-13>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자영업자가구)의 소득규모별 가구자산 구성(2017)

(단위: 만원, %)

총급여액 등 규모별	전세금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재산		총재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백만원	3,200	47	2,410	35	952	14	302.87	4	6,860
1~2백만원	2,880	41	2,780	39	1,130	16	280.41	4	7,080
2~3백만원	2,780	38	2,860	39	1,390	19	279.23	4	7,300
3~4백만원	3,190	44	2,570	35	1,210	17	328.07	4	7,300
4~5백만원	2,960	44	2,470	36	1,060	16	301.69	4	6,790
5~6백만원	3,100	46	2,220	33	1,110	16	368.91	5	6,800
6~8백만원	2,900	42	2,490	36	1,080	16	361.89	5	6,830
8~9백만원	2,960	43	2,470	36	1,040	15	349.48	5	6,820
9~10백만원	2,820	40	2,960	42	1,010	14	344.24	5	7,130
10~12백만원	3,030	43	2,590	37	1,120	16	325.03	5	7,060
12~13백만원	3,100	43	2,450	34	1,270	18	374.13	5	7,190
13~15백만원	2,990	40	3,000	40	1,180	16	394.05	5	7,560
15~17백만원	2,980	39	3,150	41	1,210	16	379.60	5	7,730
17~20백만원	3,050	39	3,050	39	1,240	16	388.51	5	7,730
20~21백만원	2,970	37	3,310	41	1,310	16	444.37	6	8,040
21~25백만원	3,060	37	3,570	43	1,270	15	453.21	5	8,350
25~30백만원	2,990	34	3,790	44	1,400	16	518.30	6	8,700
30~35백만원	2,900	32	4,080	45	1,450	16	583.94	6	9,020
35~40백만원	2,900	32	4,280	47	1,380	15	585.61	6	9,150
전체 가구	2,970	36	3,440	42	1,290	16	458.20	6	8,160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5%)를 기초로 저자 작성

-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재산규모 및 재산 구성은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임
- 가구자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과 서울로, 이 두 지역은 전체 가구자산 중 절반 이상이 전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다음으로 보유자산이 많은 지역은 부산, 대구, 경남, 인천으로 이들 지역은 세종 및 서울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 비중은 높은 대신 전세금 비중이 낮음
  - 가구평균자산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으로 전세금 비중은 낮은 대신 부동산 비중과 금융재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자산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자산종류별 평가방법이 자녀장려금 수급자 선정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표 VI-14>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지역별 가구자산 구성(2017)

(단위: 만원, %)

지역	전세금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재산		총재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종	4,760	52	1,930	21	1,480	16	954	10	9,130
서울	4,980	55	2,370	26	1,390	15	272	3	9,010
부산	3,050	34	4,080	46	1,340	15	393	4	8,860
대구	2,950	34	3,930	45	1,480	17	433	5	8,790
울산	3,130	36	3,810	44	1,130	13	506	6	8,580
경남	2,420	29	4,230	50	1,280	15	530	6	8,460
인천	2,950	35	3,990	48	1,050	13	405	5	8,390
경기	3,620	43	3,190	38	1,100	13	454	5	8,370
제주	3,010	36	3,110	38	1,610	20	514	6	8,250
광주	2,310	28	3,900	48	1,420	17	538	7	8,170
대전	2,740	34	3,440	43	1,330	17	485	6	7,990
충남	2,470	31	3,560	45	1,310	17	509	6	7,850
경상	1,860	25	3,770	50	1,420	19	521	7	7,580
충북	2,020	27	3,460	46	1,420	19	562	8	7,460
전북	1,940	26	3,490	47	1,490	20	532	7	7,440
강원	2,180	30	3,280	45	1,260	17	571	8	7,280
전남	1,860	26	3,180	44	1,580	22	518	7	7,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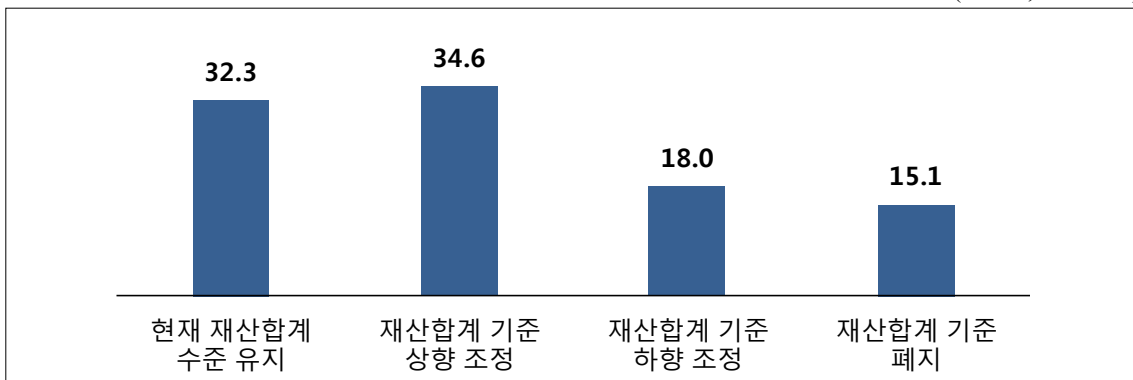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에서 입수한 미시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 2)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재산기준의 적절성 검토

- 사회복지 및 조세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산요건 개편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현행 유지(32.3%)와 상향 조정(34.6%) 응답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남
  - 재산요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15.1%에 불과하였음
  - 상향 조정의견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응답이 51.4%로 타 전공분야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VI-10]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개편 시 적정 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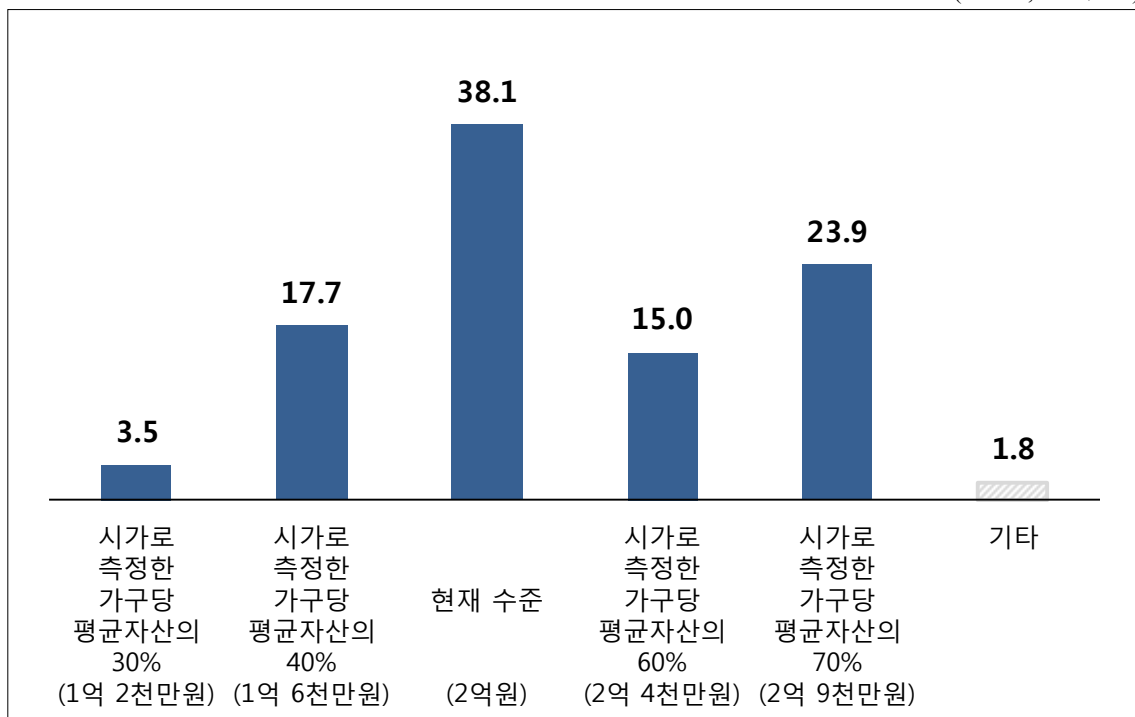
(N=133, 단위: %)



- 걱정한 재산요건에 관해 질문한 결과, 현행 2억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억 9천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23.9%로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전공분야별로는 경제학 분야 전문가가 현행 유지 의견이 56.3%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중 37.5%가 2억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함

[그림 VI-11]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적정 수준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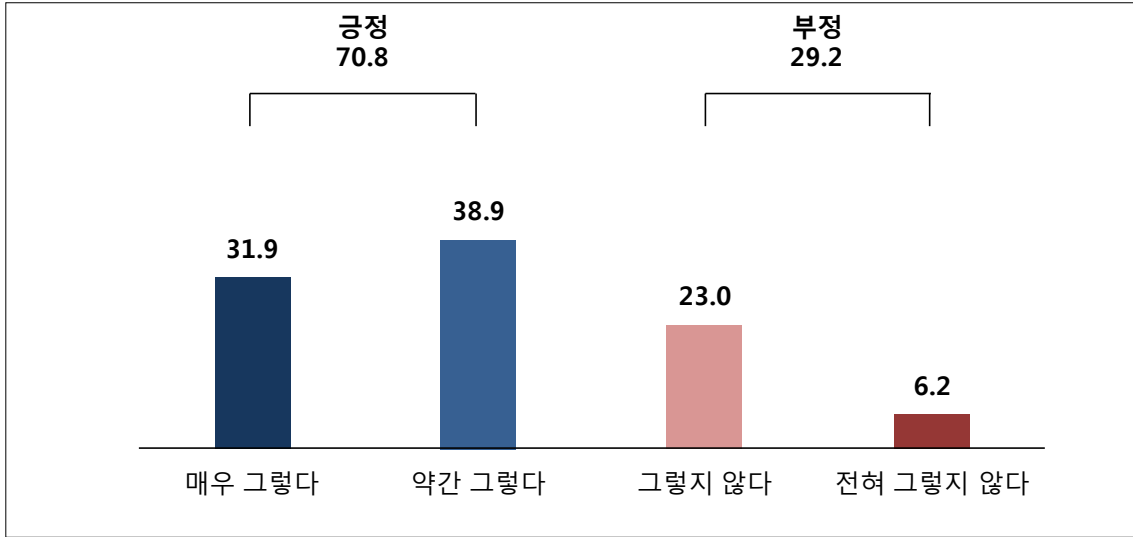
(N=113, 단위: %)



-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따라 재산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70.8%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특히,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의 긍정 응답 비율이 90.6%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회계/세무 및 경제학 분야 전문가는 긍정 응답 비율이 각각 62.2%, 62.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전문가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재산요건을 현재 수준보다 높일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지역별 재산기준에 차등을 두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VI-12] 도시-농어촌 가구 재산요건 차등 적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N=113, 단위: %)



### 3) 국제비교를 통한 재산기준의 적절성 검토

- 조사대상국가 중 재산요건을 두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은 해당 가구가 보유한 재산수준에 관계없이 소득이 기준점 이하이면 자녀장려금을 지급함
  
- 우리나라가 자녀장려금 수급요건으로 재산요건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 대비 부동산가격이 높고, 거주형태(자가/전세/월세)에 따라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며, 부모와 자식 간 경제적 분리가 명확하지 않아 소득수준만으로는 생활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임<sup>31)</sup>
  
- 재산은 가구의 잠재적 소비의 원천이자 위기 시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정책적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음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녀장려세제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저소득층 지원 제도가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을 보유한 가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31)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자녀장려금 성과분석 및 운용방안 연구』, 2017. 7.

- 재산요건을 폐지할 경우 상속·증여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부유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아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는 문제점이 있음
  - 부유한 가구는 소액의 장려금 지급이 근로 또는 출산장려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목표 달성 없이 불필요한 세수유실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재산요건 유지가 국제적 표준에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정서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1차적으로는 소득요건을 통해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 이상 재산을 보유한 부유한 가구는 재산기준을 통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5) 다른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비교를 통한 재산기준의 적절성 검토**

- 자녀장려세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재산기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의 분리 여부) 자녀장려세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제도는 가구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소득기준만 적용함
  - (총자산 vs. 순재산) 자녀장려세제는 총자산이 기준점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제도는 순재산(=총자산-총부채)을 기준으로 함

〈표 VI-15〉 자녀장려세제와 다른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재산기준 비교

항목	자녀장려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제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분리여부	이중기준선 방식(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별도 적용)	소득 단일기준선 방식(가구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소득기준만 적용)
재산기준 적용기준	총자산(부채 차감하지 않음)	순재산(=총자산-기본재산액-총부채)
지역별 차등적인 기준 적용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재산기준 적용	대도시의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기본재산액보다 높음

- (지역별 특성 반영) 자녀장려세제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적용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제도는 농어촌보다 대도시에 보다 높은 재산기준을 적용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가산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점 미만이면 수급대상자로 선정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해당 가구의 총자산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함

<표 VI-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1)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1) 재산가액의 산정

재산종류	평가방법
토지, 건축물, 주택	시가표준액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동산 및 입목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 입목: 시가표준액
회원권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기본재산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재산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3) 부채: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등(부채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4) 소득환산율

지역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2&cciNo=1&cnpClsNo=2>, 검색일자: 2019. 6. 23.

- 일반적으로 ‘소득 단일기준선’ 방식은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복지제도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sup>32)</sup>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단일기준선’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지만, 자녀장려세제는 중산층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중기준선’ 방식이 적합함
  - 아울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저량(stock)으로서의 재산을 유량(flow)으로서의 소득과 동일한 척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결함(예. 소득환산율의 적정성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한편 순재산(=총자산-재산기준액-총부채) 기준의 사용은 자녀장려금 지급가구가 차입을 억제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순재산 기준보다 총자산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sup>33)</sup>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는 빈곤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입금을 주택이나 투자용 자산 구입에 사용할 가능성이 낮음
  - 그러나 자녀장려세제는 중산층을 포괄하기 때문에 주택이나 투자용 자산 구입에 차입금을 사용함으로써 순재산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할 가능성이 있음<sup>34)</sup>
- 한편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가구자산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
  - 수도권가구는 평균보유재산이 5억원에 이르는 반면 비수도권가구는 평균자산이 3억 4천만원에 불과함
  - 가구재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6억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2억 7천만원)으로 두 지역의 가구재산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임
  - 소득수준이 동일할 경우 수도권가구가 비수도권가구에 비하여 재산기준으로 인하여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저소득층의 소득-자산분포를 통해 본 사회보장제도 재산기준의 개선 방향』  
 3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저소득층의 소득-자산분포를 통해 본 사회보장제도 재산기준의 개선 방향』  
 34)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투자용 자산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나 부채는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차입금을 이용하여 주택이나 투자용 자산을 구입하면 순재산액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표 VI-17> 지역별 가구자산 현황

(단위: 만원)

지역	자산(시가)			환산가액 <sup>1)</sup>
	합계	금융자산	실물자산	
전국	41,573	10,512	31,061	33,808
수도권	50,057	13,026	37,031	40,799
서울	60,220	16,134	44,085	49,198
인천	33,551	8,216	25,335	27,217
경기	45,567	11,596	33,971	37,074
비수도권	33,706	8,182	25,524	27,325
부산	34,630	7,465	27,165	27,839
대구	42,749	9,546	33,203	34,448
광주	32,447	9,516	22,931	26,714
대전	33,191	8,481	24,709	27,013
울산	43,263	11,312	31,951	35,275
세종	53,879	11,138	42,740	43,193
강원	31,047	7,316	23,732	25,115
충북	30,603	7,800	22,803	24,902
충남	30,807	6,705	24,102	24,782
전북	27,041	7,783	19,257	22,226
전남	28,837	8,534	20,304	23,762
경북	31,641	7,742	23,899	25,666
경남	32,225	7,784	24,440	26,114
제주	48,205	8,519	39,686	38,284

주: 1) 환산가액=(점유 부동산의 시가+농기계·농축산물의 시가+자동차 시가+회원권 등 기타자산 시가)×시가표준액 현실화율 75%+전세보증금+금융자산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실제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가구 평균자산과 아동빈곤율, 자녀장려금 수급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구 평균자산은 서울 및 광역시 소재가구가 시·군소재 가구에 비하여 1.5배 이상 많으나, 자녀장려금 수급비율은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 및 광역시가 시·군에 비하여 가구보유자산이 많아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비율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함

<표 VI-18> 지역별 아동빈곤율과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비율

(단위: 만원, %)

지역	가구 평균자산(시가)	아동빈곤율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비율	
			전체 가구 중	아동빈곤가구 중
서울	39,907	5.287	7.177	4.943
광역시	38,502	9.754	15.036	23.709
시	24,559	8.122	13.975	32.999
군	24,256	13.244	17.951	39.323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지역별 지가 차이 등으로 인해 최저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규모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만, 거주 지역에 따른 재산요건 차등적용은 동일한 재산 보유자간 형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자녀장려금의 재산기준은 고액자산가가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른 차등적용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6) 정책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재산기준의 적절성 검토

- 현재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은 근로장려세제를 준용한 것임
  - 가구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재산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함
- 자녀장려금의 재산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자녀장려금의 정책목표가 아동빈곤가구 감소에 있으므로 대다수 아동빈곤가구가 재산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녀장려금의 재산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둘째,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소득 5분위별 3분위가구의 평균소득 수준에서 설정되었으므로 재산기준 또한 소득 5분위별 3분위가구의 평균보유재산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아동빈곤가구의 95%가 자녀장려금 수급이 가능한 재산수준은 시가 7억 5천만원, 90%가 자녀장려금 수급이 가능한 재산수준은 시가 1억 4천만원 수준으로 분석됨
  - 한국복지패널의 재산가액은 해당 자산의 현재 시가를 조사한 것이고, 자녀장려세제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회원권 등 자산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함
  -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을 75%로 가정했을 때, 아동빈곤가구의 90%가 자녀장려금 수급이 가능한 재산기준은 1억 2천만원, 아동빈곤가구의 95%가 자녀장려금 수급이 가능한 재산기준은 7억 1천만원으로 분석됨

〈표 VI-19〉 아동빈곤<sup>1)</sup>가구의 자산값

(단위: 만원)

구분	시가							환산가액 <sup>2)</sup>
	점유 부동산	전세 보증금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회원권 등 기타자산	총자산	
분포의 90%	6,000	6,000	900	0	1,000	0	13,900	12,150
분포의 95%	11,000	50,000	9,700	0	3,800	1,000	75,500	71,550

주: 1) 아동빈곤가구란 18세 미만 자녀부양가구 중 가구의 시장소득이 중위가구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부업소득+재산소득)의 50% 이하에 있는 아동부양가구를 말함

2) 환산가액=(점유 부동산의 시가+농기계·농축산물의 시가+자동차 시가+회원권 등 기타자산 시가)×시가표준액 현실화율 75%+전세보증금+금융자산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다음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설정기준인 소득 5분위별 3분위가구의 평균보유재산을 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 시가 3억 4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75%를 가정하여 환산한 재산평가액은 2억 8천만원임(금융자산+실물자산×75%=8,550만원+25,857만원×75%=27,943만원)

<표 VI-20> 가구특성 및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단위: 만원, %)

구분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구성비	부동산	거주주택	기타		
전체	41,573	10,512	7,841	2,671	31,061	74.7	29,177	16,895	1,883	
소득 5 분위별	1분위	13,332	3,035	1,860	1,174	10,297	77.2	10,060	6,819	237
	2분위	23,408	5,884	3,923	1,961	17,523	74.9	16,723	10,788	801
	3분위	34,407	8,550	6,039	2,511	25,857	75.2	24,203	15,055	1,655
	4분위	46,128	11,574	8,696	2,878	34,555	74.9	32,053	19,725	2,502
	5분위	90,572	23,514	18,682	4,833	67,058	74.0	62,837	32,081	4,221
순자산 5 분위별	1분위	3,535	1,960	860	1,101	1,574	44.5	1,222	686	353
	2분위	12,732	5,224	2,775	2,449	7,508	59.0	6,628	5,361	880
	3분위	26,046	7,618	5,006	2,613	18,428	70.8	16,909	13,367	1,519
	4분위	45,058	11,456	8,707	2,749	33,602	74.6	31,485	22,151	2,117
	5분위	120,465	26,297	21,852	4,445	94,168	78.2	89,621	42,899	4,547
입주형 태별	자가	54,148	9,620	9,620	-	44,528	82.2	42,170	27,576	2,358
	전세	35,653	20,713	7,105	13,608	14,941	41.9	13,558	-	1,383
	기타 (월세 등)	9,975	4,558	3,286	1,272	5,417	54.3	4,494	-	923

자료: 통계청, 「가구금융복지조사」

- 현재의 자녀장려세제 재산기준은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을 75%로 가정했을 때 아동빈곤가구의 90% 이상을 포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보기는 어려움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설정기준인 소득 5분위별 3분위가구의 평균보유재산(2억 8천만원) 수준으로 재산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가구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재의 재산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최대지급액의 적절성 검토

### 1) 국제비교를 통한 최대지급액의 적절성 검토

- 1인당 GDP 대비 우리나라의 최대지급액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1인 자녀가구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지급액은 미국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
  
- 다른 국가들은 자녀수 또는 자녀 나이에 따라 최대지급액에 차이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녀수 및 자녀 나이에 관계없이 최대지급액이 1인당 70만원으로 동일한 것이 특징임
  -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는 둘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지급액이 감소함
  - 캐나다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7세 이상 자녀에 비하여 7세 미만 자녀에 더 높은 자녀장려금을 적용함
  
-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공통생활비의 존재 때문에 자녀양육비가 자녀수에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자녀수가 증가하면 증분비용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임
  - 자녀장려금을 자녀양육비 보전 성격의 정부지원금으로 본다면 자녀수가 늘어나면 증분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줄이는 것이 정책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자녀 나이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7세 미만 자녀부양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자녀 나이를 고려해 자녀양육비가 차등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 120만원의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중복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녀 1인당 연 190만원까지 자녀양육비를 보전받고 있음

〈표 VI-21〉 국가별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비교<sup>1)</sup>

(단위: 달러, %)

국가	구분	미국달러 <sup>3)</sup>	1인당 GDP 대비 비율 <sup>2)</sup>
미국	부부(단독)	2,000(1,400) <sup>4)</sup>	3.34(2.34)
	부부(합산)	2,000(1,400) <sup>4)</sup>	3.34(2.34)
영국	자녀 1명	4,223	10.57
	자녀 2명	7,753	19.41
	자녀 3명	11,284	28.24
캐나다	자녀 1명	6세 이상 4,157	6세 이상 9.26
		6세 미만 4,927	6세 미만 10.98
	자녀 2명	6세 이상 8,314	6세 이상 18.53
		6세 미만 9,853	6세 미만 21.96
	자녀 3명	6세 이상 16,627	6세 이상 37.06
		6세 미만 14,780	6세 미만 32.94
뉴질랜드	자녀 1명	3,879	9.11
	자녀 2명	7,011	16.46
	자녀 3명	10,143	23.82
우리나라	자녀 1명	602	2.02
	자녀 2명	1,204	4.05
	자녀 3명	1,806	6.07

주: 1) 제2장에서 설명한 주요국 제도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2) World Bank Database, GDP per capita(current 미국달러),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검색 일자: 2019. 6. 23.

3) 2019.6.22. 매매기준을 적용 미국달러로 환산

4) 2,000달러까지 공제 가능, 1,400달러까지 환급 가능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와 국세청에서 입수한 미시자료를 근거로 저자 작성

## 2) 자녀양육비 통계자료를 이용한 최대지급액의 적절성 검토

- 자녀장려세제 도입 당시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2012년 가족 공통비용 중 개인자녀 몫인 1인당 50만원 수준에서 결정된 것임<sup>35)</sup>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2018년 기준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1자녀 가정 73만원, 2자녀 가정 138만원, 3자녀 가정 162만원이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분비용이 체감함
  - 자녀수에 따른 증분비용은 첫 번째 자녀 73만원, 두 번째 자녀 65만원(=138만원-73만원), 세 번째 자녀 24만원(=162만원-138만원)임

3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녀장려세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3.

- 지역별 자녀양육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촌지역의 순서로 자녀양육비가 높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차이는 크지 않음
  - 농촌지역의 자녀양육비는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의 70~80% 수준임
  
- 중위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1자녀 가구 44만원, 2자녀 가구 75만원, 3자녀 가구 85만원임
  - 중위소득의 100~120% 범위 내의 가구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는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의 약 1.5배로 나타남
  
- 우리나라 자녀장려세제의 최대지급액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라 보기 어려움
  - 자녀장려세제 운영을 통해 정부가 1달분 자녀양육비를 경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낮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제도 도입 당시 50만원에서 2018년에는 70만원으로 상승하였으나, 2018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1달분 자녀양육비 경감목표는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VI-22> 기혼여성(15~49세)의 월평균 자녀양육비용 지출액(2018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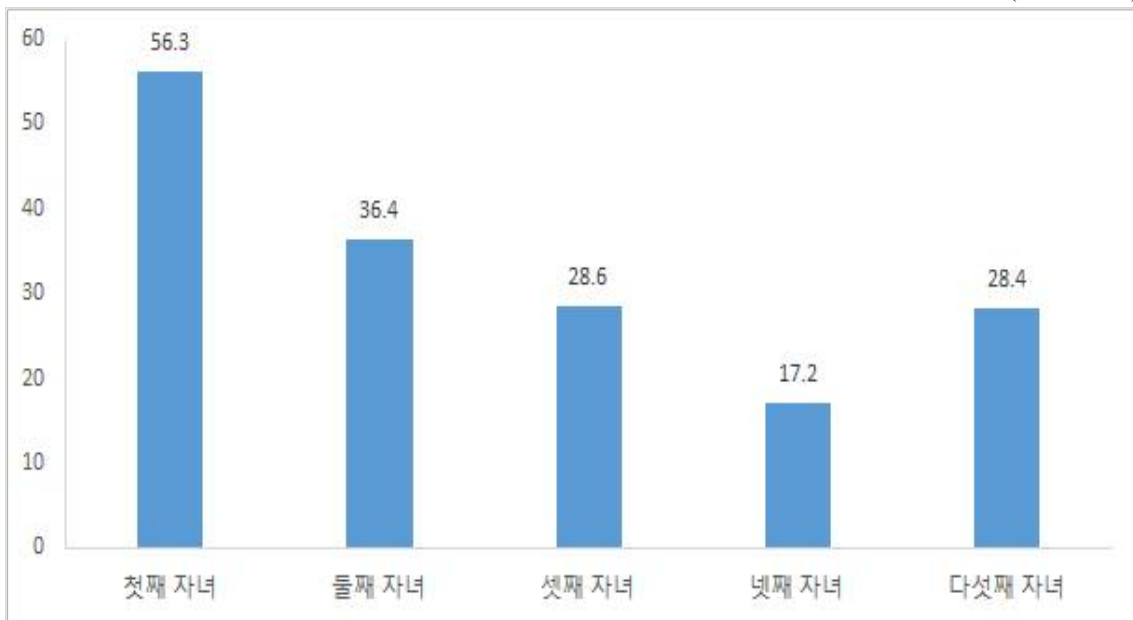
구분	총비용			충분비용		
	1자녀 가정	2자녀 가정	3자녀 가정	1→2자녀	2→3자녀	
전체	73.3	137.6	161.9	64.3	24.3	
거주지역별	대도시	81.6	148.5	177.0	66.9	28.5
	중소도시	68.2	134.2	161.3	66.0	27.1
	농촌	56.9	114.9	139.4	58.0	24.5
가구소득별	60% 미만	43.8	75.3	84.5	31.5	9.2
	60~80%	52.5	94.0	111.8	41.5	17.8
	80~100%	61.9	116.4	135.2	54.5	18.8
	100~120%	76.2	133.8	161.3	57.6	27.5
	120~140%	85.2	149.4	175.9	64.2	26.5
	140~160%	92.7	166.7	195.2	74.0	28.5
	160% 이상	118.2	201.9	245.4	83.7	43.5

주: 1. 가구소득은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2018년은 453만 510원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다만, 다른 국가들의 운영사례에서 살펴보면 둘째 자녀부터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줄고 있고,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분 비용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녀수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8년에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첫째는 56.3만원, 둘째는 36.4만원, 셋째는 28.6만원, 넷째는 17.2만원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1인당 자녀양육비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둘째 자녀부터 최대지급액을 낮출 경우 다자녀가구를 차별한다는 오해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자녀수에 따른 최대지급액 차등화는 출산율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은 다른 조사대상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첫째 자녀의 자녀장려금을 현재보다 높이되, 둘째 자녀부터는 현행 수준(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음

[그림 VI-13]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월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액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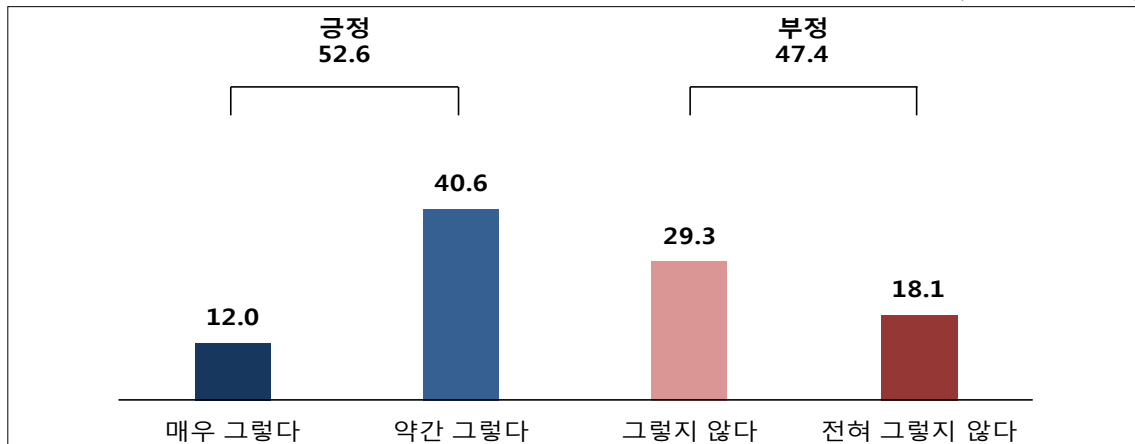
주: 1. 2018년에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1,000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최대지급액의 적절성 검토

-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줄이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 비율이 52.6%, 부정 응답 비율이 47.4%로 긍정 응답 비율이 소폭 더 높지만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전공분야별로는 경제학 분야 전문가에서 66.7%로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됨

[그림 VI-14]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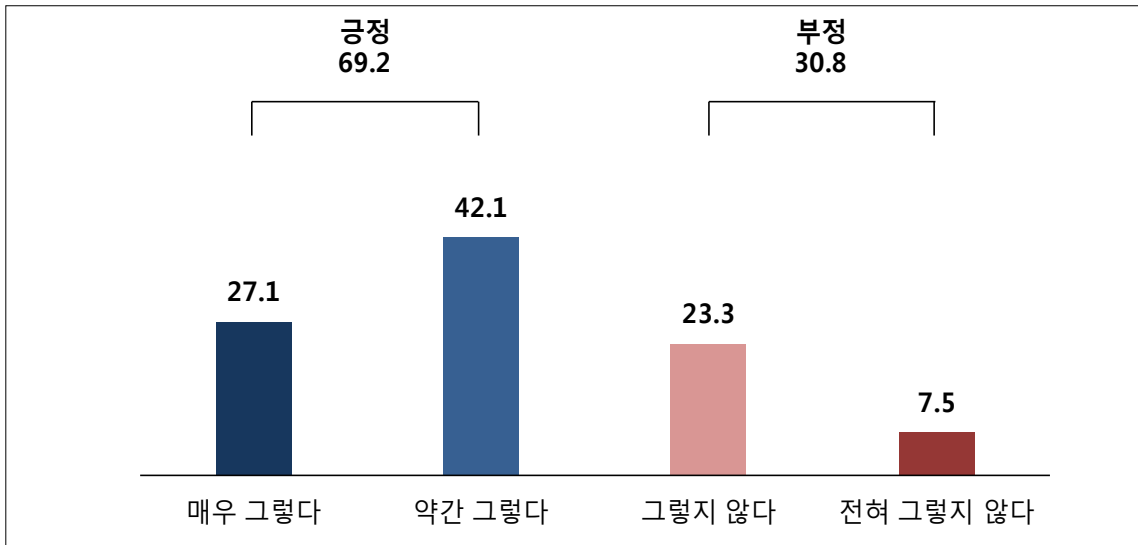
(N=133, 단위: %)



- 자녀 연령에 따른 최대지급액 차등지급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는 의견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48.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함
  -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는 의견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이보다 낮은 40.6%로 나타남
- 한부모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69.2%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전공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와 경제학 분야 전문가 각각 78.4%, 72.7%의 높은 긍정 응답 비율을 보임

[그림 VI-15] 한부모가구의 자녀 1인당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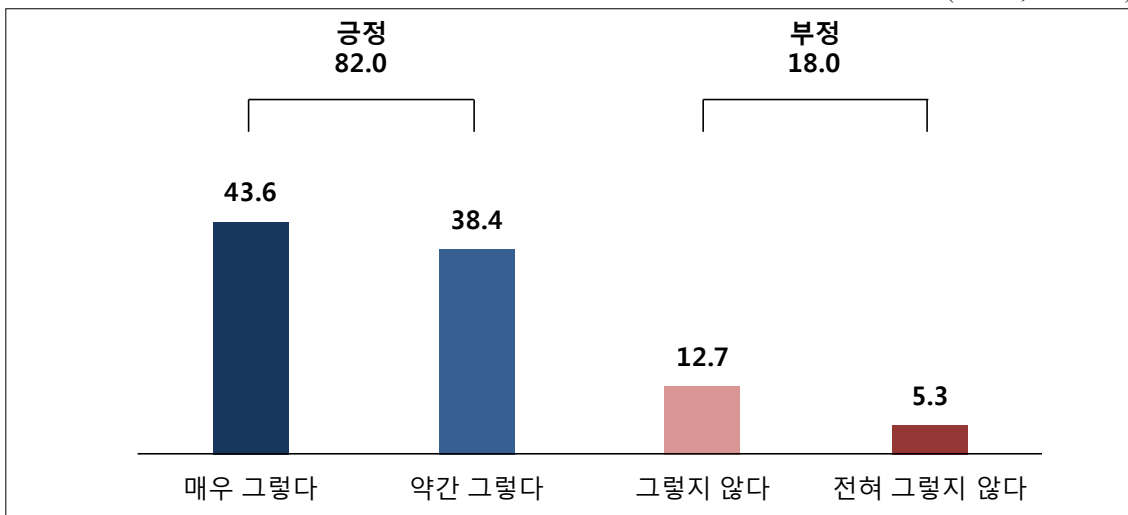
(N=133, 단위: %)



- 장애아부양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0%가 긍정 응답을 보임

[그림 VI-16] 장애아부양가구의 자녀 1인당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N=133, 단위: %)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1인당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나, 한부모가구와 장애아부양가구의 자녀 1인당 지급액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3. 지원방식의 적절성 및 타 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 가. 연구방법

- 자녀양육을 위한 공공지출은 현금지원과 조세체계를 통한 재정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조세지원에는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부모 공제), 환급불가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환급가능 세액공제(자녀장려금) 등이 있음
  - 현금지원에는 아동수당, 보육료지원,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등이 있음
  
- 각각의 지원방식이 지닌 장단점과 정책목표 달성수단으로서의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자녀장려금과 타 제도 간 중복 여부를 검토함
  - 저소득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녀양육비 경감에 가장 효과가 높으면서 만족도가 높은 지원방식이 어떤 것인지 탐색함
  - 다양한 자녀양육비 지원수단 중 아동빈곤율과 지니계수를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탐색함

#### 나. 조세지원 vs. 재정지원

- 저소득가구는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액공제보다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이 정책적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음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2017년 기준 아동빈곤가구 중 소득세를 납부한 가구의 비율은 29.6%이고, 월평균 소득세 납부액은 1.5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표 VI-23> 소득세 납부가구비율 및 월 평균 소득세 납부액

(단위: %, 만원)

구분	2015		2016		2017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소득세납부 가구비율	12.9	80.8	21.1	83.7	29.6	86.2
가구당 월평균 소득세납부액	5.35	27.1	3.48	28.6	1.59	35.8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다. 타 제도와 중복성 검토

- 자녀장려금과 중복성이 있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와 자녀세액공제, 아동수당 등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는 자녀부양가구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복지제도는 아니지만, 급여액이 자녀수에 연동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과 중복문제가 있을 수 있음
  
- 2019년 이전에는 자녀장려금과 생계급여 간 중복수급 금지로 기준 중위소득의 30% 미만 최저소득가구(즉,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2019년 이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1원이라도 수령하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됐음
  - 생계급여와 자녀장려금 중복수급 금지는 결과적으로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30~100% 사이 가구로 한정함으로써 아동빈곤문제 해소를 돕는다는 본래의 정책목적과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함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아동빈곤가구의 33.2%가 생계급여 수급으로 인해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됨

〈표 VI-24〉 아동빈곤가구의 맞춤형 급여 수급실적

(단위: %)

연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15	36.8	40.8	39.9	36.0
2016	33.1	35.7	34.8	32.8
2017	33.2	35.6	35.5	35.0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7종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만 자녀장려금 중복수급이 불가능하고,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는 자녀장려금과 중복수급을 허용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의료·교육·주거급여 또한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를 차별할 논리적 근거가 미흡함
- 현재는 2018년 말 세법개정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본래의 정책목표와 달리 최저소득층이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라는 점에서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양육수당지원, 유아학비지원, 아동수당 등과 차이가 있음
  - 양육수당지원, 유아학비지원, 아동수당 등이 출산장려를 주된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면 자녀장려금은 아동빈곤해소에 정책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에서 중복성이 낮다고 판단됨
- 저소득 장애아부양가구와 한부모가구는 장애아동수당과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 가구의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에 차등을 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됨
  - 그러나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중산층 중 하층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장애아동수당 및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의 50~52% 미만 가구로 그 폭이 더 좁기 때문에 완전히 중복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한 반면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수혜가 불가능해 7세 이상 자녀부양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문제점이 있음
  - 7세 미만 자녀가구는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을, 7세 이상 자녀가구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
  - 7세 미만 자녀가구에 적용되는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한 반면 7세 이상 자녀가구에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수혜가 불가능해 7세 이상 자녀가구가 불리함
- 그러나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공제 허용은 소득세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가구에만 의미가 있는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에 세제개편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표 VI-25> 우리나라의 자녀양육비 지원제도

구분	지원내용
조 세 지 원	인적공제 - 기본공제: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1인당 150만원 공제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으면 100만원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 다자녀공제: 만 7세 이상 자녀 1명당 15만원, 3명 이상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출산·입양자녀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교육비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미취학·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부양자녀 1인당 50~70만원 지원
현 금 지 원	보육료지원 (1) 만 5세 미만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2) 소득기준: 없음 (3) 지원액(2019년 기준): - 만 0세아: (종일반) 454,000 / (맞춤반) 354,000 - 만 1세아: (종일반) 400,000 / (맞춤반) 311,000 - 만 2세아: (종일반) 331,000 / (맞춤반) 258,000 - 만 3~5세아: 220,000
	양육수당지원 (1)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2) 소득기준: 없음 (3) 지원액(2019년 기준): - 12개월 미만 : 20만원 - 24개월 미만 : 15만원 - 24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 10만원 ※ 장애 아동은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만 5세(최대 84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원
	유아학비지원 (1)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 학비 지원 (2) 소득기준: 없음 (3) 지원액(2019년 기준): 국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 22만원
	아동수당 (1)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에 기여(2018년 9월부터 시행) (2) 소득기준: 없음 (3) 지원액(2019년 기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구분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	(1)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3) 지원액(2019년 기준) - 중증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0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월 10만원
교육비 지원	(1)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2) 소득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도 소득인정액 기준 상이(통상 중위소득의 60% 수준)
급식비 지원	(1)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2) 소득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도 소득인정액 기준 상이(통상 중위소득의 60% 수준),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1)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3) 지원액: -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

## 라. 자녀양육 지원제도 간 정책효과 분석

- 정부가 시행 중인 다양한 자녀양육지원제도의 상대적 성과비교를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함
  - 첫째,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양육 지원제도 중 아동빈곤율 감소와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가 높은 지원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봄
  - 둘째,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어떤 자녀양육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지 설문조사를 실시함

## 1) 자녀양육지원제도 간 아동빈곤율 감소효과 비교

□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과 ‘시장소득+자녀양육지원금’ 기준 아동빈곤율을 비교한 결과, 자녀장려금은 아동빈곤율 감소에 가장 높은 정책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 자녀장려세제 도입 초기에는 6개 현금급여제도 중 정책효과가 가장 낮았으나, 자녀장려세제의 지속적 확대에 힘입어 2017년에는 아동빈곤율 감소에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으로 올라섬
-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2018년 보편적 아동수당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VI-26> 자녀장려세제를 통한 아동빈곤문제 해결효과

(단위: %, 만원)

연도	구분	시장소득 기준 <sup>1)</sup>	(시장소득+자녀양육보조금) 기준 <sup>4)</sup>					
			자녀장려금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학비지원	급식비지원
2015	아동빈곤율	9.548	9.533	9.513	9.356	9.286	9.187	9.381
	아동빈곤율 증감률 <sup>2)</sup>		-0.16	-0.37	-2.01	-2.75	-3.78	-1.76
	정책효과순위 <sup>3)</sup>		6위	5위	3위	2위	1위	4위
2016	아동빈곤율	8.478	8.281	8.425	8.328	7.980	8.311	8.333
	아동빈곤율 증감률 <sup>2)</sup>		-2.33	-0.62	-1.77	-5.87	-1.96	-1.71
	정책효과순위 <sup>3)</sup>		2위	6위	4위	1위	3위	5위
2017	아동빈곤율	7.546	7.414	7.546	7.517	7.463	7.463	7.512
	아동빈곤율 증감률 <sup>2)</sup>		-1.75	0.00	-0.39	-1.10	-1.11	-0.46
	정책효과순위 <sup>3)</sup>		1위	6위	5위	3위	2위	4위

주: 1)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전체 아동부양가구 중 가구의 시장소득이 중위가구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부업소득+재산소득)의 50% 이하에 있는 아동부양가구의 비율을 의미함<sup>36)</sup>

2) 증감률 = [(시장소득+자녀양육보조금) 기준 아동빈곤율 -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 ÷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

3) 아동빈곤율 감소에 효과가 가장 큰 자녀양육보조금제도부터 순위를 매김

4) ‘시장소득+자녀양육보조금’ 기준 아동빈곤율은 전체 아동부양가구 중 ‘시장소득+자녀양육보조금’이 중위가구 시장소득의 50% 이하에 있는 아동부양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36)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2015년(조사연도 2016년)과 2016년(조사연도 2017년) 아동빈곤율은 8.7%(표 III-5 참조)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2015년과 2016년의 아동빈곤율 9.5%와 8.5%와 차이를 보임. 이는 2015년에

- 2017년 기준 아동빈곤가구의 80.9%가 1가지 이상의 자녀양육지원금 혜택을 경험하였으며, 학비 및 급식비지원 경험비율이 각각 44.3%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VI-27> 아동빈곤가구의 자녀양육지원금 수급비율

(단위: %)

연도	자녀양육 지원금	자녀양육지원금 세부 항목					
		자녀 장려금	한부모 가족지원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학비지원	급식비 지원
2015	71.9	18.6	4.4	8.9	16.6	43.0	38.1
2016	71.7	21.1	2.5	7.3	19.7	35.3	37.3
2017	80.9	27.9	1.5	8.1	20.1	44.3	42.1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2017년 기준 아동빈곤가구는 연평균 214만원의 자녀양육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학비지원이 72만원으로 가장 많고, 보육료지원, 급식비지원, 자녀장려금의 순서로 나타남
  - 아동빈곤가구의 자녀장려금 수급액은 연평균 17.6만원으로 6개 자녀양육지원금 중 세 번째로 큰 지원항목임

<표 VI-28> 아동빈곤가구의 자녀양육지원금 수급실적

(단위: 만원)

연도	구분	자녀양육지 원금 총액	자녀양육지원금 세부항목					
			자녀 장려금	한부모 가족지원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학비지원	급식비 지원
2015	빈곤	186.5	15.7	6.5	16.8	50.9	58.7	37.9
	비빈곤	162.1	6.3	0.1	17.2	117.0	16.6	4.9
2016	빈곤	189.5	18.0	3.1	12.8	73.8	43.5	38.2
	비빈곤	163.2	6.7	0.3	20.7	111.9	18.3	5.2
2017	빈곤	214.7	17.6	1.9	14.0	64.2	72.8	44.2
	비빈곤	160.3	6.6	0.3	17.8	109.5	20.9	5.2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2) 자녀양육지원제도 간 소득분배개선효과 비교

-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과 ‘시장소득+자녀양육지원금’ 기준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2017년 기준 소득불평등 완화에 가장 효과가 큰 자녀양육제도는 학비지원이며, 자녀장려금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6개 제도 중 5위)
  -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학비지원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보육료지원, 급식비지원, 양육수당, 자녀장려세제, 한부모가족지원의 순서임

<표 VI-29> 자녀장려세제를 통한 지니계수 변화(전체 가구)

연도	시장소득	자녀장려세제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학비지원	급식비지원
2015	0.422023	0.421689	0.421979	0.421552	0.420261	0.419996	0.421484
		-0.08%	-0.01%	-0.11%	-0.42%	-0.48%	-0.13%
2016	0.382816	0.382455	0.382787	0.382376	0.381125	0.380944	0.382331
		-0.09%	-0.01%	-0.11%	-0.44%	-0.49%	-0.13%
2017	0.379916	0.379596	0.379897	0.379529	0.378381	0.378289	0.379462
		-0.08%	-0.01%	-0.10%	-0.40%	-0.43%	-0.12%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한편 아동가구만을 대상으로 각 제도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살펴본 결과, 아동가구의 소득불평등 완화에 가장 효과가 큰 제도는 보육료지원이며, 자녀장려금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6개 제도 중 5위)
  -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산정했을 때와 비교하면 자녀장려금의 상대적 순위에는 변화가 없지만(6개 제도 중 5위), 학비지원에 비하여 보육료지원의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높아진 것이 특징임

<표 VI-30> 자녀장려세제를 통한 지니계수 변화(아동가구)

연도	시장소득	자녀장려세제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학비지원	급식비지원
2015	0.405254	0.404411	0.405150	0.403949	0.399752	0.402805	0.404110
		-0.21%	-0.03%	-0.32%	-1.36%	-0.60%	-0.28%
2016	0.308475	0.307526	0.308398	0.307215	0.303469	0.306169	0.307333
		-0.31%	-0.03%	-0.41%	-1.62%	-0.75%	-0.37%
2017	0.314056	0.313199	0.314001	0.312886	0.309195	0.312017	0.312953
		-0.27%	-0.02%	-0.37%	-1.55%	-0.65%	-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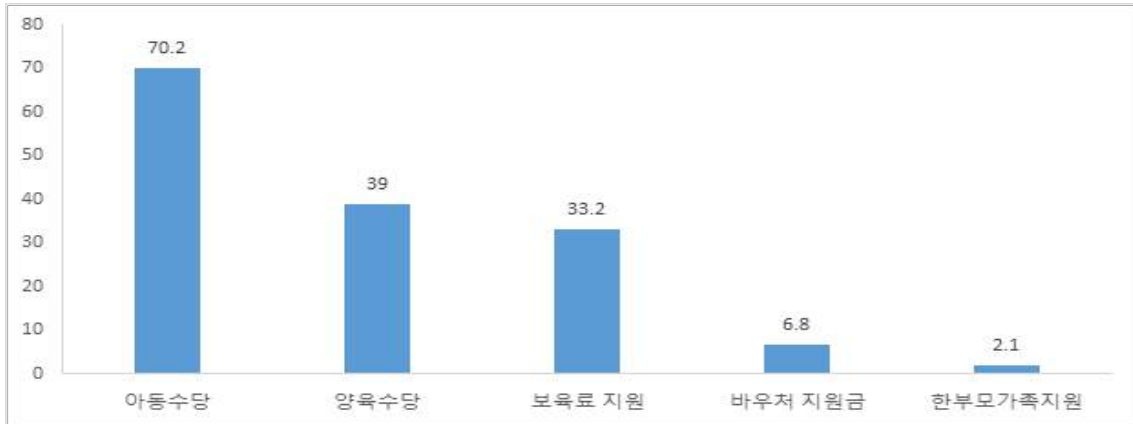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제1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3) 자녀양육지원제도 간 상대적 만족도 조사

- 2018년에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해 동안 지원받았던 자녀양육 관련 정부지원제도로는 자녀장려금을 제외하고 아동수당이 70.2%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양육수당(39.0%), 보육료 지원(33.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VI-17]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자녀양육지원제도 수혜경험

(단위: %)



-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지원 제도를 질문한 결과, 1+2+3순위 응답 비율 기준 자녀장려금이 82.9%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아동수당(58.2%), 양육수당(37.0%)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자녀연령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 7세 미만 자녀가 없는 가구는 자녀장려금의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효과를 타 제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과 아동수당의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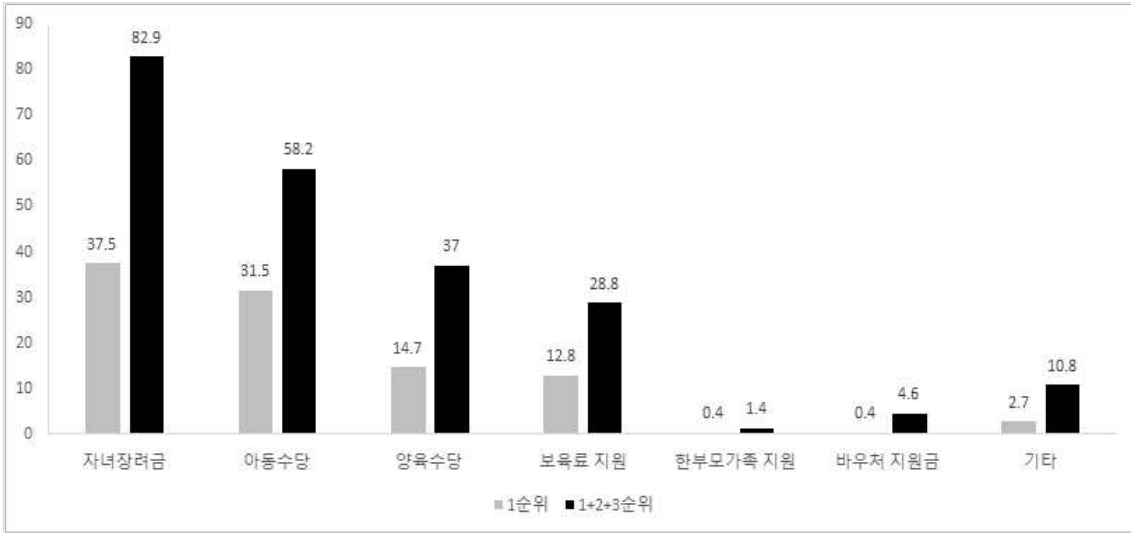
<표 VI-31> 7세 미만 자녀보유여부에 따른 자녀양육비 경감효과 비교

(단위: %)

구분	자녀 장려금	아동 수당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바우처 지원금	한부모가족 지원	기타	
전체 가구	82.9	58.2	37.0	28.8	4.6	1.4	10.8	
7세미만 자녀	있음	82.1	78.1	52.8	38.0	4.3	0.9	6.0
	없음	84.0	30.5	15.0	16.0	5.0	2.1	17.4

[그림 VI-18]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었던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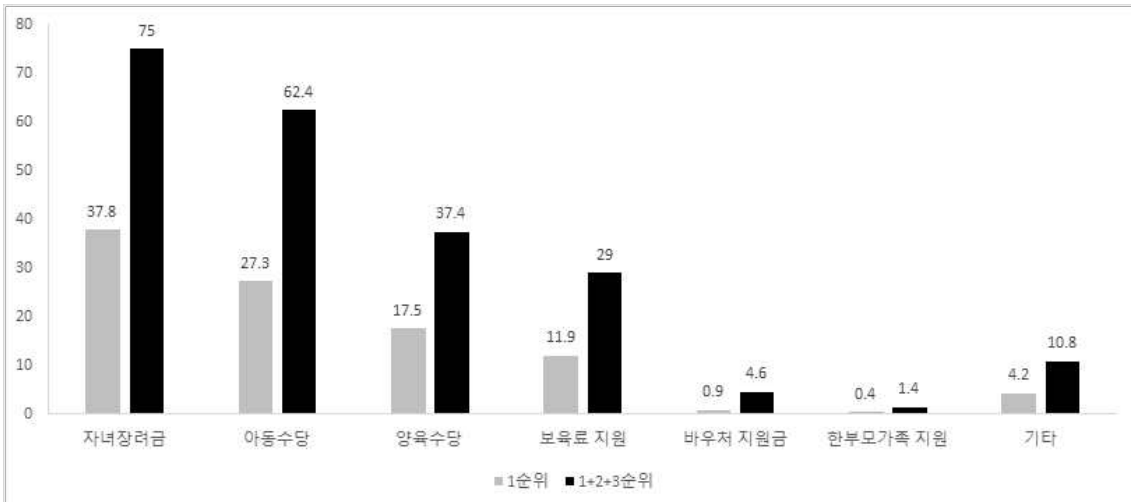
(단위: %)



- 출산장려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지원제도를 질문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이 75.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아동수당(62.4%), 양육수당(37.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자녀연령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 7세 미만 자녀가 없는 가구는 자녀장려금의 출산장려효과를 타 제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보다 아동수당이 출산장려효과가 더 높다고 평가함

[그림 VI-19] 출산장려에 효과적이었던 지원제도

(단위: %)



<표 VI-32> 7세 미만 자녀보유여부에 따른 출산장려효과 비교

(단위: %)

구분		자녀 장려금	아동 수당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바우처 지원금	한부모가족 지원	기타
전체 가구		37.8	27.3	17.5	11.9	0.9	0.4	4.2
7세미만 자녀	있음	24.6	31.3	24.3	15.8	1.0	0.5	2.4
	없음	56.1	21.7	8.1	6.4	0.7	0.2	6.7

## Ⅶ. 결론 및 개선방안





## VII. 결론 및 개선방안

### 1. 쟁점사항 및 제도개선 방향

#### 가.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

##### 1) 소득상한액 설정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

- 자녀장려금의 소득상한액 4천만원은 2012년 소득 5분위별 3분위가구의 평균소득 90% 수준에서 설정된 것으로 3분위가구 소득의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혜대상자 범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 「가계동향조사」 소득 5분위별 3분위가구의 평균소득은 2012년 4,436만원에서 2018년에는 4,932만원으로 11.2%p 상승함
  - 근로장려금은 2018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상한액을 인상한 반면<sup>37)</sup> 자녀장려금은 4천만원의 소득상한액을 2014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하여 오고 있어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지만, 자녀장려금 선정 기준은 가계동향조사의 중위 가구소득에 맞추어져 있어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소득은 2인 이상 비농가가구의 소득의 중앙값을 의미하는 바, 자녀부양 여부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수준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37) 단독 가구: 1,300만원 → 2,000만원, 홀벌이 가구: 2,100만원 → 3,0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 3,600만원

- 2017년 귀속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1.5명으로 자녀장려금 상한액은 3인가구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평균값인 5,024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 및 조세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녀장려금의 적절한 소득기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 수준인 5,000만원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그러나 현행 자녀장려금 소득상한은 근로장려금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인상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은 기준소득의 65% 수준이나, 자녀장려금 소득상한은 맞벌이가구 기준소득의 72%, 홀벌이가구 기준소득의 89% 수준으로 근로장려금보다 높음
  - 자녀장려세제 도입 당시에는 보편적 아동수당 시행 전이므로 자녀장려금 소득상한을 근로장려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여 중산층 일부까지 포섭하는 것이 정책적 타당성을 지닐 수 있었으나, 현재는 7세 미만 모든 자녀부양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자녀장려금 소득상한을 근로장려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할 근거가 약화됨

〈표 VII-1〉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상한 비교

(단위: 만원, %)

구분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3,000	4,000	3,600	4,000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65	89	65	72

주: 1. 홀벌이가구 3인가구 기준, 맞벌이가구 4인가구 기준

- 한편 자녀장려세제의 출산장려기능을 강화하고, 자녀수에 따른 가구별 최저생계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자녀수가 많은 가구는 소득상한액을 높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자녀장려세제를 운영 중인 대부분 국가가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장려금 지급총액뿐 아니라 소득상한액이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제도 역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수급자 선정 기준액이 상승함

## 2) 점감개시액 설정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

- 우리나라의 점감개시액은 홀별이가구 2,100만원, 맞별이가구 2,500만원임
  - 현재의 홀별이가구 점감개시액은 2012년 중위소득가구의 50% 수준에서 설정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맞별이가구는 이보다 높은 2,500만원을 적용함
- 중위 가구소득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이후 동일한 점감개시액이 유지되어 오고 있어 물가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함
  - 2018년 중위 가구소득은 2012년 대비 11.2%p가 상승하였으나, 점감개시액은 홀별이 2,100만원, 맞별이 2,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맞별이와 홀별이가구의 점감개시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 국가 간 경제규모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점감개시액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없음
  - 다만, 다른 국가들은 홀별이/맞별이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동일한 점감개시액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맞별이가구의 점감개시액이 홀별이가구보다 높은 것이 특징임
- 우리나라가 맞별이가구와 홀별이가구의 점감개시액에 차등을 둔 이유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을 기점으로 가구 한계세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임
  - 현재의 자녀장려금 점감개시액은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상실로 인한 급격한 한계세율 인상의 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2013년 당시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홀별이 2,100만원, 맞별이 2,500만원)과 동일하게 설정한 것임

- 그러나 아동빈곤가구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홀벌이와 맞벌이가구 차별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맞벌이보다 홀벌이가구의 아동빈곤율이 더 높기 때문에 아동빈곤가구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홀벌이가구를 맞벌이가구에 비하여 차별할 논리적 근거가 미흡함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홀벌이가구의 아동빈곤율은 9.990%로 맞벌이가구의 아동빈곤율 2.541%에 비하여 4배가량 높음
  
- 근로활동 유도의 관점에 있어서도 홀벌이와 맞벌이가구를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홀벌이와 맞벌이가구 간 차별적인 점감개시액 적용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는 소득수준이 2,100만~2,500만원 사이인 맞벌이가구로 소득수준이 2,100만~2,500만원인 맞벌이가구가 소득수준이 2,100만원 미만인 맞벌이가구에 비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사회복지 및 조세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홀벌이와 맞벌이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체계 통일에 찬성함
  - 점감개시액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지 질문한 결과, 홀벌이/맞벌이가구 모두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인 2,500만원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지원의 논리적 근거나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빈곤선 미만 가구는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게 홀벌이와 맞벌이가구의 점감개시액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자녀장려세제 설계방식은 전체 맞벌이가구가 아닌 가구소득이 2,100만~2,500만원인 가구의 여성경제활동 유인에만 유효함
  -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최빈곤층은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구에 동일한 점감개시액을 적용하고 있음

- 홀별이와 맞별이가구의 점감개시액을 통일할 경우 적절한 점감개시액은 OECD 빈곤층 분류기준인 중위소득의 50% 수준(2019년 기준 2,500만원)에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귀속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1.5인으로 2019년 3.5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2019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512만원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536만원의 평균) 5,024만원의 50%는 2,512만원임

### 3) 재산기준 설정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

- 재산요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재산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와 자녀장려세제의 재산요건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여부임
  - 재산요건은 자녀장려세제를 운영 중인 다른 국가들은 사용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고유 제도임
  - 현재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은 근로장려세제의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재산규모가 1억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하며, 재산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 수급을 제한함
- 재산요건은 아동빈곤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함
  - 우리나라는 소득수준과 재산규모가 비례하지 않아 소득수준만으로는 그 가구의 생활수준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서구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모에게 주거비용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소득수준만으로는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제한된 예산으로 아동빈곤문제 해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생활에 여유가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재산요건의 유지가 국제적 표준에서 부합되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나라의 사회정서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의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아동빈곤가구의 90% 이상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아동빈곤구가구의 소득보전 목적에서 재산요건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됨

- 사회복지 및 조세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산요건 개편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현행 유지(32.3%)와 상향 조정(34.6%) 응답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남
- 현재의 재산기준 2억원을 소득기준 설정기준인 중위소득 가구의 재산보유수준에 맞추어 2억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 있지만, 재정 부담이 크고 세제개편의 효과가 가구소득 2,500만원 이상 가구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 나. 지급액 산정방식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

### 1) 최대지급액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

- 우리나라 자녀장려세제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은 대체로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와 일치함
  - 월평균 자녀양육비 상승을 반영하여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종전의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함
- 그러나 이러한 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 대비 우리나라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임
  - 1인 자녀가구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지급액은 미국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70만원으로 동일한 반면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둘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감소함
  -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공통생활비의 존재 때문에 자녀수가 증가하면 증분비용이 감소함
- 설문조사 결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양육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둘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첫째 자녀 자녀장려금이 가장 많고, 둘째 자녀부터 자녀장려금이 감소함
  - 통계청 자료에 따른 2018년 기준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1자녀 가구 73만원, 2자녀 가구 138만원, 3자녀 가구 162만원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분비용이 감소함
  - 2018년에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1,000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첫째 자녀 56.3만원, 둘째 자녀 36.4만원, 셋째 자녀 28.6만원, 넷째 자녀 17.2만원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비가 감소함
- 자녀양육비 지출실태조사결과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둘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장려금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 자녀부터 최대지급액을 삭감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현재보다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2) 한부모가구와 장애아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 인상에 관한 검토

- 사회복지 및 조세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최대지급액 개편에 관해 질문한 결과, 한부모가구 및 장애아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높이는 것에 대한 긍정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부모가구 및 장애아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각 응답자의 69.2%와 82.0%가 찬성함
- 다만, 한부모가구는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장애아부양가구는 장애아동수당을 통해 현금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 제도와 중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녀장려금지급액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및 장애아동수당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 빈곤층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나, 자녀장려금은 중산층 일부를 포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님

## 2.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 가. 재정효과 분석 방법

#### 1) 2020년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수 추정

- 2020년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수를 추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는 2018년 자료임
  - 2018년은 생계급여와 중복수급이 불가능했으므로 2018년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수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누락되어 있음
  
-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녀장려금 수급 허용으로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에 신규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자 수를 추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신규대상자는 자녀와 동거 중인 생계급여 수급자 수에 자녀와 동거하는 20~64세 가구주 비율, 자녀장려금 지급률(=자녀장려금 지급건수/자녀장려금 신청건수)을 곱하여 추정함
  
- 2020년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수는 국세통계연보상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 수에 생계급여 중복수급 허용으로 인한 신규대상자를 가산한 후, 자녀양육가구 감소로 인한 가구탈락률을 반영하여 추정함
  - 가구탈락률은 제도 변화가 없었던 2016년에 수급가구수가 전년 대비 12.2% 감소한 것을 반영함
  
-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 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추가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가구 감소 등에 따른 높은 가구탈락률(12.2%) 때문에 2018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자녀장려금과 생계급여 중복수급 허용으로 신규대상자가 약 10만가구 증가하나, 매년 12.2%씩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2020년에는 2018년에 비하여 약 13만가구가 적은 77만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됨

<표 VII-2>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 수 추정 프로세스

(단위: 가구, %)

(1)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 <sup>1)</sup>	904,938
(2) 생계급여 중복수급 허용으로 인한 신규대상자 [=가×나×다]	103,655
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녀동거 가구 수 <sup>2)</sup>	331,465
나. 2017년 자녀와 동거하는 20~64세 가구주 비율 <sup>3)</sup>	38.1
다.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률(=자녀장려금 지급건/신청건) <sup>4)</sup>	82.0
(3) 생계급여 중복수급 허용 시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1)+(2)]	1,008,593
(4)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 [= (3)×(1-가구탈락률 <sup>5)</sup> ) <sup>2)</sup>	777,794

주: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3)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5) 12.2%(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제도 변화가 없었던 2016년에 수급가구수가 전년대비 12.2% 감소한 것을 반영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등을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자녀장려금과 생계급여 중복수급 허용으로 인한 신규대상자 103,655가구는 가구 소득 1,300만원 미만 가구의 지급가구수 비율대로 배분함
  - 2017년 3인가구와 4인가구의 중위소득의 평균값에 30%를 적용하면 1,460만원 이나, 1,460만원은 가구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합산된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가구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신규대상자를 배 분함
  
-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는 777,794가구로 추정되며, 홀별이가구 633,706가 구와 맞별이가구 144,088가구로 구성됨
  - 2018년 기준 신규대상자는 103,655가구이나, 가구탈락률 12.2%를 적용한 결과 2020년 기준 신규대상자는 79,936가구로 추정됨
  
- 현재의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4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자녀 장려금 지급가구수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분포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2017년 신청안내자료 기준)를 제공받아 추정함

- 2016년 귀속 가구소득이 3,900만원~4,000만원인 전체 가구수가 112,705가구이고, 이 중 26.3%가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음
- 가구소득이 4,000만원~5,000만원인 전체 가구 중 26.3%가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소득기준을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를 추정함

<표 VII-3> 소득규모별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 수(추정)

(단위: 가구)

가구소득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 (생계급여 중복수급 고려 전)		신규대상자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 (생계급여 중복수급 고려 후)	
	홀벌이 <sup>1)</sup>	맞벌이 <sup>1)</sup>	홀벌이 <sup>2)</sup>	맞벌이 <sup>2)</sup>	홀벌이	맞벌이
~1백만원	17,755	-	7,652	-	25,406	-
1~2백만원	14,488	-	6,244	-	20,732	-
2~3백만원	15,107	-	6,511	-	21,618	-
3~4백만원	12,493	-	5,384	-	17,877	-
4~5백만원	12,860	-	5,542	-	18,402	-
5~6백만원	12,339	-	5,318	-	17,656	-
6~8백만원	25,706	576	11,079	248	36,785	824
8~9백만원	12,757	585	5,498	252	18,256	836
9~10백만원	13,947	839	6,011	362	19,957	1,201
10~12백만원	26,819	2,276	11,558	981	38,377	3,257
12~13백만원	15,463	1,464	6,664	631	22,128	2,096
13~15백만원	30,255	3,571			30,255	3,571
15~17백만원	39,105	4,531			39,105	4,531
17~20백만원	48,289	8,993			48,289	8,993
20~21백만원	14,998	3,694			14,998	3,694
21~25백만원	55,552	17,975			55,552	17,975
25~30백만원	65,129	27,258			65,129	27,258
30~35백만원	65,491	33,388			65,491	33,388
35~40백만원	57,693	36,465			57,693	36,465
합계	72,289	40,507			633,706	144,088

주: 1)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1-가구탈락률)<sup>2</sup>

2) 79,936가구×해당 소득구간의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13백만원 미만 소득구간의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 합계 \* 생계급여 중복수급 허용으로 인한 2018년 기준 신규대상자(103,655가구)×(1-가구탈락률)<sup>2</sup>=79,936가구

자료: 저자 직접 작성

## 2) 가구당 지급액 추정방법

-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의 5%에 해당하는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제도 개편에 따른 가구당 지급액을 재계산함
  - 2019년부터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세법규정을 반영하여 가구당 장려금지급액을 새롭게 추산해야 함
  -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의 가구소득, 가구자산, 자녀수, 자녀세액공제 등 자료를 활용하여 각 소득구간별 가구당 장려금지급액을 추산함

〈표 VII-4〉 소득규모별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추정)

(단위: 가구, 원, 백만원)

가구소득	지급가구수		가구당 장려금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홀별이 <sup>1)</sup>	맞별이 <sup>1)</sup>	홀별이 <sup>2)</sup>	맞별이 <sup>2)</sup>	홀별이	맞별이
~1백만원	25,406	-	1,005,501		25,546	-
1~2백만원	20,732	-	971,981		20,151	-
2~3백만원	21,618	-	937,880		20,275	-
3~4백만원	17,877	-	970,806		17,355	-
4~5백만원	18,402	-	1,007,692		18,544	-
5~6백만원	17,656	-	969,237		17,113	-
6~8백만원	36,785	824	974,043	1,051,591	35,830	867
8~9백만원	18,256	836	988,806	1,146,250	18,051	959
9~10백만원	19,957	1,201	1,010,120	1,176,000	20,159	1,412
10~12백만원	38,377	3,257	961,131	1,005,497	36,886	3,274
12~13백만원	22,128	2,096	983,608	1,013,130	21,765	2,123
13~15백만원	30,255	3,571	986,464	1,005,741	29,846	3,591
15~17백만원	39,105	4,531	971,207	1,009,805	37,979	4,575
17~20백만원	48,289	8,993	944,264	1,030,232	45,598	9,265
20~21백만원	14,998	3,694	951,262	1,015,478	14,267	3,751
21~25백만원	55,552	17,975	873,039	1,001,555	48,499	18,003
25~30백만원	65,129	27,258	770,849	909,489	50,205	24,791
30~35백만원	65,491	33,388	672,277	792,614	44,028	26,464
35~40백만원	57,693	36,465	582,046	662,607	33,580	24,162
합계	633,706	144,088			555,676	123,237

주: 1) 2018년 소득구간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를 기초로 2018년 말 세법개정 내용 및 자녀양육가구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추정함

2)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의 5%에 해당하는 미시자료를 기초로 2018년 말 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각 소득구간별 가구당 평균 장려금지급액을 추정함

3)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가구당 평균 장려금지급액

4) 소득상한액 4천만원, 점감개시액 홀별이 2,100만원/맞별이 2,500만원, 자녀 1인당 지급액 50만~70만원, 자산기준 2억원(재산 1억 4천만원 초과하면 50% 감액)

자료: 저자 직접 작성

- 추정결과 가구당 장려금지급액은 58만~117만원 사이이며, 2018년 말 세법개정 내용을 반영했을 때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홑벌이 5,556억원, 맞벌이 1,232억원 총 6,789억원으로 추정됨

## 나.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 1) 소득상한액 인상과 그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 소득기준을 각각 4,4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인상한 경우, 재정효과를 분석함
  - 소득기준 4,400만원은 현재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4,000만원)에 「가계동향조사」 소득 5분위별 3분위가구의 2012년 평균소득 대비 2018년 평균소득의 증가율 11.2%p를 적용한 것임
  - 소득기준 5,000만원은 2019년 3인 가구 중위소득과 4인 가구 중위소득의 평균으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적정 소득상한액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값임
- 소득기준을 4,400만원(5,0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점감개시액은 홑벌이 2,200만원(2,500만원), 맞벌이 2,600만원(2,900만원)으로 가정함
  - 홑벌이 가구의 점감개시액은 소득상한액의 50% 수준에서 결정하고, 맞벌이 가구의 점감개시액은 현재와 같이 홑벌이가구보다 400만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가구소득 4천만원 초과 구간에서 전체 가구수 대비 자녀장려금지급자 비율은 가구소득 3,900만~4,000만원 구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함
  - 2017년 신청자료 기준 가구소득 3,900만~4,000만원 구간의 전체 가구수 대비 자녀장려금지급자 비율은 26.3%임
  - 가구소득 4천만~5천만원 구간에 속한 전체 가구 중 26.3%가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함
  - 가구소득 4천만원 초과 구간에서 가구당 자녀장려금 평균지급액은 가구소득 3,900만~4,000만원 가구의 가구당 자녀장려금 평균지급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정결과 소득상한액을 4,4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640억원(홀별이 396억원, 맞별이 244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자녀장려금 지급가구 수는 홀별이 5만 1천가구, 맞별이 2만 8천가구, 총 7만 9천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세수 증가는 대부분 소득구간 4천만~4,400만원 구간에서 발생하였으나, 점감개시액 변경으로 가구소득 2,100만~4천만원 구간에도 일부 세수증가 효과가 관찰됨

<표 VII-5> 소득기준 변경 효과(4,400만원으로 인상)<sup>1)</sup>

(단위: 가구, 원, 백만원)

가구소득	지급가구수		지급액		지급가구수 증감 <sup>2)</sup>		지급액 증감 <sup>2)</sup>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1백만원	25,406	-	25,546	-	-	-	-	-
1~2백만원	20,732	-	20,151	-	-	-	-	-
2~3백만원	21,618	-	20,275	-	-	-	-	-
3~4백만원	17,877	-	17,355	-	-	-	-	-
4~5백만원	18,402	-	18,544	-	-	-	-	-
5~6백만원	17,656	-	17,113	-	-	-	-	-
6~8백만원	36,785	824	35,830	867	-	-	-	-
8~9백만원	18,256	836	18,051	959	-	-	-	-
9~10백만원	19,957	1,201	20,159	1,412	-	-	-	-
10~12백만원	38,377	3,257	36,886	3,274	-	-	-	-
12~13백만원	22,128	2,096	21,765	2,123	-	-	-	-
13~15백만원	30,255	3,571	29,846	3,591	-	-	-	-
15~17백만원	39,105	4,531	37,979	4,575	-	-	-	-
17~20백만원	48,289	8,993	45,598	9,265	-	-	-	-
20~21백만원	14,998	3,694	14,267	3,751	-	-	-	-
21~25백만원	55,552	17,975	49,320	18,003	-	-	821	-
25~30백만원	65,129	27,258	51,851	25,402	-	-	1,647	612
30~35백만원	65,491	33,388	46,371	27,787	-	-	2,343	1,324
35~40백만원	57,693	36,465	36,267	26,161	-	-	2,687	1,998
40~44백만원	50,997	28,576	32,058	20,501	50,997	28,576	32,058	20,501
합계	684,703	172,664	595,232	147,671	50,997	28,576	39,556	24,434

주: 1) 소득상한액 4,400만원, 점감개시액 홀별이 2,200만원/맞별이 2,600만원, 자녀 1인당 지급액 50만~70만원, 자산기준 2억원(재산 1억 4천만원 초과하면 50% 감액)

2) 개편방안 반영 전과 반영 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와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차이

3)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예상액을 추정함

자료: 저자 직접 작성

- 소득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1,653억원(홀별이 1,023억원, 맞별이 630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자녀장려금 지급가구 수는 홀별이 12만 3천가구, 맞별이 6만 9천가구, 총 19만 2천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세수증가는 가구소득 4,400만~5천만원 사이의 홀별이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점감개시액 변경으로 가구소득 2,100만~4천만원 구간에도 일부 세수증가 효과가 관찰됨

<표 VII-6> 소득기준 변경 효과(5,000만원으로 인상)<sup>1)</sup>

(단위: 가구, 원, 백만원)

가구소득	지급가구수		지급액		지급가구수 증감 <sup>2)</sup>		지급액 증감 <sup>2)</sup>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1백만원	25,406	-	25,546	-	-	-	-	-
1~2백만원	20,732	-	20,151	-	-	-	-	-
2~3백만원	21,618	-	20,275	-	-	-	-	-
3~4백만원	17,877	-	17,355	-	-	-	-	-
4~5백만원	18,402	-	18,544	-	-	-	-	-
5~6백만원	17,656	-	17,113	-	-	-	-	-
6~8백만원	36,785	824	35,830	867	-	-	-	-
8~9백만원	18,256	836	18,051	959	-	-	-	-
9~10백만원	19,957	1,201	20,159	1,412	-	-	-	-
10~12백만원	38,377	3,257	36,886	3,274	-	-	-	-
12~13백만원	22,128	2,096	21,765	2,123	-	-	-	-
13~15백만원	30,255	3,571	29,846	3,591	-	-	-	-
15~17백만원	39,105	4,531	37,979	4,575	-	-	-	-
17~20백만원	48,289	8,993	45,598	9,265	-	-	-	-
20~21백만원	14,998	3,694	14,267	3,751	-	-	-	-
21~25백만원	55,552	17,975	50,102	18,003	-	-	1,603	-
25~30백만원	65,129	27,258	54,536	26,086	-	-	4,332	1,295
30~35백만원	65,491	33,388	49,619	29,638	-	-	5,591	3,175
35~40백만원	57,693	36,465	39,631	28,570	-	-	6,052	4,407
40~44백만원	50,997	28,576	35,032	22,389	50,997	28,576	35,032	22,389
44~50백만원	72,289	40,507	49,658	31,736	72,289	40,507	49,658	31,736
합계	756,992	213,171	657,944	186,240	123,285	69,084	102,268	63,003

주: 1) 소득상한액 5천만원, 점감개시액 홀별이 2,500만원/맞별이 2,900만원, 자녀 1인당 지급액 80만~70만원, 자산기준 2억원(재산 1억 4천만원 초과하면 50% 감액)

2) 개편방안 반영 전과 반영 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와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차이

3)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예상액을 추정함

자료: 저자 직접 작성

## 2) 홀별이와 맞별이 점감개시액 일치화와 그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 홀별이와 맞별이 점감개시액을 현재 맞별이가구 점감개시액인 2,500만원 수준으로 일치시킬 경우, 재정부담을 추정함
  - 소득상한액이 4천만원(현행), 4,400만원, 5천만원일 때 점감개시액 일치화로 인한 재정효과를 추정함
  - 2,500만원은 2019년 3.5인가구 기준 빈곤선 기준금액(기준 중위소득의 50%)으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홀별이와 맞별이가구의 적정 점감개시액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값임

<표 VII-7> 점감개시액 일치화 효과(소득상한액 4,000만원 기준)<sup>1)</sup>

(단위: 가구, 원, 백만원)

가구소득	지급가구수		지급액		지급가구수 증감 <sup>2)</sup>		지급액 증감 <sup>2)</sup>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1백만원	25,406	-	25,546	-	-	-	-	-
1~2백만원	20,732	-	20,151	-	-	-	-	-
2~3백만원	21,618	-	20,275	-	-	-	-	-
3~4백만원	17,877	-	17,355	-	-	-	-	-
4~5백만원	18,402	-	18,544	-	-	-	-	-
5~6백만원	17,656	-	17,113	-	-	-	-	-
6~8백만원	36,785	824	35,830	867	-	-	-	-
8~9백만원	18,256	836	18,051	959	-	-	-	-
9~10백만원	19,957	1,201	20,159	1,412	-	-	-	-
10~12백만원	38,377	3,257	36,886	3,274	-	-	-	-
12~13백만원	22,128	2,096	21,765	2,123	-	-	-	-
13~15백만원	30,255	3,571	29,846	3,591	-	-	-	-
15~17백만원	39,105	4,531	37,979	4,575	-	-	-	-
17~20백만원	48,289	8,993	45,598	9,265	-	-	-	-
20~21백만원	14,998	3,694	14,267	3,751	-	-	-	-
21~25백만원	55,552	17,975	50,102	18,003	-	-	1,603	-
25~30백만원	65,129	27,258	53,355	24,791	-	-	3,150	-
30~35백만원	65,491	33,388	45,966	26,464	-	-	1,938	-
35~40백만원	57,693	36,465	34,198	24,162	-	-	619	-
합계	633,706	144,088	562,987	123,237	-	-	7,310	-

주: 1) 소득상한액 4천만원, 점감개시액 2,500만원, 자녀 1인당 지급액 50만~70만원, 자산기준 2억원 (재산 1억 4천만원 초과하면 50% 감액)

2) 개편방안 반영 전과 반영 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와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차이

3)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예상액을 추정함

자료: 저자 직접 작성

- 소득상한액 4천만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홀별이와 맞별이의 점감개시액을 2,500만원으로 통일할 경우, 73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가구소득 2,500만~3천만원에 속한 홀별이 가구가 점감개시액 일치화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 소득상한액을 4,400만원으로 인상하고 홀별이와 맞별이의 점감개시액을 2,500만원으로 통일할 경우, 689억원(홀별이 455억원, 맞별이 234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는 홀별이 5만 1천가구, 맞별이 2만 8천가구, 총 7만 9천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소득상한액을 4,400만원으로 인상하고 홀별이 2,200만원, 맞별이 2,600만원의 점감개시액을 적용하는 방안에 비하여 49억원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함

<표 VII-8> 소득상한액 인상(4,400만원으로 인상)과 점감개시액 일치화 효과<sup>1)</sup>

(단위: 가구, 원, 백만원)

가구소득	지급가구수		지급액		지급가구수 증감 <sup>2)</sup>		지급액 증감 <sup>2)</sup>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1백만원	25,406	-	25,546	-	-	-	-	-
1~2백만원	20,732	-	20,151	-	-	-	-	-
2~3백만원	21,618	-	20,275	-	-	-	-	-
3~4백만원	17,877	-	17,355	-	-	-	-	-
4~5백만원	18,402	-	18,544	-	-	-	-	-
5~6백만원	17,656	-	17,113	-	-	-	-	-
6~8백만원	36,785	824	35,830	867	-	-	-	-
8~9백만원	18,256	836	18,051	959	-	-	-	-
9~10백만원	19,957	1,201	20,159	1,412	-	-	-	-
10~12백만원	38,377	3,257	36,886	3,274	-	-	-	-
12~13백만원	22,128	2,096	21,765	2,123	-	-	-	-
13~15백만원	30,255	3,571	29,846	3,591	-	-	-	-
15~17백만원	39,105	4,531	37,979	4,575	-	-	-	-
17~20백만원	48,289	8,993	45,598	9,265	-	-	-	-
20~21백만원	14,998	3,694	14,267	3,751	-	-	-	-
21~25백만원	55,552	17,975	50,102	18,003	-	-	1,603	-
25~30백만원	65,129	27,258	53,977	25,071	-	-	3,772	281
30~35백만원	65,491	33,388	47,889	27,468	-	-	3,861	1,004
35~40백만원	57,693	36,465	37,058	25,963	-	-	3,478	1,801
40~44백만원	50,997	28,576	32,757	20,346	50,997	28,576	32,757	20,346
합계	684,703	172,664	601,147	146,669	50,997	28,576	45,471	23,432

주: 1) 소득상한액 4,400만원, 점감개시액 2,500만원, 자녀 1인당 지급액 50만~70만원, 자산기준 2억 원(재산 1억 4천만원 초과하면 50% 감액)

2) 개편방안 반영 전과 반영 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와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차이

3)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예상액을 추정함

자료: 저자 직접 작성

- 소득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홀별이와 맞별이의 점감개시액을 2,500만원으로 통일할 경우, 1,604억원(홀별이 1,023억원, 맞별이 581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는 홀별이 12만 3천가구, 맞별이 6만 9천가구, 총 19만 2천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소득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홀별이 2,500만원, 맞별이 2,900만원의 점감개시액을 적용하는 방안에 비하여 재정부담이 49억원 감소함

<표 VII-9> 점감개시액 일치화 효과(소득상한액 5,000만원 기준)<sup>1)</sup>

(단위: 가구, 원, 백만원)

가구소득	지급가구수		지급액		지급가구수 증감 <sup>2)</sup>		지급액 증감 <sup>2)</sup>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1백만원	25,406	-	25,546	-	-	-	-	-
1~2백만원	20,732	-	20,151	-	-	-	-	-
2~3백만원	21,618	-	20,275	-	-	-	-	-
3~4백만원	17,877	-	17,355	-	-	-	-	-
4~5백만원	18,402	-	18,544	-	-	-	-	-
5~6백만원	17,656	-	17,113	-	-	-	-	-
6~8백만원	36,785	824	35,830	867	-	-	-	-
8~9백만원	18,256	836	18,051	959	-	-	-	-
9~10백만원	19,957	1,201	20,159	1,412	-	-	-	-
10~12백만원	38,377	3,257	36,886	3,274	-	-	-	-
12~13백만원	22,128	2,096	21,765	2,123	-	-	-	-
13~15백만원	30,255	3,571	29,846	3,591	-	-	-	-
15~17백만원	39,105	4,531	37,979	4,575	-	-	-	-
17~20백만원	48,289	8,993	45,598	9,265	-	-	-	-
20~21백만원	14,998	3,694	14,267	3,751	-	-	-	-
21~25백만원	55,552	17,975	50,102	18,003	-	-	1,603	-
25~30백만원	65,129	27,258	54,536	25,324	-	-	4,332	534
30~35백만원	65,491	33,388	49,619	28,372	-	-	5,591	1,908
35~40백만원	57,693	36,465	39,631	27,584	-	-	6,052	3,421
40~44백만원	50,997	28,576	35,032	21,616	50,997	28,576	35,032	21,616
44~50백만원	72,289	40,507	49,658	30,641	72,289	40,507	49,658	30,641
합계	756,992	213,171	657,944	181,358	123,285	69,084	102,268	58,121

주: 1) 소득상한액 5천만원, 점감개시액 2,500만원, 자녀 1인당 지급액 50만~70만원, 자산기준 2억원 (재산 1억 4천만원 초과하면 50% 감액)

2) 개편방안 반영 전과 반영 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수와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차이

3)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예상액을 추정함

자료: 저자 직접 작성

### 3) 재산기준의 인상과 그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 현재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중위소득가구에 맞추어져 있는바, 중위소득가구가 보유한 평균자산 규모 수준으로 재산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의 재정 효과를 분석함
  - 구체적으로 가계동향조사 소득 5분위별 3분위 가구의 평균보유재산인 2억 8천만원 수준으로 재산기준을 확대할 경우, 재정부담을 추정함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구간별로 환산재산 규모가 2억~2억 8천만원인 가구 수 대비 환산재산 규모가 2억원 미만인 가구 수의 비율을 구하고, 그 비율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 환산재산가액은 실물자산은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75%를 가정하여 평가하고, 금융자산은 시가로 평가한 후 합산한 금액임
  
-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재산기준을 2억 8천만원(재산 2억원 이상 자녀장려금 50% 지급)으로 확대할 경우, 수급대상가구 수가 26.2% 증가하고,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1,85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재산기준 확대는 가구소득 2,500만원 이상 가구의 수급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
    - 재산기준을 2억 8천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가구소득 2,500만원 이상 가구의 수급대상자가 78,402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986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재산기준을 소득기준 설정대상 가구(중위소득가구) 보유재산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재정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한 혜택이 가구소득 2,500만원 이상 가구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산기준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재산기준을 2억 8천만원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부담이 27.3%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재산요건의 확대는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 중산층 편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는바,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를 중산층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늘려 아동빈곤가구의 소득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지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VII-10> 재산기준 확대에 따른 재정효과 추정

(단위: 가구, %, 백만원)

가구소득	환산재산 <sup>1)</sup> 2억 미만(A)	환산재산 <sup>1)</sup> 2억~2억 8천(B)	가구수 증가율 (=B/A)	증가되는 가구 수 (가구) <sup>2)</sup>	자녀장려금 증가액	수혜비율
~1백만원	704,592	22,649	3.2	817	2,563	1.38
1~2백만원	265,845	16,749	6.3	1,306	2,741	1.48
2~3백만원	280,315	26,033	9.3	2,008	3,582	1.93
3~4백만원	300,000	21,460	7.2	1,279	2,643	1.43
4~5백만원	240,372	33,703	14.0	2,580	3,908	2.11
5~6백만원	205,122	23,918	11.7	2,059	3,442	1.86
6~8백만원	426,839	45,802	10.7	4,036	6,455	3.48
8~9백만원	131,288	22,694	17.3	3,300	4,901	2.64
9~10백만원	153,301	19,156	12.5	2,644	4,135	2.23
10~12백만원	300,528	43,359	14.4	6,007	8,944	4.82
12~13백만원	223,215	33,636	15.1	3,650	5,587	3.01
13~15백만원	292,584	48,158	16.5	5,568	8,592	4.64
15~17백만원	277,799	41,967	15.1	6,592	10,654	5.75
17~20백만원	459,739	67,672	14.7	8,432	13,688	7.38
20~21백만원	166,371	26,247	15.8	2,949	4,866	2.63
21~25백만원	532,956	106,813	20.0	14,736	21,755	11.74
25~30백만원	577,042	110,548	19.2	17,699	24,836	13.40
30~35백만원	611,684	120,910	19.8	19,545	25,282	13.64
35~40백만원	560,887	157,390	28.1	26,422	26,790	14.45
40~44백만원	413,647	131,945	31.9			
44~50백만원	485,110	215,564	44.4			
50백만원 초과	1,809,125	1,134,851	62.7			
전체	9,418,361	2,471,224	26.2	131,627	185,364	100

주: 1) 환산재산=실물자산의 시가×75%+금융재산의 시가

2) 재산기준을 2억 8천만원(재산 2억원 이상 50% 지급)으로 확대할 경우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예상액[자녀장려금 지급예상 가구 수×(1+가구수 증가율)×국세청 미시자료(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의 5%)를 이용하여 추정한 해당 소득구간의 가구당 자녀장려금 지급예상액] - 재산기준을 2억원(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50% 지급)으로 유지할 경우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예상액

3)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예상액을 추정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 1) 첫째 자녀 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그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첫째 자녀와 둘째 이후 자녀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에 차등을 둘 경우, 재정부담을 추정함

- 첫째 자녀는 현재보다 10만원 높여 1인당 60만~8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이상 자녀는 현재와 동일하게 1인당 50만~70만원을 지급할 경우 재정부담을 추정함
- 소득상한액 인상 여부 및 점감개시액 일치화 여부에 따라 5개 대안을 구성하고, 각 대안별 재정부담을 추정함
  - [대안 1]은 소득상한액과 점감개시액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첫째 자녀의 1인당 최대지급액을 10만원 인상할 경우 재정부담을 추정한 것임
  - [대안 2]와 [대안 3]은 소득상한액을 각각 4,4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홑벌이/맞벌이가구의 점감개시액에 차등을 두며, 첫째 자녀의 1인당 최대지급액을 10만원 인상할 경우 재정부담을 추정한 것임
  - [대안 4]와 [대안 5]는 소득상한액을 각각 4,4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홑벌이/맞벌이가구의 점감개시액을 통일하며, 첫째 자녀의 1인당 최대지급액을 10만원 인상할 경우 재정부담을 추정한 것임
- 소득상한액과 점감개시액을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첫째 자녀의 1인당 최대지급액을 10만원 인상할 경우(대안 1), 711억원(홑벌이 583억원, 맞벌이 128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소득상한액을 4,400만원으로 인상하고, 홑벌이/맞벌이가구 점감개시액을 차등 적용하고, 첫째 자녀의 1인당 최대지급액을 10만원 인상할 경우(대안 2), 1,423억원(홑벌이 1,025억원, 맞벌이 398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소득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홑벌이/맞벌이가구 점감개시액을 차등 적용하고, 첫째 자녀의 1인당 최대지급액을 10만원 인상할 경우(대안 3), 2,537억원(홑벌이 1,717억원, 맞벌이 820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소득상한액을 4,400만원으로 인상하고, 홑벌이/맞벌이가구에 동일한 점감개시액(2,500만원)을 적용하고, 첫째 자녀의 1인당 최대지급액을 10만원 인상할 경우(대안 4), 1,472억원(홑벌이 1,084억원, 맞벌이 388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소득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홀별이/맞별이가구에 동일한 점감개시액(2,500만원)을 적용하고, 첫째 자녀의 1인당 최대지급액을 10만원 인상할 경우(대안 5), 2,488억원(홀별이 1,717억원, 맞별이 771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모든 대안에서 가구소득이 2,1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첫째 자녀의 1인당 최대지급액 인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으로 분석됨

<표 VII-11> 자녀수에 따른 지급액 차등화 효과(첫째 자녀 80만원, 둘째 자녀부터 70만원)

(단위: 가구, 백만원)

가구소득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대안 5	
	① 소득상한액: 4,000만원		① 소득상한액: 4,400만원		① 소득상한액: 5,000만원		① 소득상한액: 4,400만원		① 소득상한액: 5,000만원	
	② 점감개시액: - 홀별이 2,100만원 - 맞별이 2,500만원		② 점감개시액: - 홀별이 2,200만원 - 맞별이 2,600만원		② 점감개시액: - 홀별이 2,500만원 - 맞별이 2,900만원		② 점감개시액: - 홀별이 2,500만원 - 맞별이 2,500만원		② 점감개시액: - 홀별이 2,500만원 - 맞별이 2,500만원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홀별이	맞별이
~1백만원	2,375	-	2,375	-	2,375	-	2,375	-	2,375	-
1~2백만원	1,937	-	1,937	-	1,937	-	1,937	-	1,937	-
2~3백만원	1,999	-	1,999	-	1,999	-	1,999	-	1,999	-
3~4백만원	1,654	-	1,654	-	1,654	-	1,654	-	1,654	-
4~5백만원	1,724	-	1,724	-	1,724	-	1,724	-	1,724	-
5~6백만원	1,636	-	1,636	-	1,636	-	1,636	-	1,636	-
6~8백만원	3,470	73	3,470	73	3,470	73	3,470	73	3,470	73
8~9백만원	1,702	77	1,702	77	1,702	77	1,702	77	1,702	77
9~10백만원	1,877	111	1,877	111	1,877	111	1,877	111	1,877	111
10~12백만원	3,601	295	3,601	295	3,601	295	3,601	295	3,601	295
12~13백만원	2,071	187	2,071	187	2,071	187	2,071	187	2,071	187
13~15백만원	2,811	322	2,811	322	2,811	322	2,811	322	2,811	322
15~17백만원	3,602	409	3,602	409	3,602	409	3,602	409	3,602	409
17~20백만원	4,452	824	4,452	824	4,452	824	4,452	824	4,452	824
20~21백만원	1,378	333	1,378	333	1,378	333	1,378	333	1,378	333
21~25백만원	5,068	1,605	5,888	1,605	6,671	1,605	6,671	1,605	6,671	1,605
25~30백만원	5,900	2,424	7,547	3,036	10,232	3,719	9,672	2,705	10,232	2,958
30~35백만원	5,877	2,970	8,220	4,293	11,468	6,145	9,738	3,974	11,468	4,878
35~40백만원	5,199	3,225	7,886	5,223	11,251	7,632	8,677	5,026	11,251	6,646
40~44백만원	-	-	36,653	23,028	39,627	24,916	37,352	22,873	39,627	24,143
44~50백만원	-	-	-	-	56,172	35,319	-	-	56,172	34,224
합계	58,330	12,855	102,481	39,817	171,707	81,968	108,397	38,815	171,707	77,086

## 참고문헌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Idx=1004000000&tm3Idx=1004000000](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Idx=1004000000&tm3Idx=1004000000))
- 국세청, 자녀장려금 산정표([https://www.nts.go.kr/support/encourage\\_popup/encourage\\_qna\\_10.html](https://www.nts.go.kr/support/encourage_popup/encourage_qna_10.html))
-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각 연도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8.
-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자녀장려세제 현황조사』, 2019. 4. 2.
- 안종석 외,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자녀장려금제도 성과분석 및 운용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7.

### <미국>

- IRS, Publication 972(2018), [https://www.irs.gov/publications/p972#en\\_US\\_2018\\_publink100012081](https://www.irs.gov/publications/p972#en_US_2018_publink100012081), 검색일자: 2019. 6. 21.
- \_\_\_\_\_, <https://www.irs.gov/pub/irs-pdf/p5307.pdf>, p. 9. 검색일자 2019. 3. 21.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Working-Family Tax Credits Lifted 8.9 Million People out of Poverty in 2017(<https://www.cbpp.org/blog/working-family-tax-credits-lifted-89-million-people-out-of-poverty-in-2017>), 검색일자: 2019. 6. 21.

### <영국>

- GOV.UK, <https://www.gov.uk/child-tax-credit/new-claim>, 검색일자: 2016. 6. 24
- \_\_\_\_\_, <https://www.gov.uk/child-benefit>, 검색일자: 2019. 6. 24
- HMRC,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April 2018, p. 7.
- \_\_\_\_\_, 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Statistics, Provisional awards geographical analysis, 2018. 12, p. 4.
- HM Revenue and Customs, Child and Working Tax Credit Statistics., 2018.

<뉴질랜드>

Inland Revenue, <https://www.ird.govt.nz/wff-tax-credits/understanding/all-about/ftc/>, 검색일자: 2019. 3. 25.

<캐나다>

Government of Canada,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nada-child-benefit-overview/canada-child-benefit-before-you-apply.html>, 검색일자: 2019. 6. 25.

\_\_\_\_\_,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nada-child-benefit-overview/canada-child-benefit-we-calculate-your-ccb.html>, 검색일자: 2019. 6. 25.

<일본>

일본 민주당, 「税制改正過程の抜本改革」, <http://www1.dpj.or.jp/policy/manifesto/seisaku2009/>



# 부 록





## 부 록

### 「자녀장려세제」 임의심층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수급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한 인식 및 수급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항은 20개 내외이며, 소요시간은 약 10분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현 자녀장려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조사담당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수행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문의사항: 김정민 연구원(Tel. 02-3484-3031)

### 응답자 특성

SQ1.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1	9		
---	---	--	--

 년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SQ3. 귀하께서는 현재 동거하고 있는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습니까?

1. 있음  명

2. 없음  조사 종료



Q07. 귀 닥이 보유한 재산(현 시가 기준)은 얼마입니까?

부동산(주택, 주택외 건물, 토지 등)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등)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자동차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전세보증금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기타재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합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

※ 다음은 귀 닥의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한 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Q08. 월 평균 총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만원

Q09. 자녀 양육비로 지출되는 월 평균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녀양육비는 식료품비, 보육료비, 의류비, 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등을 포함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만원

Q09-1. 첫째 자녀의 양육비로 지출되는 월 평균 금액은 얼마입니까?

만원

Q09-2. 둘째 자녀의 양육비로 지출되는 월 평균 금액은 얼마입니까?

만원

Q09-3. 셋째 자녀의 양육비로 지출되는 월 평균 금액은 얼마입니까?

만원

Q09-4. 넷째 자녀의 양육비로 지출되는 월 평균 금액은 얼마입니까?

만원

Q09-5. 다섯째 자녀의 양육비로 지출되는 월 평균 금액은 얼마입니까?

만원

## 자녀 양육 관련 정부지원금 수혜 실적

Q10. 귀 닥이 2018년 한 해 동안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항목을 모두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수당(장애아동수당 포함)
2.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3. 보육료 지원(i-사랑카드, 아이즐거운 카드)
4. 자녀장려금
5. 한부모가족지원 ☞  만원
6. 바우처 지원금(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7. 기타(급식비, 교복비, 수학여행경비 지원, 출산장려수당, 출산축하금, 육아돌보미 지원 등)

Q11.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부지원금 중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 가장 도움이 된 지원 제도를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1. 아동수당(장애아동수당 포함)
2.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3. 보육료 지원(i-사랑카드, 아이즐거운 카드)
4. 자녀장려금
5. 한부모가족지원
6. 바우처 지원금(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7. 기타(급식비, 교복비, 수학여행경비 지원, 출산장려수당, 출산축하금, 육아돌보미 지원 등)

Q12.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부지원금 중 **출산장려 효과**에 가장 도움이 된 지원 제도를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1. 아동수당(장애아동수당 포함)
2.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3. 보육료 지원(i-사랑카드, 아이즐거운 카드)
4. 자녀장려금
5. 한부모가족지원
6. 바우처 지원금(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7. 기타(급식비, 교복비, 수학여행경비 지원, 출산장려수당, 출산축하금, 육아돌보미 지원 등)



Q19. 현재 자녀장려금은 연 1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분할 지급한다면 급여를 몇 회에 나누어 지급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1년에 한 번 일괄지급(현행 유지)
2. 6개월씩 나누어 분할 지급
3. 3개월씩 나누어 분할 지급
4. 1개월씩 나누어 분할 지급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Q1. 귀하와 가구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 가구주(본인)
2. 배우자

DQ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1. 고졸 이하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졸 이상

DQ3. 귀하께서 현재 거주 중인 지역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2. 중소도시(시/군)
3. 농어촌(읍/면)

DQ4. 귀하의 주택 보유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1. 무주택
2. 1주택 보유
3. 2주택 보유

DQ5. 귀하의 주소득자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1. 상용직 임금근로자
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 자영업
4. 실업
5. 기타( )

DQ6. (Q04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귀하의 사업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자영업 업종은 어떻게 됩니까?

1. 도매업
2.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임업/광업/축산업/어업
3.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5.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6.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녀장려세제」 임의심층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전문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한 인식 및 수급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항은 15개 내외이며, 소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현 자녀장려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조사담당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수행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문의사항: 김정민 연구원(Tel. 02-3484-3031)

\* 자녀장려세제(CTC)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 총재산 2억원 미만인 가구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응답자 특성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전문직(회계사, 세무사 등)
2. 교수 및 연구소 직원
3. 일반 기업 근무자
4. 학생
5. 기타(            )

SQ3. 귀하의 경력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 5년 미만
2. 5~10년 미만
3. 10~15년 미만
4. 15~20년 미만
5. 20년 이상

SQ4. 귀하의 전공 분야는 무엇입니까?

1. 회계 및 세무
2. 사회복지
3. 경제학
4. 기타(            )

## 자녀장려금 정책효과

Q01. 자녀장려금의 정책효과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비 경감	①	②	③	④
출산장려 효과	①	②	③	④
근로활동 참여	①	②	③	④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①	②	③	④

Q02.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비 경감에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는 지원 제도를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주시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1. 아동수당(장애아동수당 포함)
2.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3. 보육료지원(i-사랑카드, 아이즐거운 카드)
4. 자녀장려금
5. 한부모가족지원
6. 바우처 지원금(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7. 기타(급식비, 교복비, 수학여행경비 지원, 출산장려수당, 출산축하금, 육아돌보미 지원 등)

Q03. 출산장려에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는 지원 제도를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주시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1. 아동수당(장애아동수당 포함)
2.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3. 보육료지원(i-사랑카드, 아이즐거운 카드)
4. 자녀장려금
5. 한부모가족지원
6. 바우처 지원금(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7. 기타(급식비, 교복비, 수학여행경비 지원, 출산장려수당, 출산축하금, 육아돌보미 지원 등)

## 자녀장려금 개편 방안

Q04.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자녀 1인당 최고지급액을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 확대에 정부의 조세지출은 2018년 4조 8천억원에서 2019년에는 8조 5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는 향후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어떻게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현재보다 대폭 축소	현재보다 소폭 축소	현행 수준 유지	현재보다 소폭 확대	현재보다 대폭 확대
지급대상	①	②	③	④	⑤
자녀 1인당 지급액	①	②	③	④	⑤

Q05. 현행 자녀장려금을 개편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소득요건(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조정
2. 재산요건(총재산 2억원 미만) 조정
3. 자녀 1인당 급여액 조정
4.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 차등 폐지
5. 정책효과가 유사한 타 제도와 중복문제 해소
6. 기타( )

Q06.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을 개편한다면 어떤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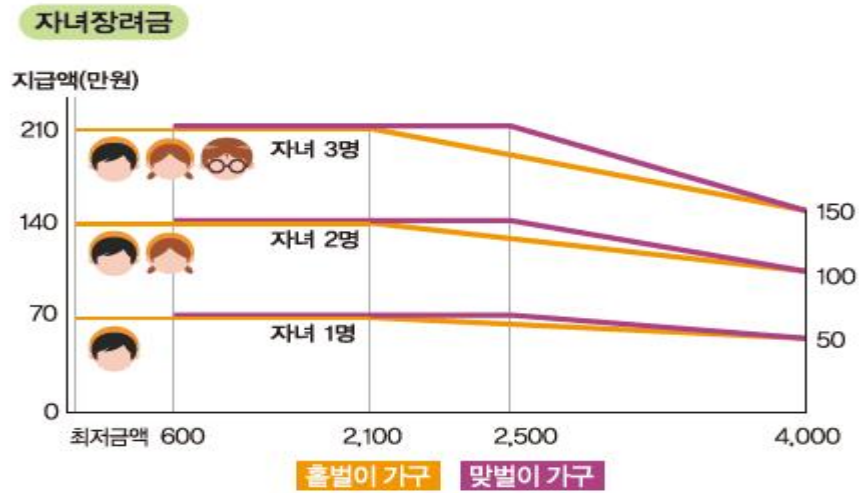
1. 현재 수준(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 수준 유지
2. 소득기준 상향 조정
3. 소득기준 하향 조정
4. 소득기준 폐지 ☞ Q10으로 이동

Q07. 현재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부부합산 4천만원)은 2019년도 3.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약 5,000만원)의 약 80% 수준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기준중위소득의 50% 수준 (2,500만원)
2. 기준중위소득의 60% 수준 (3,000만원)
3. 기준중위소득의 80% 수준 (4,000만원) - 현재 수준
4. 기준중위소득의 90% 수준 (4,500만원)
5. 기준중위소득의 100% 수준 (5,000만원)
6. 기타(기준중위소득의    % 수준)

Q08. 현행 자녀장려금 지급체계는 가구소득이 2,100만원~2,400만원일 때 맞벌이가구가 홑벌이 가구에 비하여 자녀 1인당 지급액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구소득 2,100만원 이하 구간은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자녀 1인당 지급액이 같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은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체계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체계를 통일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1. 현행 기준 유지(맞벌이가구 우대)
2.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체계 통일

Q09. 현재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기준중위소득의 50%), 홀벌이가구는 2,100만원(기준중위소득의 42%)을 기점으로 자녀 1인당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최대급여액 기준점을 개편한다면 어떤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2019년도 3.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약 5,000만원)

[ 현행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



	홀별이가구	맞별이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1,500만원)	①	①
기준중위소득의 40% 수준(2,000만원)	②	②
<b>2,100만원</b>	<b>③ (현행 수준)</b>	<b>③</b>
<b>기준중위소득의 50% 수준(2,500만원)</b>	<b>④</b>	<b>④ (현행 수준)</b>
기준중위소득의 60% 수준(3,000만원)	⑤	⑤
기준중위소득의 80% 수준(4,000만원)	⑥	⑥
기타	⑦ (기준중위소득의 □□□ % 수준)	⑦ (기준중위소득의 □□□ % 수준)

Q10. 현재 자녀장려금은 총재산 2억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하며, 재산은 시가가 아닌 개별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개편한다면 어떤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자녀장려금 재산평가방법(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종류	평가방법	
토지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주택, 오피스텔	Min [①실제 전세금, ②임차주택 기준시가×55%]
	상가	실제 전세금
금융재산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예금, 적금, 파생결합상품 등	
유가증권	① 상장주식: 소유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 ② 비상장주식: 액면가액	

1. 현재 재산합계 2억원 미만 수준 유지
2. 재산합계 기준 상향 조정
3. 재산합계 기준 하향 조정
4. 재산합계 기준 폐지 ☞ Q14로 이동

Q11. 현재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총재산 2억원 미만)은 2018년 말 시가로 측정한 가구당 평균자산 4억 1천만원의 약 50%에 해당합니다. 재산요건이 필요하다면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1억 2천만원 (시가로 측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30%)
2. 1억 6천만원 (시가로 측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40%)
3. 2억원 (현재 수준)
4. 2억 4천만원 (시가로 측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60%)
5. 2억 9천만원 (시가로 측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70%)
6. 기타 (시가로 측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

Q12.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삭감 기준점을 개편한다면 어떤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 말 시가로 측정한 가구당 평균자산 4억 1천만원)

1. 8천만원 (시가로 측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20%)
2. 1억 2천만원 (시가로 측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30%)
3. 1억 4천만원 (현재 수준)
4. 1억 6천만원 (시가로 측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40%)
5. 2억원 (시가로 측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50%)
6. 기타 (시가로 측정한 가구당 평균자산의  %)

Q13. 귀하는 도시 거주 가구의 재산요건을 농어촌 거주 가구에 비하여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약간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Q14. 현행 자녀장려금 급여체계는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여 자녀수나 자녀연령에 따른 급여 수준의 차등이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급여체계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p>영국 또는 뉴질랜드 사례처럼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줄인다</p> <p><b>[참고자료] 영국 / 뉴질랜드의 자녀장려세제 운영 사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동일하나, 영국과 뉴질랜드는 자녀수가 2인 이상이면 1인당 최대 지급액이 점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li> </ul> <p><b>[그림] 자녀장려세제 최대 환급액 국가별 비교</b> (단위: 원)</p> <table border="1"> <caption>자녀장려세제 최대 환급액 국가별 비교 (단위: 원)</caption> <thead> <tr> <th>국가</th> <th>첫 번째 적격자녀</th> <th>두 번째 적격자녀</th> <th>세 번째 적격자녀</th> </tr> </thead> <tbody> <tr> <td>우리나라</td> <td>700,000</td> <td>700,000</td> <td>700,000</td> </tr> <tr> <td>미국</td> <td>1,663,200</td> <td>1,663,200</td> <td>1,663,200</td> </tr> <tr> <td>영국</td> <td>4,976,169</td> <td>4,237,283</td> <td>4,192,045</td> </tr> <tr> <td>뉴질랜드</td> <td>4,566,207</td> <td>3,686,058</td> <td>3,686,058</td> </tr> </tbody> </table> <p>주) 2019년 5월 26일 기준 환율 적용하여 원화환산</p>	국가	첫 번째 적격자녀	두 번째 적격자녀	세 번째 적격자녀	우리나라	700,000	700,000	700,000	미국	1,663,200	1,663,200	1,663,200	영국	4,976,169	4,237,283	4,192,045	뉴질랜드	4,566,207	3,686,058	3,686,058	①	②	③	④
국가	첫 번째 적격자녀	두 번째 적격자녀	세 번째 적격자녀																					
우리나라	700,000	700,000	700,000																					
미국	1,663,200	1,663,200	1,663,200																					
영국	4,976,169	4,237,283	4,192,045																					
뉴질랜드	4,566,207	3,686,058	3,686,058																					
<p>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예: 0~5세 70만, 6~11세 80만, 12~18세 90만)</p>	①	②	③	④																				
<p>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예: 0~5세 90만, 6~11세 80만, 12~18세 70만)</p>	①	②	③	④																				
<p>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예. 한부모가족 80만, 그 외 가구 70만)</p>	①	②	③	④																				
<p>장애아를 가진 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늘린다 (예. 장애아가구 80만, 그 외 가구 70만)</p>	①	②	③	④																				